

최 종
보 고 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2007.4

주 관 연구 기관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협 동 연구 기관 : 한국갤럽(GALLUP KOREA)
협 동 연구 기관 : 오 션 인 포 (주)

해 양 수 산 부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4월

연 구 기 관 명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 이 광 남

연 구 원 : 박규석, 정영태, 이상문, 김석진,
김종화, 서병귀, 표성현, 김창민,

한 국 객 령 : 김영철, 김학렬, 노혜란, 송승봉, 구정미

오 션 인 포 : 강학원, 조성중, 박용석

[제 목 차 례]

[요약문]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10

제1절 조사의 개요 10

제2절 조사 결과의 분석 16

제3절 요약 및 결론 90

제3장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93

제1절 자율관리 공동체 활동실태 93

제2절 자율관리어업 평가제도 112

제4장 자율관리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 127

제1절 측정방법 이론 및 사례 검토 128

제2절 자율관리 평가 소득지표 개발(안) 144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 171

제1절 기관별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	171
1. 공동체자체 평가	172
2. 지도자협의회 평가	174
3. 지방청 전자평가	176
4. 지역협의회	179
5. 수협(중앙회)	181
6. 소결	182
제2절 기관별 평가체계 개선(안)	185
1. 평가체계 개선(안)	185
2. 기관별 평가비중 개선(안)	188
3. 평가개선(안) 장단점 분석	191
4. 기관별 평가 개선(안) 요약	192
5. 소결	194
제3절 참여기준 및 기관별 평가항목 개선(안)	195
1. 자율관리 참여 구성원 기준	195
2. 참여 공동체 유형별 기준	209
3. 기관별 평가개선(안) 기준	213
4. 시도 지도자협의회평가 개선(안)	214
5. 지역협의회 평가개선(안)	219
6. 지방청 전자평가 개선(안)	231
7. 중앙 자율평가위원회 확인·점검 개선(안)	269

제4절 평가프로그램 구축 개선(안)	272
1. 평가시스템 구축 방향	272
2. 평가시스템 구축 내용	272
제6장 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 로드맵 제시	277
제1절 현행 자율공동체 평가개선 방향	277
제2절 자율관리 활성화 방향	287
제3절 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 세부실천계획(안)	295
참 고 문 헌	302
부록 1 : 자율관리 성과분석 설문지	297
부록 2 : 지방청 전자평가 메뉴얼	307

[표 차 례]

<표 2-1> 설문조사 분석 주요 항목	11
<표 2-2> 표본 설계 내용	12
<표 2-3> 실사 설계 절차 및 방법	12
<표 2-4> 조사 진행 과정 및 일정	14
<표 2-5>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17
<표 2-6>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17
<표 2-7> 시작년도별	19
<표 2-8>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19
<표 2-9> 응답자 특성별 분석	21
<표 2-10> 응답자 특성별 분석	21
<표 2-11> 응답자 특성별 분석	22
<표 2-12> 응답자 특성별 분석	24
<표 2-13> 시작년도별 수산물 판매 경로	24
<표 2-14> 담당지방청별 수산물 판매 경로	25
<표 2-15>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28
<표 2-16>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28
<표 2-17>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29
<표 2-18>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31
<표 2-19> 응답자 특성별 분석	31
<표 2-20> 응답자 특성별 분석	32
<표 2-21>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34
<표 2-22> 지역 특성별 분석	34
<표 2-23> 지역 특성별 분석	35
<표 2-24> 자율관리어업 측면별 평가 기관별 분류	36
<표 2-25>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38
<표 2-26> 응답자 특성별 분석	38
<표 2-27> 응답자 특성별 분석	39

<표 2-27-1> 어가 소득별 분석	39
<표 2-28> 사업규모 :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41
<표 2-29> 사업규모 :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41
<표 2-30> 사업규모 :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42
<표 2-31> 구성원 :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43
<표 2-32> 구성원 :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43
<표 2-33> 구성원 :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44
<표 2-34> 규약 :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45
<표 2-35> 규약 :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45
<표 2-36> 규약 :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46
<표 2-37>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48
<표 2-38>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48
<표 2-39>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49
<표 2-40>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51
<표 2-41>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51
<표 2-42>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51
<표 2-43>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52
<표 2-44>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52
<표 2-45>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53
<표 2-46>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55
<표 2-47>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55
<표 2-48>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56
<표 2-48-1> 전반적 만족도별 분석	56
<표 2-49>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58
<표 2-50>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58
<표 2-51>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59
<표 2-52>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61
<표 2-53>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61
<표 2-54>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62
<표 2-55>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6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2-56>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64
<표 2-57>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65
<표 2-58>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67
<표 2-59>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67
<표 2-60>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68
<표 2-60-1> 지원 횟수별 분석	68
<표 2-61>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70
<표 2-62>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70
<표 2-63>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71
<표 2-63-1> 지원 횟수별 분석	71
<표 2-64>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73
<표 2-65>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73
<표 2-66> 지역 특성별 분석	74
<표 2-66-1> 어가 소득별 분석	74
<표 2-67>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76
<표 2-68>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76
<표 2-69>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77
<표 2-70>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79
<표 2-71>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79
<표 2-72>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80
<표 2-73>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82
<표 2-74>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82
<표 2-75>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83
<표 2-76>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85
<표 2-77>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85
<표 2-78>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86
<표 2-79>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88
<표 2-80>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88
<표 2-81>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89
<표 3-1> 국별 자율관리어업 형태	94

<표 3-2> 자원관리 정책수단	95
<표 3-3> 연도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현황	97
<표 3-4> 자율관리어업 단계별 추진방향	98
<표 3-5> 자율관리어업 유형 제시	99
<표 3-6>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	108
<표 3-7> 마을어업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	109
<표 3-8> 양식어업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	109
<표 3-9> 어선어업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	110
<표 3-10> 복합어업(1)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	110
<표 3-11> 복합어업(2)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	111
<표 3-12> 내수면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	111
<표 3-13> 2005년 이전 자율관리어업 평가항목	113
<표 3-14> 2005년 이전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양식	114
<표 3-15> 2005년 이전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결과	115
<표 3-16> 2006년도 등급별 평가결과	119
<표 3-17> 2006년도 자율관리공동체 자체 평가서	122
<표 3-18> 2006년도 하반기 평가개선 내용	124
<표 3-19> 2006년도 하반기 유형별 평가 점수	124
<표 3-20> '06년 하반기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125
<표 3-20 계속> '06년도 하반기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126
<표 4-1> 정성 및 정량적 분석방법의 주요 차이점	130
<표 4-2> 사업전후 효과분석 일반적인 방법	131
<표 4-3> 유무검정과 전후검정의 특징	132
<표 4-4> 한국과 일본의 자율관리어업 평가 비교	140
<표 4-5> 어가수지관련 용어의 개념 정리	145
<표 4-6> 어가소득 계산시 필요한 소득 항목들	147
<표 4-7> 어가소득 연도별 추이	149
<표 4-8> 어업형태별 어가소득	150
<표 4-9> 자율관리공동체 유형별 소득 증감을 추정	151
<표 4-10> 통계청 어가경제조사와 자율관리공동체 어가소득 조사 비교	15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4-11> 통계청 어가경제와 자율관리공동체 어가소득 조사방법론 비교	154
<표 4-12> 지역별 어촌계 및 계원 현황	155
<표 4-13> 어촌계분류 호당 어가소득 평정기준	156
<표 4-14> 소득평가지표 평가방안(안) 장단점 분석	159
<표 4-15> 자율관리어업 소득성과지표 개발(안)	163
<표 4-16> 마을/양식/내수면어업 자율관리 소득성과 지표 작성(안)	165
<표 4-17> 마을/양식/내수면 소득성과 지표작성 매뉴얼	166
<표 4-18> 어선어업 자율관리 소득성과 지표 작성(안)	167
<표 4-19> 어선어업 소득성과 지표 작성 매뉴얼	168
<표 4-20> 자율관리 공동체 소득과약 방법	169
<표 4-21> 자율관리 공동체 소득자료 활용 방안	170
<표 5-1> 자율관리 공동체 자체평가의 문제점	173
<표 5-2> 자율관리 공동체 자체평가 개선방향	174
<표 5-3> 지도자협의회 평가 문제점	175
<표 5-4> 지도자협의회 평가 개선방향	176
<표 5-5> 지방청 전자평가 문제점	177
<표 5-6> 지방청 전자평가 개선방향	178
<표 5-7> 지역협의회의 공동체 평가 참여 필요성	180
<표 5-8> 수협의 공동체 평가(안)	182
<표 5-9> 기관별 평가참여 내용 및 방향 종합	183
<표 5-10> 현장조사 여부에 따른 평가 방법(안)	184
<표 5-11> 현행 및 개선(안) 평가체계 비교	186
<표 5-12> 기관별 공동체 평가 추진체계(안)	187
<표 5-13> 기관별 평가 개선(안) 장단점	192
<표 5-14> 자율관리 평가 참여기관별 배점(안)	193
<표 5-15> 자율관리 평가 참여기관별 최종(안)	194
<표 5-16> 마을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196
<표 5-17> 마을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197
<표 5-18> 지방청별 양식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197
<표 5-19> 양식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198

<표 5-20> 지역별 어선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198
<표 5-21> 어선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199
<표 5-22> 지역별 마을(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200
<표 5-23> 마을(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200
<표 5-24> 지역별 양식(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201
<표 5-25> 양식(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201
<표 5-26> 지역별 어선(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202
<표 5-27> 어선(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202
<표 5-28> 지역별 내수면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203
<표 5-29> 내수면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203
<표 5-30> 지역별 어촌계 구성원 현황	205
<표 5-31> 조합별/어촌계별 최소 구성원 현황	206
<표 5-32> 지역별/어촌계 구성원 10인 이하 현황	206
<표 5-33> 자율관리 참여 구성원 현황	207
<표 5-34> 자율관리 참여 최소 구성원 개선(안)	208
<표 5-35> 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 기준(안)	210
<표 5-36> 군산청 복합어업 어선어업 종사자 구성 현황	211
<표 5-37> 여수청 복합어업 어선어업 종사자 구성 현황	211
<표 5-38> 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 복합어업 기준(안)	212
<표 5-39> 기관별 평가항목 개발의 기준	213
<표 5-40> 지도자협의회 평가항목 개선(안)	215
<표 5-41> 지도자협의회 평가 절차(안)	216
<표 5-42> 시·도 자율관리지도자협의회 구성 현황	217
<표 5-43> 2007년도 시도 지도자 평가위원회 현황	218
<표 5-44> 마을/양식어업 유형 지역협의회 평가항목(안)	221
<표 5-45> 어선어업 유형 지역협의회 평가항목(안)	223
<표 5-46> 복합(마을+ 어선)어업 유형 지역협의회 평가항목(안)	225
<표 5-47> 내수면어업 유형 지역협의회 평가항목(안)	227
<표 5-48> 지역협의회 평가 절차(안)	228
<표 5-49> 시·도별 지역협의회 구성	229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5-50> 시·도별 지역협의회 구성	230
<표 5-51> 유형별 세부 항목 중 상대적 높은 점수 항목	233
<표 5-52> 유형별 평가문항 및 배점 개선(안)	234
<표 5-53> 공동체 유형별 전자평가 항목 개선(안)	236
<표 5-54> 공동체 유형별 평가항목 개선(안)	237
<표 5-55> 마을어업 유형 평가 항목 배점(안)	239
<표 5-56> 양식어업 유형 평가 항목 배점(안)	241
<표 5-57> 어선어업 유형 평가 항목 배점(안)	243
<표 5-58> 복합어업 유형 평가 항목 배점(안)	245
<표 5-59> 내수면 어업 유형 평가 항목 배점(안)	247
<표 5-60>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최종(안)	248
<표 5-61>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최종(안)	249
<표 5-62> 전자평가지 확인 서류	250
<표 5-63> 전자평가지 확인 서류	251
<표 5-64> 자율관리 공동체 작업일지 양식	252
<표 6-1> 기관별 평가참여 비중 및 개선방향	279
<표 6-2> 자율관리 유형별 세부분류	281
<표 6-3> 평가항목상 불리한 마을어업 평가 문제점 및 개선(안)	282
<표 6-4> 평가항목상 불리한 어선어업 평가 문제점 및 개선(안)	283
<표 6-5> 지역별/해역별에 기초한 평가개선(안)	283
<표 6-6> 전자평가에 임하는 다양한 방법들	284
<표 6-7> 객관성/공정성을 위한 평가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방안(안)	285
<표 6-8> 지방청 전자평가 실시에 따른 확인방법(안)	285
<표 6-9> 자율관리어업 조기정착 방향	288
<표 6-10> 자율관리컨설턴트 활동내용	290
<표 6-11> 자율관리컨설턴트 구성 및 담당지역	290
<표 6-12>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 기본계획	292
<표 6-13>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 주요내용	293
<표 6-14> 공동체평가 체제구축 목표 및 추진전략	297
<표 6-15> 공동체 평가 시스템 구축 세부추진 일정	30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9

[그림 2-1] 자료처리 및 분석 과정 13

[그림 2-2] 자율관리어업 시작년도 16

[그림 2-3] 자율관리어업 실시 분야 18

[그림 2-4] 자율관리어업 실시 분야 18

[그림 2-5] 공동체 내 구성원 규모 20

[그림 2-6] 구성원 증감 현황 20

[그림 2-7] 수산물 판매 경로 23

[그림 2-8] 자율관리어업 인지 여부 26

[그림 2-9] 소속기관별 인지도 평가 26

[그림 2-10]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 27

[그림 2-11]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 27

[그림 2-12] 자율관리어업 효용성에 대한 인식 30

[그림 2-13] 자율관리어업 효용성에 대한 인식 30

[그림 2-14] 자율관리어업 측면별 평가 33

[그림 2-15] 자율관리어업 측면별 평가 36

[그림 2-16] 자율관리어업 전반적 평가 37

[그림 2-17] 자율관리어업 전반적 평가 37

[그림 2-18] 향후 자율관리어업 추진 방안 40

[그림 2-19] 향후 자율관리어업 추진 방안 40

[그림 2-20] 향후 자율관리어업 추진 방안 40

[그림 2-21] 공동체 구성원 가구 소득 평가 47

[그림 2-22] 공동체 구성원 가구 소득 평가 47

[그림 2-23] 자율관리어업 교육 경험 50

[그림 2-24] 자율관리어업 교육 경험 횟수 50

[그림 2-25] 교육 효과 평가 54

[그림 2-26] 부정 평가 이유	54
[그림 2-27] 선호 자율관리어업 교육 유형	57
[그림 2-28] 선호 자율관리어업 교육 유형	57
[그림 2-29] 정부지원사업 경험	60
[그림 2-30] 정부지원사업 금액	60
[그림 2-31] 정부지원사업 금액	60
[그림 2-32] 정부지원사업 포기/변경 이유	63
[그림 2-33] 정부지원사업 효과 평가	66
[그림 2-34] 부정 평가 이유	66
[그림 2-35] 정부 지원 부재 시 의견	69
[그림 2-36] 정부 지원 부재 시 의견	69
[그림 2-37] 부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증가에 대한 견해	72
[그림 2-38] 부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증가에 대한 견해	72
[그림 2-39] 증가 평가 이유	75
[그림 2-40] 증가 평가 이유	75
[그림 2-41]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	78
[그림 2-42]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	78
[그림 2-43]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	81
[그림 2-44]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	81
[그림 2-45]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	84
[그림 2-46]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	84
[그림 2-47]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87
[그림 2-48]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87
[그림 3-1] 2005년 이전 자율관리공동체의 선정체계	112
[그림 3-2] 2006년도 평가 흐름도	116
[그림 4-1] 정성 및 정량적 분석방법의 종류	130
[그림 4-2] 어업생산량 증가로 인한 직접적 편익증가효과	133
[그림 4-3] 어업생산량 증가로 인한 소비자 잉여 증가	133
[그림 4-4] 어획노력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효과	134

[요약문]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 자율관리어업의 실시전과 후의 공동체 평가를 통하여 자율관리어업 추진 상황에 대해 진단을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과 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나. 필요성

- 자율관리 실시 한지가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임으로 자율관리어업 실시전/후에 대한 정책적 평가가 실시와 더불어, 기존 자율관리 평가표 개선(안) 및 자율관리효과 측정지표 개발 등을 통하여 자율관리어업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하고,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실정임

제2장 자율관리공동체 성과 분석

제1절 조사의 개요

- 이번 조사는 현재의 자율관리어업 운영과 관련하여 자율관리 공동체 전체와, 자율관리어업 관련기관,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각적인 자율관리어업의 효과 측정 및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이에 관한 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 대상은 자율관리공동체 총 433개 공동체 중 420개 공동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경우 관련 지자체, 지방청, 수협, 학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명이 조사에 참가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7년 2월 11일까지 총 62일간 실시되었음
- 주요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 현황, 자율관리어업 효과 측정 문항, 교육에 대한 평가, 정부 지원에 대한 평가, 자율관리어업 문제점 진단,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등 크게 6개 측면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문제점 진단을 통한 향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형태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음
- 이번 조사에 참여한 어민 공동체의 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전라남도 지역이 32.1%로 가장 많은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경상남도(13.8%), 경상북도(10.5%), 충청남도(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관련기관/전문가 집단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청이 46.8%로 가장 많은 담당자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어 수협 32.9%, 일반 지자체 16.5%, 학계/기타 3.8%순으로 나타났음

제2절 주요 조사 결과

1. 자율관리어업 운영 실태

- 전국 420개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참여 개시 년도를 파악한 결과, 최초 개시 년도인 2001년에 13.1%를 시작으로, 2002년 13.8%, 2003년 13.1%, 2004년 20.0%, 2005년 23.6%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자율관리어업 참여 전체 공동체 중 복합 어업 공동체가 29.3%이며, 단일 어업만을 실시하는 공동체는 70.7%로 나타났다. 이 중 마을어업만을 실시하는 공동체가 4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어 어선어업(15.0%), 양식어업(10.2%), 내수면어업(1.2%)의 순임
-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구성원 규모를 보면, 30~79명 정도로 구성된 공동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공동체도 19.5%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율관리어업 시작 당시와 현재의 구성비 수를 비교해 보면, 증가한 공동체가 30.5%, 증감이 없는 공동체가 45.7%, 감소한 공동체가 23.8%로, 평균적으로는 약 4.4명 정도의 구성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35.5% 정도가 '수협위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중간도매인 및 객주 등 '위탁 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30.2%, 개인적 매매를 활용하는 경우도 16.7%, 공동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16.0% 정도로 나타났음

2. 자율관리어업 효과 측정

- 자율관리어업 관련 기관 및 관련 학계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대표자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평가한 결과, 96.0%가 어느 정도 이상은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43.4%의 대표자는 매우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별로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4.0%에 불과하였음
- 자율관리 공동체의 경우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로 '자율관리어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자발적으로 조성되어 참여되었다'는 의견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시/도, 시/군 또는 해양수산 사무소가 권해서', '정부 지원 때문에' 라는 의견이 각각 11.2%, 9.0%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경우 53.2%가 '정부지원' 요인으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평가하여 자율관리 공동체 및 관련기관/전문가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였음
- 또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효용으로 자율관리 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 증대'라고 응답하였다. '불법어업 근절'이나 '어업인들과의 분쟁 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지 않았음
-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시된 9개 공통(어업 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적으로 평가한 항목의 평가 결과, 전 측면에 걸쳐 자율관리 공동체의 경우 80% 전후의 높은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관련기관 및 전문가 평가 역시 50% 내외의 보통 수준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으나, 두 집단의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율관리공동체 평가가 관련기관 및 전문가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측면 별로 보면, 특히 '어업질서 확립 효과' 측면d에 대해 두 집단 공통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규약 준수 정도', '어장환경 개선 효과'에서 대해서도 그외 측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음
- 관련기관/전문가 집단에게 질문한 3개 별도 문항 중 '정부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평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존 법제도와와의 상충 정도 평가는 타 측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결과, 자율관리공동체 81.0%, 관련기관/전문가 52.5%가 긍정 평가를 내린 반면, 자율관리 공동체 3.8%, 관련기관/전문가 6.3%만이 부정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자율관리어업 효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관련기관/전문가 대비 자율관리 공동체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관련기관/전문가 집단 중 수협이 평가가 타 기관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정적인 평가라기보다는 평가를 유보하는 것으로 보여짐
- 향후, 자율관리어업 효율적 시행을 위한 추진 방안으로, 자율관리어업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자율관리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의 구성원 수는 현재 규모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소 많은 가운데, 확대하자는 의견도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규약에 대해서 자율관리공동체는 현 상태 유지, 관련기관/전문가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자율관리어업 참가 전/후의 어가 소득을 비교해 보면, 자율관리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전에는 년평균 2,5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실시 이후에는 2,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자체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기관/전문가도 어느 정도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3. 교육에 대한 평가

-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의 98.1%가 자율관리어업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총 3~4회 정도의 교육을 받은 공동체 비율(24.0%)이 가장 많았으며, 11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도 17.3%나 되었음
-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교육에 대해, 자율관리 공동체의 경우 82.8%, 관련기관/전문가의 경우 58.9%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여, 실제 교육을 받는 어업인들이 평가하는 교육 효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자율관리 공동체의 경우, '동일한 교육 내용의 반복'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어업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한 사례도 주요 불만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관련기관/전문가의 경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 받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부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 자율관리 공동체와 다른 입장을 보여주었음

- 자율관리어업과 관련된 6가지 교육 중에서 어업인들은 '공동체 전국 대회'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어 '현장 방문교육', '지방청 집합 교육' 등의 순이었다. 물론 조사 대상자가 위원장 및 임원들도 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어업인의 입장까지 확대해서 해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관련기관/전문가는 '현장 방문 교육'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결국,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공동체 전국 대회', '현장 방문 교육' 등 어업인 들이 선호하는 교육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기타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정부 지원에 대한 평가

-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의 44.5%가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운데, 그 중 1회 지원 받은 공동체(26.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규모는 평균 1회당 1억 5천만원 정도였으며, 이를 누적 금액으로 보면 총 2억 8천만원 정도를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후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공동체가 55.5% 수준으로 미경험 공동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대부분의 공동체(94.5%)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정부지원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자율관리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림. 두 집단 간 평가를 비교해 보면, 자율관리 공동체 75.0%, 관련기관/전문가

65.2%로 자율관리공동체의 평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 효과 평가의 두 집단 차이보다는 줄어들었으며, 특히 관련기관/전문가 평가는 교육 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정부 지원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동체의 경우 지원금액을 현 수준보다 인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부정 평가를 내린 관련기관/전문가의 경우 세부사업 항목을 잘못 선정된 것으로 평가함

-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이 중단될 경우의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전망에 대해, 자율관리 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공동체는 와해가 될 것이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동체는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5. 자율관리어업 관련 문제점 진단

- 현재 부실 공동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걱정된 평가 등의 재검토를 통한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어 부실 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자율관리어업 자체를 포기하자는 의견은 자율관리 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각각 1.9%,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실 공동체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율관리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소득 증대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우수 공동체 선정/탈락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
-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신청/선정 단계의 문제점으로 ‘주관 기관이 어디인지 혼란스럽다’는 의견과 ‘구성원의 호응도가 낮다’는 의견을 주로 지적하였음
- 반면, 실시 단계의 문제점으로는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정부의 사업 집행 지침과 현실과의 괴리’에 대해 주로 지적하였음. 마지막으로 사업 평가 단계의 문제점으로 ‘평가 자료가 복잡하고 너무 많아 번거롭다’는 의견을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음

제3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제1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태

- 자율관리어업의 정책은 자율적인 어업관리로 효율적인 자원보호 및 적정생산에 의한 적정어가 유지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TAC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대비한 기반조성이 목적으로 1997년 자율관리어업 시범실시 방안을 마련하여 1998년에 시행에 들어갔으며, 2001년부터 본격적인 자율관리어업이 시작되었음.
- 그 결과 2001년도 63개소 약 5천여명을 시작으로 2006년도 12월 현재 445개 공동체에 33,921명이 참여하고 있어, 시작년도 기준 약 7배로 증가하는 등 그 증가 추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연도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현황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개소	63 (-)	79 (25%)	122 (54%)	174 (43%)	308 (77%)	445 (44%)
	인원	5,107	6,575	10,765	15,469	24,855	33,921
	평균	81	83	88	88	80	76
마을	32	35	61	92	159	233	
양식	11	12	15	22	46	70	
어선	8	19	29	34	52	71	
복합	12	13	17	26	43	62	
내수면	-	-	-	-	8	9	

- 자율관리어업의 단계별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제1단계가 기반조성단계('01~'04)로 어촌계중심의 시범사업, 의식 확산으로 활성화, 우수공동체 지원으로 기반조성 등이며, 2단계로는 확산·심화단계('05~'11)로 새어촌운동으로 의식전환, 어선어업공동체로 확산, 지도자협의회 육성으로 핵심세력화, 3단계는 정착단계('12년 이후)로 광역공동체로 정착, 공동체간 협력 체제 확립, 민간단체 운영체제로 전환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

< 자율관리어업 단계별 추진방향 >

단계별	세부내용	공동체수
기반조성단계 (‘0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중심의 시범사업실시 ■ 의식 확산으로 활성화 ■ 우수공동체 지원으로 기반조성 	(‘01) 63 ⇒ (‘02) 79 ⇒ (‘03) 122개소 ⇒ (‘04) 174개소
확산/심화단계 (‘0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어촌운동으로 의식전환 ■ 어선어업공동체로 확산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적극 육성 	(‘05)304 ⇒ (‘06)445 ⇒ (‘11) 1,000개소
정착단계 (‘12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공동체로 정착 ■ 공동체간 협력 체제 확립 ■ 민간단체 운영체제로 전환 	(‘12 이후) 2,00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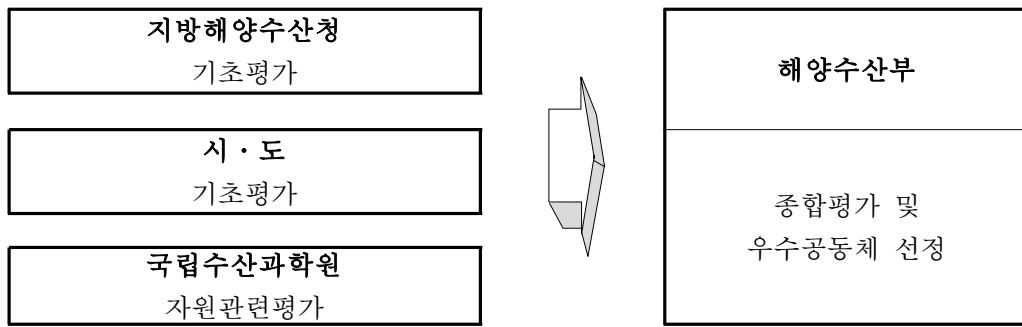
제2절 자율관리어업 평가제도

1. 평가시스템 방법 분석

- 자율관리어업의 시범사업의 평가체계는 각 항목별로 지방해양수산청과 시·도, 국립수산물과학원의 3원 체계로 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한 평가의 종합으로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었음

가. 2005년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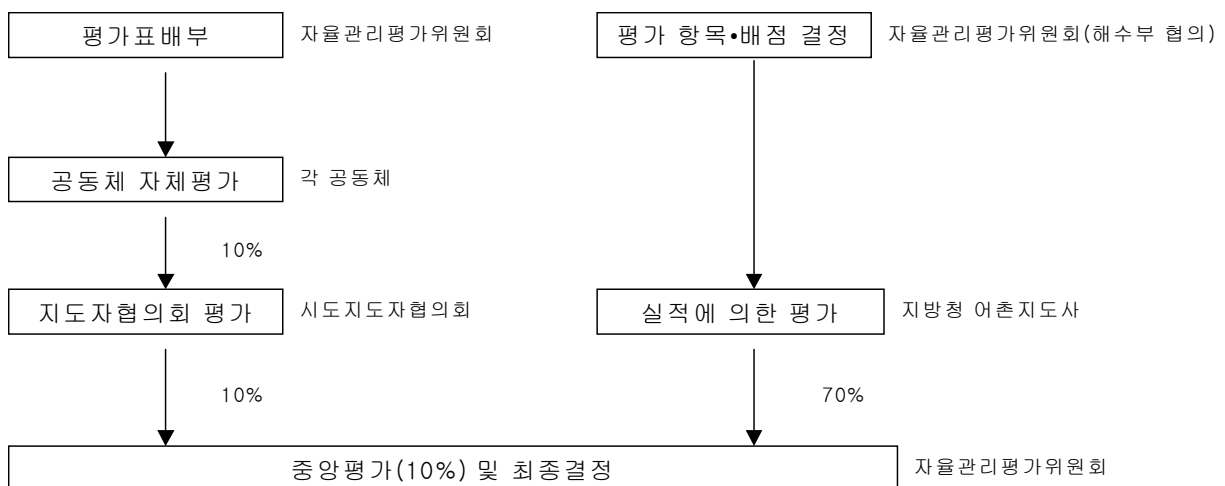
- 평가방법은 선정된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각 담당하는 부분을 평가한 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선정을 하게 됨. 이 때 평가항목은 참여도, 노력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 등 5개분야로 구분하고 평가항목은 총 53개 항목에 총 배점은 2,260점임



[2005년 이전 자율관리공동체의 선정체계]

나. 2006년도

- 어촌지도사 전자 실적평가에 추가하여 어업인과 지도자협의회 자체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자율평가 체제 구축함
- 어촌지도사의 전산실적 평가(70%), 공동체 위원장 자체평가(10%),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10%), 자율관리평가위원회 평가(10%)



[2006년도 평가 흐름도]

1) 기관별 평가 문제점

<공동체 자체평가>

- 대부분의 공동체 자체점수가 상향 평가되어 객관성 결여
 - 평가하는 공동체의 평가배경 및 이해도가 낮아 평가의 신뢰성이 낮음
- 공동체 자체평가 점수기준: 부여된 점수기준이 모호해서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점수를 비율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 대두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

- 원칙적으로는 시도지도자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등이 모여서 각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나, 물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공동체 위원장들이 모여 평가하였음.
- 따라서 시도지역의 모든 공동체 위원장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평가에 참여한 일부 공동체위원장들의 주관이 많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가 지역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고,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커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신뢰감이 떨어짐..
- 그렇기에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전자실적평가>

- 어촌지도사의 주관에 따라 평가편차가 커 객관적 신뢰도가 낮음
 - 지역별, 업종별 편차가 커서 지역별, 업종별 평가의 객관성이 낮음
 - 지역편차, 판단의 임의성, 객관적 판단의 기준제시, 조사표의 주관성 문제(평가의 강조점이 지방청별로 다름)
- 지역별·업종별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항목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낮음
- 평가 일부항목 중 입력 누락 등의 문제야기
 - '05년 가입공동체는 노력도 계산에 불이익(분기별 입력시 일부 누락)
- 입력작업시 '06년 입력에 따른 문제 야기
 - '05년말까지 입력실적평가를 해야 하나 사정상 지방청에서 '06년에 입력
 - 전산프로그램 작업상 '06년 입력 누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현실적으로 평가기준이 모호한 항목이 많아 객관적 평가가 어려움
 - 평가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함
 - 파급도 계산시 어촌지도사들의 자의적 평가문제(평가재량권 문제)

2) 전자평가 보완 및 '06년도 하반기 평가지침

- 2005년도 기존 5개분야 39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4개의 참여유형별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평가항목별 실시여부에 따라 기본점수를 부여(배점 20%)하고, 구성원 참여율(배점 30%)과 실적율(배점 50%)에 따라 추가점수를 부여함.
- 공동체 활동실적에 대하여 계량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파급도 내에 “조사자 의견” 평가항목을 추가함. 즉, 공동체 어장의 빈매여부, 광역 또는 복합어업공동체 여부, 위원장의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기준 적용을 위해 지방청 어촌지도사들이 평가함을 고려하여, 평가자들이 숙지해야 할 “전자평가 지침서”를 마련하였음
- 개선·보완된 전자평가 시스템은 '06년도 4/4분기까지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하며, '07년도 1/4분기부터는 “자율관리어업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06.8~'07.4)”용역 결과에 따라 구축될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 2006년 하반기 유형별 항목별 평가개선 >

	기 존		개 선 내 용							
			마을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어업	
	항목수	평점	항목수	평점	항목수	평점	항목수	평점	항목수	평점
계	39	1000	30	1000	29	1000	23	1000	23	1000
노력도	23	500	19	600	19	650	14	684	14	684
참여도	3	125	2	100	1	50	1	56	1	56
성과도	4	100	3	100	3	100	2	60	2	60
지속도	5	125	4	100	4	100	4	100	4	100
파급도	4	150	2	100	2	100	2	100	2	100

3) 전자실적 평가지침

○ 평가목적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의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2007년도 육성사업비 지원대상공동체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평가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전담 어촌지도사))

○ 평가대상 : '06.6월말 현재 참여공동체 443개소/활동실적 평가대상기간 : '06.1.1~6.30

- 평가내용 : 2006년도 1/4분기, 2/4분기 노력도에 대한 공동체 활동실적을 각각 평가, 단, 조사자의견은 2/4분기 평가시 1회만 평가(평가시기 : '06 8.14~8.25)

< 2006년도 하반기 유형별 평가 점수 >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계		320점	345점	362점	362점
1/4분기	노력도	150	162.5	171	171
2/4분기	노력도	150	162.5	171	171
	조사자의견	20	20	20	20

제4장 자율관리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

제1절 측정방법 이론 및 사례 검토

1. 한·일간 공동체 평가방법 비교

- 한국과 일본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하여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첫째, 먼저 동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공히 기본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따라서 실질적인 추진조직은 일본의 경우 지역어업인, 어업인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자원조장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일본에 비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해 한국은 우수 공동체에 대하여 육성사업비(인센티브 : 중앙 50%, 지자체 40%, 자담 1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91-'95 기간에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였으나 그 이후로 최근까지 타 계획과 연계하여 자율관리형 어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정부지원은 한국만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넷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어촌계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복합적 자원관리형 어업 및 자원회복계획 등과 연계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섯째, 정부지원 기준 및 공동체 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특별한 평가가 없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음. 일본은 자율관리형어업의 성과로 소득

을 염두 해두고 있는 것은 한국과 유사하나 동 운동을 통하여 자원회복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소득으로 연계되는 기간이 상당함을 고려하여 소득은 기다림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의 자율관리어업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확산해서 정착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전체 어촌의 도입이 되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일간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 비교 >

구 분	한 국	일 본	차이점
중앙정부의 역할	계획수립, 사업실시요령, 예산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수립, 예산편성	유사
실질적 추진 조직	중앙정부(지방청), 시도	지역어업인, 어업인단체 자율적 추진, 지방정부 자원조장정책 연계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 추진
정부지원 여부	- 육성사업비 지원, 중앙 50%, 지자체 40%, 자담 10%	- '70-'82 : 어협자율관리 조직결성 (독자적 운영) - '83-'90: 정부적극 권장, 지원없음, 사회적운동 성격 강함 - '91-'95 : 중앙정부 일부 지원 (급속히 확대), 조장을 위한 인센티브, 중앙정부 주도가 아님 - '96-'05 : 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별도의 지원 없음	한국만 인센티브 제공
향후 추진계획	대부분의 어촌계 참여 유도	복합적 자원관리형 어업, 자원회복계획 등 연계 발전도모	한국은 모든공동체 참여 유도
정부지원 기준	매년 공동체 평가하여 우수공동체 지원	예산신청시 검토하여 지원 (수산정책자금 지원 유사)	일본 없음
공동체 평가 여부	평가함	특별한 평가 없음	일본 없음
소득증가 여부	1년 단위로 평가	- 소득은 기다림의 산물 (자원회복은 상당시간 소요)	인식의 차이
성공여부	어느정도 확산됨	- 타 계획과 연계 추진 - 전체어촌 도입 못함/실패 (소득보전 수단 없음)	한국 확산중

2. 소결

- 분석방법론에 있어서는 자율관리 소득 성과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방법보다도 정량적인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또한, 유무검증에서 언급되었듯이 자율관리 실시 전후에 대한 평가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 사업실시 전(Before Project)과 사업실시를 한 이후(After Project)의 차이를 B/C분석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판단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B/C분석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임으로 현재보다는 향후에 이런 기법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자율관리어업 평가 관련 기법을 접목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특별한 평가보다도 예산 신청 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원관리형어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할 수가 없었음
- 특히 일본의 경우는 지역어업인, 어업인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공동체의 자담을 이용하여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원관리형어업에 한정하는 것보다도 복합적 자원관리어업 및 자원회복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타 분야의 적용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청 어가평가지표는 가장 바람직한 평가지표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접목하는 것이 평가지표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어가의 생산성 지표, 어가의 안정성지표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접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음

제2절 자율관리 평가 소득지표 개발(안)

1. 자율관리어업 소득효과 측정 기본방안

- 자율관리어업 소득 측정은 조사방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자율관리어업에 의한 어업 소득과 어업외 소득으로 한정
- 본 연구 관련 Workshop 및 토론회에서 연구팀은 어가소득을 소득지표의 범위로 제시하고, 소득 산출은 수협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촌계 분류평정시 적용하는 소득 산출 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음
 - ※ 어가소득 :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금액
-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어촌계 분류평정시 적용하는 소득측정은 조사인력 부족, 조사결과 의 신뢰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 견지
 - ※ 어촌계 분류평정 : 매년 어촌계의 자금자립도, 소득수준 등 26개 항목을 어촌계장과 의 면담조사를 통해 평정하여 복지, 자립, 성장어촌계로 분류
- 따라서, 구체적인 측정항목 및 방법은 현지실사(공동체의 기록실태조사)와 지도자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조사항목 및 서식을 개발하였고, 지방청 협조하에 공동체 위원장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자율관리어업 소득성과지표 개발(안)

가. 마을/양식/내수면

< 마을/양식/내수면어업 자율관리 소득성과 지표 작성(안) >

년도()년 ()월		공동체명 :		위원장명 :	
소 득		비 용			
어업소득(만원)		어업외소득(만원)		어업비용(만원)	
계통출하		낚시어선 수익		자원조성비 (치어, 치패)	
비계통출하 (사매매)		유어장 운영 수익		인건비	
인터넷판매		축제개최 수익		유류비	
기타판매		낚시터입장료 수익(내수면)		기타비용	
		기타 수익			
총계					

< 마을/양식/내수면 소득성과 지표작성 매뉴얼 >

작성항목		평가 세부지침(안)	비고	
어업 소득	계통출하	수협을 통한 위판 판매액을 말함	결산장부 참조	
	비계통 출하	사매매		현지 중간상인, 횃집 등에 판매한 금액
		인터넷판매		인터넷을 통한 주문 판매액
		기타판매		그 이외 판매한 금액
어업외 소득	낚시어선 수익	어촌계 소속의 낚시어선이 올리는 소득	어촌계소속 낚시어선 척당 평균 적용	
	유어장*) 운영 수익	체험학습 또는 낚시등 관광용 어장에 서 올리는 수익	결산장부 참조	
	축제개최 수익	어촌계 및 특정 양식어업에서 축제를 통하여 올리는 수익		
	낚시터 입장료 수입	내수면에서 유료 낚시터운영으로 올리는 수익금		내수면 해당(결산장부 참조)
	기타 수익	기타 어업외 소득사업으로 올리는 수익		
어업 비용	자원조성비	마을어장 및 양식장에 치어 및 치패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함	결산장부 참조	
	인건비	자가인건비(어촌계원 및 양식장 운영자)는 제외하되, 상용(상시 근무)인건비 및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고용하는 일용인건비를 말함	마을어업 : 일용인건비×인원수 양식업 : 상시 고용인건수(월급여)	
	유류비	수협에서 공급받는 면세유류 구입 금액을 말함	결산장부 참조	
	기타비용	그 이외 필요한 어업경비를 말함		

나. 어선어업

< 어선어업 자율관리 소득성과 지표 작성(안) >

평가년도()년 ()월		공동체명 :		위원장명 :	
소 득				비 용	
어업소득(만원)		어업외소득(만원)		어업비용	
계통출하		낙시어선 수익<어선>		자원조성비	
				인건비	
비계통출하 (사매매)		축제개최 수익		어구비	
인터넷판매		기타 어업외 수익		유류비	
기타판매				기자재 기타비용	
총계					

※ 공동체 소속 어선(구성원)어업 1척(1인) 기준임

< 어선어업 소득성과 지표 작성 매뉴얼 >

작성항목		평가 세부지침(안)	비고	
어업 소득	계통출하	수협을 통한 위판액을 말함	1척당 평균	
	비계통 출하	사매매		현지 중간상인, 횡집 등에 판매한 금액
		인터넷판매		인터넷을 통한 주문 판매액
		기타판매		그 이외 판매한 금액
어업외 소득	낙시어선 수익	공동체 소속의 낙시어선이 올리는 소득	척당 평균 적용	
	축제개최 수익	어선어업 및 내수면어업 공동체에서 축제를 통하여 올리는 수익		
어업 비용	자원조성비	어선공동체에서 주어장에 치어 방류하기 위한 구입 비용	해당공동체 (공통경비)	
	인건비	승선 고용인건비를 말함(선주 제외)	1일/월/항차당 해당 척당 평균 인건비	
	어구비	1척당 자망/통발 등을 구입하는 비용	1척당 평균	
	유류비	수협에서 공급받는 면세유류 구입 금액을 말함	1척당 평균	
	기타비용	그 이외 필요한 어업경비를 말함		

다. 공동체 소득자료 활용 방안

- 공동체 소득과약 및 이를 통한 활용방안은 먼저, 전자평가 및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자율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정책자료만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가 있음
- 둘째, 지방청 어촌지도사들의 전자평가 항목에서 소득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이 있으나, 동 평가는 전자평가 항목에서 공동체회원 1인당 연소득 증가율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율관리실시 전/후 소득과약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따라서, 현행 전자평가 소득증가율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어선어업 및 복합어업의 경우는 표본집단을 선정하여 소득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정책자료만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도별 소득과약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동 소득과약 방안은 근본적으로 공동체 방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으므로 신뢰성에 문제가 우려됨

< 자율관리 공동체 소득자료 활용 방안 >

구 분	검 토 의 건
현행 자료는 정책적 참고	- 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과약을 서류 근거하에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움 - 따라서, 해수부 내부적인 정책자료만으로 활용 필요
전자평가 항목에서 소득부분 삭제 방안	- 전자평가 항목에서는 공동체 회원 1인당 연소득 증가율을 파악하는 것임으로 정확한 소득과약과는 거리가 있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성과지표를 통한 활용 방안	- 마을/양식/내수면은 결산장부 및 작업일지를 토대로 지방청에서 활동 관리 카드나 소득성과 지표작성(안) 파악함 - 이와 별도로 유형별 소득 성과지표 작성을 통해 집계함 - 이를 자율관리어업 정책자료로 활용함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도별 소득과약	- 소득 증감에 대한 정확한 근거서류가 없는 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 문제 항상 존재함 - 통계적 기법(모집단, 표본집단)을 활용하여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소득과약을 하여 대내외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 1년 단위 혹은 2년단위로 소득 평가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제1절 기관별 평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1. 공동체 자체평가

가. 평가문제점 분석

구분	문 제 점	비 고
공정성	해당 공동체에 대하여 위원장이 평가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함	자체평가는 다른용도로 활용
객관성	대부분의 공동체 자체점수가 상향평가되어 객관성 결여	변별력 결여
형평성	대부분의 위원장은 모든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양심적임 공동체는 불이익을 당해 형평성 결여	양심의존 불가능
신뢰성	평가하는 공동체의 평가배경 및 이해도가 낮아 평가의 신뢰성이 낮음	평가결과 신뢰 의문

나. 개선방향

구분	개 선 방 향	비 고
공정성	공동체 위원장의 자체 평가는 공정성 확보 불가능	-
객관성	객관성 유지를 위한 변별력 제고는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려움	-
형평성	대부분의 위원장이 높은 점수를 주는 한, 양심적인 공동체 불이익 해소는 불가능함	-
신뢰성	자체 평가서의 배경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확대 필요	평가항목 개선 및 교육 및 홍보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신뢰성 미확보
현행유지 여부	공동체 자체평가는 배제	문제점이 많아 평가 배제

2. 지도자협의회 평가

가. 평가문제점 분석

구 분	문 제 점	비고
공정성	시도지도자 협의회 소속 모든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들이 모여, 각 공동체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나, 물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공동체 위원장들만 모여 평가함으로 인해 공정성에 일부 결여	일부 위원장 의견 반영
객관성	해당지역 모든 공동체 위원장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평가에 참여한 일부 위원장 의견이 주관적으로 작용하여 객관성 확보가 의심됨	주관적 평가 불가피함
형평성	정확한 평가기준에 근거/평가하지 못하여 공동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평가기준 준수 미흡
신뢰성	시도지도자 협의회 평가가 지역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고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 신뢰성이 떨어짐	지역 편차 미 해소

나. 개선방향

구 분	개 선 방 향
공정성	가능한 많은 공동체 위원장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위원장 다수 포함 필요
객관성	일부 위원장의 주관적 의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성적으로 접근
형평성	평가서를 지도자 협의회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여 추진 필요
신뢰성	지역 편차 최소 및 최대 범위 제시
현행유지	여러 차례의 토론회 및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일부 문제 해결 방안 강구 필요, 평가항목과 평가 매뉴얼 개발
방문조사 여부	자율관리 공동체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 없이 평가함

3. 지방청 전자평가

가. 평가문제점 분석

구 분	문 제 점
주관성 신뢰성	지역편차 판단의 임의성, 객관적 판단의 기준, 조사표의 주관성 문제 (평가의 초점이 상이) 지역별, 업종별 편차가 커 각 평가의 주관성 배제 어촌 지도사들의 주관에 따라 편차가 커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음
공정성	지역별, 업종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평가 항목으로 인하여 공정성이 낮음
객관성 형평성	평가기준이 모호한 항목이 많아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음
전자평가 입력문제	일부 평가항목 누락에 따른 문제 및 결과 처리 미활용

나. 개선방향

구 분	개 선 방 향
유형구분	마을, 어선, 양식, 내수면, 복합어업 유형으로 평가(안) 마련
항목 구체화	- 기본적으로 30개의 항목을 넘지 않도록 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목별 평가 구체화 - 유형별 평가 항목 매뉴얼 개발 및 평가 절차 개선
평가항목	기존과 동일하게 노력도,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과급도 등 5개 카테고리로 구분 노력도: 60%, 참여도: 10%, 성과도:10%, 지속도: 10%, 과급도: 10%
평가 시 확인 문제	①규약 ②회의록 ③관련 사진 ④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 군,구) ⑥수협확인 ⑦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이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 확인하고 없 을 경우 평가 불가로 처리
방문조사 여부	지방청은 전담지도사가 있으므로 현장 방문 및 조사를 통하여 평가

4. 지역협의회 참여 필요성

구 분	필요성	비고
자율관리 육성사업비 지원	지자체에서는 육성사업비의 40%를 부담하고 있어 평가참여 요구	지자체의 부담 비중 고려 평가 참여 필요
자율관리 확대 및 정착 기여	참여 공동체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 사업비 집행관리 담당	사업비 집행 담당에 따른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 부여 필요
기존 우수공동체 평가 참여	육성사업비 지원 시, 우수 공동체 선정, 참여 경험 있음	기존 우수 공동체 평가 경험 활용 가능
다수 기관 구성	다수 기관(지방청, 지자체, 과학원, 지구별 수협장)이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별 불참 문제 해소 가능	다양한 기관 평가 참여 가능
현장 방문 조사 여부	공동체 해당 관련 행정 자료를 통하여 현장 방문 조사 없이 평가 가능	어업인 불편 초래 없이 평가 가능
평가 항목	수산관련 법규 준수 중심 평가 항목 개발 가능(제5장 제3절 참조)	현행 수산 관련 법 준수 유도 효과 있음

5. 수협(중앙회)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비 고
노력도 중 1.자원관리 사업 가. 공동판매	계통출하도 공동판매에 포함시켜 계산, 계통출하 자료는 지방청에 협조 및 제출,	일부 평가 항목만 참여

6. 소결

가. 기관별 평가 참여내용 및 개선방향 종합

평가기관	평가 참여 내용	방향
공동체 자체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므로 평가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평가배제
지도자 협의회	많은 수의 공동체 위원장이 참여하도록 하고,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 개선 및 평가 절차 및 매 뉴얼 개발 필요	공동체자체평가 기초, 수정보완
지방청 전자	유형별(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로 구분하여 평가항 목별 수정 및 보완	수정보완
수협	별도의 평가를 부여하기 보다는 공동체 판매에서 수협의 계통출하 부분 반영(평가항목 중 공동체 판매)	평가항목 일부 참여
지역협의 회	다수 기관(지방청, 지자체, 과학원, 지구별 수협장)이 참여 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별 불참 문제 해소 및 수산관련 준 법 유도 기대 가능	평가 항목 및 절차 통해 평가 참여

나. 어업인 면담 및 현장 조사 최소화

평가기관	현장조사유무	사 유
지 도 자 협 의 회	×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평가
지 방 청	○	전담지도사가 현장 방문조사 통해 평가
수 협	×	수협 자체정보 이용하여 평가
지역협의회	△	- 도 및 시/군/구 자체행정 자료 활용하여 평가 -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되, 이를 최소화

제2절 자율관리 기관별 평가체계 개선(안)

1. 평가체계 개선(안)

< 현행 및 개선(안) 평가체계 비교 >

구 분	현행 평가 체계	평가 체계 개선(안)
예비 및 본 평가 구분	없 음	있 음
기관별 평가 체계	지방청 ○ 지방청→전자평가→해수부→수산회 ○ 공동체자체→지방청 취합→ 수산회 입력 및 분석 작업	○ 지방청→전자평가→수산회/해수부 배 제
	지도자협의회 ○ 지도자협의회 평가→지방청 취합→ 수산회 입력 및 분석 작업	○ 지도자협의회 평가→ 지방청 취합→ 전자입력→수산회 종합 분석
	지역협의회 없 음	○ 지역협의회 평가→ 시·도 전자입력→ 수산회 종합 분석
	위원회 ○ 중앙단위 자율관리 평가위원회→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수 약 1.5배 미만을 대상으로 현장 검증 및 등급 확정	○ 중앙단위 자율관리 평가위원회→ 절대평가 80점 이상 공동체 실사→ 현장 검증 → 등급확정
특징	지방청 전자평가를 제외한 것은 수작업	모든 자료 전산화

< 기관별 공동체 평가 추진체계(안) >

구 분	예 비 평 가	본 평 가
담 당	지방청 단위의 기관별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등), 지역협의회, 시·도 지도자 협의회 등 3개 기관	중앙단위 자율관리평가위원회
역 할	3개 기관 평가 결과 취합 정리	현장점검, 각 기관별 평가 결과 점검, 공동체 최종 등급결정
평가체계	○지방청 전자평가 결과→ 해수부 → 수산회 사무국 ○지도자협의회→ 수산회 사무국 ○지역협의회(시도수산과 주관) → 해수부 → 수산회 사무국 ※ 전자입력	수산회 사무국(예비평가 종합분석) → 중앙단위 자율관리평가위원회 상정
평가대상	지방청 자율관리 참여공동체	참여기관별 평가를 취합한 결과, 상위등급이 예상되는 공동체 대상
평가기간 ('08년 기준)	○ 공동체 평가대상 기간 : '07년(1년간) ○ 지방청 전자평가 : 연중 ○ 기타 기관별 평가 : 2-3월	○ 수산회 사무국 : 4월 ○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 5월 ○ 최종확정 : 6월 ※ 자율관리 지방비 예산확보가 익년 9월까지인 점 고려

2. 평가개선(안) 장단점 분석

< 평가개선(안) 장단점 >

구 분	장 점	단 점	
제1안	현행평가체계 유지	기존에 하는 방식임으로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공동체 자체 평가 문제 및 타기관의 평가참여가 없음
제2안	예비평가/본 평가 구분, 지역협의회 참여	공동체 자체평가를 보완 지역협의회(다양한 기관별) 참여 가능	공동체 자체 및 수협 평가 배제
제3안	예비평가/본 평가 구분, 지역협의회, 수협중앙회 참여	공동체 자체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 참여, 구체적인 기관별 평가 부여	별도의 지자체만의 평가 없음(지역협의회 회장이 지자체임)
제4안	전자평가 50%, 다양한 기관 평가 참여	다양한 기관 참여	지역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형평성 및 공정성에 문제 우려

3. 소결

- 평가 시스템은 예비평가와 본 평가로 2원화하였고, 예비평가는 지방청 전자평가,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 등이며, 본 평가는 예비평가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예비평가결과를 최종 결정하고 아울러 공동체의 등급을 확정함
- 지역협의회는 지방청 10% 삭감(70%→60%), 배제된 공동체 자체평가 10%와 중앙단위 공동체평가위원회 10%를 합하여 30% 비중을 배정함
 - 결론적으로 예비평가는 지방청 전자평가 60%, 지역협의회 30%, 지도자협의회 10%로 함

< 자율관리 평가 참여기관별 최종(안) >

구 분	평가 구분	반영	참여기관	현행과 비교
예비 평가	전자실적 평가	60%	지방청	공동체 자체평가 배제, 위원회 검증 및 확정
	지역협의회	30%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평가	10%	지도자협의회	
본 평가	자율관리평가위원회	검정 및 확정	평가위원	

제3절 참여기준 및 기관별 평가항목 개선(안)

- 자율관리어업 참여 구성원 기준과 유형별 특히, 복합어업에 대한 기준, 제5장 제2절에서 제시된 기관별 평가항목개선안 중에서 지도자협의회 평가, 지역협의회 평가, 전자평가 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1. 자율관리 참여 구성원 기준

가. 참여 구성원 기준 필요성

- 지금까지 자율관리 신규공동체에 대해 구성원들의 참여범위 및 기준이 없어,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였음. 즉, 하나의 기존 공동체(자연부락, 어촌계, 임의단체 등)가 공동체 구성원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별도로 각각 조직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되었고,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자율관리 지원금(육성사업비)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음이 사실임
- 평가에 있어서는 일부 배려를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다수참여 공동체와 소수참여 공동체 간의 차별이 없었고, 신규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할 경우, 구성원 조직에 대한 공동체 자체노력들이 미흡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가 자율관리 신규 참여시, 참여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제한을 두어 공동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 및 유도, 단일공동체가 2개 이상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참여 차단, 육성사업비 지원 시에도 소수의 참여공동체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 구성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나. 유형별 참여 최소 구성원 기준(안) 제시

- 2006년 12월 기준, 445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유형별 자율관리 참여 구성원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어업이 244개, 평균 81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어선(71개)은 평균 59명, 양식(56)은 평균 5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자율관리공동체는 686명(어선복합), 가장 작은 인원이 참여한 자율관리공동체는 6명(복합양식)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금까지 유형별 자율관리 참여 구성원중에서, 마을어업의 경우는 최저 15명, 양식어업 6명, 어선어업 11명, 복합 21명~60명, 내수면 13명으로 나타나, 극소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 자율관리 참여 구성원 현황 >

유 형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마을	244	607	15	81
양식	56	236	6	50
어선	71	269	11	59
마을(복합)	39	266	21	92
어선(복합)	23	686	25	130
양식(복합)	3	120	60	81
내수면	9	55	13	30
합계	445	-	-	-

※ 마을(복합) : 마을+어선+양식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수협어촌계 현황('06.12.31, 1,969개소)에서 어촌계 최소 구성원 자료, 수협법 시행령 제4조 어촌계 구성원 규모, 자율관리참여 445개소('06.12)에서 유형별 최소 구성원 수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
- 자율관리 참여 최소 구성원 개선(안) 제시에 있어서, 마을/양식/어선/내수면 등 4개 유형은 첫째, 수협법 제4조의 어촌계 구성원 10명을 기준, 둘째, 약 2천여개 어촌계 중에서 대부분 최소 구성원이 10명이 넘었고, 셋째, 자율관리 참여 공동체 445개중에서 양식어업을 제외하고는 10인 이상, 넷째, 자율관리어업 취지가 자율적 공동체 구성임으로, 구성원수로 인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즉, 참여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최소 참여 인원을 10명으로 제안함

- 다음으로 복합어업의 경우는 구성원들의 구성이, 대부분 마을어업 및 자연부락 단위 구성원 중에서 어선어업자들이 함께 이루어져 있음. 이러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구성원은 첫째, 최소한 마을어업 유형보다는 많아야 하고, 둘째, 자율관리 참여 공동체 445개중에서 복합어업 유형은 20인 이상임을 고려하고, 셋째, 복합어업은 대부분 서해/남해안/도서지방 등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므로,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20인을 최소구성원으로 제안함

< 자율관리 참여 최소 구성원 개선(안) >

유 형	수협 어촌계 현황 ('06.12)	수협법 시행령 제4조	참여 공동체 최소 구성원수 (445개소)	개선안 (안)	사 유
마 을	어촌계 1,969개소중 10인 이하 15개소 (최소 4인) ※ 대부분 10인 이상임	어촌계 설립 10인 이상	15	10	어촌계 10인 이상 규정 및 기존 공동체 10인 이하 없음
양 식			6	10	어촌계 10인 이상 규정 및 최소 구성원 10인 이상 필요
어 선			11	10	어촌계 10인 이상 규정 적용 및 기존 10인 이하 없음
복 합			21-60	20	기존 20인 이하 없음. 복합어업(마을+어선) 고려하여 마을어업보다는 많아야함
내수면			13	10	어촌계 10인 이상 규정 및 기존 공동체 10인 이하 없음

2. 참여 공동체 유형별 기준

- 마을어업과 양식어업의 구분 기준은
 - 마을어업이란 합은 어촌계 소유의 마을어장과 양식어업에 있어서 간석지의 패류양식 (바지락, 가무락 등), 굴투석식 양식 등을 말함

- ※ 사유 : 자율관리어업에 있어서 자원관리, 어장관리, 생산관리, 어업질서 등의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
- 양식어업이라 함은 시설물을 이용하여 양식하는 가두리(어류), 수하식(미더덕, 굴, 미역, 전복) 등을 말함
- 복합어업의 경우는 대부분 도서 및 연안해역 마을어업에서 어촌계원 중 어선어업자들의 참여로 인하여 나타나는 유형임. 따라서, 어선어업 참여비중을 고려하여 복합어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

< 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 기준(안) >

유 형	변경유형에 따른 유형별 개념	참여형태
마 을	- 어촌계 소유/간석지 패류양식(바지락, 가무락 등) - 당초와 동일	70% 이상 (복합과 구분)
어 선	- 어선어업관련 협회, 단체 등의 자생단체를 중심	100%
양 식	- 수하식, 가두리 등 특정 시설이용한 양식어업에 한정 - 기존의 굴, 전복 등 살포식어업은 마을어업으로 분류	100%
내수면	- 내수면에서 실시하는 모든 어업 (마을, 어선, 양식 구분 없음)	100%
복합	- 마을어업에서 어선어업자들의 참여비중을 고려하여 개념 구분	어선어업 참여 비중에 따라 구분

2) 복합어업 기준

- 자율관리 445개 참여 공동체 중에서 복합어업으로서 구체적인 자료(참여인원, 어선척수 등)가 있는 지방청은 2곳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확보된 군산청과 여수청 소속의 복합어업 공동체 자료를 이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복합어업 기준을 만드는데 참조하였음
- 군산청 및 여수청 복합어업 분석에서의 시사점은 101인 이상에서는 15%로 나타나 군산청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적어도 동 어업어업 종사자 최소 비율보다는 높아야 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자율관리어업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선어업이고, 어선어업이 포함된 복합어업의 유형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별도로 복합어업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음
- 참여 구성원중에서 어선어업종사자의 비중을 고려하여 기준(안)을 만들었으며, 참여구성원중에서 15%-30% 정도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복합어업으로 분류함

< 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 복합어업 기준(안) >

참여 구성원	공동체 중 어선어업종사자 비중	어선어업 종사자수 (최저/최고치 기준, 반올림)	사유
20명미만	30%	6명	기존 참여공동체 모두 30%이상임
20-50	25%	5명 - 13명	기존 참여공동체 모두 25%이상임
51-100	20%	10명 - 20명	기존 참여공동체 모두 20%이상임
101-200	15%	15명 - 30명	기존 공동체중에서 15%비중 차지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
201-300	15%	30명 - 45명	기존 참여공동체는 없더라도 잠재성 및 광역공동체 고려, 참여유도 필요
301-400	15%	45명 - 60명	
400명 이상	15%	60명	

3. 기관별 평가개선(안) 기준

- 본 연구 결과, 예비평가는 지방청 단위의 기관별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타기관 등)로 하고, 참여기관별 반영비율은 지방청 전담 어촌지도사 전자평가(60%), 지역협의회 평가(30%), 지도자협회의 평가(10%)로 단순화, 본 평가는 중앙단위 자율관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순위를 부여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해당되는 공동체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하여 등급 부여하는 방안임
- 이를 근거로, 기관별 평가항목개발의 기준은 첫째, 타 평가기관의 중복성 여부, 둘째, 어업인 접촉 최소화 가능 여부, 셋째, 자율관리 평가항목이 있는지 여부, 넷째, 타 기관평가에서 평가항목이 있더라도 해당기관의 중복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은 포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음
- 참여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작성하되 유형별로 공통적인 항목과 참여유형별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

< 기관별 평가항목 개발의 기준 >

구 분	사 유
타 평가기관 중복성 여부	기본적으로 예비평가 3개기관 및 본 평가에서 위원회가 참여함으로 기관별 평가항목간에 중복성 최소화 필요
어업인 접촉 최소화 가능 여부	평가하는 4개기관이 개별적으로 어업인들을 접촉함에 따른 자율관리 공동체 불편 최소화
기관별 자율관리 평가항목 발굴	기관별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발굴하여 현실을 최대한 반영 필요
타 기관평가와 중복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경우 포함	타 기관에서 평가 하더라도 다른 기관이 좀 더 현실을 반영하는 평가가 가능하다면 이를 고려함

4. 시도 지도자협의회평가 개선(안)

-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는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평가 비중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항목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평가항목 개선(안) 기준

- 시도지도자 협의회 평가 문제는 여러 차례 토론회와 현지 방문 및 지도자협의회 개최시 (‘07.2)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음 결론을 얻었음
- 지도자협의회 평가항목 개발기준은 타 기관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지역협의회) 항목과의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원칙함. 그러나 일부 중복되더라도 지도자협의회에서 더 잘 평가할 수 있고, 중요성이 큰 항목은 평가에 포함하였음
-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문항 수는 5개 문항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정성적인 방법을 준용하되, 개별항목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상 : 200점, 중 : 180점, 하 : 150점
 - 사유 : 주관성을 전혀 배제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하 기준 점수를 150점(하)으로 하고, 최고점수인 상은 200점으로 배정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최소한 1,000점 만점에 750점이 기본 점수가 됨으로 시도지도자협의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음

나. 지도자 협의회 평가항목 개선(안)

- 평가항목은 자율관리 공동체 추진력의 정도, 주변공동체의 영향을 미치거나 광역화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주변과급(광역화)정도, 해당어촌 및 지역사회 평판 등을 고려한 위원장의 리더쉽, 해당공동체의 단합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회원상호간의 결속/단결, 지도자 협의회 활성화에 위하여 적극 참여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 협의회 참여정도 등을 제시함
- 이러한 5가지 평가항목 배점의 최고점수는 200점으로 하고, 지방청간 공동체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항목별 최하 기본점수(하) 150점 부여함. 따라서, 최고점수는 1,000점이고, 최하점은 750점으로 되어 편차를 최소화하였으며, 동 평가는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음

< 지도자협의회 평가항목 개선(안) >

평가항목	배점 범위	선정사유 및 평가 범위
1 자율관리어업 추진 정도	상(200), 중(180), 하(150)	공동체 추진력
2 주변 과급(광역화) 정도	상(200), 중(180), 하(150)	주변공동체에 영향 및 광역화 노력/성과 정도
3 공동체 위원장 리더쉽	상(200), 중(180), 하(150)	해당어촌 사회 평판 고려
4 회원상호간의 결속/단결	상(200), 중(180), 하(150)	해당공동체 단합정도
5 지도자협의회 참여정도	상(200), 중(180), 하(150)	지도자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참여 정도
총점(5개 항목)	1,000점(100%)	

다. 지도자협의회 평가 절차

- 지도자협의회와 협력하여 평가 결과를 FAX나 우편으로 전송받아 수작업으로 전국적인 집계 및 분석을 하였으나, 동 절차를 따르게 되면, 제한된 시간에 평가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1년에 1번만 평가하는 것이므로 지방청에서 전산입력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지도자협의회 평가 절차(안) >

단계별	세 부 내 용	역할분담 기관
1단계	- 지역별 지도자협의회 평가단 구성, 지역단위로 평가대상 공동체를 할당 및 평가	평가단 구성
2단계	- 평가단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별로 평가	위원별 평가
3단계	- 지방청 협조를 통하여 평가결과 지방청에서 전산입력	지방청
4단계	- 평가결과를 수산회 및 해수부에서 활용	수산회/해수부

5. 지역협의회 평가개선(안)

- 지역협의회 평가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평가비중에서 30%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항목선정기준, 마을 및 양식어업, 어선 및 내수면 어업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가. 평가항목 선정 기준

- 기본적으로는 수산관계법령 준수와 연계하고, 전자평가와 중복이 없도록 하고, 현장방문 조사 없이 가능함 범위내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방안임
-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문항수는 8개 문항, 지역협의회 종합의견 20%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정량적인 방법을 준용하되, 개별항목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8개문항 : 80%적용(최고 100점, 최저 0점 부여)
 - 종합의견 : 20%적용(지역협의회 종합의견)/한정면허 여부 등을 반영함
- 지역협의회 평가는 객관적인 행정적인 자료를 기초로 평가함으로 8개 문항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800점(1문항당 100점)으로 하고, 지역협의회 종합의견을 200점으로 하여 8:2 비율임(전체 1,000점임)

나. 유형별 평가항목(안)

1) 마을/양식어업 유형

< 마을/양식어업 유형 지역협의회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배점내용	
	배점	배점기준
어장관리규약에 의한 및 행사계약 여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행사계약 : 100 50~99% 행사계약 : 70 20%~49% 행사계약 : 50 20%미만 행사계약 : 30 0% 행사계약 : 0
어장표시 설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설치 : 100 50~99% 설치 : 70 20%~49% 설치 : 50 20% 미만 설치 : 30 0% 설치 : 0
어장구역 이탈·과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이탈 및 미과점 : 100 이탈 및 과점 20% 미만 : 70 이탈 및 과점 20%~49% : 50 이탈 및 과점 50%~99% : 30 이탈 및 과점 100% : 0
어장관리규약 등 준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미위반 : 100 50% 미만 위반 : 70 50%~69% 위반 : 50 70~99% 위반 : 30 100% 위반 : 0
어촌계 항포구 등 불법어구 방치 여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방치 : 100 1건 방치 : 70 2~5건 방치 : 50 6~9건 방치 : 30 10건 이상 방치 : 0
염산등 유해물질 사용 및 방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사용 및 미방치 : 100 미사용 및 미방치 20% 미만 : 70 미사용 및 미방치 20%~49% : 50 미사용 및 미방치 50%~99% : 30 사용 및 방치 100% : 0
무등록 및 방치폐선 발생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등록어선 미발생 : 50 무등록어선 1척 발생 : 30 무등록어선 2척~4척 발생 : 10 무등록어선 5척이상 발생 : 0 방치폐선 미발생 50 방치폐선 1척 발생 : 30 방치폐선 2척~4척 발생 : 10 방치폐선 5척이상 발생 : 0
무허가 어선 및 무면허 양식시설 위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위반 : 100 위반 1건 발생 : 70 위반 2건~5건 발생 : 50 위반 6건~9건 발생 : 30 위반 10건이상 발생 : 0
소 계	800	
종합의견	200	협의회 종합토론(한정면허 여부 등 고려)
총 8 문항/종합의견	1,000	

2) 어선어업 유형

< 어선어업 유형 지역협의회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배점내용		비고
	배점	배점기준	
과징금 납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납 : 100 · 1척 미납 : 70 · 2척~3척 미납 : 50 · 4척~5척 미납 : 30 · 6척이상 미납 : 100 	
조업구역 준수여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위반 : 100 · 1건 위반 : 70 · 2~4건 위반 : 50 · 5~9건 위반 : 30 · 10건 이상 위반 : 0 	
허가받은 이외 어업발생 여부 (소형기저 잔존)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생 : 100 · 1척 발생 : 70 · 2척~3척 발생 : 50 · 4척~5척 발생 : 30 · 6척이상 발생 : 0 	
허가이외 어업발생 여부 (삼중망 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존재 : 100 · 1건 발생 : 70 · 2~5건 발생 : 50 · 6~9건 발생 : 30 · 10건 이상 발생 : 0 	
업종간 분쟁해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생 : 100 · 분쟁자체 해소 : 50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해소된 경우) · 분쟁 자체 미해소 : 0 	
어구실명제 및 적정어구 사용 실시(그물코 포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실시 : 100 · 50~99% 실시 : 70 · 20%~40% 실시 : 50 · 20%미만 실시 : 30 · 실시 않음 : 0 	
어촌계 항·포구 불법어구 방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방치 : 100 · 1건 방치 : 70 · 2~5건 방치 : 50 · 6~9건 방치 : 30 · 10건 이상 방치 : 0 	
무허가 어선어업 발생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생 : 100 · 1척 발생 : 70 · 2척~3척 발생 : 50 · 4척~5척 발생 : 30 · 6척 이상 발생 : 0 	
소 계	800		
종합의견	200	지역협의회 종합토론	
총 8 문항/종합의견	1,000		

3) 복합어업 유형

< 복합(마을+어선)어업 유형 지역협의회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배점내용	
	배점	배점기준
어장표시 설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설치 : 100 · 50~99% 설치 : 70 · 20%~49% 설치 : 50 · 20% 미만 설치 : 30 · 0% 설치 : 0
어장구역 이탈·과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탈 및 미과점 : 100 · 이탈 및 과점 20% 미만 : 70 · 이탈 및 과점 20%~49% : 50 · 이탈 및 과점 50%~99% : 30 · 이탈 및 과점 100% : 0
어촌계 항포구 등 불법어구 방치 여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방치 : 100 · 1건 방치 : 70 · 2~5건 방치 : 50 · 6~9건 방치 : 30 · 10건 이상 방치 : 0
무등록 및 방치폐선 발생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록어선 미발생 : 50 · 무등록어선 1척 발생 : 30 · 무등록어선 2척~4척 발생 : 10 · 무등록어선 5척이상 발생 : 0 · 방치폐선 미발생 : 50 · 방치폐선 1척 발생 : 30 · 방치폐선 2척~4척 발생 : 10 · 방치폐선 5척이상 발생 : 0
무허가 어선 및 무면허 시설 위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위반 : 100 · 위반 1건 발생 : 70 · 위반 2건~5건 발생 : 50 · 위반 6건~9건 발생 : 30 · 위반 10건이상 발생 : 0
허가외 어업발생 여부 (소형기저 잔존)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생 : 50 · 1건 발생 : 30 · 2척~3척 발생 : 20 · 4척~5척 발생 : 10 · 6척이상 발생 : 0
허가외 어업발생 여부 (삼중망 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존재 : 50 · 1건 발생 : 30 · 2~5건 발생 : 20 · 6~9건 발생 : 10 · 10건 이상 발생 : 0
업종간 분쟁해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생 : 100 · 분쟁자체 해소 : 50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해소된 경우) · 분쟁 자체 미해소 : 0
어구실명제 및 적정어구 사용 실시(그물코 포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실시 : 100 · 50~99% 실시 : 70 · 20%~49% 실시 : 50 · 20%미만 실시 : 30 · 실시 않음 : 0
소 계	800	
종합의견	200	지역협의회 종합토론
총 8 문항/종합의견	1,000	

4) 내수면어업 유형

< 내수면어업 유형 지역협의회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배점내용	
	배점	배점기준
내수면 어장관리규약 및 행사계약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행사계약 : 100 · 50~99% 행사계약 : 70 · 20%~49% 행사계약 : 50 · 20%미만 행사계약 : 30 · 0% 행사계약 : 0
내수면 어장표시 설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설치 : 100 · 50~99% 설치 : 70 · 20%~49% 설치 : 50 · 20% 미만 설치 : 30 · 0% 설치 : 0
내수면 어장구역 이탈·과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탈 및 미과점 : 100 · 이탈 및 과점 20% 미만 : 70 · 이탈 및 과점 20%~49% : 50 · 이탈 및 과점 50%~99% : 30 · 이탈 및 과점 100% : 0
내수면 어장관리규약 등 준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미위반 : 100 · 50% 미만 위반 : 70 · 50%~69% 위반 : 50 · 70~99% 위반 : 30 · 100% 위반 : 0
내수면 무허가 어선 및 무면허 양식시설 위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위반 : 100 · 위반 1건 발생 : 70 · 위반 2건~5건 발생 : 50 · 위반 6건~9건 발생 : 30 · 위반 10건이상 발생 : 0
내수면 불법어구 방치 여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방치 : 100 · 1건 방치 : 70 · 2~5건 방치 : 50 · 6~9건 방치 : 30 · 10건 이상 방치 : 0
내수면 무등록 및 방치폐선 발생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록어선 미발생 : 50 · 무등록어선 1척 발생 : 30 · 무등록어선 2척~4척 발생 : 10 · 무등록어선 5척이상 발생 : 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폐선 미발생 5 · 방치폐선 1척 발생 : 3 · 방치폐선 2척~4척 발생 : 1 · 방치폐선 5척이상 발생 :
내수면 어구실명제 및 적정어구 사용 실시 (그물코 포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실시 : 100 · 50~99% 실시 : 70 · 20%~49% 실시 : 50 · 20%미만 실시 : 30 · 0% 전혀 실시 않음 : 0
소 계	800	
종합의견	200	지역협의회 종합토론
총 8 문항/종합의견	1,000	

다. 지역협의회 평가 절차

- 지도자협의회와 유사하게 지역협의회의 평가도 기본적으로 전산화하여 평가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러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음
- 크게 4단계로 나누어 평가에 임하되, 1단계는 시도별 지역협의회 평가단 구성하고, 시도별로 소속된 자율관리 평가대상 공동체를 확정하도록 함
- 2단계에서는 시도협의회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3단계에서는 지역협의회 평가결과를 도별(도 주관으로 평가위원회 개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 입력케 하고, 4단계에서는 해수부/한국수산회에서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함
- 지역협의회 평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시도별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 개최/평가/입력 하는 방안으로, 도 단위에서 전산 입력하여 평가 결과를 바로 집계할 수 있는 방안임
- 동 평가절차는 기존에 없는 것이므로, 시/도단위에서 평가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평가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를 시/도 담당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1년에 1번만 평가하는 것이므로 지역협의회(시/도 단위)에서 평가 및 입력은 큰 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협의회 평가 절차(안) >

단계별	세부내용	역할분담 기관
1단계	- 지역협의회 평가단 구성, 평가대상 공동체 확정	평가단 구성
2단계	- 협의회를 개최하여 평가함(시/군/구 협조)	지자체 협조
3단계	- 평가결과를 도 단위에서 전산입력	시/도
4단계	- 평가결과를 수산회 및 해수부에서 활용	수산회/해수부

6. 지방청 전자평가 개선(안)

가. 항목 개선(안) 기준 및 특징

1) 평가항목 개선(안) 기준

- 참여유형은 기본적으로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어선어업과 마을(또는 양식)어업이 함께하는 복합어업을 추가하여 5개 유형으로 확정함
 - 기본유형의 평가항목과 매뉴얼을 먼저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복합어업에 적용할 평가항목과 매뉴얼을 도출하였음

- 유종별 구분 평가서 작성시 5개 분류내의 평가 문항수의 상이로 인한 유형간 편향성은 항목조정 및 점수를 동일하게 1,000점하여 개선함

- 평가내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생산량 조절과 생산시기 조절, 어획능력 삭감노력과 특정 어구어법 사용 제한 등)
 - 기존 평가항목 중 내수면공동체에 적용이 가능한 항목은 평가 매뉴얼에 반영(어소·어도 설치여부, 외래어종 구제 여부 등)

- 기존 평가항목 이외에 아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이들 평가항목들 중에서, 좀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은 타 기관평가에서 하도록 하였음
 - 규약 및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는 자율관리어업에 있어 매우 중요함으로 평점을 대폭 확대(지방청 및 지역협의회 반영)
 - 마력수 제한, 공동체 홍보, 광역화 추진노력, TAC 실시, 어장정비, 분쟁조정, 친환경 어구개발 등에 따라 가점 부여방안(지역협의회/지도자협의회 반영)
 - 소형기저 근절 및 재진입 방지노력, 무허가/무등록 어선 발생예방 등에 따라 가·감점 부여방안(지역협의회 반영)

2) 평가 항목간의 특징

- 전자평가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정착시키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평가 항목은, 점수의 배점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자율관리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하여 유도하였음
- 먼저, 5개 모든 유형에서 “생산량 조절 실시/TAC” 항목의 경우는 자율관리어업을 추진 하는데, 어획노력량 및 생산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항목임으로 상대적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다음으로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의 경우는 마을, 양식, 복합 유형에서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성과의 지표로 중요함으로 상대적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어선/내수면어업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성과의 지표로 동 유형에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임
- 다음으로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및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는 자율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수산관계법령의 준수를 유도하여 관련 제도 및 법률이 준수 및 이를 통한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음

< 유형별 세부 항목 중 상대적 높은 점수 항목 >

평가 항목	자율관리 공동체 유형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생산량 조절 실시/TAC	○	○	○	○	○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	○	×	×	○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	○	○	○	○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	○	○	○	○

- 또한, 각 항목의 평가는 자체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정부 또는 수협 등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은 자담분만 인정함
 - 자부담분 산정에 있어 금액은 부담률에 따라 산정하고, 물량과 횡수는 전량 인정
- 다음으로 평가항목에 있어 객관적이고 증빙자료의 확보가 용이한 평가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평가자에 따른 편향성을 개선
 - 단, 증빙자료에 의한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평가자의 종합의견을 평가문항에 반영하여 점수화하였음

나. 유형별 전자평가 항목 개선(안)

1) 평가서 개선(안)의 개요

- 평가서의 총점은 1,000점이며, 중요도를 기준으로 노력도(자원관리, 어장환경조성, 자원조성, 어장정화, 자율관리위원회, 수익확대, 공동체 구성원 교육)에 60%를,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에 각각 10%를 배점하였음.
- 이러한 평가 항목은 세부 평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세부 평가 항목 점수 합계가 평가 항목의 점수가 됨.
- 5개 자율관리 유형별 세부 평가 항목에는 사업실시 여부, 사업실적, 구성원의 참여도 등에 따른 가중치가 부여된 항목들이 있도록 작성하였음

< 유형별 평가문항 및 배점 개선(안) >

구분		마을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	
		문항	배점	문항	배점	문항	배점	문항	배점	문항	배점
합계		27	1,000	25	1,000	22	1,000	25	1,000	30	1,000
노력도 (60%)	소계	16	600	15	600	13	600	16	600	18	600
	자원관리	4	200	4	200	5	250	5	250	6	250
	어장환경조성	3	110	2	110	1	50	2	80	3	90
	자원조성	2	70	2	70	0	-	2	30	2	70
	어장정화	2	60	2	60	2	140	2	80	2	60
	자율관리위원회	2	60	2	60	2	60	2	60	2	30
	수익확대	2	70	2	70	2	70	2	70	2	70
	공동체 구성원 교육	1	30	1	30	1	30	1	30	1	30
40%	참여도	2	100	1	100	1	100	1	100	3	100
	성과도	3	100	3	100	2	100	2	100	3	100
	지속도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파급도	2	100	2	100	2	100	2	100	2	100

2) 유형별 전자평가 항목 개선(안)

< 공동체 유형별 전자평가 항목 개선(안) >

구분	평가항목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1년간 총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I. 노력도(분기 1회 평가)					
	1. 자원관리사업					
1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	×	○	○	○
2	나. 공동판매, <u>계통 출하</u> 실시	○	○	○	○	○
3	다. 채포체장제한	○	○	○	○	○
4	라. 조업일수 단축	×	×	○	○	○
5	마. 어장휴식년제 실시	○	○	×	×	○
6	바. 생산량조절 실시/TAC ^{*)}	○	○	○	○	○
	2. 어장환경조성사업					
1	가. 투석, <u>해중립 어소(민물고기 산란장)</u> , <u>어도 등 어장조성</u> 실시	○	×	×	○	○
2	나. 바위닦기 또는 저질개선 등 실시	○	○	×	×	○
3	다. 해적생물구제(<u>외래어종</u>) 실시	○	○	○	○	○
	3. 자원조성사업					
1	가. <u>종묘배양</u> 또는 시험양식, <u>품종개량(개선)</u> 실시	○	○	×	○	○
2	나.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	○	×	○	○
	4. 어장정화사업					
1	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	○	○	○	○
2	나.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	○	○	○	○
	5. 자율관리위원회 운영					
1	가. 공동체 주관 <u>홍보활동</u> 및 <u>교육</u> 실시	○	○	○	○	○
2	나. 선진지 견학 실시	○	○	○	○	○

< 공동체 유형별 평가항목 개선(안) <계속> >

구분	평가항목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6. 수익확대사업 추진					
1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	○	○	○	○	○
2	나.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	○	○	○	○
	7.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1	가.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	○	○	○	○
	II. 참여도(연 1회 평가)					
1	1.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공동체 참여인원 비율	×	×	○	○	○
2	2. 참여 공동체(마을, 양식) 소유어장 중 공동체 자립대상어장 비율	○	○	×	×	○
3	3. 참여 어촌계(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립관리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	×	×	×	○
	III. 성과도(연 1회 평가)					
1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	○	○	○	○
2	2.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	○	○	○	○
3	3.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	○	○	×	×	○
	IV. 지속도(연 1회 평가)					
1	1.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	○	○	○	○	○
2	2.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	○	○	○	○	○
3	3.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	○	○	○	○
4	4. 공동체 회원증가율	○	○	○	○	○
	V. 파급도(연 1회 평가)					
1	1.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	○	○	○	○
2	2. 조사자 의견 등	○	○	○	○	○

*)상대 점수 상향 조정

다.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최종(안)

-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유형별 평가항목은 마을어업 27개 문항, 양식어업 25개 문항, 어선어업 22개 문항, 내수면 25개 문항, 복합어업 30개 문항 등으로 어선어업의 문항수가 가장 적으며, 복합어업이 가장 많음

<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최종(안) >

평가항목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1년간 총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I. 노력도(분기 1회 평가)	600	600	600	600	600
1. 자원관리사업	200	200	250	250	250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	-	50	50	40
나. 공동판매, 계통출하 실시	30	30	30	30	20
다. 채포체장제한	50	50	50	50	40
라. 조업일수 단축	-	-	50	50	40
마. 어장휴식년제 실시	50	50	-	-	40
바. 생산량조절 실시/TAC	70	70	70	70	70
2. 어장환경조성사업	110	110	50	80	90
가. 투석, 해중림, 어소(민물고기 산란장), 어도 등 어장조성 실시	50	-	-	50	30
나. 바위닦기 또는 저질개선 등 실시	30	60	-	-	30
다.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30	50	50	30	30
3. 자원조성사업	70	70	-	30	70
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40	40	-	20	40
나.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30	30	-	10	30
4. 어장정화사업	60	60	140	80	60
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30	30	70	40	30
나.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30	30	70	40	30
5. 자율관리위원회 운영	60	60	60	60	30
가.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30	30	30	30	20
나. 선진지 견학 실시	30	30	30	30	10
6. 수익확대사업 추진	70	70	70	70	70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	40	40	40	40	40
나.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30	30	30	30	30
7.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30	30	30	30	30
가.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30	30	30	30	30

<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최종(안)<계속> >

평가항목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II. 참여도(연 1회 평가)	100	100	100	100	100
1.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참여인원 비율	-	-	100	100	40
2. 참여공동체(마을, 양식) 소유어장 중 공동체 사업 대상어장 비율	50	100	-	-	30
3. 참여어촌계(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50	-	-	-	30
III. 성과도(연 1회 평가)	100	100	100	100	100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30	30	50	50	30
2.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30	30	50	50	30
3.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40	40	-	-	40
IV. 지속도(연 1회 평가)	100	100	100	100	100
1.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30	30	30	30	30
2.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30	30	30	30	30
3.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20	20	20	20	20
4. 공동체 회원증가율	20	20	20	20	20
V. 파급도 :	100	100	100	100	100
1.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50	50	50	50	50
2. 조사자 의견 등	50	50	50	50	50

- 모든 유형에서 기본적으로 노력도 60%(600점), 기타 40%(400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력도는 자원관리, 어장환경조성, 자원조성, 어장정화, 자율관리위원회, 수입확대, 공동체 구성원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음으로 기타의 경우는 참여도/성과도/지속도/파급도 등이며, 이들 평가항목들의 합은 400점으로 각각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음
- 노력도만 살펴보면, 유형별로 마을어업은 16개 항목, 양식어업은 15개 항목, 어선어업 13개 항목, 내수면 16개 항목, 복합 18개 항목 등으로 평가 항목수는 복합어업이 가장 많고, 어선어업이 평가항목이 가장 적음

라. 지방청 전자평가시 확인 서류

- 지금까지의 전자평가의 문제점으로는 청취조사에 의한 지역별 편차 문제, 객관적인 서류 확인 없이 평가하는 문제, 평가자의 적극적인 노력 및 의지에 따른 지역간의 차이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에 문제점 야기됨

< 전자평가시 확인 서류 >

구 분	평가항목	전자평가시 확인 서류	
I. 노력도 (분기1회 평가)	1.자원관리 사업	어획능력 삭감노력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공동판매, 계통 출하 실시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⑥ 수협확인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채포채장제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조업일수 단축	① 규약 ② 회의록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어장휴식년제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생산량조절 실시/TAC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2.어장환경 조성사업	투석, 해중립, 어소(민물고기 산란장), 어도 등 어장조성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바위닦기 또는 저질 개선 등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3.자원조성 사업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4.어장정화 사업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어장(조업지)또는 해안청소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5. 자율관리 위원회 운영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실시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선진지 견학 실시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6.수익확대 사업	생산물 판매망 구축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⑦ 관리카드
	7.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지방청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 전자평가시 확인 서류(계속) >

구 분	평가항목	전자평가시 확인 서류
II. 참여도 (연 1회 평가)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공동체 참여인원 비율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참여공동체(마을,양식 소유어장)중 공동체 사업 대상어장 비율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참여 어촌계 (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III. 성과도 (연 1회 평가)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② 회의록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⑦ 관리카드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② 회의록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⑦ 관리카드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② 회의록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⑦ 관리카드
IV. 지속도 (연 1회 평가)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수산관계 법령 준수여부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공동체 회원 증가율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V. 파급도 (연 1회 평가)	견학장수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조사자 의견 등	-

※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 따라서, 지방청 어촌지도사들에 의한 전자평가 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을 걸쳐,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동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별 확인 서류를 제시하였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현장조사는 기본으로 하고, 평가항목 중에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등 2개 이상의 서류를 확인 한 후, 항목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 평가방법의 장점으로는 확인서류를 확보한 이후, 평가에 임하게 함으로 인해 평가자(지방청 지도사)로 하여금 최소한의 확인 작업에 대한 경각심 및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공동체에서는 평가를 잘 받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자료비치 및 보완)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으로, 평가를 통하여 우수공동체 선발 뿐만 아니라,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이 기대됨
- 지방청 어촌지도사들의 전자평가 시, 확인서류 중에서 작업일지의 경우는 기준이되는 특별한 표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예시를 하면,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역 등으로 구성된 표(Table)를 작성하여 공동체에 비치함으로 인하여, 전자평가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자율관리 공동체 작업일지 양식(예시) >

일련 번호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1	2006.09.00	마을회관	00	채포/채장 문제논의 설정 및 결의
2	2006.10.00	공동체 사무실	00	어장청소 실시
3	2006.11.00	수협	00	자율관리 교육 실시
4	2006.12.00	마을회관	00	수익확대사업 결의
5	2007.01.00	사무실	00	종패/치어 방류사업 실시
6
7
8
9				
10				

※ 관련 증빙서류 첨부 : ① 사진, ② 영수증 등

7. 중앙 자율평가위원회 확인·점검 개선(안)

- 중앙단위 자율평가위원회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평가(지도자협의회, 지역협의회, 지방청 전자평가)를 거쳐 순위가 정해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 및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등급화를 확정하는데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단위 자율평가위원회의 본 평가에 있어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기본적으로는 예비평가와 중복이 없도록 하고,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일정한 평가표를 근거로 평가하는 방안임
- 2006년 및 2007년 중앙단위 자율관리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 제한된 시간에 많은 공동체를 평가함을 고려, 예비평가와의 중복성을 최대한 배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여러 토론을 거쳐 12개 항목을 도출하였음
- 평가항목 개발기준은 타 기관 평가(지도자협의회 지역협의회, 지방청 전자평가)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일부 중복되더라도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음
-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크게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음. 첫째, 면담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7개 문항(면담의 적극성, 규약 인식, 자율관리 인식, 서류 구비, 지도자교체, 갈등 해소, 소득증대 노력)과 둘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파악해야 하는 4개 문항(어장청소, 생산물의 판매시설, 불법어업 존재, 불법 시설물), 셋째, 종합적으로 발전 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음
- 또한 각 항목별로 평가위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이를 근거로 적정여부(적정/부적정)에 대하여 의견을 기재토록 하였음
- 이러한 절차를 거쳐 4개 등급에 해당되는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 등급을 확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중앙자율관리 평가위원 현장 확인/점검포(안) >

공동체명	소재지	시작년도
참여유형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평가자	(인)	

확인 점검 항목		확인사항	적정여부	
1	면담 적극성 여부	위원장 및 구성원들의 다수가 현장 확인 및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	적정 / 부적정	
2	규약 인식 여부	공동체 위원장 및 구성원들이 규약의 존재 및 서류 등을 구비하고 있는가 ?	적정 / 부적정	
3	자율관리 인식 여부	공동체 위원장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가 ?	적정 / 부적정	
4	서류 구비 여부	자율관리 사업관리 관련된 서류는 잘 구비하고 있는가 ?	적정 / 부적정	
5	지도자 교체 여부	공동체 위원장이 최근에 교체되어 자율관리어업 사업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	적정 / 부적정	
6	갈등 해소 여부	자율관리참여 이후 내부 및 인근 공동체와의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는가?	적정 / 부적정	
7	소득증대 노력 여부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적정 / 부적정	
8	어장 청소 여부	어장 및 항포구 등의 환경이 청결하게 정비되어 있는가?	적정 / 부적정	
9	생산물 판매시설	직영하고 있는가?	적정 / 부적정	
10	불법 어업 존재여부	아직도 불법어업(빈매 포함)이 존재하고 있는가 ?	적정 / 부적정	
11	불법 시설물 존재 여부	마을/양식/어선/내수면 등의 어장 및 항포구에 불법시설물 및 폐선 등이 방치되어 있는가 ?	적정 / 부적정	
12	공동체 발전가능성	전반적으로 공동체가 일치단결하여 자율관리어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적정 / 부적정	
[종합의견] : 어장이용 실태(빈매 여부 등), 공동체 발전 가능성, 공동체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등 종합적인 현지점검을 간략히 기입 ○ ○ ○				
등급 추천	풍요()	모범()	협동()	신규()

제4절 평가프로그램 구축 개선(안)

가. 평가시스템 구축 방향

- 기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시스템은 해당 공동체 유형별과는 상관없이 모든 평가항목을 다 화면에 보여주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각 공동체 유형간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 또한 평가항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인해 평가항목의 추가나 기존 평가항목의 내용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공동체 유형별로 해당하는 평가항목만을 화면에 보여주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또한 공동체 유형과 평가항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 평가항목의 신규추가와 기존 평가항목의 내용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시스템 구축 내용

가. 공동체 유형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공동체 유형의 신규추가, 내용변경, 삭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체 유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

나. 평가항목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기존 고정되어 있는 공동체 평가 항목을 각 공동체 유형별로 손쉽게 추가, 수정, 삭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체 유형별 평가항목 관리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

다. 공동체 평가 프로그램 개발

- 각 공동체 유형별로 해당하는 평가항목만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평가 담당자 가 쉽고 명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
 - 공동체 평가항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 평가항목을 해당 공동체 유형별로 조회해 와서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평가자가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평가의 공정성 도모
 - 또한 평가항목을 전산화해 관리함으로써 평가항목의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해 즉시 공동체 평가 프로그램 화면에 반영할 수 있게 됨

제6장 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 로드맵 제시

제1절 현행 자율공동체 평가개선 방향

1. 현행 평가시스템 개선 방향

- 자율관리공동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신뢰성 등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기존의 기관별 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 및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관별 평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음

< 기관별 평가참여 비중 및 개선방향 >

평가기관	개 선(안)	평가비중	현장조사 여부	평가방향
공동체 자체	평가 배제	-	-	평가에서 제외
지도자 협의회	평가항목 개선, 및 평가 절차개발을 통하여 개선함	10%	×	공동체자체평가 기초, 수정/보완함
지방청 전자	유형별(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 수정 및 보완	60%	○	수정/보완함
수협	수협의 계통출하 부분 반영	전자평가 일부 항목 평가참여	×	지방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전자평가시 반영
지역협의회	다수 기관(지방청, 지자체, 과학원, 지구별 수협장)이 참여, 다양한 기관별 불참 문제 해소	30%	×	평가 항목 및 절차 통해 평가 참여

2. 공동체 특성 고려 중장기적 권역별 평가방안

-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의 평가체제는 여러 가지문제가 있어 동 연구에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평가에 있어서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유형별/항목별 평가 문제, 전국단위 획일화된 평가 문제, 지방청 중심의 평가 문제, 도서지방 특성 미반영 등이 있음
- 따라서, 지역별/해역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평가체계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역별/해역별에 기초한 평가개선(안) >

현행 평가 문제점들	개 선 방 안	비 고
항목별 평가 문제	지역별/해역별 평가 필요	도서, 관광지, 도시근교 등
전국단위 획일화 문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해역별 공동체 반영	지역별/해역별 특수한 상황 반영
지방청 중심의 평가 문제	권역별 평가로 전환 필요 (4개 권역별 동해/서해/남해/제주)	권역별 평가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필요
도서지역 배려 문제	도서지역간 평가	도서지역 특수한 상황 고려

3. 평가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

- 동 연구에서는 자율관리평가 시스템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도자협의회, 지역협의회, 지방청 전자평가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아무리 좋은 평가시스템(항목)이 있더라도 평가자들의 인식 및 노력에 따라 차이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무엇보다도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자들의 관점에 따라 평가결과가 지방청별로 편차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평가개선(안)을 가지고 평가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 토론회, 워크샵 (Workshop) 등을 통하여 개별평가 항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평가에 임하는 자세, 자료확인 방법, 개별 공동체 위원장을 대상으로 평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객관성/공정성을 위한 평가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방안(안) >

교육 및 홍보방안(안)	세 부 내 용	교육 및 홍보대상
시연회	- 평가개선안을 위주로 지방청 지도사 및 위원회(중앙단위)를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필요	지도자협의회, 지역협의회, 지방청 전자평가 담당자, 공동체 위원장
토론회	- 평가자를 대상으로 개별항목별 토론회를 통해 평가항목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인식제고	
워크샵	- 일정한 장소에 평가자를 모아 평가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방법 및 자료확보 방법 등에 대한 워크샵이 필요함	

4. 구체적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 평가 필요

- 지방청 전자평가 문제점에서 나타났듯이, 현 상태로는 근본적으로 지역간의 편차를 줄일 수 없음으로 평가자(지도사), 현장을 통한 청취조사는 기본으로 하되, 아래에 제시된 2개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 하에 평가 필요
- 확인 서류 :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 지방청 전자평가 실시에 따른 확인방법(안) >

기본적인 사항	확 인 서 류	관련기관 협조
현장실사 및 청취조사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지자체(시군구), 수협 등

-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율관리공동체 평가를 통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자율관리공동체에서도 무슨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 및 숙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고, 지도자들도 별도의 지도활동 보다는 평가와 연계된 지도가 가능함. 따라서, 이러한 평가와 연계된 활동으로 인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조기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2절 자율관리 활성화 방향

1. 자율관리 조기정착 방향

- 향후, 자율관리어업 사업 규모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구성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성원 수는 유지/확대하고, 현재의 규약 수준을 유지 혹은 보완해 가는 차원에서 자율관리어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자율관리공동체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특히, 공동체는 전국대회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전국대회 개최 시, 자율관리 공동체에 필요한 다양한 전국대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또한, 관련기관/전문가의 경우는 현장 방문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찾아가는 교육 강화도 필요함
- 제2장에서는 부실 공동체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이유는 소득 증대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소득증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됨으로 지역별/해역별 및 참여 유형별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자율관리어업 신청/선정 단계 시 주관 기관이 어디인지 혼란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시 단계에서는 정부의 사업집행 지침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현실에 맞는 사업집행지침의 개선과 더불어, 일선수협들은 어업인들과 직결됨으로 수협도 지도사업과 연계하여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 자료가 복잡하고 너무 많아 번거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1년까지 2,000여개 공동체 참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증가되는 공동체 수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고려하여 항목 및 문항수를 중장기적으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음

< 자율관리어업 조기정착 방향 >

추진내	추진방향	비고
사업규모	다양한 사업내용으로 확대 필요	육성사업 지침 현실반영
구성원의 수	유지 및 확대	광역공동체 유도
자율관리 규약	유지 및 지속적 보완 필요	규약에 대한 지도 필요
교육	전국대회와 연계 필요, 현장방문 교육 강화	전국대회 프로그램 개발 찾아가는 교육 필요
소득증대	공동체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방안 제시
사업집행지침	현실에 맞는 지침 개발	지속적 지침내용 개선
관련기관	일선수협 참여방안 강구	수협의 자율관리 참여 필요
평가	유형별 평가항목 및 문항수 단순화	중장기적 항목 단순화 필요
제도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관련 법/제도 수정/보완
인센티브	정착시까지 지원 필요	장기적 육성사업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자율관리 정착	다양한 자율관리 수단/방법 개발제공	관련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및 보급

- 따라서, 부실 공동체 방지 및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관리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보완과 어업인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참여 인센티브를 정착시까지 지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자율관리어업 수단 및 방법을 개발하여 제공, 다양한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임.

2. 자율관리 건설턴트

가. '06년도 추진결과

- 자율관리컨설턴트 운영기간은 4개월간(2006년 9월~2006년 12월)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둘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교육 및 지도, 셋째, 미참여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유도 및 성공사례 발굴, 넷째, 지역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대책 강구 등임
- '06년도 사업성과를 진단해 보면,
 - 자율관리공동체의 실태파악 및 건의·애로사항을 현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계기
 -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도·자문 실시(50개소 공동체)
 - 자율관리어업의 취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전파하여 미참여 공동체에 대한 신규참여 유도
 - 공동체 신규 소득창출을 위한 경영자문 역할 강화

< 자율관리컨설턴트 활동내용 >

구 분	활 동 내 용
○ 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지역 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 정보수집 및 개선사항 파악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교육 및 지도	- 매월 교육 후 성과와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보고
○ 미참여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유도 및 성공사례 발굴	- 정부, 사무국, 어업인간을 이어주는 가교역할 - 지역간, 업종간 정보교류의 중개자 역할
○ 지역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대책 강구	- 다양한 어촌사회 문제 접근

- 개선할 사항으로는
 - 조사위주의 활동으로 교육 활용도 미흡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실적부진 및 신규참여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미흡
(시범사업이므로 희망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결과임)
- 컨설턴트 1인당 다수의 공동체 자문보다 소수의 공동체에 대해 집중적 컨설팅추진
- 대상공동체 선정 개선 : 희망하는 공동체 → 실적부진 및 신규참여 공동체 우선 선정

나. 향후 자율컨설턴트 운영방향

- 향후 자율관리컨설턴트는
 - 자율관리어업 추진실적이 부진하거나 신규참여로 경험이 적은 공동체의 사업추진 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유도
 - 수산경험이 풍부한 수산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체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소득증대 방안 자문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임을 감안하여 위원별로 전담 공동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집중관리
 - 지역별/해역별, 유형별로 사업추진 사전 및 사후 집중 관리

<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 기본계획 >

구 분	기 본 계 획	비 고
운영기간	4월~12월(1년 단위로 위촉기간 갱신)	-
대 상	담당 지역내 실적부진 및 신규참여 공동체 자문을 원하는 공동체 등	-
구 성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시·도별 지역특성과 수산업 전반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
규 모	- 해역별/지역별로 자율관리 유형을 고려 전문컨설턴트를 구성 - 동/서/남해/제주 해역별 5명 : 약 20여명)	-

<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 주요내용 >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 지역 담당형 자율관리컨설턴트 운영	-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담당 지역에 대한 어업여건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턴트 추진
○ 실적부진 및 신규참여 공동체에 대한 집중 관리형 체제 구축	- 전담 컨설턴트의 집중 관리를 통해 자율관리어업 중심의 공동체 운영·경영합리화, 행정처리, 소득창출 등 전분야에 대하여 자문실시 - 공동체 1 내지 2개소에 대하여 1~2개월간 집중적인 관리 실시 - 집중관리 공동체는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자문체제로 전환
○ 분야별 전문 인력풀 활용	- 수산회에서 운영하는 수산경영컨설팅을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를 공동체에 파견하여 현실성 있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내실강화 (예, 유통전문가, 관광전문가, 자원관리전문가, 행정전문가 등)
○ 한국수산회 사무국 역할 확대	- 행정업무 및 컨설팅 지원업무 강화, 분야별 전문가 파견 지원 등
○ 자율관리 컨설턴트 역할 강화	- 현장 중심의 집중적 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 및 자문역할 확대 - 실적 부진 및 참여 공동체의 모범단계 이상으로의 컨설턴트 기능 강화 - 자율관리어업 미참여 공동체에 대한 참여유도 및 성공사례 발굴 - 지역현안 문제 자문 및 분쟁사건예방 역할

제3절 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 세부실천계획(안)

1. 정책수립 필요성 및 목표

가. 정책수립 필요성

- 2012년 이후에는 모든 어촌계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동체 평가가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신뢰성 등을 확보해야 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정책목표

- 이제는 본격적인 확산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경쟁 유도 필요
 -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참여정도와 추진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등급 공동체에 대한 지원강화
- 승급(昇級)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공동체의 자긍심 고취

다. 추진 방향

- 지역별(지방청별) 평가결과의 편차 해소, 기관별 평가 시스템 보완을 통한 구축, 자율관리 참여 공동체 증가에 따른 지역별, 유형별 세부 평가 체제 구축, 민간차원 평가체제 정착,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 확대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여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가 확산 및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함

2. 단계별 추진체계(안)

가. 단계별 추진목표 및 체계

< 공동체평가 체제구축 목표 및 추진전략 >

단계별	목 표	추진 전략
1단계 (‘08~’09)	지역편차 해소를 통한 공동체 등급화 기준확정 및 기반조성	[평가기준 및 기반조성 단계] - 지역별 편차 해소방안 강구 - 등급화 기준을 통한 평가 기반조성 - 참여증가에 따른 세부유형별 평가체제 구축 - 자율관리 컨설턴트 평가 참여방안 강구
2단계 (‘10~’11)	평가체제 전산화와 상시평가체제 구축	[상시평가 구축 단계] - 모든 평가 전산화 체제 정착 - 평가자 교육 강화 - 기관별 평가체제 지속적 보완 및 정비 - 타기관 세부 평가항목 개발 지속
3단계 (‘12 이후)	민간 평가체제로의 정착	[민간차원 평가 정착단계] - 권역별 컨설턴트 사무소 운영(법인화) - 민간단체 중심 체제로 운영

나. 단계별 세부추진 내용

-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 구축 위해 제시된 목표 및 추진 전략을 고려하여 제1단계(평가기준 및 기반조성단계), 2단계(상시평가 구축단계), 제3단계(민간체제로의 정착단계) 등 단계별로 구체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1단계 : 평가기준 및 기반조성단계

가) 계획기간 : 2008년 ~ 2009년

나) 추진전략

□ 모든 평가자료 전산화 추진 ('08~ 계속)

- 모든 평가기관은 현재 해양수산부 평가 전산 프로그램에 전산 입력
 - 이를 통해, 공동체 평가자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함으로 동 자료를 기초로 자율관리 확산 및 정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권역별 (동서남해) 평가방안 ('09~계속)

- 지역별 지방청별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 동해안 권역, 남해안 권역, 서해안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 중심 유형별 평가를 통하여 등급화를 추진하는 방안
 - 현재의 전국단위 평가 순위의 경우는 지방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권역별 평가 순위를 매겨 등급화 함
 - 특히, 편차가 나는 원인은 첫째, 지방청 지도사들이 항목별 평가에 있어서 평가 초점 및 의미 부여가 상이하고, 둘째, 해역별 각각 어업의 특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항목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으므로 권역별 평가자(전자평가,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들이 최소한의 평가를 하기 위한 모임을 가져 동일한 평가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관별 평가 시스템 구축 ('08~'11)

- 참여 기관별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향후 참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청 전자평가,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 등에서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사무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역별, 유형별 세부 평가 체제 구축 ('09~ 계속)

- 지속적 자율관리 참여 공동체의 증가에 따라 세부 유형별 평가체제 구축
 - 참여 공동체의 증가에 따라 마을/ 양식/ 내수면어업, 복합어업(도시근교, 도서형), 어선어업(연안, 근해, 업종 등), 광역공동체 등으로 매우 세분화의 필요성이 예상됨으로 현재의 평가 시스템 보완 후 향후 세분화 평가 체제 구축 필요

□ 민간기관(위원회) 평가 체제 보완 ('09~'10)

- 한국수산회에서 자율관리 평가 사무국 역할 수행에 따른 보완 필요
 - 자율관리 참여 공동체 증가에 따라 평가의 대상 및 업무의 확대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08~계속)

- 민간단체에서 정부 지원하에 자체적으로 관리 및 운영(해역별 5명 : 약 20명)
 -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정부는 감독하는 방법으로 운영
 -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관리 전담 컨설턴트 운영

2) 2단계 : 상시평가 구축 단계

가) 계획기간 : 2010년 ~ 2011년

나) 추진전략

□ 타 민간(수협) 평가 참여 방안 강구 ('10~ 계속)

- 향후 민간 중심 평가 체제 정착을 위하여 타 민간기관 평가 참여 방안 강구
 -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수협의 참여가 현재는 어려우나 향후 수협 등 민간기관의 평가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중심 평가 체제 정착 필요

□ 자율관리 컨설턴트 평가 참여 방안 ('10~'11)

- 자율관리 컨설턴트 공동체 참여 방안 강구
 - 권역별 10여명 이상 컨설턴트 확보를 전제로 평가에 참여케 함

3) 3단계 : 민간차원 평가 정착 단계

가) 계획기간 : 2012년 이후

나) 추진전략

□ (가칭) 자율관리 컨설턴트 협회 운영 ('12년이후)

○ 권역별 밀착형 컨설턴트 운영을 통한 자율관리 정착 도모

- 권역별 10 여명 이상으로 컨설턴트 활동을 전제로 컨설턴트 지역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여 자율관리 정착에 기여

□ 민간중심 평가체제 정착 ('12년 이후)

○ 향후 자율관리어업의 정착을 위하여 민간차원 평가체제 구축 필요

- 진정한 의미의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가 활동하는 것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 향후 민간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세부추진 로드맵(안)

< 공동체 평가 시스템 구축 세부추진 일정 >

구분	년도	'08	'09	'10	'11	'12 이후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강구	방안지속적 유형별 평가항목 개선			
	권역별(동서남해, 제주) 평가					
	모든 평가자료 전산화					
	평가자 교육 강화					
기관별 평가시스템 구축	지방청 전자평가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					
지역별 유형별 세부 평가체계 구축	마을/양식/내수면어업					
	복합어업(도시근교, 도서형)					
	어선어업(연안, 근해, 업종 등)					
	광역공동체					
민간차원 평가체계 정착	민간기관(위원회) 평가체제 보완					
	민간 중심 평가체제 정착					
	타 민간(수협)의 참여방안 강구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확대	자율관리 컨설턴트 평가참여 방안					
	컨설턴트 인원수 확대					
	수산회 사무국 역할 확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 자율관리어업은 기존 어업에서 볼 수 있는 각종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불법어획으로 자원고갈, 무주물선점 및 경쟁조업 심화로 자원남획 초래, 과잉투자→어획량감소→소득저하로 수산경영 위기 초래, 정부와 어업인간 또는 어업인간 갈등발생, 정부지원만 기대하는 어업인들의 자립심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시작되었음
-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의식개혁 운동」을 통하여 어업인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도록 하는 것임
-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온 자율관리어업 5년 동안의 활동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하여, 자율관리어업 성과에 대한 진단과 이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향후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도출이 필요함
- 또한, 기존 자율관리 등급 분류 및 평가방법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자율관리어업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즉, 동 연구의 목적은 자율관리어업의 실시전과 후의 공동체 평가를 통하여 자율관리어업 추진 상황에 대해 진단을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과 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나. 필요성

-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법적 강제 형태의 어업관리는 자원의 남획을 막지 못하고, 과잉투자에 의한 무주물 선점의 경쟁조업을 심화시키고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해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의 강제적인 관리보다는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어장·자원·생산관리를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게 됨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도에 63개소에서 2006년도 445개소로 약 7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동체(어촌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자율관리어업의 단계별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제1단계가 기반조성단계('01~'04)로 어촌계중심의 시범사업, 의식 확산으로 활성화, 우수공동체 지원으로 기반조성 등이며, 2단계로는 확산·심화단계('05~'10)로 새어촌운동으로 의식전환, 어선어업공동체로 확산, 지도자협의회 육성으로 핵심세력화, 3단계는 정착단계('12년 이후)로 광역공동체 형태 정착, 공동체간 협력 체제 확립, 민간단체 운영체제로 전환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
- 자율관리공동체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식전환, 불법어업 추방, 자원조성·관리, 분쟁 해결 등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참여정도와 추진실적에 따른 공동체의 평가를 통하여 우수공동체 선정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5년간의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한 향후 추진상의 방향 재정립에 대한 검토 필요하고, 참여 공동체 수의 증가에 따른 경쟁 유도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체계 재정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임
- 이와 같이, 자율관리어업이 시작한지가 5년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추진 방향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공동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확산·심화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의 종합적·객관적인 진단이 없었고, 기존 어촌지도사들의 전자평가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경쟁 유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그동안(5년) 불법어업 추방, 자원조성·관리, 경영개선, 분쟁 및 갈등 등에 대한 자율적 극복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없었음
- '02년~'05년까지의 어촌지도사들에 의한 전자 평가항목이 특정 지역 및 유형에 유리하게 평가되고 있어 우수공동체 선정 문제 야기되었음
 - ※ 4개 등급(풍요/모범/협동/참여)으로 분류('05.3월 공모)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및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5년간의 추진상의 객관적인 진단을 통하여 향후 추진 방향 모색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한 우수공동체 자긍심 고취 및 지원강화 필요한 실정임
 - 2012년 이후 약 2000여개 공동체 참여 목표로 추진 중임을 감안 할 때, 현시점에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한 방향 설정과 더불어 평가문항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 지금까지 자율관리어업과 관련된 연구는 일본의 자주적 연안어업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02, KMI 자체연구),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03, 수산회/KMI), 자율관리어업 교육을 위한 교육용 교재발간('04, 부경대), 어선어업 분야의 자율관리어업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05, 수산회/KMI)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자율관리어업 추진에 따른 객관적인 성과분석이나 평가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음
-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한지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임으로 자율관리어업 실시전후에 대한 정책적 평가가 실시와 더불어, 기존 자율관리 평가표 개선(안) 및 자율관리효과 측정지표 개발 등을 통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실정임
 - 연구내용의 핵심은 자율관리어업 5년 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기존 평가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한 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자율관리어업 5년 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기존 평가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한 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율관리어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전체와 자율관리어업 관련기관,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계 등을 조사대상으로 확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를 통하여 다각적인 자율관리어업의 효과 측정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조사표본수로는 총 578명으로 자율관리 공동체 420개, 관련기관/전문가 158명(지자체/지방청 100명, 수협 52명, 학계/기타 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분석 카테고리로는 자율관리어업 운영 실태, 자율관리어업 효과 측정, 자율관리 교육에 대한 평가, 정부 지원에 대한 평가, 자율관리어업 문제점 진단,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등임
- 제3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자율관리 평가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2005년 이전의 평가 방법과 2006년도 평가개요 및 평가단계별 평가내용, 공동체 등급 확정 과정,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또한, 2006년도 전자평가 보완 및 2006년도 하반기 평가지침에 대하여 보완배경 및 주요 개선/보완 내용과 이를 기초로 한 평가지침 등에 대해 언급하였음
- 제4장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소득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수부, 지방청, 시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를 제1차('06.12-19), 제2차('07.2.22-23), 제3차('07.4.6-7) 등 3차례 실시하였으며, 지도 자협의회 회의('07.027-28), 자율관리남해안 담당자 Workshop('07.3.27-28) 등을 통하여 동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음
- 자율관리어업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을 위하여 측정의 이론적 검토, 일본의 사례, 타 기

관의 평가사례 및 적용가능성 등을 통하여 실시효과 측정지표 개발을 제시하였음. 자율관리 소득성과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성/정량적인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자율관리 실시 전후에 대한 평가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 사업실시 전 (Before Project)과 사업실시를 한 이후(After Project)의 차이를 B/C분석을 통한 이론, 또한,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자율관리어업 평가 관련 기법을 접목하려고 시도하였음. 특히, 일본의 경우는 지역어업인, 어업인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공동체 자담을 이용하여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원관리형어업에 한정하는 것보다도 복합적 자원관리어업 및 자원회복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타 분야의 적용사례인 통계청 어가평가지표 방법을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에 접목을 시도하였으며, 이 경우는 어가의 생산성 지표, 어가의 안정성지표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소득평가 지표방안에 대하여 네 가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제1안인 공식적인 어가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조사자가 간단히 질문하여 자료를 만들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소득 성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 오차의 범위가 매우 클 가능성이 높고, 이는 현실을 반영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 제2안인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방법의 준용은 어가의 생산성 및 안정성 지표 등을 산정할 수 있으나, 공동체 위원장들에게 많은 부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관리인력 및 추진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실 적용에 있어서 무리가 따름
- 제3안인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시 산출하는 방안은 참여공동체가 어촌계인 경우가 많고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자료에 추가하여 산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수협중앙회 입장에서 조사 인력의 부족 및 신뢰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동 방안은 추진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제4안인 공동체별 소득과약(안)은 공동체 위원장이 간단히 작성하여 지방청에 제출하게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어가소득은 어업소득, 어업 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이전소득, 비 경상소득 등 매우 복잡하고 이를 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따라서 어가소득을 어업소득으로 전환하여 간단한 평가서를 만들어 공동체 위원장이 작성케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제1안에서 제4안까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안)을 제시하였음
- 제5장에서는 자율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안)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1절에서는 자율관리공동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신뢰성 등으로 볼 수 있음으로,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기존의 기관별 평가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 및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기관별 평가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음
- 이러한 자율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해수부, 지방청, 시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를 제1차('06.12-19), 제2차('07.2.22-23), 제3차('07.4.6-7) 등 3차례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또한, 기관별 평가에서 누락된 시·도 중심의 지역협의회 및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할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여 개선방향에 포함시켰음
- 다음으로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관별 평가에서 공동체 방문 및 면담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음
-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기관별 평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평가체계 및 기관별 평가비중에 대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며, 특히, 제5장 제1절 기관별 평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해 충분히 언급되었으므로, 제2절에서는 평가체계 및 기관별 평가 비중을 중심으로 언급하였음
- 제3절에서는 자율관리 신규공동체에 대해 구성원들의 참여범위 및 기준이 없어, 하나의 기존 공동체(자연부락, 어촌계, 임의단체 등)가 공동체 구성원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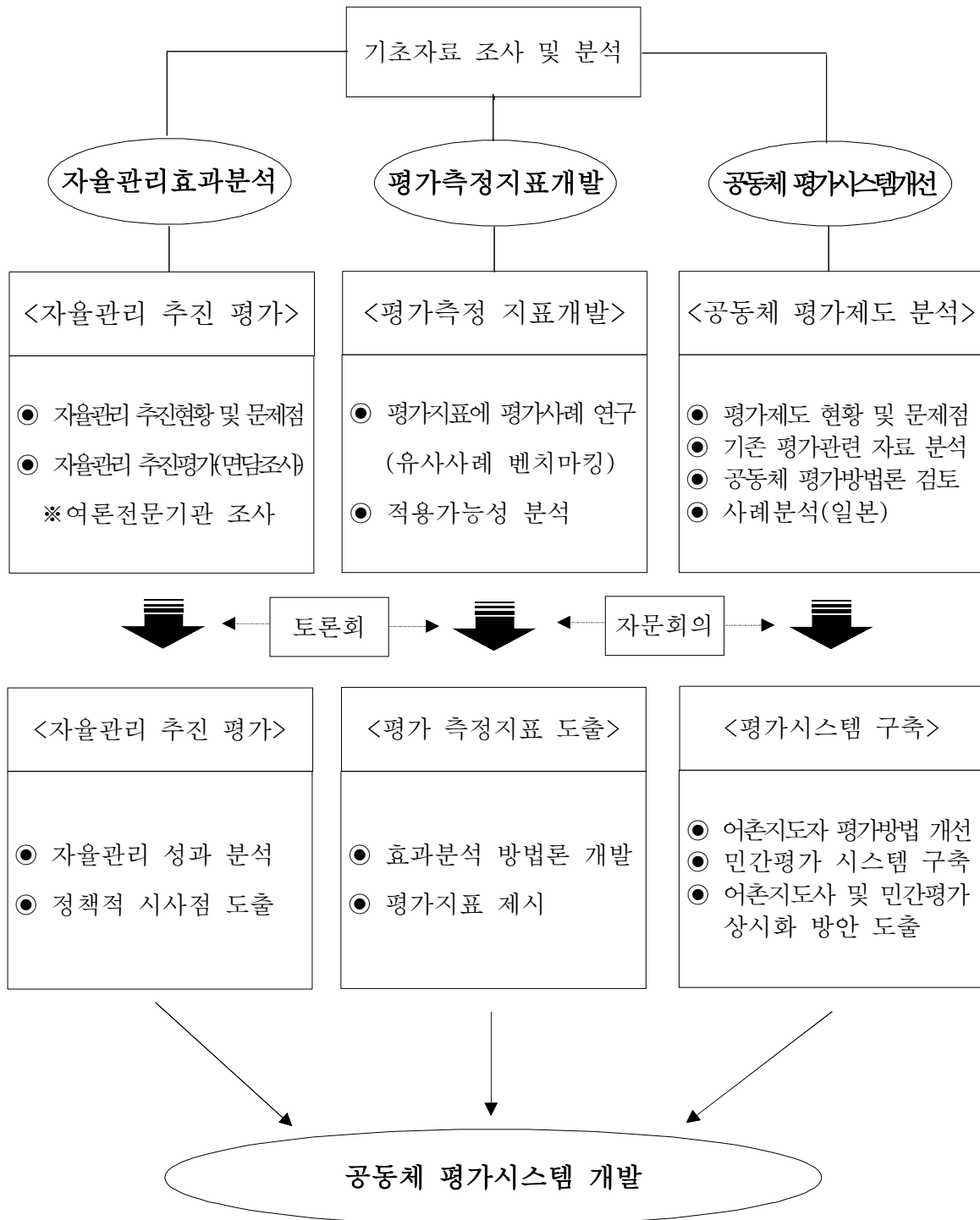
도로 각각 조직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되었고,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자율관리 지원금(육성사업비)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음이 사실임

- 평가에 있어서는 일부 배려를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다수참여 공동체와 소수참여 공동체 간의 차별이 없었고, 신규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할 경우, 구성원 조직에 대한 공동체 자체노력들이 미흡하였음
- 따라서,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 신규 참여시, 참여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제한을 두어 공동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 및 유도, 단일공동체가 2개 이상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참여 차단, 육성사업비 지원시에도 소수의 참여공동체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유형별 참여 구성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 다음으로 어선어업이 포함된 복합적인 유형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분류로는 마을, 어선, 양식, 내수면 등 4개 유형과 더불어 복합(마을+어선 중심)어업 등 총 5개의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개념을 정리하였고, 복합어업의 경우는 대부분 도서 및 연안해역 마을어업에서 어촌계원 중 어선어업자들의 참여로 인하여 나타나는 유형임으로 별도로, 어선어업 참여 비중에 따른 복합어업 기준을 제시하였음
- 또한, 기관별 평가항목 개선(안)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기관별 평가항목개발의 기준은 첫째, 타 평가기관의 중복성 여부, 둘째, 어업인 접촉 최소화 가능 여부, 셋째, 자율관리 평가항목이 있는지 여부, 넷째, 타 기관평가에서 평가항목이 있더라도 해당기관의 중복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은 포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음
- 참여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작성하되 유형별로 공통적인 항목과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시도지도자협의회, 지역협의회, 전자평가 등에 대한 평가항목 개발과 이에 따른 평가 메뉴얼을 각각 제시하였음
- 제4절에서는 평가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기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가시스템은 해당 공동체 유형별과는 상관없이 모든 평가항목을 다 화면에 보여주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각 공동체 유형간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공동체 유형별로 해당하는 평가항목만을 화면에 보여주는 방안 및 증거에 입각한 평가, 평가 담당자가 쉽고 명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하였음

- 제6장에서는 자율관리평가 개선방향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 특성 고려 중장기적 권역별 평가, 평가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한 평가 방안 등을 언급하였음
- 마지막으로 자율관리어업 종합평가시스템 구축(안) 제시하였으며,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과 이와 더불어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음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본 장에서는 참여공동체의 자율관리 추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여론전문기관인 갤럽에서 자율관리공동체(420개소), 관련기관/전문가(158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율관리어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였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의 개요, 조사결과의 분석, 요약 및 결론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음

제1절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가. 조사의 배경

-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적절히 관리 이용하는 자율관리어업이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꾸준히 참여 어업인 및 자율관리 공동체가 증가하는 추세임.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관리어업의 정착은 정부 주도의 제도가 아닌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현재의 자발적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참여 증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난 2005년 8월, 일부 자율관리 공동체 대표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효과 측정을 위한 공동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하지만, 일부 공동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기관 및 이를 연구하는 학계의 의견 파악을 위한 조사는 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실시되어 다각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나. 조사의 목적

- 따라서 본 조사는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어업 공동체 전체와 자율관리어업 관련기관,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계 등을 조사대상으로 확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다각적인 자율관리어업의 효과 측정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이에 관한 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

2. 주요 조사 내용

- 조사의 구체적인 주요 항목은 해양수산부,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실무팀, 한국꺾림조사연구소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으며, 그 주요 조사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 설문조사 분석 주요 항목

분석 카테고리	주요 분석 결과
자율관리어업 현재 운영 실태	1. 자율관리어업 실태 - 시작년도 - 활동 분야 / 생산 어종(품종) - 공동체 구성원 수/변화 여부 - 생산물 판매 경로
자율관리어업 효과 측정	1.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 / 궁극적 이익 2. 자율관리어업 측면별 평가 - 공동체 구성원 관심도 - 구성원 호응도/참여도/단결도 - 구성원간 갈등 정도 - 참가 자율관리 의식 변화 여부 - 실시 이후 자원 유지/증대 효과 - 어장환경 개선 효과 - 어가 소득 증대 효과 - 어업 질서 확립 효과 - 신규 참가 희망자 진입 용이성 (관련기관/전문가 별도 문항) - 행정적 / 기술적 지원 (관련기관/전문가 별도 문항) - 기존 법/제도와 의 상충 정도 (관련기관/전문가 별도 문항) 5. 자율관리어업 평가 - 전반적 평가 - 사업/구성원/규약에 대한 의견 6. 자율관리어업 실시 이후 소득 변화
교육에 대한 평가	1. 교육 경험, 2. 교육 효과 평가 / 이유 3. 선호 교육 유형
정부 지원에 대한 평가	1. 정부 지원 경험 - 횟수 / 금액 2. 정부 지원 사업 포기 시 이유 3. 정부지원사업 효과 평가 / 이유 4. 정부 지원금 영향력 평가
자율관리어업 문제점 진단	1. 부실 공동체 증가에 대한 인식 및 그 이유 2. 자율관리어업 단계별 인식 문제점 - 신청/선정 단계 - 실시 단계 - 사업 평가 단계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1.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2. 기타 건의사항

3. 조사의 기본 설계

가. 표본 설계(Sample Design)

<표 2-2> 표본 설계 내용

구 분	설계 내용
조사 대상	- 자율관리 공동체 - 관련기관 : 해양 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시도공무원, 수협 - 전문가 : 학계
조사 지역	- 전 국
조사 대상 모 집 단	총 854명 - 자율관리 공동체 : 443개 - 관련기관/전문가 : 307명 (지자체/지방청 297명, 수협 94명, 학계/기타 20명)
조사 표 본 수	- 총 578명 (총 리스트 수) - 자율관리 공동체 : 420개 - 관련기관/전문가 : 158명 (지자체/지방청 100명, 수협 52명, 학계/기타 6명)
표본추출방법	리스트에 의한 전수 조사
조사 방법	- 자율관리 공동체 : 개별 면접 조사 - 관련 기관 및 전문가 : 온라인 조사
용역 범위	- 실사, 검증, Data Coding, Punching, 자료처리, 기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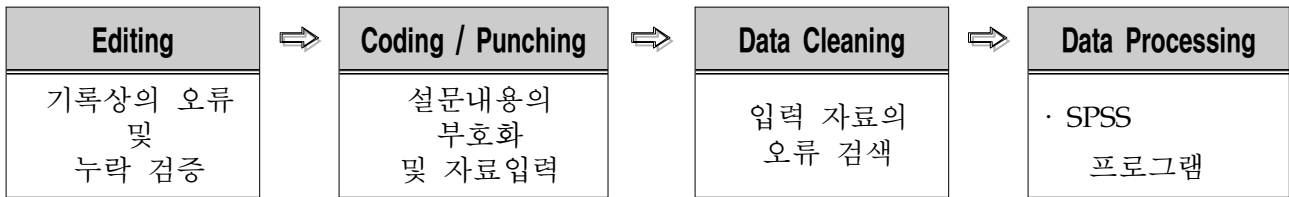
나. 실사 설계(Fieldwork Design)

<표 2-3> 실사 설계 절차 및 방법

실사 지도원 교육	조사 전에 면접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면접원 교육에 앞서 실사지도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면접원 선정	본 연구소 소속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함
면접원 교육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하여 2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부의 연습면접을 실시하여 조사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여 실사과정이 표준화(Standardization) 될 수 있도록 함.
면접원 통제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Supervisor)가 3일 간격으로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앞에서 검토하여 그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통제시스템(Quality Control System)으로 실사를 통제, 관리함으로써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함.
검 증 조 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본 연구소 검증원이 전화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부를 무효로 하고 예비표본에서 재조사를 실시함

다. 자료처리 및 분석(Data Processing & Analysis)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Coding, Punching, Edit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고 자료는 기본적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s)에 따라 문항별로 조사결과 집계표로 제시하였음



[그림 2-1] 자료처리 및 분석 과정

라. 조사주관기관 : 한국개발조사연구소

- 담당 연구원 : 김영철 본부장, 김학렬 차장, 곽무경 연구원
- 실사 연구원 : 심혜진 실장, 노혜란 팀장
- 전산 연구원 : 송승봉 과장
- 코딩 책임자 : 구정미 실장

4. 조사의 진행 과정

- 본 조사가 시작하여 최종 보고서 제출 시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었다. 2006년 8월 24일 계약 이후로 현재까지 진행된 그간의 과정 및 일정을 정리하여 기록하면 다음과 같음

<표 2-4> 조사 진행 과정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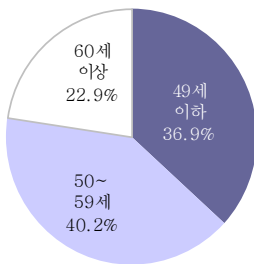
일 정	기 간	주요 내용
계약	2006. 8. 24.	해양수산부, 한국수산회, 한국궤렵, 오션인포
프로젝트 기획	8. 24. ~ 9. 15	조사 목적에 따른 조사 방법, 분석 방법 기획
조사 대상자 선정	9. 16. ~ 9. 30.	어업공동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대상자 선정
질문지 기획/확정	10. 1. ~ 12. 8.	한국수산회를 중심으로 한국궤렵, 해양수산부 의견 반영
실사	12. 11 ~ 1. 8.	한국궤렵이 진행
검증	1. 9 ~ 1. 14.	한국궤렵이 진행
코딩편집	1. 15. ~ 1. 18.	한국궤렵이 진행
자료처리	1. 19 ~ 1. 31.	한국궤렵이 진행
분석	1. 20. ~ 2. 28.	한국궤렵이 진행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3. 1.	한국궤렵에서 한국수산회에 제출
사후 서비스	3. 1 ~ 4. 18.	조사 관련 추가 분석 등

5. 조사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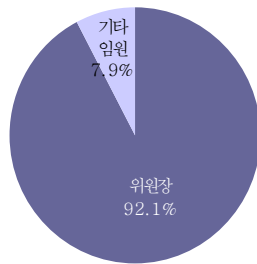
○ 자율관리 공동체 조사, 관련기관/전문가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프로파일을 정리하여 그래프화 하면 다음과 같음

가. 자율관리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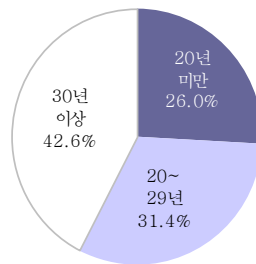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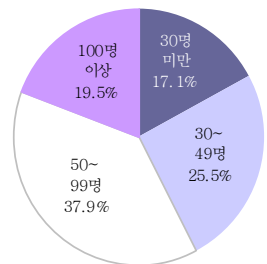
■ 직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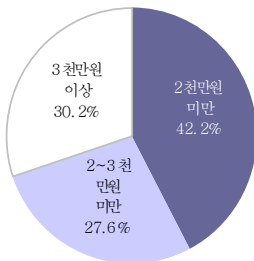
■ 종사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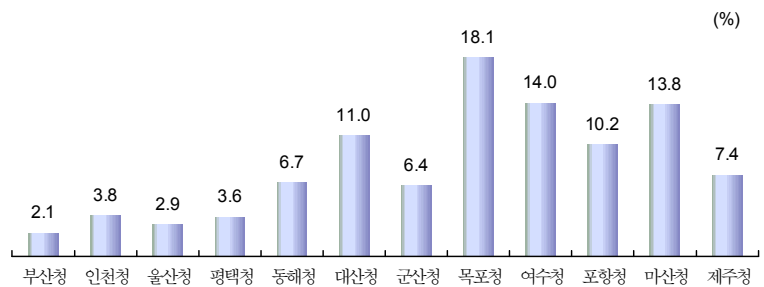
■ 참여 인원수별



■ 가구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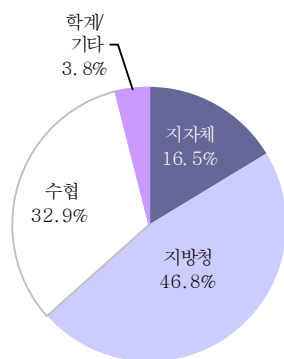


■ 담당지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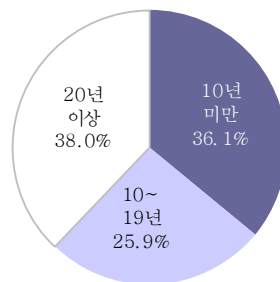


나. 관련기관/전문가

■ 소속기관별



■ 근무경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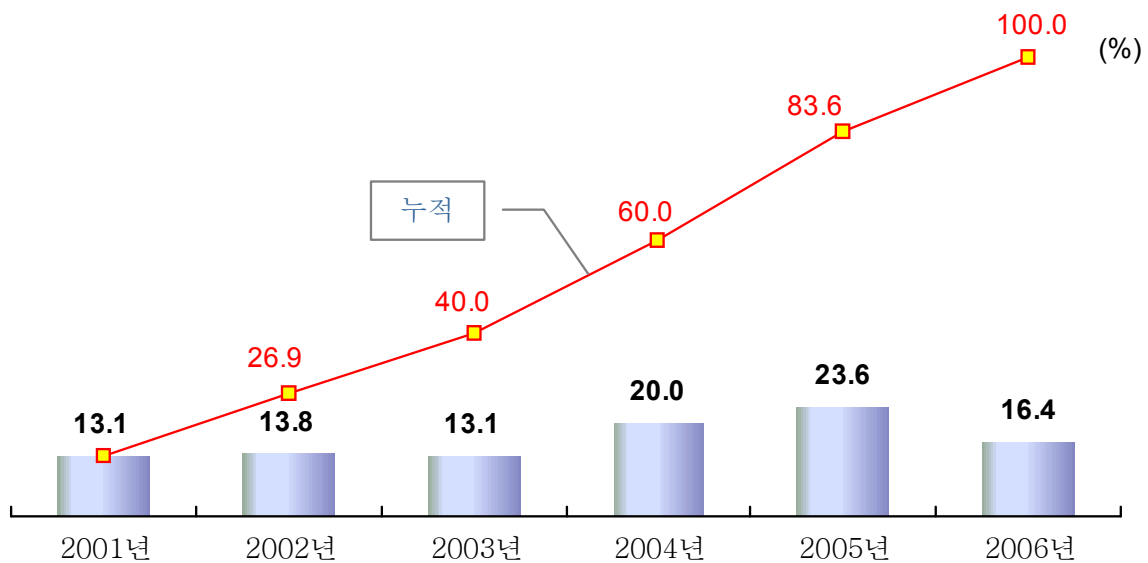


제2절 조사 결과의 분석

1. 자율관리어업 운영 실태

가. 자율관리어업 시작년도

- 전국 420개 자율관리어업 참여 자율관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참여 개시 연도별 구성비를 나누어 본 결과, 2001년 가입 공동체 13.1%를 시작으로, 2002년 13.8%, 2003년 13.1%, 2004년 20.0%, 2005년 23.6%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16.4%로 참여 숫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참가 가능한 자율관리 공동체가 어느 정도 한계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06년에도 16.4% 참여율을 보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자율관리어업의 확대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2-2] 자율관리어업 시작년도 - 자율관리공동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어업 개시년도

- 자율관리어업 개시년도를 실시 분야별로 분석하면, 2004년~2005년 사이에 반수 정도의 공동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식어업의 경우 2006년에 참여한 공동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5>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 체		420	13.1	13.8	13.1	20.0	23.6	16.4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12.4	13.4	10.8	20.4	26.3	16.7
	양 식 어 업	43	18.6	14.0	14.0	14.0	18.6	20.9
	어 선 어 업	63	14.3	17.5	12.7	14.3	27.0	14.3
	내 수 면 어 업	5	-	-	40.0	20.0	40.0	-
	복 합 어 업	123	12.2	13.0	15.4	24.4	18.7	16.3

- 또한, 담당지방청별로 분석해 보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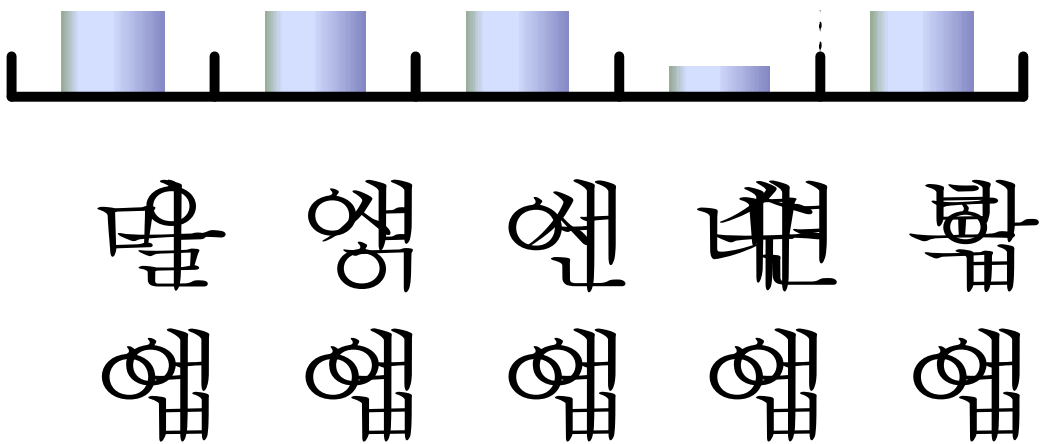
<표 2-6>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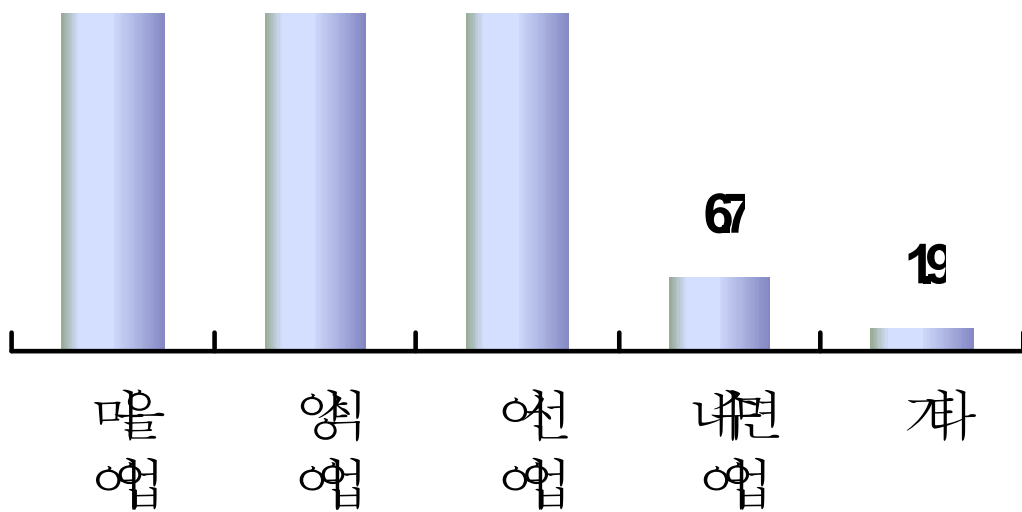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 체		420	13.1	13.8	13.1	20.0	23.6	16.4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11.1	33.3	11.1	-	44.4	-
	인 천 청	16	18.8	18.8	31.3	25.0	6.3	-
	울 산 청	12	16.7	8.3	16.7	41.7	-	16.7
	평 택 청	15	6.7	6.7	26.7	20.0	26.7	13.3
	동 해 청	28	28.6	21.4	7.1	17.9	-	25.0
	대 산 청	46	6.5	4.3	6.5	13.0	34.8	34.8
	군 산 청	27	14.8	18.5	22.2	25.9	18.5	-
	목 포 청	76	13.2	15.8	6.6	34.2	6.6	23.7
	여 수 청	59	13.6	6.8	15.3	22.0	30.5	11.9
	포 향 청	43	9.3	23.3	14.0	25.6	11.6	16.3
	마 산 청	58	13.8	12.1	8.6	6.9	58.6	-
	체 주 청	31	9.7	12.9	22.6	-	22.6	32.3

나. 자율관리어업 실시 분야

-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중 복합 어업 공동체가 29.3%이며, 단일 어업만을 실시하는 공동체는 70.7%로 나타났다. 이 중 마을 어업만을 실시하는 공동체가 4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어 어선어업(15.0%), 양식어업(10.2%), 내수면어업(1.2%)의 순임. 복합어업, 단일 어업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 어업 자체 비율별로 보면 마을어업 71.0%, 양식어업 35.5%, 어선어업 31.9%, 내수면 어업 6.7%로 조사되었음



[그림 2-3] 자율관리어업 실시 분야 - 자율관리공동체



[그림 2-4] 자율관리어업 실시 분야 - 실시어업 비율(중복응답)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어업 실시분야

- 시작년도별로 보면 내수면 어업은 2003~2005년도 사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 시작년도별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마을 어업	양식 어업	어선 어업	내수면 어업	복합 어업
전 체		420	44.3	10.2	15.0	1.2	29.3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41.8	14.5	16.4	-	27.3
	2002년도	58	43.1	10.3	19.0	-	27.6
	2003년도	55	36.4	10.9	14.5	3.6	34.5
	2004년도	84	45.2	7.1	10.7	1.2	35.7
	2005년도	99	49.5	8.1	17.2	2.0	23.2
	2006년도	69	44.9	13.0	13.0	-	29.0

○ 담당지방청별로는 울산청, 동해청, 여수청, 포항청, 마산청, 제주청 관할 지역에서 마을 어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청, 평택청, 대산청, 군산청, 목포청 관할 지역에서는 복합 어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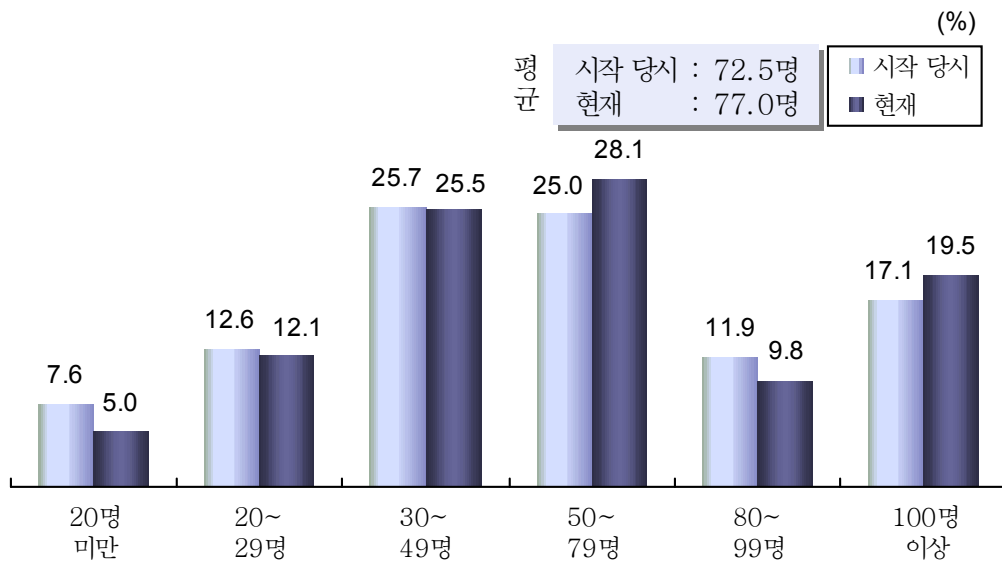
<표 2-8>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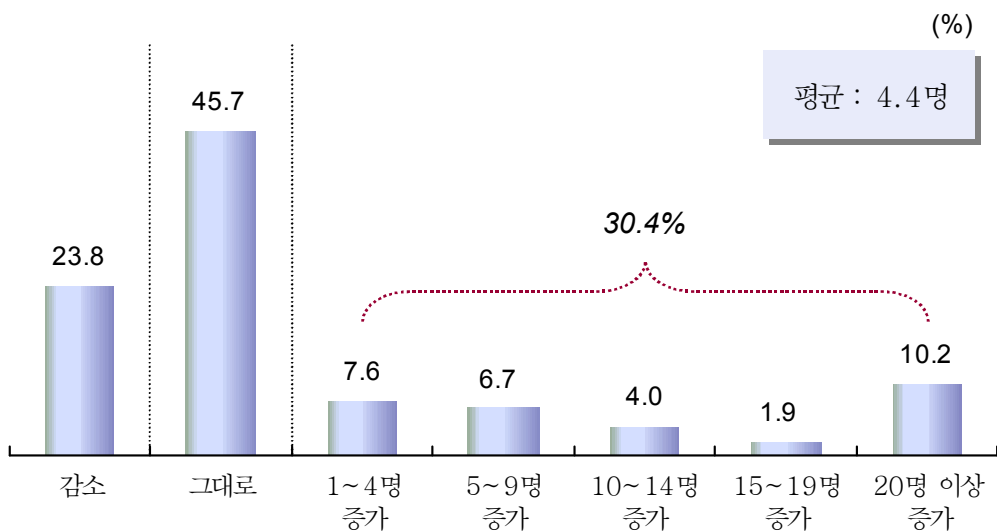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마을 어업	양식 어업	어선 어업	내수면 어업	복합 어업
전 체		420	44.3	10.2	15.0	1.2	29.3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11.1	33.3	22.2	-	33.3
	인 천 청	16	-	6.3	18.8	6.3	68.8
	울 산 청	12	83.3	-	16.7	-	-
	평 택 청	15	33.3	-	6.7	-	60.0
	동 해 청	28	78.6	-	14.3	-	7.1
	대 산 청	46	10.9	-	10.9	4.3	73.9
	군 산 청	27	18.5	3.7	25.9	7.4	44.4
	목 포 청	76	27.6	26.3	10.5	-	35.5
	여 수 청	59	49.2	20.3	5.1	-	25.4
	포 항 청	43	74.4	2.3	16.3	-	7.0
	마 산 청	58	46.6	8.6	32.8	-	12.1
제 주 청	31	93.5	-	6.5	-	-	

다. 공동체 내 구성원 규모

- 공동체 내 구성원 규모를 보면, 30~79명 정도로 구성된 공동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공동체도 19.5%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자율관리어업 시작 당시와 현재의 구성비 수를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는 약 4.4명 정도의 구성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2-5] 공동체 내 구성원 규모 - 자율관리공동체



[그림 2-6] 구성원 증감 현황 - 자율관리공동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구성원 증감

-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수를 실시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복합어업과 마을어업을 실시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수가 각각 평균 6.4명, 4.3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9>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명)

구 분		사례수	시작당시	현재	증감
전 체		420	72.5	77.0	+4.4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80.2	84.4	+4.3
	양 식 어 업	43	54.0	57.2	+3.2
	어 선 어 업	63	53.5	55.4	+2.0
	내 수 면 어 업	5	25.2	27.4	+2.2
	복 합 어 업	123	79.2	85.6	+6.4

- 시작년도별로는 2002년도에 시작한 공동체의 공동체 구성원 증가수가 10.7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2-10>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명)

구 분		사례수	시작당시	현재	증감
전 체		420	72.5	77.0	+4.4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74.9	78.0	+3.1
	2002년도	58	72.7	83.4	+10.7
	2003년도	55	83.3	88.8	+5.5
	2004년도	84	70.1	74.5	+4.5
	2005년도	99	75.4	76.8	+1.4
	2006년도	69	60.8	64.4	+3.5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담당지방청별로는 동해청(평균 18.9명), 인천청(평균 9.3명) 관할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 증가 수가 가장 많은 반면, 제주청, 포항청, 울산청 관할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숫자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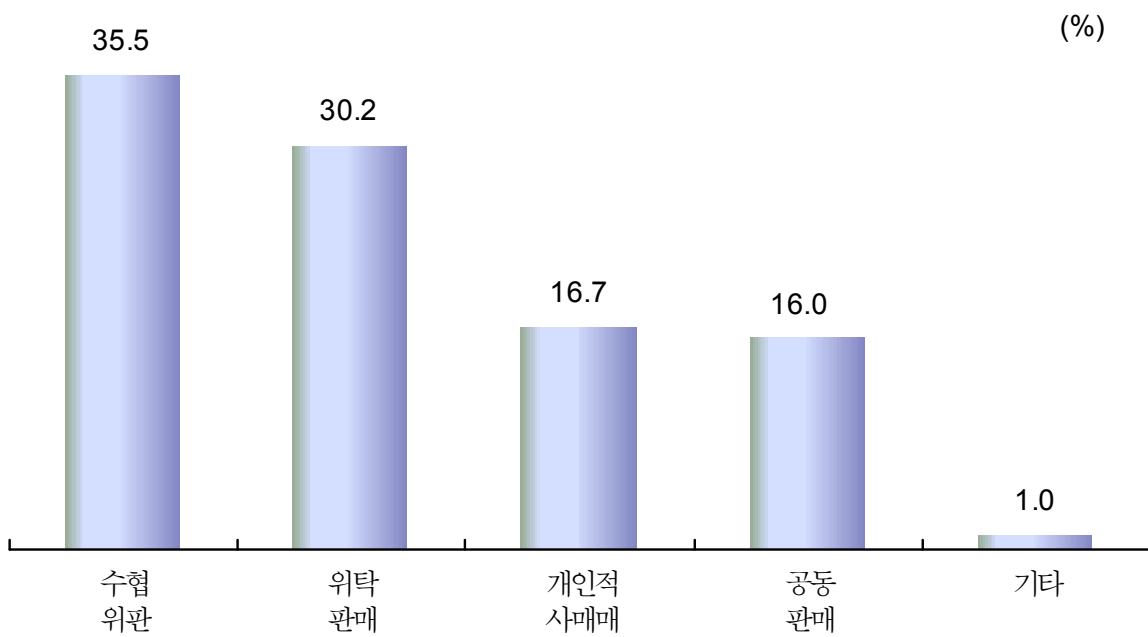
<표 2-11>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명)

	구 분	사 례 수	시 작 당 시	현 재	증 감
	전 체	420	72.5	77.0	+4.4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96.0	103.8	+7.8
	인 천 청	16	67.3	76.6	+9.3
	울 산 청	12	110.5	109.3	-1.3
	평 택 청	15	101.8	107.1	+5.3
	동 해 청	28	67.8	86.7	+18.9
	대 산 청	46	80.4	88.9	+8.5
	군 산 청	27	62.9	67.4	+4.5
	목 포 청	76	55.0	60.8	+5.8
	여 수 청	59	84.3	88.2	+3.9
	포 항 청	43	60.0	57.6	-2.4
	마 산 청	58	65.2	66.3	+1.1
	제 주 청	31	92.4	89.1	-3.3

라. 수산물 판매 경로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생산한 수산물은 35.5%의 공동체가 '수협위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중간도매인 및 객주 등 '위탁 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공동체는 30.2%, 개인적 매매를 활용하는 공동체는 16.7%, 공동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를 통해 판매하는 공동체는 16.0%로 나타났음



[그림 2-7] 수산물 판매 경로 - 자율관리공동체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특성별 분석 - 수산물 판매 경로

-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하는 공동체의 수산물 판매 경로를 실시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마을어업과 어선어업의 경우 수협위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양식어업과 복합어업의 경우 주로 위탁판매를 통해, 내수면 어업은 주로 개인적 매매를 통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수협위판	위탁판매	개인적사매매	공동판매	기타
전 체		420	35.5	30.2	16.7	16.0	1.7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38.7	31.2	13.4	14.0	2.7
	양 식 어 업	43	8.6	55.8	14.0	11.6	-
	어 선 어 업	63	61.9	9.5	20.6	7.9	-
	내 수 면 어 업	5	-	-	60.0	20.0	20.0
	복 합 어 업	123	24.4	31.7	18.7	24.4	0.8

- 시작년도별 수산물 판매 경로는 다음과 같음.

<표 2-13> 시작년도별 수산물 판매 경로

단위 : (%)

구 분		사례수	수협위판	위탁판매	개인적사매매	공동판매	기타
전 체		420	35.5	30.2	16.7	16.0	1.7
시작 연도별	2 0 0 1 년 도	55	36.4	29.1	14.5	18.2	1.8
	2 0 0 2 년 도	58	36.2	34.5	13.8	15.5	-
	2 0 0 3 년 도	55	36.4	27.3	14.5	21.8	-
	2 0 0 4 년 도	84	29.8	33.3	21.4	13.1	2.4
	2 0 0 5 년 도	99	35.4	33.3	18.2	12.1	1.0
	2 0 0 6 년 도	69	40.6	21.7	14.5	18.8	4.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담당지방청별로는 제주청, 부산청, 울산청, 동해청, 마산청 관할 지역의 경우 수협 위판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2-14> 담당지방청별 수산물 판매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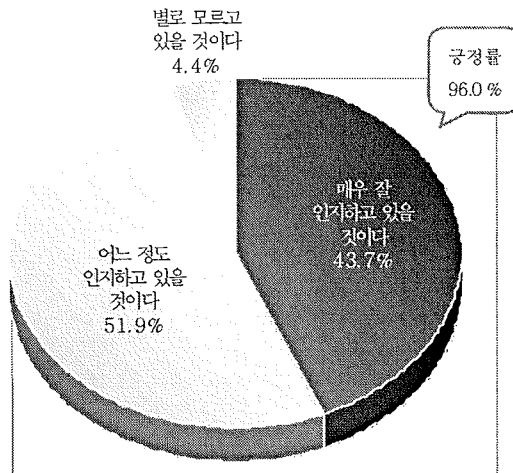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수협위판	위탁판매	개인적사매매	공동판매	기타
전 체		420	35.5	30.2	16.7	16.0	1.7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66.7	11.1	22.2	-	-
	인 천 청	16	25.0	31.3	25.0	18.8	-
	울 산 청	12	66.7	-	16.7	16.7	-
	평 택 청	15	33.3	33.3	6.7	26.7	-
	동 해 청	28	57.1	14.3	7.1	21.4	-
	대 산 청	46	21.7	26.1	21.7	26.1	4.3
	군 산 청	27	14.8	33.3	48.1	-	3.7
	목 포 청	76	21.1	44.7	18.4	14.5	1.3
	여 수 청	59	20.3	40.7	18.6	18.6	1.7
	포 향 청	43	20.9	37.2	16.3	20.9	4.7
	마 산 청	58	51.7	25.9	6.9	15.5	-
제 주 청	31	93.5	6.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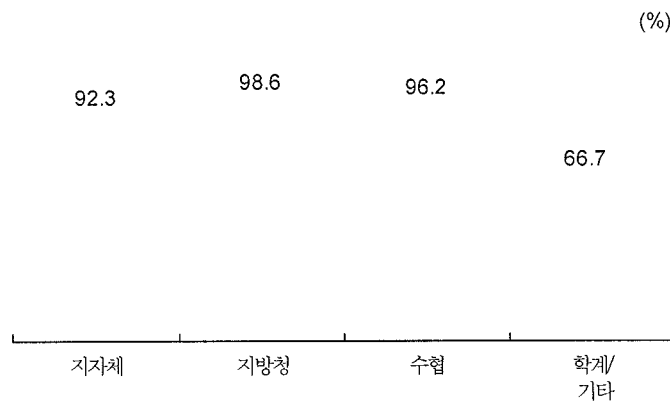
2. 자율관리어업 효과 평가

가. 공동체 대표자의 자율관리어업 인식 수준 평가

- 자율관리어업 관련 기관 및 관련 학계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대표자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평가한 결과, 96.0%가 어느 정도 이상은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43.4%의 대표자는 매우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별로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4.0%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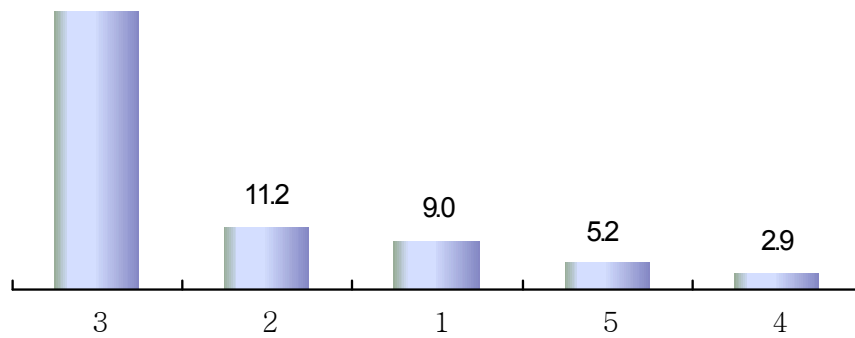
[그림 2-8] 자율관리어업 인지 여부 - 관련기관/전문가



[그림 2-9] 소속기관별 인지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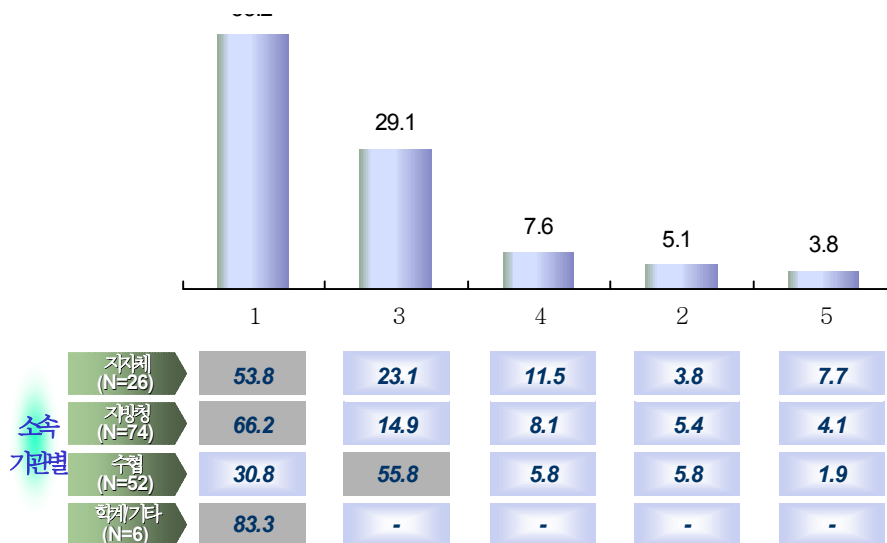
나.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

○ 자율관리 공동체의 경우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로 '자율관리어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자발적으로 조성되어 참여되었다'는 의견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시/도, 시/군 또는 해양수산 사무소가 권해서', '정부 지원 때문에' 라는 의견이 각각 11.2%, 9.0%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경우 53.2%가 '정부지원' 요인으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평가하여 두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음.



1. 정부의 지원 때문에
2. 시·도·시군 또는 해양수산 사무소가 권해서
3.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업인 간에 자발적으로 조성되어
4. 다른 어촌계도 참가하는 만큼 우리 어촌계(또는 어촌체)만 손해 볼 수 없다는 생각에
5. 공동체 대표자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그림 2-10]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 - 자율관리공동체



[그림 2-11]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 - 관련기관/전문가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

- 실시 분야별로 참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업인 간에 자발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내수면 어업의 경우 '시/도 · 시/군 또는 해양수산사무소가 권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표 2-15>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3	2	1	5	4
전 체		420	71.2	11.2	9.0	5.2	2.9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71.0	9.7	11.3	7.8	3.2
	양 식 어 업	43	67.4	7.0	14.0	7.0	4.7
	어 선 어 업	63	81.0	9.5	4.8	-	3.2
	내 수 면 어 업	5	60.0	40.0	-	-	-
	복 합 어 업	123	68.3	14.6	6.5	8.1	1.6

- 시작년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2-16>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3	2	1	5	4
전 체		420	71.2	11.2	9.0	5.2	2.9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70.9	18.2	5.5	3.6	1.8
	2002년도	58	63.8	19.0	6.9	5.2	3.4
	2003년도	55	70.9	18.2	7.3	1.8	1.8
	2004년도	84	70.2	9.5	9.5	6.0	3.6
	2005년도	99	72.7	5.1	13.1	6.1	3.0
	2006년도	69	76.8	4.3	8.7	7.2	2.9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담당지방청별 분석 결과도 '자발적인 참여'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군산청 관할 지역에서는 '시/도 · 시/군 또는 해양수산사무소가 권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17>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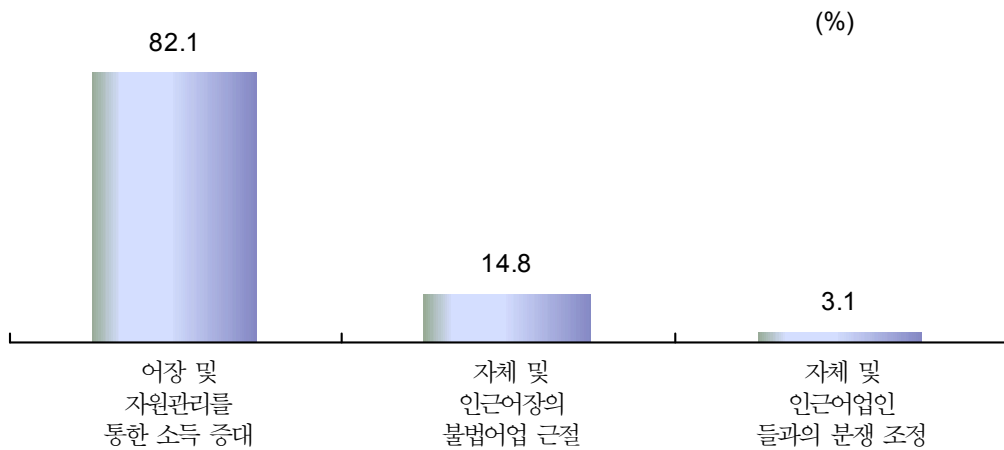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3	2	1	5	4
전 체		420	71.2	11.2	9.0	5.2	2.9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66.7	-	11.1	-	22.2
	인 천 청	16	62.5	18.8	12.5	-	-
	울 산 청	12	58.3	33.3	-	8.3	-
	평 택 청	15	93.3	-	-	6.7	-
	동 해 청	28	89.3	7.1	-	-	-
	대 산 청	46	78.3	8.7	10.9	2.2	-
	군 산 청	27	44.4	48.1	-	3.7	3.7
	목 포 청	76	68.4	5.3	15.8	6.6	3.9
	여 수 청	59	67.8	11.9	8.5	8.5	3.4
	포 향 청	43	72.1	9.3	9.3	2.3	7.0
	마 산 청	58	70.7	10.3	5.2	12.1	1.7
제 주 청	31	80.6	-	19.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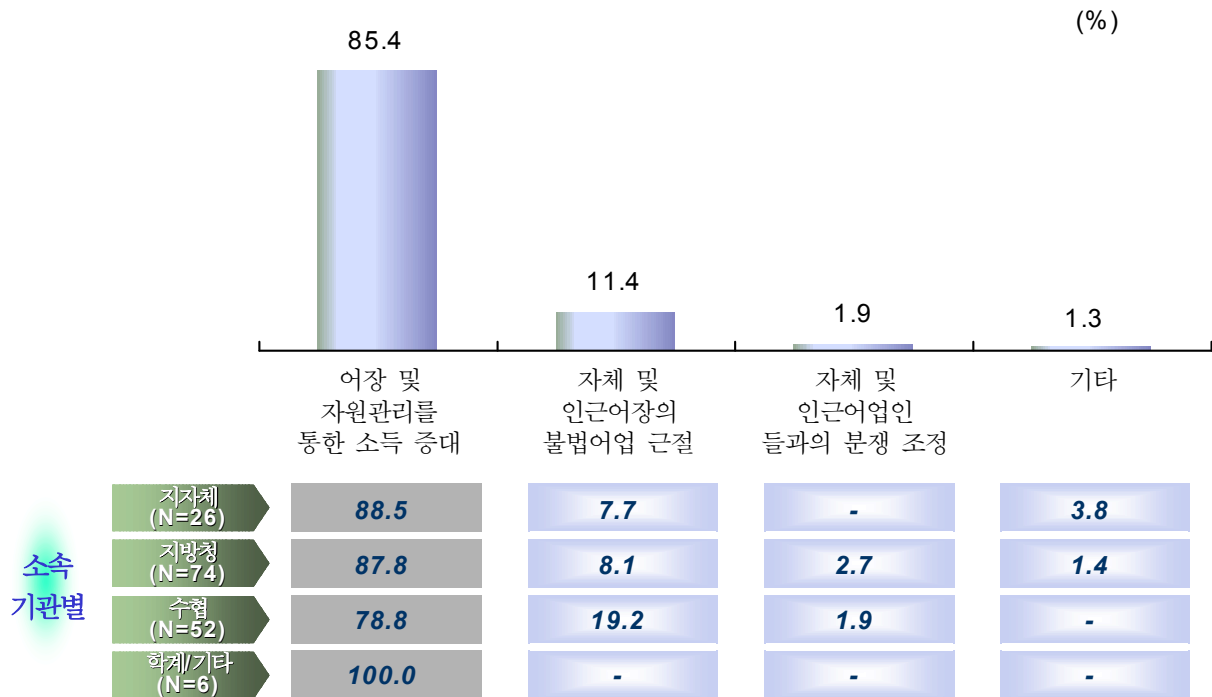
1. 정부의 지원 때문에
2. 시/도 · 시/군 또는 해양수산사무소가 권해서
3.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업인 간에 자발적으로 조성되어
4. 다른 어촌계도 참가하는 만큼 우리 어촌계(또는 임의단체)만 손해 볼 수 없다는 생각에
5. 공동체 대표자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 자율관리어업 효용성에 대한 인식

-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용으로 자율관리 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 증대'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불법어업 근절'이나 '어업인들과의 분쟁 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지 않았음.



[그림 2-12] 자율관리어업 효용성에 대한 인식 - 자율관리공동체



[그림 2-13] 자율관리어업 효용성에 대한 인식 - 관련기관/전문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어업 효율성

- 자율관리어업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용에 대해 실시어업분야 공통적으로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증대'를 지적하였다.

<표 2-18>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 증대	자체 및 인근어장의 불법어업 근절	자체 및 인근 어업인 들과의 분쟁 조정
전 체		420	82.1	14.8	3.1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84.4	13.4	2.2
	양 식 어 업	43	83.7	11.6	4.7
	어 선 어 업	63	76.2	17.5	6.3
	내 수 면 어 업	5	100.0	-	-
	복 합 어 업	123	80.5	17.1	2.4

- 시작년도별 자율관리어업 참여의 효율성은 다음과 같음.

<표 2-19>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 증대	자체 및 인근어장의 불법어업 근절	자체 및 인근 어업인 들과의 분쟁 조정
전 체		420	82.1	14.8	3.1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83.6	14.5	1.8
	2002년도	58	81.0	15.5	3.4
	2003년도	55	80.0	14.5	5.5
	2004년도	84	84.5	14.3	1.2
	2005년도	99	75.8	21.2	3.0
	2006년도	69	89.9	5.8	4.3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자율관리어업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성에 대해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증대’를 꼽은 의견이 대부분인 가운데,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등의 관할 지역에서는 ‘자체 및 인근어장의 불법어업 근절’을 꼽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20>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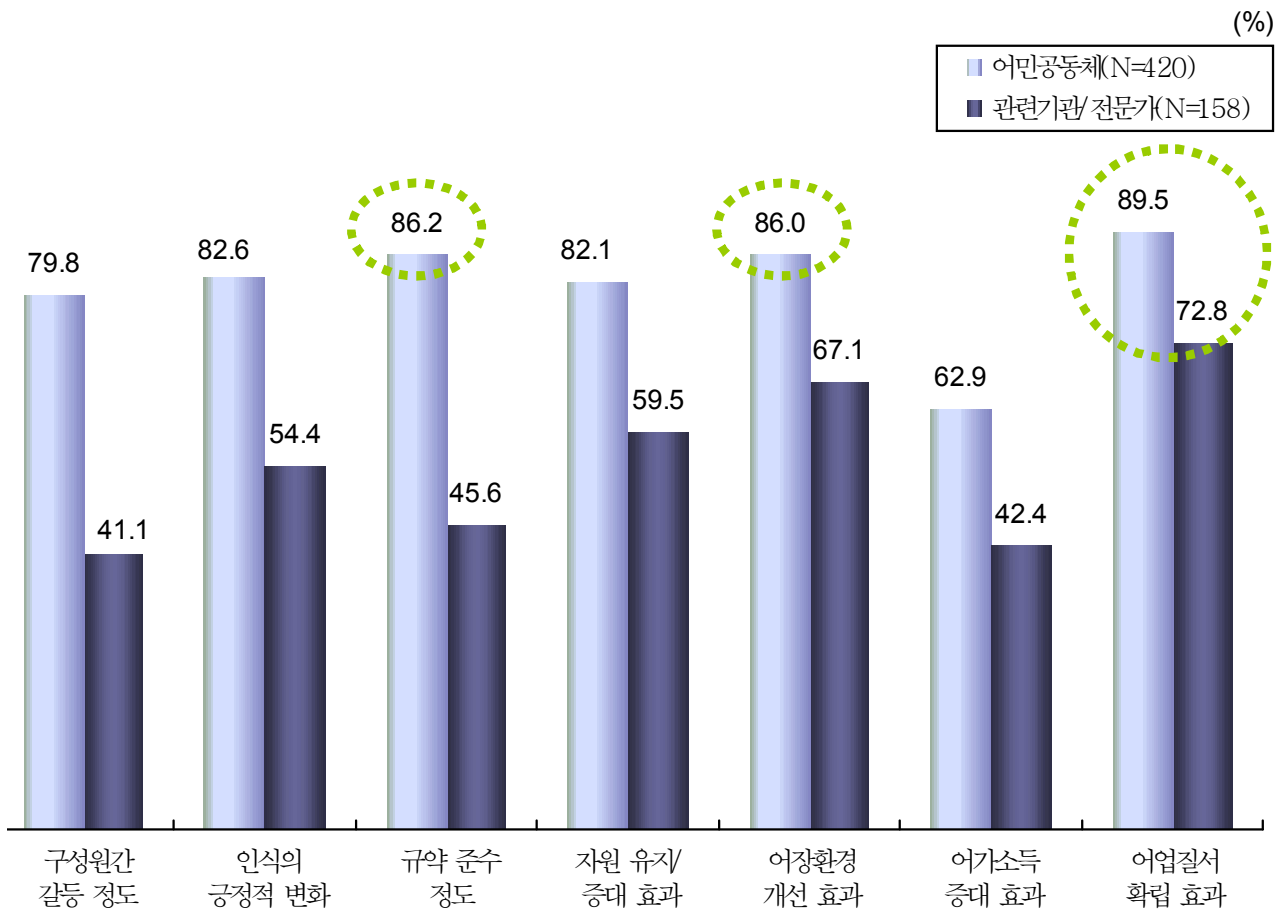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 증대	자체 및 인근어장의 불법어업 근절	자체 및 인근 어업인 들과의 분쟁 조정	
전 체	420	82.1	14.8	3.1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66.7	33.3	-
	인 천 청	16	68.8	25.0	6.3
	울 산 청	12	100.0	-	-
	평 택 청	15	100.0	-	-
	동 해 청	28	92.9	3.6	3.6
	대 산 청	46	91.3	6.5	2.2
	군 산 청	27	74.1	18.5	7.4
	목 포 청	76	88.2	9.2	2.6
	여 수 청	59	72.9	25.4	1.7
	포 향 청	43	93.0	7.0	-
	마 산 청	58	69.0	25.9	5.2
	제 주 청	31	74.2	19.4	6.5

라. 자율관리어업 측면별 평가

1) 공통 문항

- 제시된 9개 공통 측면별 평가 결과, 전 측면에 걸쳐 자율관리 공동체의 경우 80% 전후의 높은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관련기관 및 전문가 평가 역시 50% 내외의 보통 수준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음. 두 집단의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율관리공동체 평가가 관련기관 및 전문가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어업질서 확립 효과 측면의 평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약 준수 정도, 어장환경 개선 효과도 타 측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림 2-14] 자율관리어업 측면별 평가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어업 측면별 평가

- 자율관리어업 관련 9개 측면에 대해 평가한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실시 분야 중 어선어업에서 ‘어가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긍정 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1>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구성원 관심도	구성원 참여도/ 관심도	구성원 갈등 정도	인식의 긍정적 변화	규약 준수 정도	자원 유지/ 증대 효과	어장 환경 개선 효과	어가 소득 증대 효과	어업 질서 확립 효과
전 체		420	79.3	82.4	79.8	82.6	86.2	82.1	86.0	62.9	89.5
실시 분야별	마을 어업	186	80.6	83.3	81.7	78.0	88.2	79.6	83.9	65.1	92.5
	양식 어업	43	81.4	81.4	74.4	93.0	88.4	76.7	88.4	51.2	90.7
	어선 어업	63	74.6	73.0	85.7	84.1	79.4	77.8	77.8	46.0	81.0
	내수면 어업	5	60.0	80.0	80.0	100.0	80.0	100.0	100.0	100.0	80.0
	복합 어업	123	79.7	86.2	75.6	84.6	86.2	89.4	91.9	70.7	89.4

- 시작년도별 자율관리어업 측면별 평가는 다음과 같음.

<표 2-22> 지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구성원 관심도	구성원 참여도/ 관심도	구성원 갈등 정도	인식의 긍정적 변화	규약 준수 정도	자원 유지/ 증대 효과	어장 환경 개선 효과	어가 소득 증대 효과	어업 질서 확립 효과
전 체		420	79.3	82.4	79.8	82.6	86.2	82.1	86.0	62.9	89.5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81.8	87.3	78.2	80.0	89.1	89.1	90.9	76.4	94.5
	2002년도	58	70.7	74.1	74.1	69.0	77.6	86.2	86.2	58.6	86.2
	2003년도	55	78.2	85.5	76.4	80.0	89.1	81.8	81.8	67.3	83.6
	2004년도	84	81.0	79.8	84.5	85.7	88.1	83.3	85.7	66.7	85.7
	2005년도	99	83.8	86.9	81.8	88.9	88.9	77.8	86.9	57.6	92.9
	2006년도	69	76.8	79.7	79.7	85.5	82.6	78.3	84.1	55.1	92.8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담당지방청별로는 인천청 관할 지역에서 '구성 원간 갈등 정도'와 '어업 질서 확립 효과' 측면이, 제주청 관할 지역에서는 '어장 환경 개선 효과'와 '어가 소득 증대 효과' 측면에서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3> 지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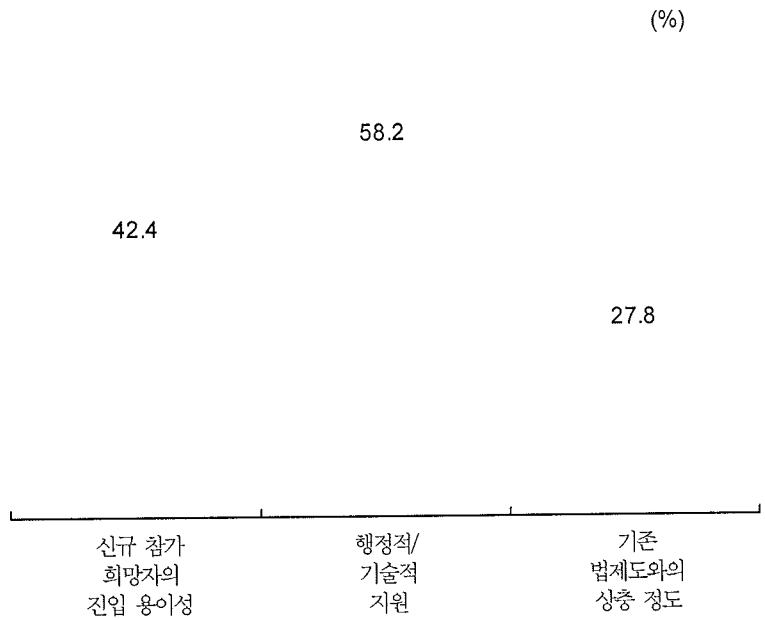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구성원 관심도	구성원 참여도 /관심도	구성원 갈등 정도	인식의 긍정적 변화	규약 준수 정도	자원 유지/ 증대 효과	어장 환경 개선 효과	어가 소득 증대 효과	어업 질서 확립 효과	
전 체	420	79.3	82.4	79.8	82.6	86.2	82.1	86.0	62.9	89.5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77.8	88.9	66.7	88.9	66.7	88.9	100.0	55.6	100.0
	인 천 청	16	62.5	62.5	43.8	50.0	62.5	81.3	87.5	56.3	50.0
	울 산 청	12	66.7	66.7	75.0	83.3	75.0	66.7	75.0	66.7	75.0
	평 택 청	15	73.3	86.7	53.3	86.7	86.7	100.0	86.7	73.3	100.0
	동 해 청	28	67.9	75.0	96.4	85.7	71.4	92.9	92.9	64.3	89.3
	대 산 청	46	76.1	78.3	71.7	89.1	80.4	87.0	97.8	73.9	91.3
	군 산 청	27	92.6	92.6	100.0	92.6	88.9	92.6	96.3	96.3	100.0
	목 포 청	76	77.6	77.6	72.4	86.8	90.8	85.5	86.8	63.2	89.5
	여 수 청	59	86.4	91.5	84.7	89.8	96.6	83.1	93.2	64.4	98.3
	포 향 청	43	74.4	74.4	67.4	67.4	79.1	81.4	81.4	69.8	83.7
	마 산 청	58	82.8	87.9	91.4	91.4	93.1	74.1	86.2	53.4	87.9
제 주 청	31	90.3	93.5	100.0	54.8	93.5	58.1	41.9	19.4	90.3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2) 단독 문항 - 관련기관/전문가

- 관련기관/전문가 집단에게 질문한 3개 단독 문항 중 정부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평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존 법제도와와의 상충 정도 평가는 타 측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15] 자율관리어업 측면별 평가 - 관련기관/전문가 단독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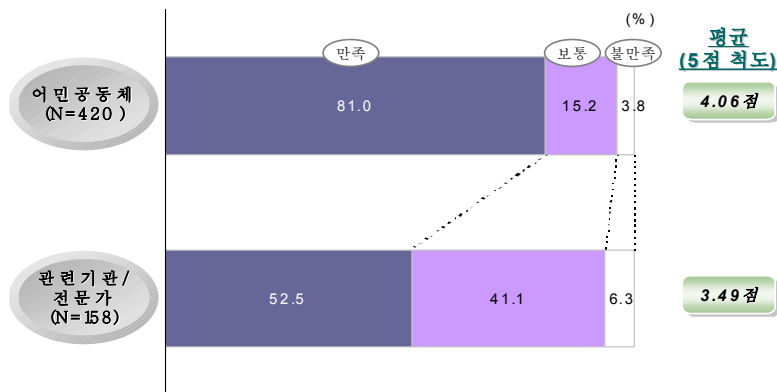
<표 2-24> 자율관리어업 측면별 평가 기관별 분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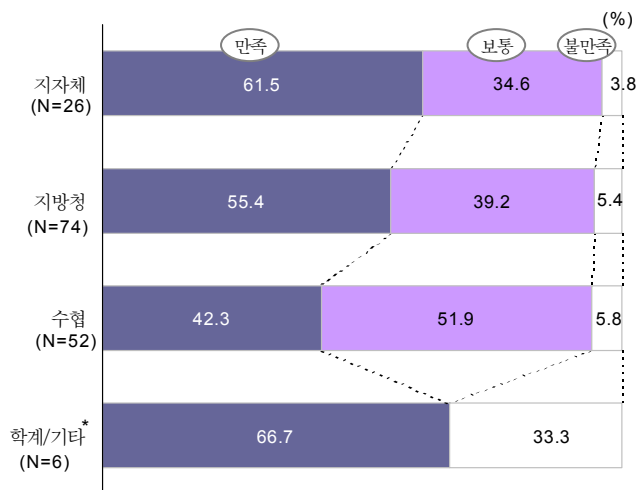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신규 참가 희망자의 진입 용이성	행정적/ 기술적 지원	기존 법제도와와의 상충 정도
전 체	158	42.4	58.2	27.8
지 자 체	26	46.2	65.4	19.2
지 방 청	74	55.4	77.0	39.2
수 협	52	25.0	26.9	13.5
학 계 / 기 타	6	16.7	66.7	50.0

마. 자율관리어업 전반적 평가

- 자율관리어업의 전반적 평가 결과, 자율관리공동체 81.0%, 관련기관/전문가 52.5%가 긍정 평가를 한 반면, 자율관리 공동체 3.8%, 관련기관/전문가 6.3%만이 부정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자율관리어업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관련기관/전문가 대비 자율관리 공동체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관련기관/전문가 집단 중 수협이 평가가 타 기관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정적인 평가라기보다는 평가를 유보하는 것으로 보여 짐



[그림 2-16] 자율관리어업 전반적 평가 - 자율관리공동체



* 사례수 적음에 유의하여 해석할 것

[그림 2-17] 자율관리어업 전반적 평가 - 관련기관/전문가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어업 전반적 평가

- 자율관리 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 실시 분야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25>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점)
전 체		420	81.0	15.2	3.8	4.06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81.2	14.5	4.3	4.08
	양 식 어 업	43	83.7	11.6	4.7	3.98
	어 선 어 업	63	73.0	20.6	6.3	3.78
	내 수 면 어 업	5	100.0	-	-	4.20
	복 합 어 업	123	82.9	15.4	1.6	4.21

- 시작년도별 자율관리어업 전반적 평가는 다음과 같음

<표 2-26>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점)
전 체		420	81.0	15.2	3.8	4.06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80.0	12.7	7.3	4.02
	2002년도	58	74.1	20.7	5.2	3.97
	2003년도	55	83.6	14.5	1.8	4.16
	2004년도	84	83.3	10.7	6.0	4.04
	2005년도	99	81.8	17.2	1.0	4.13
	2006년도	69	81.2	15.9	2.9	4.0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관리 어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청, 부산청 관할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27>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점)
전 체		420	81.0	15.2	3.8	4.06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66.7	22.2	11.1	3.67
	인 천 청	16	81.3	12.5	6.3	3.18
	울 산 청	12	66.7	25.0	8.3	3.67
	평 택 청	15	86.7	6.7	6.7	4.27
	동 해 청	28	78.6	10.7	10.7	3.86
	대 산 청	46	87.0	10.9	2.2	4.26
	군 산 청	27	88.9	3.7	7.4	4.04
	목 포 청	76	82.9	15.8	1.3	4.17
	여 수 청	59	86.4	10.2	3.4	4.22
	포 향 청	43	74.4	20.9	4.7	3.91
	마 산 청	58	84.5	13.8	1.7	4.21
	제 주 청	31	61.3	38.7	-	3.65

- 어가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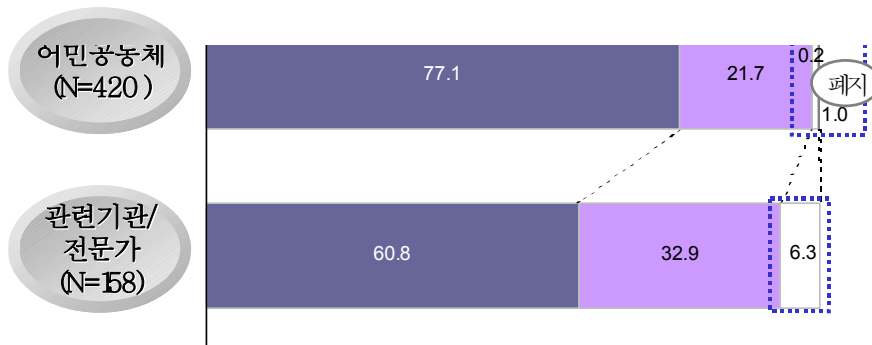
<표 2-27-1> 어가 소득별 분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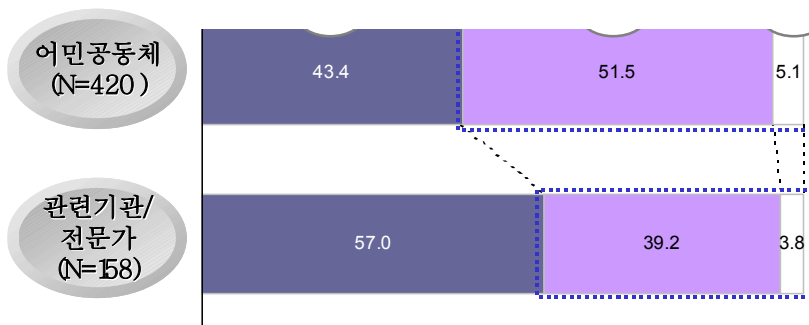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점)
전 체		420	81.0	15.2	3.8	4.06
가구 소득별	2천만 원 미만	176	76.1	18.2	5.7	4.01
	2천~3천만 원 미만	115	79.1	16.5	4.3	4.03
	3천만 원	126	88.9	10.3	0.8	4.15

바. 향후 자율관리어업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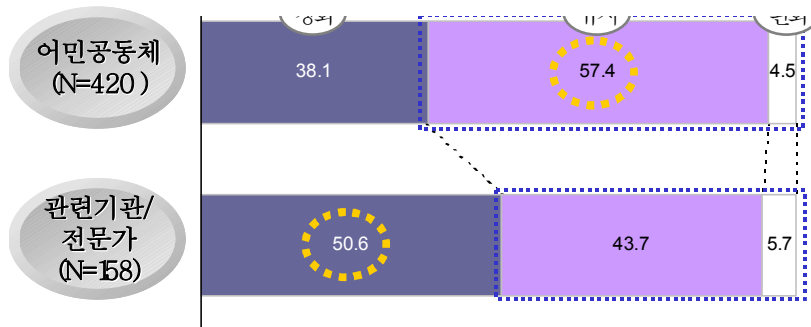
- 향후 자율관리어업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자율관리어업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자율관리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또한, 자율관리어업의 구성원 수는 현재 규모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소 많은 가운데, 확대하자는 의견도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반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규약에 대해서 자율관리공동체는 현상 유지, 관련기관/전문가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음.



[그림 2-18] 향후 자율관리어업 추진 방안 - 사업규모



[그림 2-19] 향후 자율관리어업 추진 방안 - 구성원



[그림 2-20] 향후 자율관리어업 추진 방안 - 규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사업규모 측면에서의 향후 추진방안

- 실시 분야 공통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내수면어업의 경우 현 규모를 유지하자는 비율이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8> 사업규모 :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 체		420	77.1	21.7	1.0	0.2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80.6	18.8	-	0.5
	양 식 어 업	43	67.4	27.9	4.7	-
	어 선 어 업	63	76.2	22.2	1.6	-
	내 수 면 어 업	5	60.0	40.0	-	-
	복 합 어 업	123	76.4	22.8	0.8	-

- 시작년도별로는 2001~2002년 시작한 공동체의 현 규모 유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9> 사업규모 :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확대	유지	축소	폐지
전 체		420	77.1	21.7	1.0	0.2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60.0	36.4	3.6	-
	2002년도	58	67.2	32.8	-	-
	2003년도	55	81.8	18.2	-	-
	2004년도	84	77.4	21.4	-	1.2
	2005년도	99	87.9	10.1	2.0	-
	2006년도	69	79.7	20.3	-	-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담당지방청별 분석 결과 역시, 사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많은 가운데, 인천청 관할 지역 공동체의 경우 현 규모 유지 의견 비율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0> 사업규모 :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확 대	유 지	축 소	폐 지	
전 체	420	77.1	21.7	1.0	0.2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100.0	0.0	-	-
	인 천 청	16	56.3	43.8	-	-
	울 산 청	12	83.3	16.7	-	-
	평 택 청	15	100.0	0.0	-	-
	동 해 청	28	71.4	28.6	-	-
	대 산 청	46	89.1	8.7	2.2	-
	군 산 청	27	74.1	22.2	3.7	-
	목 포 청	76	61.8	35.5	1.3	1.3
	여 수 청	59	79.7	20.3	-	-
	포 향 청	43	79.1	20.9	-	-
	마 산 청	58	86.2	12.1	1.7	-
	제 주 청	31	71.0	29.0	-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구성원 측면에서의 향후 추진방안

- 향후 공동체 구성원 규모에 대해서 마을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에서는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어선어업, 복합어업의 경우 확대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구성원 :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확대	유지	축소
전 체		420	48.8	49.5	1.7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43.0	54.8	2.2
	양 식 어 업	43	41.9	55.8	2.3
	어 선 어 업	63	65.1	34.9	-
	내 수 면 어 업	5	40.0	60.0	-
	복 합 어 업	123	52.0	46.3	1.6

- 시작년도별로는 2001~2004년도에 시작한 공동체의 경우 현 규모 유치를 주장하는 비율이 높고, 2005~2006년도에 시작한 공동체는 규모 확대를 주장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32> 구성원 :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확대	유지	축소
전 체		420	48.8	49.5	1.7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40.0	58.2	1.8
	2002년도	58	46.6	50.0	3.4
	2003년도	55	47.3	50.9	1.8
	2004년도	84	45.2	51.2	3.6
	2005년도	99	55.6	44.4	-
	2006년도	69	53.6	46.4	-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부산청, 인천청, 평택청, 대산청, 군산청, 아산청 관할 지역은 공동체 구성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울산청, 동해청, 목포청, 여수청, 포항청, 제주청 관할 지역은 현 규모를 유지하자는 의견 비율이 타 지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 구성원 :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확대	유지	축소	
전 체	420	48.8	49.5	1.7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u>77.8</u>	22.2	-
	인 천 청	16	<u>62.5</u>	31.3	6.3
	울 산 청	12	33.3	<u>58.3</u>	8.3
	평 택 청	15	<u>80.0</u>	20.0	-
	동 해 청	28	35.7	<u>60.7</u>	3.6
	대 산 청	46	<u>56.5</u>	43.5	-
	군 산 청	27	<u>51.9</u>	48.1	-
	목 포 청	76	46.1	<u>52.6</u>	1.3
	여 수 청	59	37.3	<u>61.0</u>	1.7
	포 항 청	43	44.2	<u>51.2</u>	4.7
	마 산 청	58	<u>56.9</u>	43.1	-
	제 주 청	31	41.9	<u>58.1</u>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규약 측면에서의 향후 추진방안

- 어선어업 분야를 제외한 전 실시 분야에서 자체 규약을 유지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어선어업 분야는 현재보다 강화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4> 규약 :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강화	유지	완화
전 체		420	38.1	57.4	4.5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34.4	60.8	4.8
	양 식 어 업	43	27.9	62.8	9.3
	어 선 어 업	63	54.0	42.9	3.2
	내 수 면 어 업	5	20.0	80.0	-
	복 합 어 업	123	39.8	56.9	3.3

- 시작년도별 자율관리어업 규약 관련 향후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2-35> 규약 :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강화	유지	완화
전 체		420	38.1	57.4	4.5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36.4	61.8	1.8
	2002년도	58	41.4	55.2	3.4
	2003년도	55	34.5	60.0	5.5
	2004년도	84	36.9	59.5	3.6
	2005년도	99	41.4	51.5	7.1
	2006년도	69	36.2	59.4	4.3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부산청, 평택청, 동해청, 대산청, 포항청 관할 지역은 자체 규약을 강화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인천청, 울산청, 군산청, 목포청, 여수청, 아산청, 제주청 관할 지역에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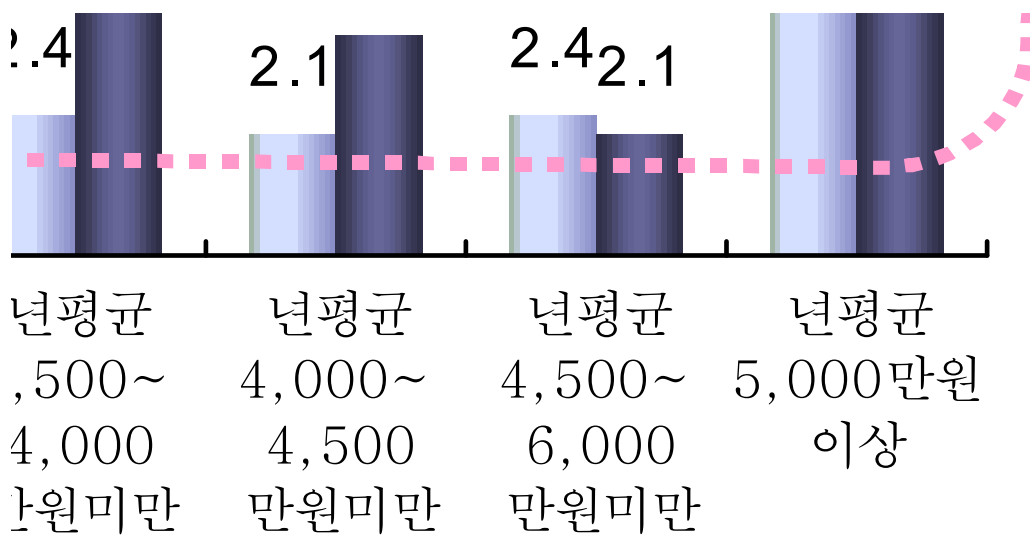
<표 2-36> 규약 :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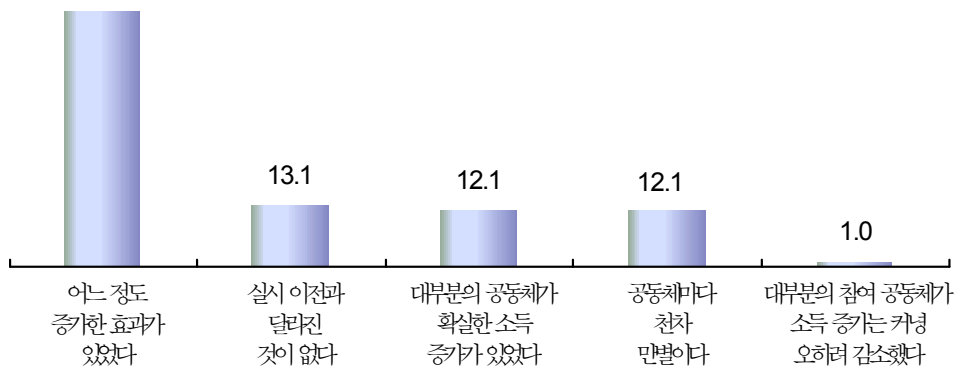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강화	유지	완화
전 체			420	38.1	57.4	4.5
담당 지방청	부	산	9	<u>55.6</u>	33.3	11.1
	인	천	16	37.5	<u>62.5</u>	-
	울	산	12	33.3	<u>66.7</u>	-
	평	택	15	<u>53.3</u>	46.7	-
	동	해	28	<u>57.1</u>	42.9	-
	대	산	46	<u>54.3</u>	41.3	4.3
	군	산	27	29.6	<u>70.4</u>	-
	목	포	76	26.3	<u>68.4</u>	5.3
	여	수	59	20.3	<u>69.5</u>	10.2
	포	항	43	<u>48.8</u>	41.9	9.3
	마	산	58	39.7	<u>56.9</u>	3.4
	제	주	31	38.7	<u>61.3</u>	-

사. 공동체 구성원 가구 소득 평가

○ 자율관리어업 참가 전/후의 어가 소득을 비교해 보면, 자율관리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음.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전에는 연평균 2,5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실시 이후에는 2,5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관련기관/전문가도 어느 정도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림 2-21] 공동체 구성원 가구 소득 평가 - 자율관리공동체



[그림 2-22] 공동체 구성원 가구 소득 평가 - 관련기관/전문가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특성별 분석 - 소득증감분

- 자율관리어업 참가 전/후의 어가 소득을 실시 분야별로 비교해 본 결과 양식어업 분야에서 가장 증가분이 낮았던 반면, 복합어업 분야에서 증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37>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감소	그대로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1,500만원 미만	1,500~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 체	420	8.3	45.5	2.9	19.8	11.0	6.9	5.0	387.1	
실시 분야별	마을어업	186	2.7	53.2	2.2	21.5	10.2	8.1	1.1	381.6
	양식어업	43	14.0	51.2	-	16.3	7.0	4.7	4.7	189.3
	어선어업	63	23.8	28.6	6.3	20.6	11.1	3.2	6.3	228.6
	내수면어업	5	-	40.0	-	40.0	-	-	20.0	250.0
	복합어업	123	7.3	40.7	3.3	17.1	13.8	8.1	9.8	552.5

- 시작년도별로 보면 2003년도 시작공동체의 소득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며, 2006년도 시작 공동체의 소득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38>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구 분	사례수	감소	그대로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1,500만원 미만	1,500~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 체	420	8.3	45.5	2.9	19.8	11.0	6.9	5.0	387.1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7.3	36.4	3.6	25.5	10.9	14.5	1.8	470.9
	2002년도	58	19.0	31.0	1.7	17.2	15.5	8.6	6.9	365.2
	2003년도	55	3.6	30.9	7.3	16.4	16.4	9.1	14.5	751.4
	2004년도	84	6.0	40.5	3.6	22.6	13.1	7.1	6.0	480.8
	2005년도	99	9.1	53.5	1.0	22.2	6.1	5.1	2.0	251.8
	2006년도	69	5.8	71.0	1.4	13.0	7.2	-	1.4	137.0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담당지방청 중 인천청 관할 지역의 소득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39>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구 분		사례수	감소	그대로	500 만원 미만	500~ 1,000 만원 미만	1,000~ 1,500 만원 미만	1,500~ 2,000 만원 미만	2,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 체		420	8.3	45.5	2.9	19.8	11.0	6.9	5.0	387.1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	33.3	-	11.1	22.2	22.2	-	746.9
	인 천 청	16	12.5	12.5	-	25.0	18.8	12.5	18.8	900.0
	울 산 청	12	-	66.7	-	16.7	8.3	8.3	-	291.7
	평 택 청	15	6.7	53.3	6.7	6.7	6.7	13.3	-	317.9
	동 해 청	28	10.7	25.0	-	28.6	28.6	7.1	-	499.1
	대 산 청	46	6.5	37.0	-	23.9	21.7	6.5	4.3	520.7
	군 산 청	27	11.1	11.1	22.2	22.2	3.7	18.5	11.1	593.0
	목 포 청	76	6.6	55.3	1.3	13.2	9.2	6.6	7.9	400.7
	여 수 청	59	6.8	49.2	1.7	27.1	6.8	3.4	5.1	342.2
	포 향 청	43	9.3	51.2	4.7	18.6	7.0	4.7	4.7	326.7
	마 산 청	58	15.5	37.9	1.7	24.1	10.3	5.2	3.4	267.0
	제 주 청	31	3.2	90.3	-	6.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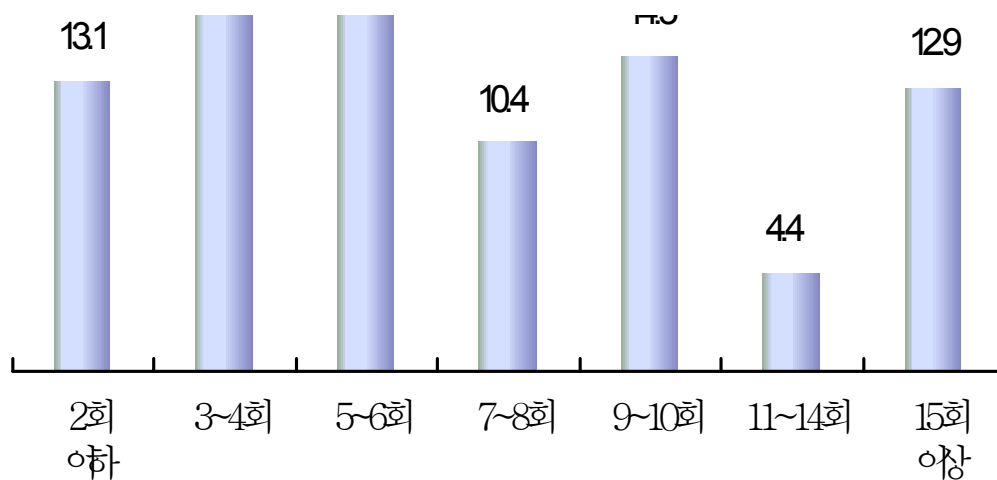
3. 교육 활동 평가

가. 자율관리어업 교육 경험

- 98.1%의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3~4회 정도의 교육을 받은 공동체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23] 자율관리어업 교육 경험 - 자율관리공동체



[그림 2-24] 자율관리어업 교육 경험 횟수 - 자율관리공동체(경험자 기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교육 경험 유무

<표 2-40>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험	비경험
전 체		420	98.1	1.9
실시 분야별	마을어업	186	99.5	0.5
	양식어업	43	97.7	2.3
	어선어업	63	96.8	3.2
	내수면어업	5	80.0	20.0
	복합어업	123	97.6	2.4

<표 2-41>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험	비경험
전 체		420	98.1	1.9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96.4	3.6
	2002년도	58	98.3	1.7
	2003년도	55	100.0	0.0
	2004년도	84	97.6	2.4
	2005년도	99	98.0	2.0
	2006년도	69	98.6	1.4

<표 2-42>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험	비경험
전 체		420	98.1	1.9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100.0	-
	인 천 청	16	81.3	18.8
	울 산 청	12	100.0	-
	평택청	15	100.0	-
	동해청	28	100.0	-
	대산청	46	95.7	4.3
	군산청	27	100.0	-
	목포청	76	98.7	1.3
	여수청	59	100.0	-
	포항청	43	100.0	-
	마산청	58	100.0	-
	제주청	31	93.5	6.5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특성별 분석 - 교육 경험 횟수

- 자율관리어업 관련 교육을 3~6회 정도 받은 공동체가 가장 많은 가운데, 복합어업 공동체의 교육 빈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3>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2회 이하	3~ 4회	5~ 6회	7~ 8회	9~ 10회	11~ 14회	15회 이상	평균 (회)
전 체		412	13.1	24.0	20.9	10.4	14.3	4.4	12.9	7.7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5	14.6	21.6	23.2	10.8	11.4	3.8	14.6	7.6
	양 식 어 업	42	14.3	19.0	11.9	19.0	31.0	2.4	2.4	6.7
	어 선 어 업	61	14.8	31.1	23.0	8.2	9.8	1.6	11.5	7.2
	내 수 면 어 업	4	25.0	-	25.0	25.0	-	25.0	-	6.5
	복 합 어 업	120	9.2	26.7	19.2	7.5	15.8	6.7	15.0	8.5

- 자율관리어업 참가 년수가 오래될수록 평균 교육 경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4>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2회 이하	3~ 4회	5~ 6회	7~ 8회	9~ 10회	11~ 14회	15회 이상	평균 (회)
전 체		412	13.1	24.0	20.9	10.4	14.3	4.4	12.9	7.7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5.7	13.2	15.1	5.7	24.5	7.5	28.3	12.7
	2002년도	58	10.5	19.3	22.8	5.3	15.8	1.8	24.6	8.9
	2003년도	55	12.7	16.4	23.6	5.5	21.8	9.1	10.9	8.1
	2004년도	84	6.1	25.6	22.0	7.3	18.3	6.1	14.6	8.0
	2005년도	99	13.4	27.8	24.7	19.6	7.2	2.1	5.2	5.9
	2006년도	69	29.4	35.3	14.7	13.2	4.4	1.5	1.5	4.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관리어업 교육경험 횟수를 담당지방청 특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동해청 관할 지역의 평균 교육 횟수는 11.8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부산청 관할 지역의 평균 교육 횟수는 각각 4.1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5>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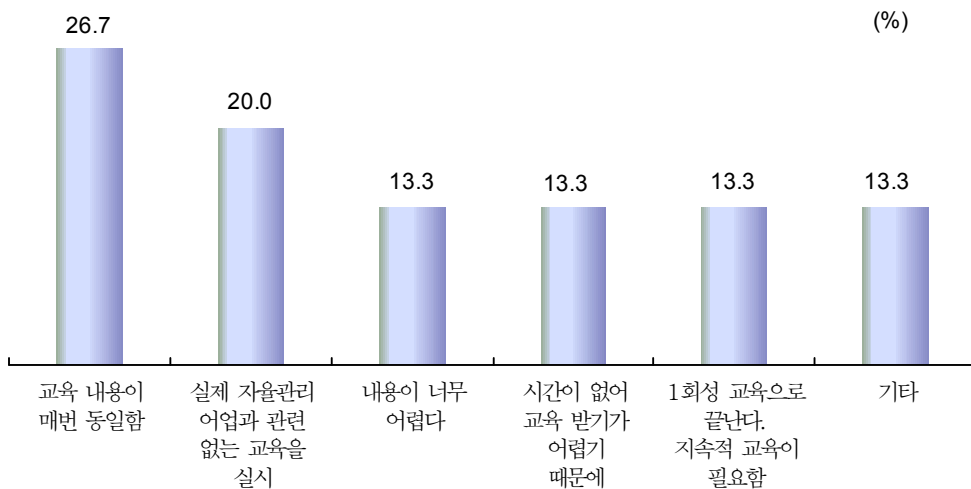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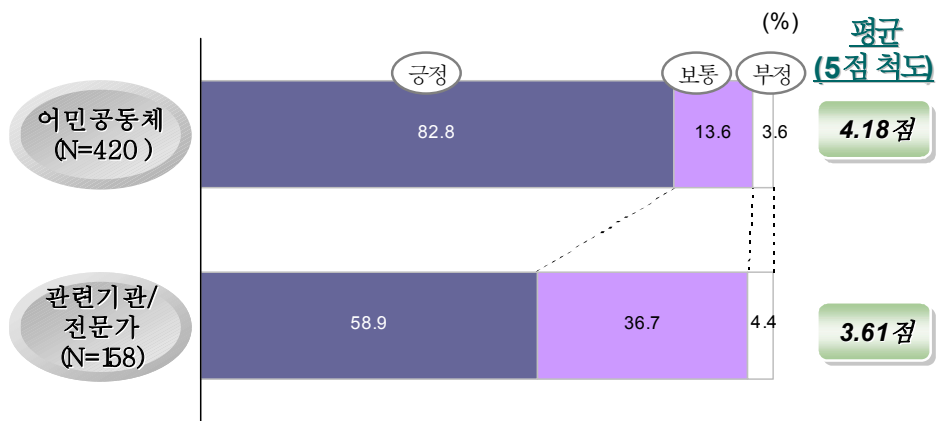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2회 이하	3~4회	5~6회	7~8회	9~10회	11~14회	15회 이상	평균 (회)
전 체		412	13.1	24.0	20.9	10.4	14.3	4.4	12.9	7.7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44.4	33.3	0.0	0.0	22.2	-	-	<u>4.1</u>
	인 천 청	16	15.4	38.5	15.4	0.0	23.1	7.7	-	5.7
	울 산 청	12	16.7	41.7	8.3	8.3	8.3	-	16.7	6.6
	평 택 청	15	13.3	20.0	20.0	6.7	20.0	-	20.0	9.5
	동 해 청	28	0.0	7.1	14.3	14.3	32.1	7.1	25.0	<u>11.8</u>
	대 산 청	46	18.2	31.8	15.9	11.4	9.1	6.8	6.8	6.3
	군 산 청	27	11.1	22.2	29.6	11.1	18.5	3.7	3.7	6.7
	목 포 청	76	14.7	21.3	20.0	14.7	14.7	2.7	12.0	7.3
	여 수 청	59	6.8	28.8	16.9	11.9	15.3	6.8	13.6	8.2
	포 항 청	43	14.0	25.6	16.3	2.3	11.6	9.3	20.9	8.5
마 산 청	58	6.9	20.7	31.0	12.1	10.3	1.7	17.2	8.7	
제 주 청	31	27.6	17.2	37.9	10.3	3.4	-	3.4	<u>4.6</u>	

나. 교육 효과 평가 및 부정 평가 이유

-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교육에 대해, 자율관리 공동체의 경우 82.8%, 관련기관/전문가의 경우 58.9%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여 실제 교육을 받는 어업인들이 인식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자율관리 공동체의 경우 '교육 내용이 매번 동일한 것'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어업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한 사례도 주요 불만사항으로 지적하였다.

<그림 2-25> 교육 효과 평가 - 자율관리공동체



* 사례수 적음에 유의하여 해석할 것

[그림 2-26] 부정 평가 이유 - 자율관리공동체(부정 평가자 기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교육 효과 평가

- 자율관리어업 관련 교육에 대해 실시 분야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표 2-46>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긍정	보통	부정	평균(점)
전 체		412	82.8	13.6	3.6	4.18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5	84.9	13.5	1.6	4.24
	양 식 어 업	42	81.0	4.8	14.3	4.00
	어 선 어 업	61	75.4	21.3	3.3	3.95
	내 수 면 어 업	4	100.0	-	-	4.50
	복 합 어 업	120	83.3	13.3	3.3	4.27

- 시작년도별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표 2-47>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긍정	보통	부정	평균(점)
전 체		412	82.8	13.6	3.6	4.18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79.2	15.1	5.7	4.19
	2002년도	58	80.7	15.8	3.5	4.19
	2003년도	55	92.7	5.5	1.8	4.27
	2004년도	84	80.5	17.1	2.4	4.18
	2005년도	99	81.4	15.5	3.1	4.20
	2006년도	69	83.8	10.3	5.9	4.09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담당지방청별 분석 결과, 전 관할 지역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산청과 군산청 관할 지역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48>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긍정	보통	부정	평균(점)
전 체		412	82.8	13.6	3.6	4.18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88.9	11.1	-	4.56
	인 천 청	16	84.6	7.7	7.7	3.92
	울 산 청	12	91.7	8.3	-	4.33
	평 택 청	15	86.7	13.3	-	4.40
	동 해 청	28	82.1	17.9	-	4.29
	대 산 청	46	84.1	13.6	2.3	4.18
	군 산 청	27	96.3	3.7	-	4.74
	목 포 청	76	78.7	13.3	8.0	4.04
	여 수 청	59	88.1	11.9	-	4.37
	포 향 청	43	74.4	18.6	7.0	4.00
	마 산 청	58	81.0	12.1	6.9	4.12
제 주 청	31	75.9	24.1	-	3.79	

- 자율관리어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경우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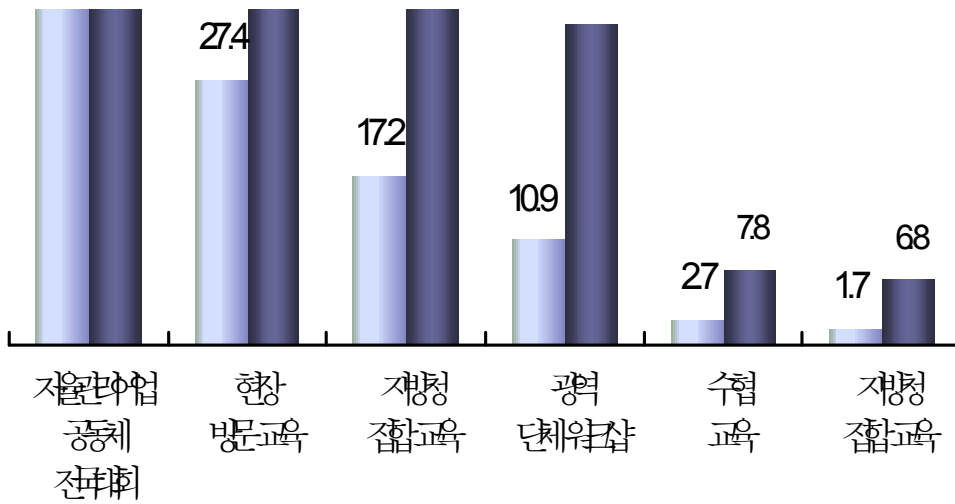
<표 2-48-1> 전반적 만족도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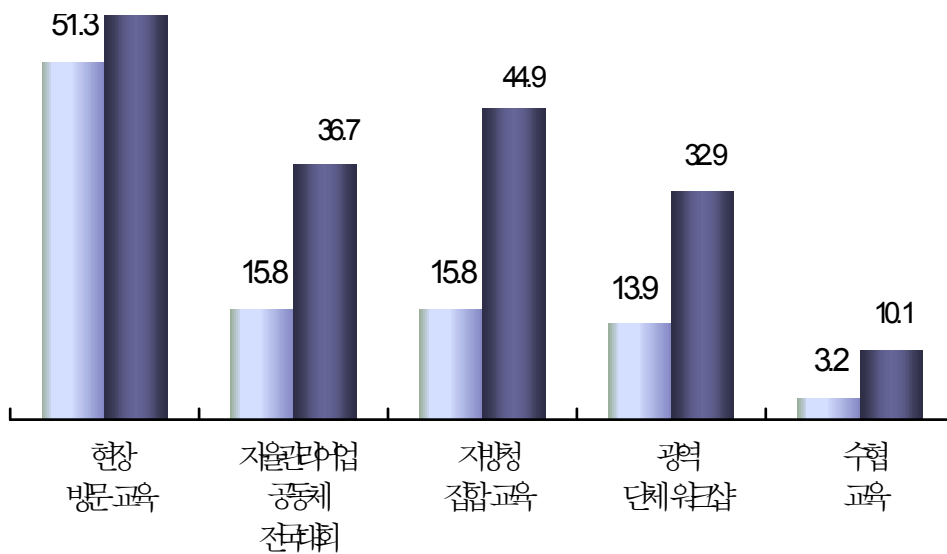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긍정	보통	부정	평균(점)
전 체		412	82.8	13.6	3.6	4.18
전반적 평가	긍 정	334	87.4	9.6	3.0	4.29
	보 통	62	61.3	32.3	6.5	3.66
	부 정	16	68.8	25.0	6.3	3.94

다. 선호 자율관리어업 교육 유형

○ 자율관리어업과 관련된 6가지 교육 중에서 어업인들은 ‘공동체 전국 대회’가, 관련기관/전문가는 ‘현장 방문 교육’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따라서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공동체 전국대회’, ‘현장 방문 교육’ 등 호응도가 좋은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비선호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7] 선호 자율관리어업 교육 유형 - 자율관리공동체



[그림 2-28] 선호 자율관리어업 교육 유형 - 관련기관/전문가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특성별 분석 - 선호 자율관리어업 교육 유형

- 자율관리어업 교육 중 마을어업, 어선어업, 복합어업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전국 대회’를,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공동체에서는 ‘현장방문 교육’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49>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중복응답)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율 관리어업 공동체 전국대회	현장 방문 교육	지방청 집합 교육	광역 단체 워크숍	수협 교육	지방청 집합 교육
전 체		412	56.6	44.2	37.9	33.0	7.8	6.8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5	63.8	45.4	37.8	26.5	9.2	7.0
	양 식 어 업	42	35.7	54.8	45.2	31.0	4.8	4.8
	어 선 어 업	61	47.5	39.3	41.0	42.6	4.9	6.6
	내 수 면 어 업	4	50.0	100.0	-	25.0	25.0	-
	복 합 어 업	120	57.5	39.2	35.0	39.2	7.5	7.5

- 시작년도별 선호 자율관리어업 교육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2-50>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중복응답)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율 관리어업 공동체 전국대회	현장 방문 교육	지방청 집합 교육	광역 단체 워크숍	수협 교육	지방청 집합 교육
전 체		412	56.6	44.2	37.9	33.0	7.8	6.8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47.2	22.6	13.2	11.3	0.0	1.9
	2002년도	58	42.1	21.1	15.8	17.5	3.5	0.0
	2003년도	55	38.2	29.1	14.5	12.7	3.6	0.0
	2004년도	84	34.1	28.0	25.6	4.9	2.4	2.4
	2005년도	99	35.1	35.1	14.4	7.2	2.1	2.1
	2006년도	69	35.3	23.5	17.6	16.2	4.4	2.9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담당지방청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공동체 전국대회’의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인천청 관할 지역은 ‘지방청 집합교육’을, 마산청과 제주청 관할 지역에서는 ‘현장방문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51>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중복응답) - 자율관리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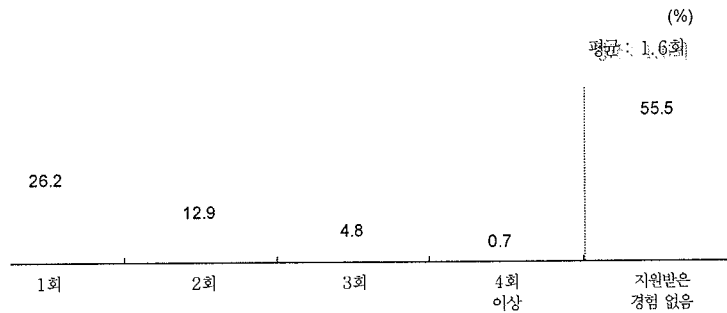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율 관리어업 공동체 전국대회	현장 방문 교육	지방청 집합 교육	광역 단체 워크숍	수협 교육	지방청 집합 교육	
전 체	412	56.6	44.2	37.9	33.0	7.8	6.8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55.6	-	-	44.4	-	-
	인 천 청	16	23.1	15.4	46.2	7.7	7.7	-
	울 산 청	12	50.0	8.3	33.3	-	8.3	-
	평 택 청	15	40.0	33.3	20.0	6.7	-	-
	동 해 청	28	35.7	21.4	17.9	25.0	-	-
	대 산 청	46	40.9	9.1	22.7	15.9	4.5	4.5
	군 산 청	27	29.6	22.2	-	25.9	7.4	7.4
	목 포 청	76	37.3	22.7	25.3	8.0	2.7	1.3
	여 수 청	59	50.8	22.0	15.3	10.2	1.7	-
	포 향 청	43	48.8	16.3	11.6	9.3	2.3	4.7
	마 산 청	58	25.9	50.0	17.2	3.4	1.7	-
제 주 청	31	20.7	79.3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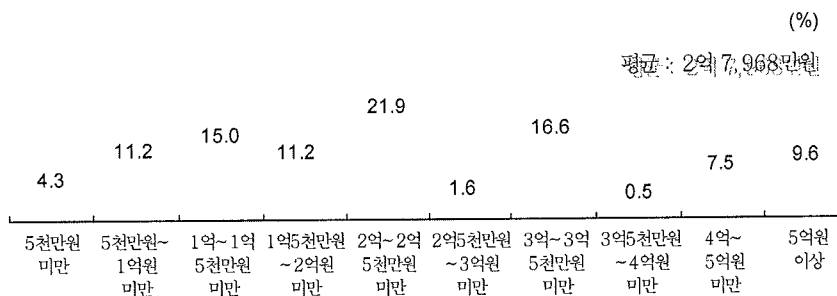
4. 정부지원사업 평가

가. 정부지원사업 경험 /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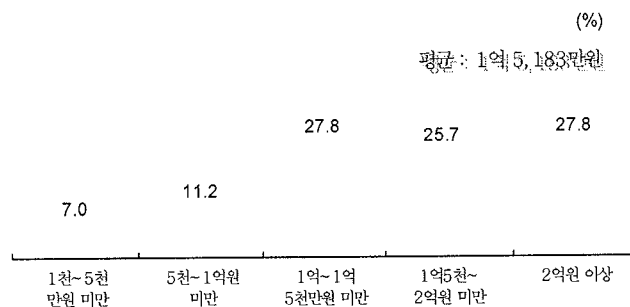
○ 전체 공동체의 44.5%가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운데, 그 중 1회 지원 받은 공동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원 규모는 평균 1회당 1억 5천만 원으로 누적 금액으로 총 2억 8천만 원 정도를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전혀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공동체도 55.5%로 조사되었음.



[그림 2-29] 정부지원사업 경험 - 자율관리공동체



[그림 2-30] 정부지원사업 금액 - 누적(경험자 기준)



[그림 2-31] 정부지원사업 금액 - 1회당(누적)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정부지원사업 경험/누적 금액/1회당 금액

- '마을어업' 공동체의 정부 지원 횟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회당 금액으로 보면 '양식어업' 공동체의 지원 금액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 2-52>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구 분		정부지원 경험 횟수 (회)	정부지원 경험 누적금액 (백만 원)	정부지원 경험 1회당 금액 (백만 원)
전 체		1.6	227.42	151.83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	241.67	148.17
	양 식 어 업	1.4	227.50	163.00
	어 선 어 업	1.2	175.20	148.40
	내 수 면 어 업	-	-	-
	복 합 어 업	1.5	229.30	154.76

- 시작년도별 정부지원사업 경험/누적금액/1회당 금액은 다음과 같음.

<표 2-53>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구 분		정부지원 경험 횟수 (회)	정부지원 경험 누적금액 (백만 원)	정부지원 경험 1회당 금액 (백만 원)
전 체		1.6	227.42	151.83
시작 연도별	2001년도	1.8	270.57	170.12
	2002년도	1.5	224.58	143.19
	2003년도	1.7	249.67	152.74
	2004년도	1.2	191.43	171.75
	2005년도	1.3	115.00	110.63
	2006년도	1.1	77.86	75.00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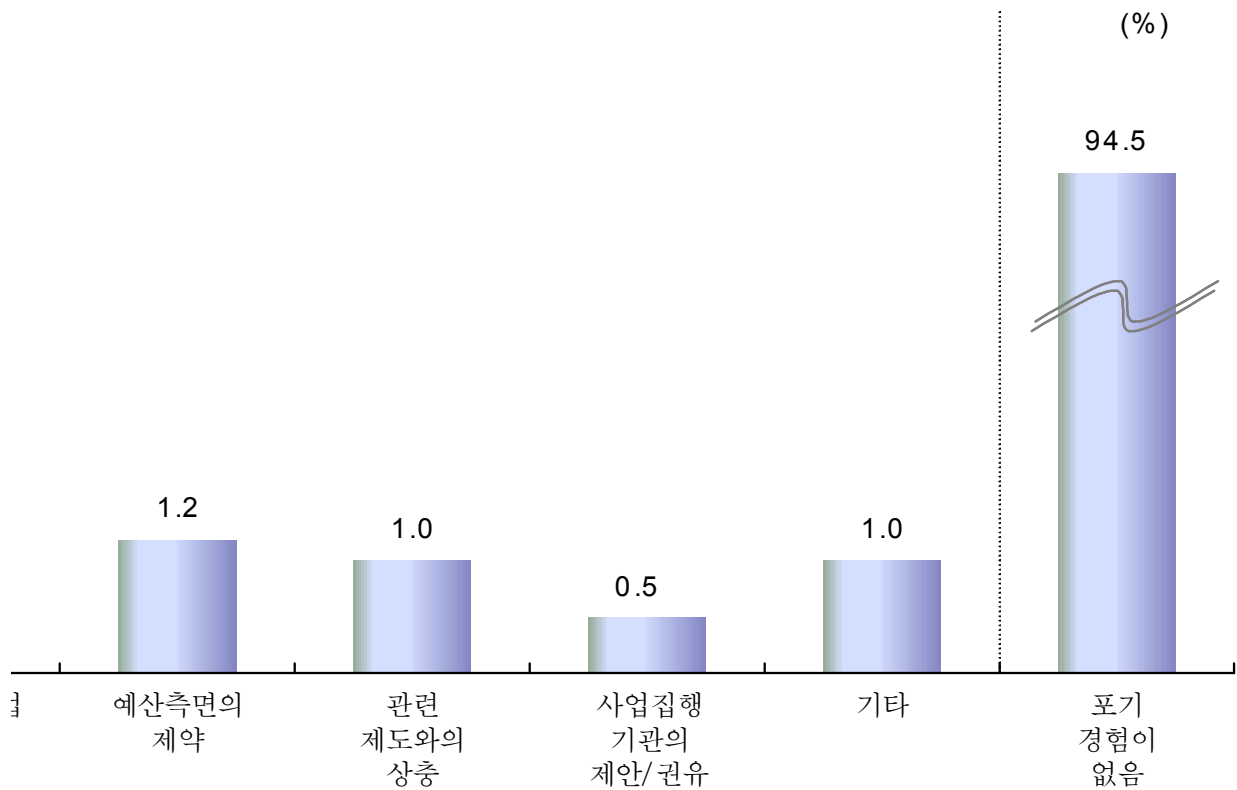
- 정부지원사업 경험에 대해 지역별로는 전체 누적금액이 평택청, 군산청 관할 지역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주청 관할 지역에서 전체 누적금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4>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구 분	정부지원 경험 횟수 (회)	정부지원 경험 누적금액 (백만 원)	정부지원 경험 1회당 금액 (백만 원)
	전 체	1.6	227.42	151.83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1.4	240.00	186.67
	인 천 청	1.2	168.18	135.00
	울 산 청	1.8	220.00	115.83
	평 택 청	1.7	290.00	208.89
	동 해 청	1.8	229.44	128.70
	대 산 청	1.5	251.15	170.71
	군 산 청	1.5	289.09	207.27
	목 포 청	1.5	229.03	146.13
	여 수 청	1.7	236.35	141.79
	포 향 청	1.6	270.50	196.33
	마 산 청	1.5	215.22	147.03
	제 주 청	1.9	136.11	98.98

나. 정부지원사업 포기/변경 이유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 94.5%는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2-32] 정부지원사업 포기/변경 이유 - 자율관리공동체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특성별 분석 - 정부지원사업 포기/변경 이유

- 실시 분야와 관계없이 정부지원사업을 포기/변경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식어업 공동체에서는 약 11% 정도가 지침 상의 제약이나 예산 측면 제약으로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55>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자율 관리사업 집행지침 상의 제약	예산 측면의 제약	관련 제도와 의 상충	사업집행 기관의 제안/ 권유	기 타	포기 경험 없음	
전 체	420	1.9	1.2	1.0	0.5	1.0	94.5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2.2	-	0.5	-	1.1	96.2
	양 식 어 업	43	4.7	4.7	2.3	-	-	88.4
	어 선 어 업	63	-	1.6	-	-	3.2	95.2
	내 수 면 어 업	5	-	-	-	-	-	100.0
	복 합 어 업	123	1.6	1.6	1.6	1.6	-	93.5

- 시작년도별로는 2002년도 시작 공동체의 포기/변경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6>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자율 관리사업 집행지침 상의 제약	예산 측면의 제약	관련 제도와 의 상충	사업집행 기관의 제안/ 권유	기 타	포기 경험 없음
전 체	420	1.9	1.2	1.0	0.5	1.0	94.5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1.8	-	5.5	-	92.7
	2002년도	58	3.4	6.9	-	6.9	82.8
	2003년도	55	1.8	-	-	1.8	96.4
	2004년도	84	2.4	-	1.2	-	96.4
	2005년도	99	-	1.0	-	-	99.0
	2006년도	69	2.9	-	-	1.4	95.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담당지방청별로 보면 부산청 관할 지역 공동체의 33%정도가, 인천청 관할 지역 공동체도 18%가 정도가 포기/변경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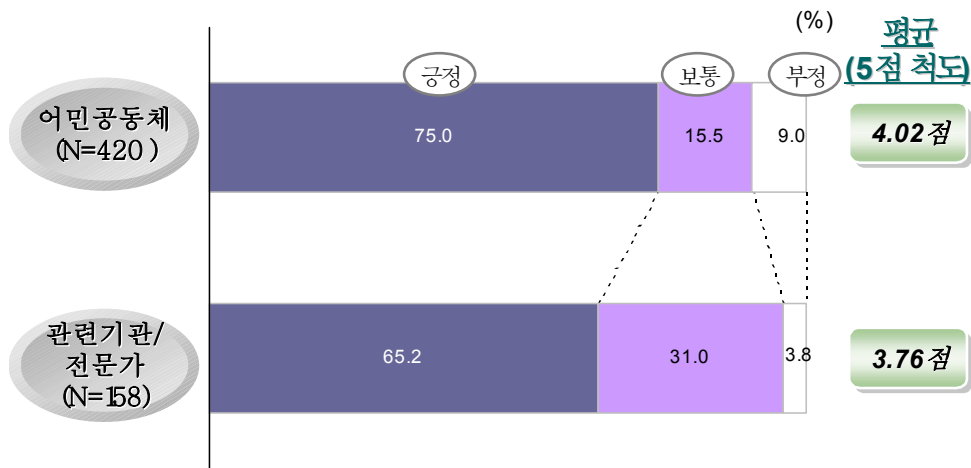
<표 2-57>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율 관리사업 집행지침 상의 제약	예산 측면의 제약	관련 제도와의 상충	사업집행 기관의 제안/ 권유	기타	포기 경험 없음	
전 체	420	1.9	1.2	1.0	0.5	1.0	94.5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11.1	11.1	11.1	-	-	66.7
	인 천 청	16	-	6.3	6.3	6.3	-	81.3
	울 산 청	11	-	-	-	-	-	100.0
	평 택 청	16	-	-	-	-	-	100.0
	동 해 청	28	-	-	-	-	3.6	96.4
	대 산 청	3	2.2	-	-	-	-	97.8
	군 산 청	42	-	-	-	-	-	100.0
	목 포 청	27	6.6	1.3	2.6	1.3	-	88.2
	여 수 청	135	1.7	-	-	-	-	98.3
	포 향 청	44	-	2.3	-	-	7.0	90.7
	마 산 청	58	-	1.7	-	-	-	98.3
제 주 청	31	-	-	-	-	-	100.0	

다. 정부지원사업 효과 평가

- 정부지원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자율관리 공동체 75.0%, 관련기관/전문가 65.2%로 두 집단 공통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자율관리공동체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교육 효과 평가의 두 집단 차이보다는 줄어들었으며, 특히 관련기관/전문가 평가는 교육 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정부지원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동체의 경우 지원 금액을 보다 올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3] 정부지원사업 효과 평가



[그림 2-34] 부정 평가 이유 - 자율관리공동체(부정 평가자 기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정부지원사업 효과 평가

-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복합어업 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어선 어업 공동체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8>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긍정	보통	부정	평균(점)
전 체		420	75.0	15.5	9.0	4.02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72.6	17.2	9.7	3.94
	양 식 어 업	43	79.1	11.6	9.3	4.07
	어 선 어 업	63	60.3	27.0	11.1	3.73
	내 수 면 어 업	5	80.0	-	20.0	3.80
	복 합 어 업	123	84.6	8.9	6.5	4.28

- 시작년도별로는 2006년 시작한 공동체의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9>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긍정	보통	부정	평균(점)
전 체		420	75.0	15.5	9.0	4.02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70.9	21.8	7.3	3.98
	2002년도	58	74.1	15.5	10.3	3.98
	2003년도	55	80.0	12.7	7.3	4.20
	2004년도	84	79.8	13.1	6.0	4.11
	2005년도	99	76.8	15.2	7.1	4.07
	2006년도	69	66.7	15.9	17.4	3.75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담당지방청별로는 부산청, 군산청, 여수청, 마산청 관할 지역의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포항청, 제주청, 인천청 관할 지역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60>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긍정	보통	부정	평균(점)
전 체		420	75.0	15.5	9.0	4.02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88.9	-	-	4.38
	인 천 청	16	62.5	12.5	18.8	3.80
	울 산 청	11	66.7	33.3	-	3.83
	평 택 청	16	73.3	20.0	6.7	4.07
	동 해 청	28	67.9	21.4	10.7	3.71
	대 산 청	3	71.7	15.2	13.0	3.91
	군 산 청	42	88.9	11.1	-	4.44
	목 포 청	27	81.6	11.8	6.6	4.26
	여 수 청	135	88.1	10.2	1.7	4.36
	포 항 청	44	55.8	20.9	23.3	3.37
	마 산 청	58	89.7	5.2	5.2	4.34
제 주 청	31	38.7	41.9	19.4	3.19	

- 지원 횟수가 많을수록 정부지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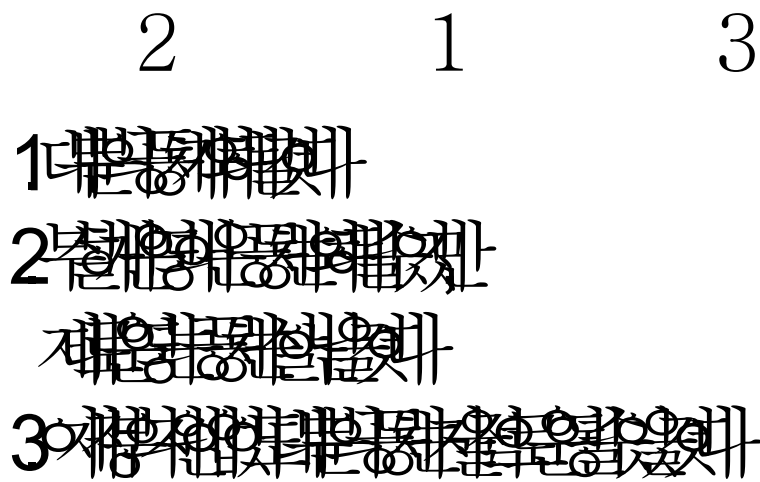
<표 2-60-1> 지원 횟수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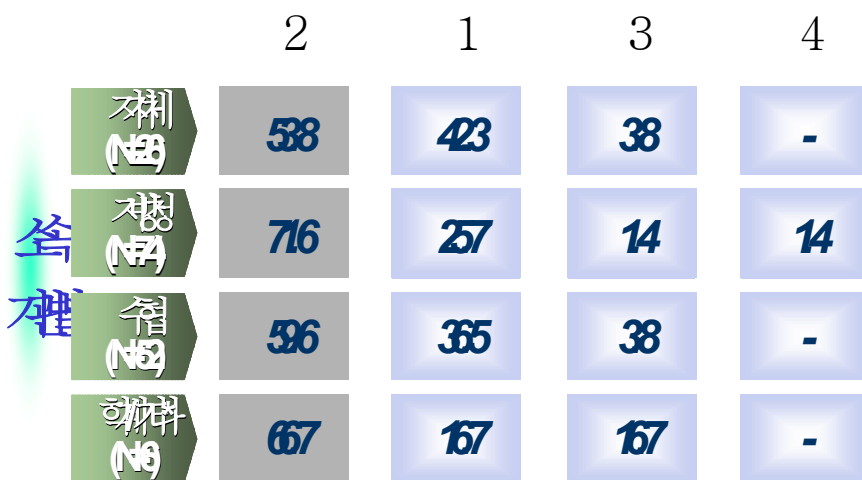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긍정	보통	부정	평균(점)
전 체		420	75.0	15.5	9.0	4.02
지원 횟수	경 험 없 음	233	73.4	14.6	11.2	3.92
	1 회	110	76.4	15.5	8.2	4.14
	2 회 이 상	77	▼ 77.9	18.2	3.9	4.14

마. 정부 지원 부재 시 의견

-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이 중단될 경우의 자율관리 공동체 전망에 대해 자율관리 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모두 공통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공동체는 와해가 될 것이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동체는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며 부실 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그림 2-35] 정부 지원 부재 시 의견 - 자율관리공동체



*서쪽이 우하향할 것

[그림 2-36] 정부 지원 부재 시 의견 - 관련기관/전문가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특성별 분석 - 정부지원사업 부재 시 의견

- 실시 분야 공통적으로 자율관리여업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양식어업 공동체 중 37.2%가 정부 지원 부재 시 대부분의 공동체는 와해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표 2-61>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2	1	3
전 체		420	62.4	28.6	8.1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61.3	29.6	8.1
	양 식 어 업	43	55.8	37.2	4.7
	어 선 어 업	63	58.7	28.6	11.0
	내 수 면 어 업	5	80.0	20.0	-
	복 합 어 업	123	67.5	24.4	8.1

- 시작년도별 정부지원사업 부재 시 전망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2-62>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2	1	3
전 체		420	62.4	28.6	8.1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70.9	20.0	7.3
	2002년도	58	53.4	34.5	12.1
	2003년도	55	58.2	32.7	9.1
	2004년도	84	63.1	32.1	3.6
	2005년도	99	57.6	31.3	10.1
	2006년도	69	72.5	18.8	7.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담당지방청별 분석 결과도 과반수가 자율관리어업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부산청, 동해청, 목포청, 여수청, 포항청 관할 지역의 경우 30% 이상이 정부 지원 부재 시 대부분의 공동체는 와해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표 2-63>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2	1	3
전 체		420	62.4	28.6	8.1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55.6	33.3	11.1
	인 천 청	16	43.8	18.8	25.0
	울 산 청	11	58.3	8.3	33.3
	평택 청	16	73.3	20.0	0.0
	동 해 청	28	57.1	32.1	10.7
	대 산 청	3	65.2	26.1	8.7
	군 산 청	42	81.5	18.5	0.0
	목 포 청	27	61.8	36.8	1.3
	여 수 청	135	57.6	37.3	5.1
	포 항 청	44	51.2	34.9	14.0
	마 산 청	58	58.6	27.6	13.8
제 주 청	31	87.1	9.7	0.0	

1. 대부분의 공동체가 와해될 것이다
2.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공동체는 살아남을 것이다
3. 이제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대부분의 공동체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원 횟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전망을 내림.

<표 2-63-1> 지원 횟수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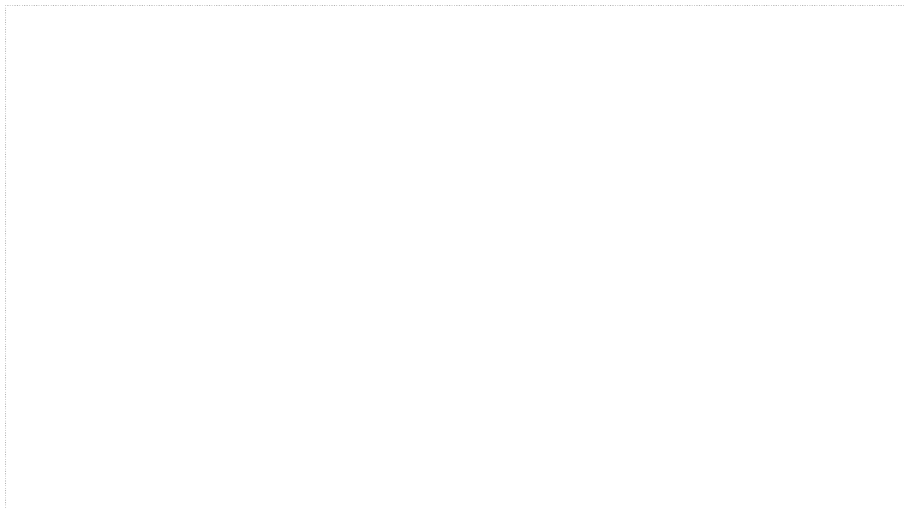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2	1	3
전 체		420	62.4	28.6	8.1
지원 횟수	경험 없음	233	61.4	30.5	6.9
	1 회	110	61.8	24.5	12.7
	2 회 이상	77	66.2	28.6	5.2

5. 자율관리어업 문제점 진단

가. 부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증가에 대한 견해

- 현재 부실 공동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걱정된 평가 등의 재검토를 통한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음. 반면 자율관리어업 자체를 포기하자는 의견은 자율관리 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각각 1.9%,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7] 부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증가에 대한 견해 - 자율관리공동체

수 자 관 리 어 업 자 율 관 리 공 동 체	저위 (N3)	65	29	7	38	-
	중위 (N4)	73	19	54	-	14
	중위 (N3)	87	14	-	-	19
	고위 (N3)	83	-	-	17	-

*세칙이여해할것

[그림 2-38] 부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증가에 대한 견해 - 관련기관/전문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부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증가에 대한 견해
 - 부실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절한 재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표 2-64>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2	1	4	3	기타
전 체		420	55.7	23.8	16.9	1.9	1.0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56.5	28.5	12.4	0.5	0.5
	양 식 어 업	43	53.5	23.3	18.6	4.7	-
	어 선 어 업	63	58.7	15.9	19.0	3.2	3.2
	내 수 면 어 업	5	20.0	20.0	40.0	20.0	-
	복 합 어 업	123	55.3	21.1	21.1	1.6	0.8

- 시작년도별 부실 자율관리 공동체 증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2-65>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2	1	4	3	기타
전 체		420	55.7	23.8	16.9	1.9	1.0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65.5	21.8	7.3	3.6	1.8
	2002년도	58	51.7	29.3	17.2	0.0	1.7
	2003년도	55	54.5	23.6	16.4	1.8	1.8
	2004년도	84	48.8	22.6	27.4	1.2	0.0
	2005년도	99	57.6	26.3	13.1	2.0	0.0
	2006년도	69	58.0	18.8	17.4	2.9	1.4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담당지방청별 분석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군산청 관할 지역의 경우 부실 공동체는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66> 지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구 분		사례수	2	1	4	3	기타
전 체		420	55.7	23.8	16.9	1.9	1.0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66.7	22.2	11.1	-	-
	인 천 청	16	31.3	43.8	25.0	-	-
	울 산 청	11	66.7	33.3	0.0	-	-
	평 택 청	16	46.7	33.3	6.7	6.7	6.7
	동 해 청	28	78.6	14.3	0.0	3.6	3.6
	대 산 청	3	76.1	13.0	6.5	2.2	2.2
	군 산 청	42	25.9	11.1	63.0	-	-
	목 포 청	27	47.4	23.7	26.3	2.6	-
	여 수 청	135	52.5	25.4	22.0	-	-
	포 향 청	44	46.5	27.9	14.0	4.7	2.3
	마 산 청	58	63.8	27.6	6.9	1.7	-
	제 주 청	31	64.5	25.8	6.5	-	-

1. 부실 자율관리공동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미한 수준이다
2. 부실 자율관리공동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적정한 평가 등의 재검토를 통한 수정/보완 필요
3. 부실 자율관리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자율관리어업정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늘어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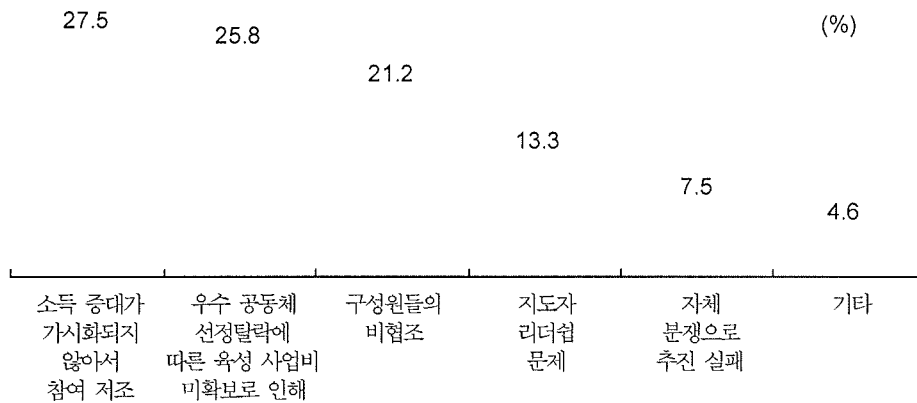
-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표 2-66-1> 어가 소득별 분석 - 자율관리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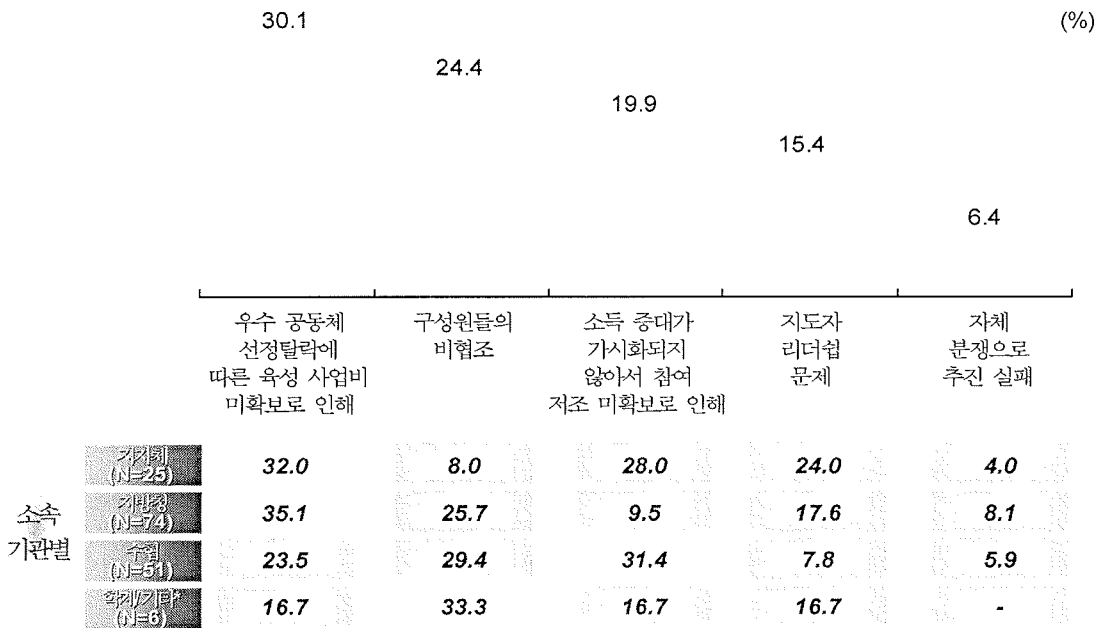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2	1	4	3	기타
전 체		420	55.7	23.8	16.9	1.9	1.0
가구 소득별	2천만 원 미만	176	↓ 52.3	26.7	17.6	2.3	0.6
	2천~3천만 원 미만	115	↓ 57.4	29.6	10.4	0.9	-
	3천만 원 이상	126	▲ 58.7	15.1	21.4	2.4	2.4

나. 부실 운영 공동체 증가 이유

- 부실 공동체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율관리공동체의 경우 '소득 증대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관련기관/전문가 집단의 경우 우수 공동체 선정/탈락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음.



[그림 2-39] 증가 평가 이유 - 자율관리공동체(증가 평가자)



* 사례수 적음에 유의하여 해석할 것

[그림 2-40] 증가 평가 이유 - 관련기관/전문가(증가 평가자)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특성별 분석 - 부실 운영 공동체 증가 이유

- 마을어업, 복합어업 공동체의 경우 소득의 미가시화를,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은 사업비 미확보를, 어선어업은 구성원 비협조를 부실 공동체 증가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음.

<표 2-67>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소득 증가 대기되지 않아 참여 저조	우수 공동체 선정 탈락에 따른 육성 사업비 미확보 인해	구성원 들의 비협조	지도자 쉽 문제	자 체 로 진 행 실패	기타	
전 체	345	27.5	25.8	21.2	13.3	7.5	4.6	
실시 분야별	마을어업	160	31.9	25.0	16.9	15.0	8.8	2.5
	양식어업	35	20.0	40.0	17.1	2.9	11.4	8.6
	어선어업	50	26.0	22.0	36.0	8.0	2.0	6.0
	내수면어업	3	-	66.7	-	33.3	-	-
	복합어업	97	24.7	22.7	22.7	16.5	7.2	6.2

- 시작년도별로는 2005~2006년도에 우수 공동체 선정탈락에 따른 육성 사업비 미확보를 부실 공동체 증가요인으로 보는 이유가 높게 나타남.

<표 2-68>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소득 증가 대기되지 않아 참여 저조	우수 공동체 선정 탈락에 따른 육성 사업비 미확보 인해	구성원 들의 비협조	지도자 쉽 문제	자 체 로 진 행 실패	기타	
전 체	345	27.5	25.8	21.2	13.3	7.5	4.6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0	22.0	14.0	28.0	24.0	8.0	4.0
	2002년도	48	33.3	10.4	25.0	12.5	12.5	6.3
	2003년도	45	33.3	17.8	20.0	17.8	4.4	6.7
	2004년도	61	14.8	27.9	19.7	14.8	14.8	8.2
	2005년도	85	35.3	36.5	14.1	8.2	3.5	2.4
	2006년도	56	25.0	37.5	25.0	7.1	3.6	1.8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득 미가시화와 사업비 미확보를 부실 공동체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인천청과 울산청 관할 지역의 경우 구성원간의 비협조를 주요 이유로 언급하였음.

<표 2-69>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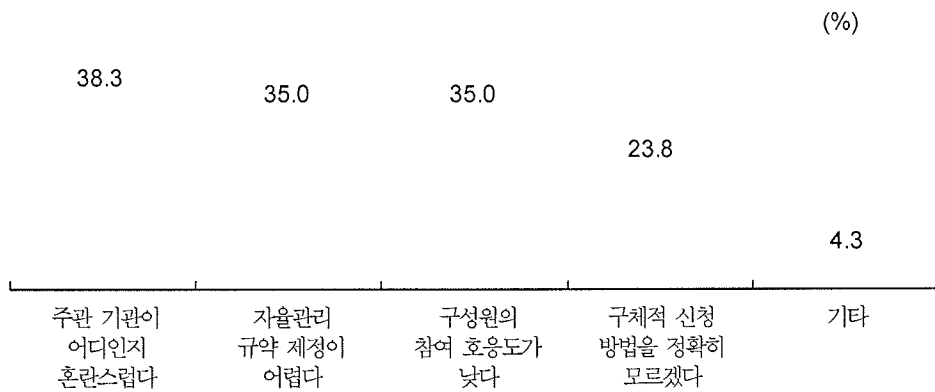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소득 증대가 되지 않아서 참여 저조	우수 공동체 선정에 따른 육성 사업비 미확보 인해	구성원 들의 비협조	지도자 리더 문제	자체 운영 실패	기타	
전 체	345	27.5	25.8	21.2	13.3	7.5	4.6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8	37.5	25.0	12.5	-	12.5	12.5
	인 천 청	13	30.8	7.7	46.2	15.4	-	-
	울 산 청	12	8.3	16.7	50.0	16.7	8.3	-
	평 택 청	13	15.4	30.8	15.4	30.8	7.7	-
	동 해 청	28	28.6	3.6	25.0	25.0	10.7	7.1
	대 산 청	43	16.3	41.9	25.6	11.6	-	4.7
	군 산 청	10	40.0	10.0	0.0	20.0	20.0	10.0
	목 포 청	56	12.5	41.1	19.6	8.9	14.3	3.6
	여 수 청	46	19.6	26.1	19.6	13.0	13.0	8.7
	포 향 청	34	29.4	20.6	11.8	17.6	8.8	11.8
	마 산 청	54	38.9	22.2	25.9	11.1	1.9	-
	제 주 청	28	67.9	21.4	7.1	3.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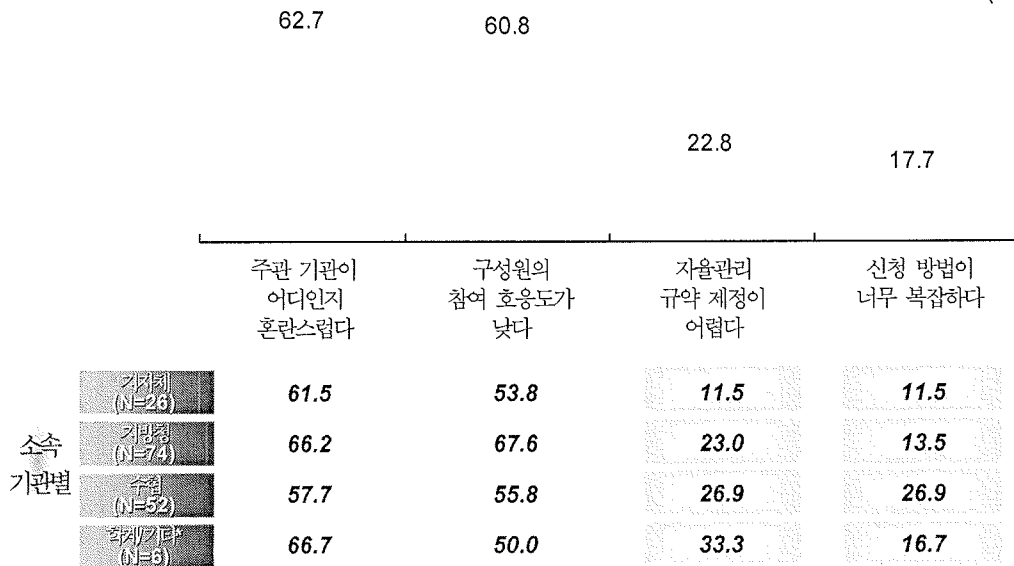
다.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

1) 신청/선정 단계

○ 자율관리어업 시행과 관련하여 신청/선정 단계의 문제점으로 '주관 기관이 어디인지 혼란스럽다'는 의견과 '구성원의 호응도가 낮다'는 의견을 주로 지적하였음.



[그림 2-41]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신청/선정 단계) - 자율관리공동체(중응답) (%)



* 사례수 적음에 유의하여 해석할 것

<그림 2-42>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신청/선정 단계) - 관련기관/전문가(중복응답)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어업 시행 신청/선정 단계 시 주요 문제점

-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신청/선정 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 주관 기관 혼란을 가장 큰 이유로 선정한 가운데, 내수면어업과 복합어업의 경우 규약 제정 문제를, 마을어업의 경우 구성원 참여 호응도를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음.

<표 2-70>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주관 기관이 어디인지 혼란 스럽다	자율관리 규약 제정이 어렵다	구성원의 참여 호응도가 낮다	구체적 신청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다.	기타
전 체		420	38.3	35.0	35.0	23.8	4.3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34.4	30.6	45.2	28.5	4.3
	양 식 어 업	43	51.2	23.3	11.6	9.3	-
	어 선 어 업	63	38.1	30.2	28.6	22.2	9.5
	내 수 면 어 업	5	20.0	40.0	20.0	-	-
	복 합 어 업	123	40.7	48.0	31.7	23.6	3.3

- 시작년도별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신청/선정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표 2-71>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주관 기관이 어디인지 혼란 스럽다	자율관리 규약 제정이 어렵다	구성원의 참여 호응도가 낮다	구체적 신청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다.	기타
전 체		420	38.3	35.0	35.0	23.8	4.3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47.3	32.7	34.5	30.9	1.8
	2002년도	58	36.2	37.9	34.5	20.7	3.4
	2003년도	55	30.9	30.9	29.1	27.3	9.1
	2004년도	84	41.7	31.0	42.9	16.7	3.6
	2005년도	99	35.4	36.4	35.4	24.2	4.0
	2006년도	69	39.1	40.6	30.4	26.1	4.3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담당지방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관기관 혼란과 규약 제정 어려움을 신청/신청 단계의 문제점으로 언급한 반면, 울산청, 평택청, 동해청, 포항청, 제주청 관할 지역에서는 구성원의 낮은 호응도를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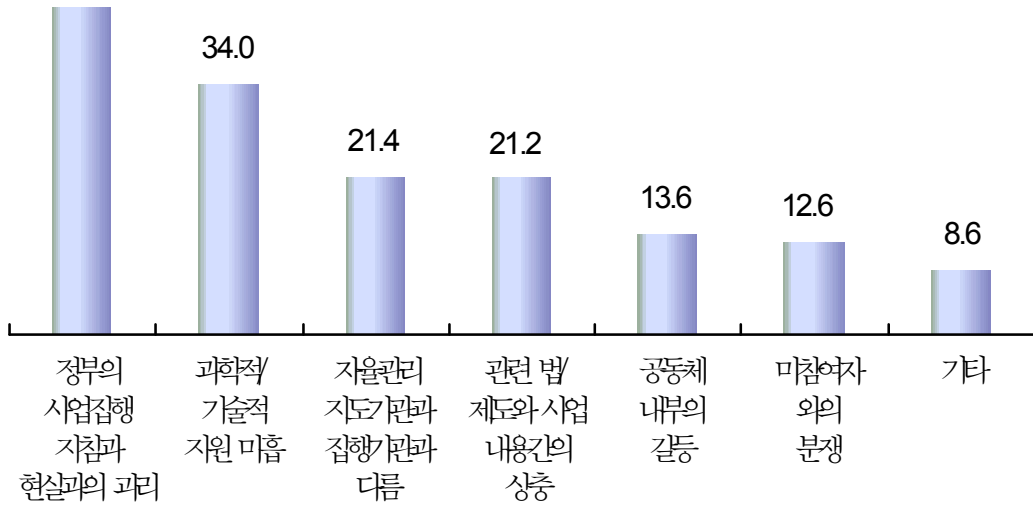
<표 2-72>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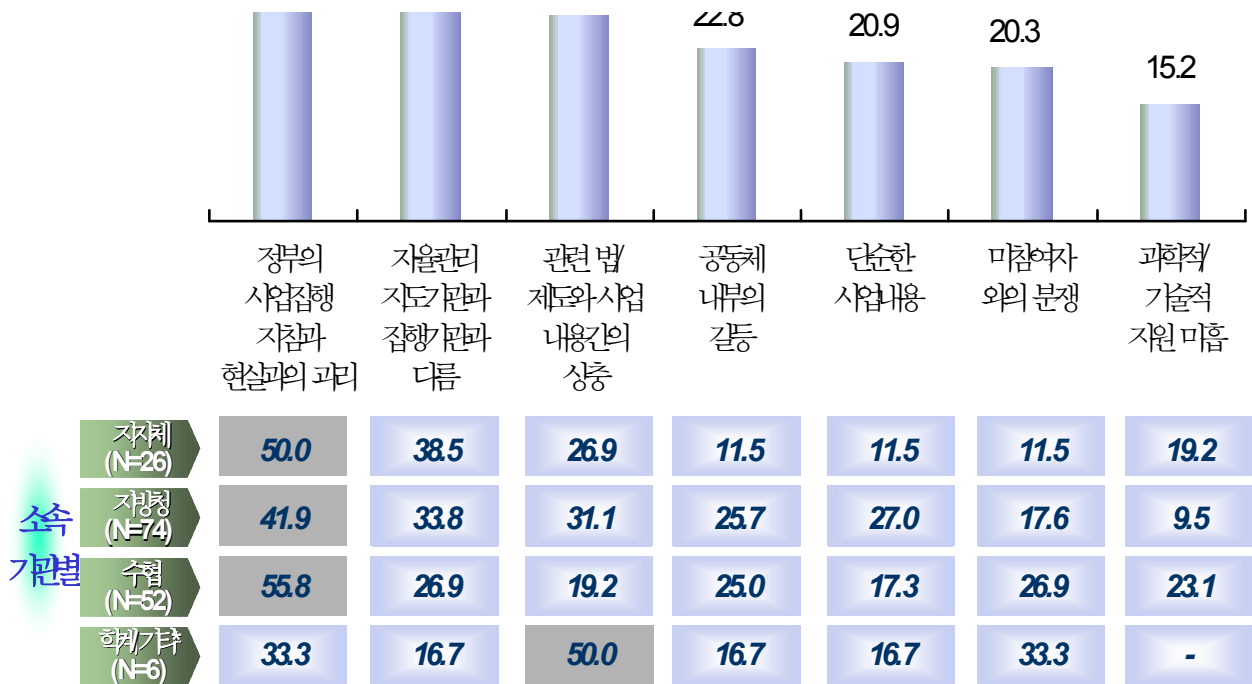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주 관 기 관 이 어 디 인 지 혼 란 스 럽 다	자 율 관 리 규 약 제 정 이 어 렵 다	구 성 원 의 참 여 호 응 도 가 낮 다	구 체 적 신 청 방 법 을 정 확 히 모 르 겠 다	기 타	
전 체	420	38.3	35.0	35.0	23.8	4.3	
담 당 지 방 청	부 산 청	9	44.4	44.4	22.2	22.2	11.1
	인 천 청	16	18.8	50.0	18.8	25.0	0.0
	울 산 청	12	25.0	33.3	75.0	25.0	8.3
	평 택 청	15	26.7	13.3	40.0	13.3	20.0
	동 해 청	28	53.6	39.3	57.1	42.9	7.1
	대 산 청	46	58.7	65.2	34.8	17.4	4.3
	군 산 청	27	25.9	66.7	40.7	44.4	0.0
	목 포 청	76	43.4	31.6	31.6	17.1	0.0
	여 수 청	59	35.6	22.0	16.9	13.6	1.7
	포 항 청	43	30.2	23.3	34.9	7.0	11.6
	마 산 청	58	44.8	24.1	25.9	15.5	3.4
제 주 청	31	16.1	29.0	64.5	77.4	3.2	

2) 실시 단계

○ 반면 실시 단계의 문제점으로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정부의 사업 집행 지침과 현실과의 괴리'에 대해 주로 지적하였음



[그림 2-43]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실시 단계) - 자율관리공동체(중복응답)



* 사례수 적음에 의하여 하일할 것

[그림 2-44]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실시 단계) - 관련기관/전문가(중복응답)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어업 실시 단계 시 주요 문제점
 - 실시분야별 자율관리어업 실시 단계 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표 2-73>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정부의 사업집행 지침과 현실간의 괴리	과학적/ 기술적 지원 미흡	자율관리 지도 기관과 집행 기관과 다름	관련 법/ 제도와 사업 내용간의 상충	공동체 내부의 갈등	미 참여자와 분쟁	기타	
전 체	420	45.7	34.0	21.4	21.2	13.6	12.6	8.6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47.3	37.1	19.9	19.4	15.6	11.8	5.4
	양 식 어 업	43	37.2	32.6	18.6	32.6	4.7	9.3	23.3
	어 선 어 업	63	47.6	23.8	17.5	30.2	9.5	15.9	4.8
	내 수 면 어 업	5	40.0	40.0	20.0	-	20.0	20.0	-
	복 합 어 업	123	45.5	35.0	26.8	16.3	15.4	13.0	10.6

- 시작 연도별 자율관리어업 실시 단계 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표 2-74>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정부의 사업집행 지침과 현실간의 괴리	과학적/ 기술적 지원 미흡	자율관리 지도 기관과 집행 기관과 다름	관련 법/ 제도와 사업 내용간의 상충	공동체 내부의 갈등	미 참여자와 분쟁	기타	
전 체	420	45.7	34.0	21.4	21.2	13.6	12.6	8.6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36.4	40.0	20.0	23.6	12.7	10.9	12.7
	2002년도	58	56.9	34.5	19.0	17.2	19.0	12.1	3.4
	2003년도	55	41.8	34.5	27.3	32.7	5.5	12.7	3.6
	2004년도	84	50.0	21.4	20.2	19.0	15.5	13.1	14.3
	2005년도	99	42.4	36.4	18.2	24.2	16.2	14.1	4.0
	2006년도	69	46.4	40.6	26.1	11.6	10.1	11.6	13.0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관리어업 실시 단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정부지침과 현실과의 괴리'를 주로 지적한 반면, 제주청 관할 지역에서는 '과학적/기술적 지원 미흡'을 주로 언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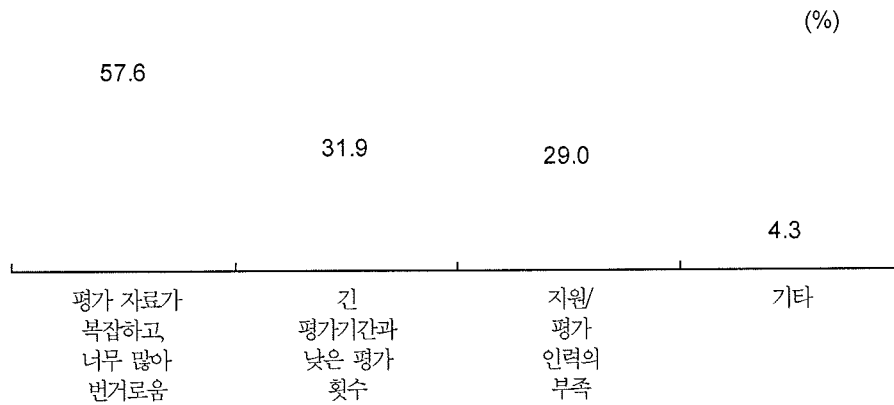
<표 2-75>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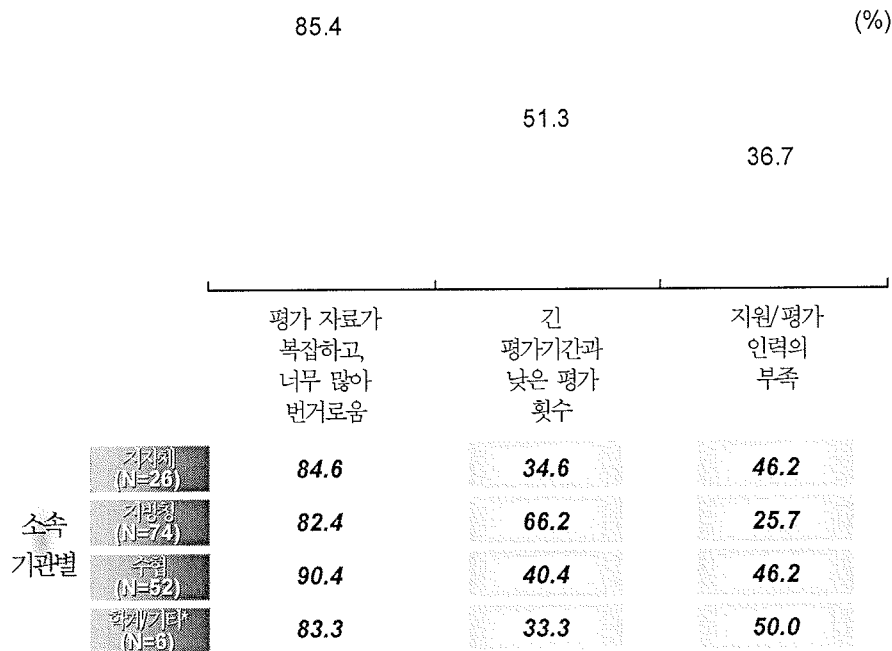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정부의 사업집행 지침과 현실간의 괴리	과학적/ 기술적 지원 미흡	자율관리 지도 기관과 집행 기관과 다름	관련 법/ 제도와 사업간의 상충	공동체 내부의 갈등	미 참여자와 의 분쟁	기타	
전 체	420	45.7	34.0	21.4	21.2	13.6	12.6	8.6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33.3	33.3	44.4	11.1	22.2	33.3	-
	인 천 청	16	31.3	25.0	25.0	25.0	12.5	0.0	-
	울 산 청	12	33.3	33.3	25.0	16.7	41.7	16.7	-
	평 택 청	15	33.3	26.7	26.7	13.3	0.0	13.3	-
	동 해 청	28	57.1	35.7	28.6	28.6	21.4	17.9	-
	대 산 청	46	65.2	32.6	28.3	10.9	21.7	19.6	-
	군 산 청	27	81.5	40.7	7.4	40.7	7.4	7.4	-
	목 포 청	76	32.9	25.0	14.5	27.6	10.5	6.6	30.3
	여 수 청	59	40.7	30.5	32.2	22.0	13.6	11.9	18.6
	포 향 청	43	48.8	25.6	20.9	11.6	11.6	27.9	2.3
	마 산 청	58	36.2	31.0	13.8	27.6	8.6	8.6	1.7
	제 주 청	31	51.6	83.9	16.1	3.2	12.9	3.2	-

3) 사업 평가 단계

- 마지막으로 사업 평가 단계의 문제점으로 '평가 자료가 복잡하고 너무 많아 번거롭다'는 의견을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음.



[그림 2-45]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사업 평가 단계) - 자율관리공동체(중복응답)



* 사례수 적음에 유의하여 해석할 것

[그림 2-46] 자율관리어업 시행 시 주요 문제점 진단(사업 평가 단계) - 관련기관/전문가(중복응답)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어업 사업평가 단계 시 주요 문제점
 - 실시분야별 자율관리어업 사업평가 단계 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표 2-76>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평가 자료가 복잡하고, 너무 많아 번거로움	긴 평가기간과 짚은 평가 횟수	지원/ 평가인력의 부족	기타
전 체		420	57.6	31.9	29.0	4.3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59.1	30.6	35.5	3.8
	양 식 어 업	43	53.5	20.9	16.3	7.0
	어 선 어 업	63	55.6	31.7	27.0	3.2
	내 수 면 어 업	5	60.0	20.0	20.0	-
	복 합 어 업	123	57.7	38.2	25.2	4.9

- 연도별 자율관리어업 사업평가 단계 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표 2-77> 시작년도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평가 자료가 복잡하고, 너무 많아 번거로움	긴 평가기간과 짚은 평가 횟수	지원/ 평가인력의 부족	기타
전 체		420	57.6	31.9	29.0	4.3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56.4	34.5	20.0	3.6
	2002년도	58	63.8	32.8	32.8	5.2
	2003년도	55	54.5	34.5	29.1	0.0
	2004년도	84	58.3	34.5	22.6	7.1
	2005년도	99	57.6	27.3	32.3	3.0
	2006년도	69	55.1	30.4	36.2	5.8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자율관리어업 사업평가 단계 시 주요 문제점으로 지역 공통적으로 '평가 자료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점'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제주청 관할 지역에서는 '지원/평가 인력의 부족'을 주로 언급함.

<표 2-78>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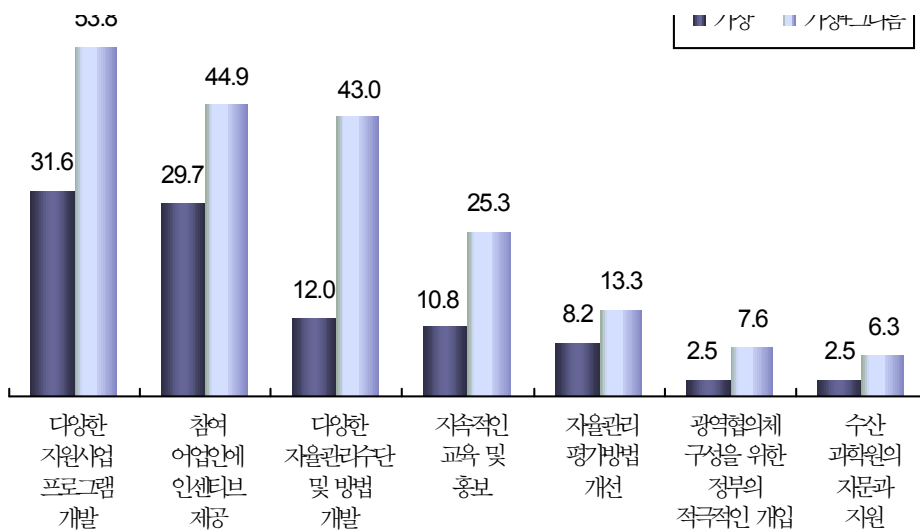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평가 자료가 복잡하고, 너무 많아 번거로움	긴 평가기간과 찾은 평가 횟수	지원/ 평가인력의 부족	기타	
전 체	420	57.6	31.9	29.0	4.3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77.8	22.2	11.1	11.1
	인 천 청	16	50.0	12.5	31.3	-
	울 산 청	12	50.0	50.0	41.7	-
	평 택 청	15	26.7	6.7	26.7	-
	동 해 청	28	82.1	78.6	28.6	7.1
	대 산 청	46	71.7	67.4	43.5	-
	군 산 청	27	66.7	70.4	44.4	-
	목 포 청	76	52.6	18.4	17.1	10.5
	여 수 청	59	66.1	11.9	11.9	6.8
	포 향 청	43	46.5	18.6	27.9	4.7
	마 산 청	58	44.8	19.0	13.8	1.7
	제 주 청	31	58.1	35.5	87.1	-

6.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고찰

-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참여 어업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과 ‘다양한 자율관리수단 및 방법을 개발하자’는 의견, 그리고 ‘다양한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제안이 가장 많았음. 특히 아직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관리어업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여 어업인에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자율관리수단 및 방법 개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자율관리 평가방법 개선
 광역협업체 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수산 과학원의 지문과 지원

[그림 2-47]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 자율관리공동체



[그림 2-48]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 관련기관/전문가

제2장 여론전문기관 자율관리 추진 평가

○ 특성별 분석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인센티브 제공’을 주로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양식어업의 경우 ‘다양한 관리 수단 개발’을 가장 많이 언급함.

<표 2-79> 실시 분야 특성별 분석(중복응답)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다양한 지원 사업 프로그램 개발	참여 어업인에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자율 관리수단 및 방법 개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자율관리 평가방법 개선	광역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수산 과학원의 자문과 지원
전 체		420	41.4	38.8	27.6	27.4	19.5	17.9	16.2
실시 분야별	마 을 어 업	186	42.5	<u>44.1</u>	25.8	29.6	16.1	18.3	17.2
	양 식 어 업	43	27.9	25.6	<u>34.9</u>	32.6	32.6	7.0	14.0
	어 선 어 업	63	<u>49.2</u>	41.3	28.6	23.8	20.6	11.1	14.3
	내 수 면 어 업	5	<u>100.0</u>	20.0	60.0	-	-	20.0	-
	복 합 어 업	123	<u>38.2</u>	35.0	26.0	25.2	20.3	24.4	17.1

- 시작년도별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2-80>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중복응답)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다양한 지원 사업 프로그램 개발	참여 어업인에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자율 관리수단 및 방법 개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자율관리 평가방법 개선	광역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수산 과학원의 자문과 지원
전 체		420	41.4	38.8	27.6	27.4	19.5	17.9	16.2
시작 연도별	2001년도	55	49.1	36.4	27.3	32.7	18.2	18.2	5.5
	2002년도	58	32.8	34.5	24.1	37.9	24.1	15.5	22.4
	2003년도	55	40.0	38.2	29.1	36.4	9.1	18.2	21.8
	2004년도	84	44.0	33.3	27.4	22.6	19.0	15.5	17.9
	2005년도	99	41.4	46.5	25.3	23.2	26.3	13.1	18.2
	2006년도	69	40.6	40.6	33.3	18.8	15.9	29.0	10.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담당지방청별로는 대산청 관할 지역에서 ‘광역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81> 담당지방청 특성별 분석(중복응답) - 자율관리공동체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다양한 지원 사업 프로그램 개발	참여 어업인에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자율 관리수단 및 방법 개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자율관리 평가방법 개선	광역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수산원의 자문과 지원
전 체	420	41.4	38.8	27.6	27.4	19.5	17.9	16.2
담당 지방청	부 산 청	9	22.2	33.3	11.1	44.4	22.2	44.4
	인 천 청	16	68.8	18.8	12.5	12.5	25.0	18.8
	울 산 청	12	41.7	50.0	8.3	25.0	33.3	16.7
	평 택 청	15	46.7	26.7	33.3	46.7	0.0	6.7
	동 해 청	28	21.4	46.4	28.6	32.1	17.9	25.0
	대 산 청	46	32.6	47.8	26.1	13.0	19.6	10.9
	군 산 청	27	70.4	22.2	29.6	37.0	22.2	14.8
	목 포 청	76	44.7	25.0	34.2	23.7	25.0	15.8
	여 수 청	59	35.6	33.9	22.0	33.9	28.8	18.6
	포 향 청	43	37.2	41.9	30.2	32.6	11.6	23.3
	마 산 청	58	46.6	46.6	27.6	27.6	15.5	13.8
제 주 청	31	35.5	71.0	35.5	19.4	6.5	3.2	

제3절 요약 및 결론

- 지금까지 자율관리어업 참가 공동체 조사, 관련기관 및 전문가 조사 등 두 가지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여 자율관리어업 운영 실태, 자율관리어업 평가, 교육/홍보 활동 평가, 정부지원사업 평가, 자율관리어업 문제점 진단,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등으로 나누어 자율관리어업을 평가하였음.
- 2001년 시작 후 6년 동안 실시된 자율관리어업의 평가 결과를 한눈에 이해하기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라 예상됨. 지금부터는 각 장별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및 그 의미를 정리하였음

1. 자율관리어업의 전반적 평가

- 관리어업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자율관리 공동체, 관련기관 및 전문가 집단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특히 자율관리 공동체의 경우 전체 공동체의 81%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단지 3.8% 정도만이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52.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부정 평가자는 6.3%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자율관리 공동체와 관련기관/전문가에 공통적으로 평가받았던 9개 측면 중 특히 어업질서 확립 측면의 평가가 가장 우수하여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어 어장환경 개선 측면의 효과와 규약 준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별도로 평가받은 정부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측면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기존 법제도와 상충 정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자율관리어업 실시 전후의 어가 소득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눈에 띄게 부각될 정도는 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니지만, 어느 정도 증가 효과가 있었음을 어업인,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소득 측면에 있어서도 자율관리어업 제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결국 향후 자율관리어업 사업 규모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구성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성원 수는 유지/확대하고, 현재의 규약 수준을 유지 혹은 보완해 가는 차원에서 자율관리어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정부의 교육 활동 및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대부분의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7~8회 정도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교육에 대해 자율관리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관리공동체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6개 교육 유형 중 자율관리공동체는 공동체 전국대회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전문가의 경우는 현장 방문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두 집단의 사고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국대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과 그 외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임.
- 전체 공동체 중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공동체가 55.5%이고, 44.5%가 지원 경험이 있으며 지원 금액은 누적 기준으로 평균 2억 8천만 원 정도이며, 1회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임. 정부지원금을 받은 공동체 중에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경한 사례는 5.5%에 불과함.
-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자율관리공동체는 75%, 관련기관/전문가는 65.2%의 긍정 평가를 내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특히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 보면, 자율관리공동체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보다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가 더 높으나, 관련기관/전문가는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보다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볼 수 있었음.

- 하지만, 두 집단 공통적으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음. 정부 지원금 중단 시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공동체는 건재할 것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임.

3. 자율관리어업 문제점 진단 및 활성화 방안 고찰

- 부실 공동체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자율관리공동체의 경우 소득 증대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서는 우수 공동체 선정 탈락에 따른 육성 사업비 미확보가 부실 공동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 특히 자율관리어업 신청/선정 단계 시 주관 기관이 어디인지 혼란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시 단계에서는 정부의 사업 집행 지침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사업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 자료가 복잡하고 너무 많아 번거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부실 공동체 방지 및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관리어업의 애초의 목표대로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으로는 어업인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참여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자율관리어업 수단 및 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임.

제3장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 본 장에서는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특히, 자율관리어업 개념 및 추진현황,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주요활동내용 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 다음으로 자율관리어업 평가제도에 대하여 2005년 이전, 2006년, 전자평가보안 및 2006년도 하반기 평가지침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특히, 2006년도 하반기 평가문제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제5장에서 평가제도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할 때 이를 참고하였음

제1절 자율관리 공동체 활동실태

1. 자율관리어업 개념 및 추진 현황

가. 자율관리어업 개념

- 자율관리어업이란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적절히 관리 및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즉, 현행 수산관련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어업인공동체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어장·자원 및 생산을 관리하여, 지속적인 자원이용이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관리활동을 말함.
- 구체적으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바다와 자원과 환경을 지키도록 하는 의식개혁 운동, 정부규제에 의한 타율에서 벗어나 내 어장은 내가 지키도록 분위기 전환운동, 처벌과 단속이 무서워서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우리 자원을 내가 스스로 가꾸는 노력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self management fisheries)은 어업관리를 어업인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과 어업인들의 주인의식 고취 및 자립심 함양에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강제적 관리 형태에서 어업인들이 직접 어업관리를 주도하는 어업인 참여 형태로 전환하는 것임.¹⁾
- 일본의 경우는 자원관리형어업 또는 공동체적 자원관리어업이라 하여 어떤 특정의 관리제도나 관리방식을 지칭한 용어라기보다는 종래의 수렵형 어업에서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목표로 한 어업으로 질적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창출된 것이며, 형태는 지역, 어업종류 및 관리주체가 되는 어협이나 그 하부조직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함. 또한, 어업관리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어업인의 조직체가 되어 자주적인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자율관리형어업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음.²⁾
- 서구의 경우는 협동적 관리어업이라 하여, 어업관리에 필요한 자원, 정보, 권한을 어업관리주체인 정부와 어업관리 대상인 어업자간에 상호·공조적인 관리체제 속에서 어업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책임성을 공유하는 어업관리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광의의 의미로는 개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각 국가별로 처해진 어업의 상황에 맞게 추진되고 있음.

<표 3-1> 국별 자율관리어업 형태

국 별	형 태	내 용
한 국	자율관리어업 (Self Control Management Project)	어업인이 자주적 관리
일 본	자원관리형어업 또는 공동체적 자원관리어업 (Community-based Resource Management Fisheries)	한국과 유사
서 구	협동적 관리어업(Co-management Fisheries)	정부와 어업인간 책임공유 자원관리

1) 구체적으로 어업인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바다(어장)와 자원과 환경을 지키도록 하는 의식개혁 운동, 정부 규제에 의한 타율에서 벗어나 내 어장은 내가 지키도록 분위기 전환 운동, 처벌과 단속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우리 자원을 내가 스스로 가꾸는 노력 등 총체적인 의미를 말함.

2) 일본의 자원관리형어업은 어업인들의 자주적 운동을 통한 자원관리 및 경제적 이익증대에 있고, 다분히 정부는 배제된다.

나. 자율관리어업 도입 배경

- 우리나라는 어업면허 및 허가제도, 각종 기술적 규제수단 및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 정부주도하에 어업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주도의 다양한 어업자원관리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통적 어업관리체제는 다양한 지역적·어업적 특성 및 어업인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어업인 상호간 또는 정부와 어업인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정부에만 의존하여 어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실정임.
- 즉,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법적 강제 형태의 어업관리는 자원의 남획을 막지 못하고, 과잉투자에 의한 무주물 선점의 경쟁조업을 심화시키고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해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의 강제적인 관리보다는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어장·자원·생산관리를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음.

<표 3-2> 자원관리 정책수단

대분류	중분류	세부정책 수단
자원조사·평가	자원조사	양육항조사, 시험선조사, 어업실적보고, 자원동태조사
	자원평가	TAC어종자원평가, 한중일 관련어종 자원평가
자원관리	어획노력량규제	허가정수, 어선톤수·마력수 규제, 선복량, 어구실명제, 어선감척, 휴어제, TAE
	어획량규제	TAC, IQ, ITQ, 판매장소 지정
	기술적 규제	어선·어구제한, 2중이상자망금지, 그물코규격제한, 특정어구제작판매금지, 어구사용금지구역·기간, 포획금지구역·기간, 포획채취금지기간, 포획금지체장·체중, 대게·붉은대게 암컷포획금지, 어란채취및치어포획금지, 수산동식물이식승인, 멸종위기종보호, 어도차단금지, 채포물제한
	조업구역규제	특정어업금지구역, 어업별조업구역제한, 보호수면, 육성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기타규제	유해어법금지, 소하성어류보호, 범칙어획물판매금지, 범칙어획물방류
	감시감독	불법어업단속, 소형기저정리, 읍저버감시체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자원조성	환경관리	어장정화, 저질개선, 해적생물구제, 배출수규제
	어장조성	인공어초, 해조장, 투석, 갯닦기
	자원첨가	종묘방류
	바다목장	바다목장

- 만약, 자율관리어업의 정착 및 확산이 된다면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어업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건전한 조업 질서 형성이 가능하여 불법어업을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어업인간 합의에 의한 공동의 고통분담(자원보호) 및 이익추구(자원조성)가 가능하여 어업생산성 향상할 뿐만 아니라, 어가 유지를 위한 공동의 생산조절이 가능하여 안정적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내(우리) 어장이라는 개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조성도 기대됨³⁾.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을 새마을운동과 비교한다면, 도입의 배경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식전환의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다. 자율관리어업 추진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어선규모, 조업구역, 허가척수 등의 관리방식만으로는 어업인들의 경쟁적인 어획노력량 증대 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과 아울러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의 정책은 자율적인 어업관리로 효율적인 자원보호 및 적정생산에 의한 적정어가 유지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TAC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대비한 기반조성이 목적으로 1997년 자율관리어업 시범실시 방안을 마련하여 1998년에 시행에 들어갔으며, 2001년부터 본격적인 자율관리어업이 시작되었음.⁴⁾
- 그 결과, 2001년도 63개소 약 5천여 명을 시작으로 2006년도 12월 현재 445개 공동체에 33,921명이 참여하고 있어, 시작년도 기준 약 7배로 증가하는 등 그 증가 추세가 꾸준히

3) 수협중앙회, 2005년도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한 work-shop, 2005. 6, P. 7-8

4) 자율관리 시범사업 실시방안 수립('01.5), 평가지침 수립('01.12), 육성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지침 제정('02.7).

제3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도에 63개소에서 2005년도 308개소로 약 7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동체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음.⁵⁾

<표 3-3> 연도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개소	63 (-)	79 (25%)	122 (54%)	174 (43%)	308 (77%)	445 (44%)
	인원	5,107	6,575	10,765	15,469	24,855	33,921
	평균	81	83	88	88	80	76
마 을	32	35	61	92	159	233	
양 식	11	12	15	22	46	70	
어 선	8	19	29	34	52	71	
복 합	12	13	17	26	43	62	
내 수 면	-	-	-	-	8	9	

- 자율관리어업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첫째, 어업인에 대한 교육·홍보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어선어업 등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 둘째, 공동체별 등급화를 본격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발전. 이를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셋째, 공동체 또는 어업간 갈등과 분쟁의 조정을 활성화, 넷째, 자율관리 공동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 분쟁조정 등을 담당할 수산 전문가 풀(pool) 확보를 적극 추진 등임
- 자율관리어업의 단계별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제1단계가 기반조성단계('01~'04)로 어촌 계중심의 시범사업, 의식 확산으로 활성화, 우수공동체 지원으로 기반조성 등이며, 2단계로는 확산·심화단계('05~'11)로 새어촌운동으로 의식전환, 어선어업공동체로 확산, 지도 자협의회 육성으로 핵심세력화, 3단계는 정착단계('12년 이후)로 광역공동체로 정착, 공동체간 협력 체제 확립, 민간단체 운영체제로 전환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

5) 해양수산부, 2007년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2007.2.13

<표 3-4> 자율관리어업 단계별 추진방향

단계별	세부내용	공동체수
기반조성단계 (‘0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중심의 시범사업실시 ■ 의식 확산으로 활성화 ■ 우수공동체 지원으로 기반조성 	(‘01) 63 ⇒ (‘02) 79 ⇒ (‘03) 122개소 ⇒ (‘04) 174개소
확산/심화단계 (‘0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어촌운동으로 의식전환 ■ 어선어업공동체로 확산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적극 육성 	(‘05)304 ⇒ (‘06)445 ⇒ (‘11) 1,000개소
정착단계 (‘12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공동체로 정착 ■ 공동체간 협력 체제 확립 ■ 민간단체 운영체제로 전환 	(‘12 이후) 2,000개소

라. 참여 공동체 유형

- 일반적으로 마을, 양식, 어선어업 형태의 공동체 유형분류에 근거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의 개별적인 자율관리규약, 사업 세부추진 내용 분석, 현장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8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음
 - 세분화된 8개 분류는 I 유형(마을어업), II유형(양식어업), III유형(어선어업), IV유형(마을+양식어업), V 유형(어선+마을어업), VI유형(양식+어선어업), VII유형(신고어업), VIII유형(어촌계 전체) 등임
- 그러나, 어선어업이 포함된 복합적인 유형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분류로는 마을, 어선, 양식, 내수면 등 4개 유형과 더불어 복합(마을+어선, 마을+양식, 마을+어선+양식 등)인 경우는 비중이 큰 유형으로 분류 등 총 5개의 유형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 여기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마을어업과 양식어업의 구분은
 - 마을어업이란 함은 어촌계 소유의 마을어장과 양식어업에 있어서 간석지의 패류양식(바지락, 가무락 등), 굴투석식 양식 등을 말함

제3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 ※ 사유: 자율관리어업에 있어서 자원관리, 어장관리, 생산관리, 어업질서 등의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
- 양식어업이라 함은 시설물을 이용하여 양식하는 가두리(어류), 수하식(미더덕, 굴, 미역, 전복) 등을 말함

<표 3-5> 자율관리어업 유형 제시

당초	변경	변경유형에 따른 유형별 개념
마을	마을	- 어촌계 소유/간석지 패류양식(바지락, 가무락 등) - 당초와 동일
어선	어선	- 어선어업관련 협현회, 단체 등의 자생단체를 중심 - 당초와 동일
양식	양식	- 수하식, 가두리 등 특정 시설 이용한 양식어업에 한정 - 기존의 굴, 전복 등 살포식어업은 마을어업으로 분류
내수면	내수면	- 내수면에서 실시하는 모든 어업 (마을, 어선, 양식 구분 없음)
복합	마을, 어선, 양식 중 택1	- 상기의 유형별 개념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유형으로 분류

- 광역단위 공동체 분류는
 - 단일 단체로 구성된 공동체: 참여인원 200명 이상
 - 2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공동체: 참여인원 100명 이상
- ※ 단체라 함은 어촌계나 선주협회와 같은 자생조직을 의미함

2.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추진 현황

가. 일반적인 추진 현황

- 자율관리어업은 정부주도의 정통적 어업관리체제에서 정부와 어업인들의 상호보완단계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자율관리어업의 형태는 크게 기존의 법을 준수하는 형태와 자율적인 결의에 의해 자체내규를 만들어 시행하는 형태로 구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기존의 법을 준수하는 형태는 법정 규제수단(금어기, 금지채장, 불법어구 사용금지)에 대하여 자체 어장감시원을 두어 감시
- 자율적인 결의에 의해 자체내규를 만들어 시행하는 경우는 어획량, 어획물의 판매시기 조정, 휴어기·휴식년제 도입, 불가사리 구제, 어장청소, 자원조성 등이며, 자율관리어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어장관리의 경우는 어업자원의 산란·서식장을 보호 및 보전(어장환경개선, 산란·서식장 복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어장청소의 날'로 정례화 시켜 어장환경 정화, 바다 청소한 어장은 1~2년 동안 입어금지, 자원의 재생산 도모, '바다쓰레기 제로운동' 수질오염 예방 및 관광어촌 이미지 제고, 주 조업지에 대한 어장청소[폐어구/폐통발 수거], 불사가리구제 등), 마을어장을 임대 및 위탁경영에서 어촌계 직접 운영체제로 전환 등임
- 다음으로 자원관리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위한 자원수준으로 자원을 보전하는 것(수산자원조성, 어업규제 등)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 어장 치패보호구역 설정, 어장휴식년제, 운번제, 중간 육성장 및 해조장 설치, 어종별 TAC 실시, 일일 채취 물량 제한, 산란기 전체어선 출어 금지, 조업일수 단축, 단위 면적당(1ha 당) 20척에서 16척으로 감소, 자체적으로 대계의 금어기 설정 및 어구실명제 실시, 수산자원보호령[채포채장 및 금어기])보다 강화, 수산자원조성 등임
- 경영개선의 경우는 어업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어업비용 절감 및 어가유지)들이며, 공동구입 및 판매, 계획생산을 통한 어가 유지, 다양한 어촌체험행사를 통해 관광수익 창출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 특산품 브랜드화 사업추진으로 수익 증대, 대도시 유통 판매망 구축으로 공동체 소득 증대, 생산된 수산물 On/Off Line 판매 등임
- 마지막으로 질서유지는 지역간 및 어업간 소득격차, 분쟁 등을 해결하는 것(어장분배, 불법어업 감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어장관리선 매일 24시간 운영으로 어장 감시체제 강화,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정치망을 자망과 통발로 전환, 고질적인 불법어업

인 삼중자망 근절로 건전한 조업질서 강화, 삼각망 및 낭장망의 자진철폐로 불법조업 분쟁 해소, 소형기저 전면 금지로 불법어업 근절 및 건전한 어업관행 정착 등임

나. 유형별 주요사업 내용

- 마을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율관리공동체 445개소(2006.12 기준)에 대하여 유형별로 사업내용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자율관리어업 추진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마을어업

- 마을어업의 유형은 도시근교형(시,군,읍 소재지 및 인접의 마을어업 중심의 어촌계로서 생활여건이 도시형인 어촌계), 취약지구형(교통, 통신이 불편한 낙도 벽지 및 접적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어업 중심의 어촌계), 연안촌락형(도시근교형 및 취약지구형이 아닌 마을어업 중심 어촌계)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음
- 이러한 마을어업의 자율관리는 어촌계소속의 어업인들이 자율적 합의로 추진하고, 사업의 주체는 지선어촌계 구성원들이 중심, 사업 대상은 어촌계소속의 어장이며, 실시내용으로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임
- 마을어업의 어장관리는 구체적으로 마을어장 내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수거/바다청소한 어장은 1~2년 동안 입어금지/재생산을 도모, 마을어장 임대 및 위탁경영에서 어촌계 직접 운영체제로 전환, 어촌계소속 어선업자 폐통발/폐그물 등을 자발적으로 수거, 스킨스 쿠버와 협동으로 어항청소, 타 기관과 협조하여 마을어장주변 지속적 청소 등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자원관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채포/채장 금지의 경우는 치어보호구역 지정,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채장 설정 운영, 수산자원보호령(채포채장 및 금어기)보다 강화, 어류의 산란기에 마을 어장내 어로행위 금지 등이며, 두 번째로는 생산량 조절사업은 마을어장을 윤번제 형태로 생산량 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마을어장을 구획하여 휴식연제 실시, 특종어종에 대하여 TAC를 설정하여 자원관리 강화 등임
- 경영개선은 관련 기자재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을 통한 바다 낚시객/관광객 유치, 산지 직판장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특종어종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산물 직거래 판매망 구축, '회의를 통한 사업 추진' 원칙으로 다수의견 반영, 투명한 어선어업 공동체 경영으로 어업인 다수의 공신력 확보 등임
- 마지막으로 질서유지는 마을어장을 관계법령에 따라 어장 표시, 자체규약을 준수하여 어장의 경합적 이용 사전예방, 감시조를 편성하여 불법어업 통제 및 단속 강화, 공동체내 불법어업 감시센터 운영, 자체규약 위반시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여 자율적 질서유지 도모, 인근 어촌계와 어장이용 경합에 따른 문제를 상시 대화를 통해 해결 등임

2) 양식어업

- 자율관리어업중에서 양식어업의 세부 유형으로는 동일해역형(동일한 해역에서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동체 중심), 동일품종형(동일 및 유사한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중심), 육상양식형(육상에서 넙치, 전복 등을 양식하는 공동체 중심) 등임
- 자율관리어업의 추진 방향은 양식업자들이 자율적 합의로 어업관리를 하고, 사업주체는 일정한 해역에 있는 양식업 종사자 중심, 사업대상은 해조류,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시설내용으로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이 있음
- 양식어업 어장관리는 약품처리를 최소화시키는 친환경 양식업 추진, 양식장 주변 청소 실

제3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시, 양식품종 해적생물 구제, 폐기된 양식시설물 자진철거 등임

- 다음으로 자원관리는 양식어패류 자체생산 추진, 양식장간 거리 조절, 양식장을 구획하여 순번제 생산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휴면 양식장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 개선, 품종별로 사육밀도를 조절, 양식장 휴식년제 실시 등임
- 경영개선의 경우는 공동출하를 통한 비용절감 및 수급조절 추진,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여 가격 안정 도모, 직판장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특정 양식품종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 양식품목 가공판매를 통한 어획물의 부가가치 창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산물 직거래 판매망 구축, '회의를 통한 사업추진' 원칙으로 다수의견 반영, 투명한 양식업 공동체 경영으로 어업인 다수의 공신력 확보 등임
- 마지막으로 질서유지는 해조류 등 수하식 양식업의 불법양식 금지, 양식장의 위치를 준수하여 분쟁 사전 예방, 불법 양식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 양식장 질서유지 도모, 양식장 공동체 수시 회의를 통한 질서유지 방안 의견교류 등

3) 어선어업

- 어선어업의 세부 유형은 복합어선공동체(도서복합, 지역복합), 지역단위 어선공동체(어종/업종/어선 중심), 광역단위 어선공동체(어종/업종/어장/업종수협 중심) 등으로 구분됨
- 이러한 어선어업 공동체는 어선어업자들의 자율적인 합의로 자율관리어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어촌계(어선어업자), 어선어업 단체(임의) 또는 광역단위(연합체)로 구성원들이며, 사업대상은 어선어업자들의 주로 이용하고 있는 어장임. 실시내용은 어장환경 개선, 자원관리, 생산관리, 불법어업방지 등이 있음
- 어선어업 자율관리어업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어장관리의 경우는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수거, 바다청소한 어장은 1~2년 동안 입어금지/재생산을 도모, 조업시 폐통발/폐그물 등을 자발적으로 수거, 항구 내 폐어구 수거함 설치 및 운영, 폐유수거장을 어항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에 설치하여 관련업체에서 체계적 수거, 스킨스쿠버와 협동으로 어항 청소, 타 기관과 협조하여 주 조업지 침체어망 수거, 타 업종(채낚기)과 협조하여 지속적 바다청소 등

- 다음으로 자원관리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채포/채장 금지는 치어보호구역 지정,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채장 설정 운영, 자원기반 조성을 위해 알벤 꽃게와 우럭 자체적으로 재 방류, 어류의 산란기에 전체어선 출어 금지 등, 둘째, 어획능력 삭감은 안강망어구 통수 제한. 금어기 이전 안강망어구 자율적 철거, 자율적으로 개인별 통발 개수 10% 감축 및 통발의 그물코를 제한, 자망 그물량 축소 및 그물코 규격 확대 사용 등이고, 마지막으로 TAC 및 어구 실명제 추진은 어선별/ 어종별 TAC 운영을 통한 자원회복 추진, 통발 및 자망 어구에 대해 어구 실명제 실시 등임
- 어선어업에서 경영개선 사업은 어구 및 관련 기자재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을 통한 바다 낚시객/관광객 유치, 산지 직판장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 특정 어종(민꽃게)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 단순 가공 판매(간장게장)를 통한 어획물의 부가가치 창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산물 직거래 판매망 구축, '회의를 통한 사업추진' 원칙으로 다수의견 반영, 투명한 어선어업 공동체 경영으로 어업인 다수의 공신력 확보 등임
- 마지막으로 질서유지는 불법어업 없는 어촌을 선포하여 삼중지망과 소형기저 완전척결, 자발적으로 불법어구 소각을 통한 건전한 조업관행 정착, 감시조를 편성하여 불법어업 통제 및 단속 강화,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 및 삼중자망 어구 제한, 불법 삼각망 및 낭장망 자진철수로 불법조업 분쟁 해소, 어장개선 GPS 입력으로 조업분쟁을 해소하고 상호간 신뢰 확보 등

4) 내수면어업

-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 세부유형으로는 하천형(강이나 중소형 강을 따라 내수면에 종사하는 공동체), 호수형(큰 호수를 중심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공동체), 저수지형(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하여 낚시터 및 어업에 종사하는 공동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제3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 이러한 내수면 공동체는 어업인들이 자율적 합의로 자율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구성원 중심, 사업대상은 하천, 호수, 댐, 저수지 어장이며, 실시내용으로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이 있음
- 먼저, 내수면어업에서 어장관리 사업으로는 외래어종 등 해적생물 구제 실시, 내수면 주변어장 월 1회 청소 실시, 내수면 낚시터 상시 청소를 통한 주변 환경개선 도모, 내수면 주변의 청소 수거함 설치 및 운영, '회의를 통하여 주변 환경개선 사업추진' 원칙으로 다수의견 반영 등
- 다음으로 자원관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며, 첫째, 채포/채장 금지의 경우는 치어보호구역 지정,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채장 설정 운영, 자원기반 조성을 위해 치어(붕어 등) 자체적으로 재방류, 어류의 산란기에 내수면어선 출어 금지 등이며, 둘째, 어획능력 삭감은 어구의 통수 제한. 금어기 이전 불법어구 자율적 철거, 자율적으로 개인별 어구수 감축 및 어구의 그물코를 제한, 내수면 자망그물량 축소 및 그물코 규격 확대 사용, 마지막으로 적정어구 규모 및 어구실명제 추진은 내수면 어선어업 그물의 적정규모 유지, 내수면 통발 및 자망, 이각망 등 어구에 대해 어구 실명제 실시 등임
- 경영개선의 경우는 어구 및 관련 기자재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산지 직판장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특정 어종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 단순가공 판매를 통한 어획물(양식)의 부가가치 창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산물 직거래 판매망 구축, '회의를 통한 사업추진' 원칙으로 다수의견 반영, 투명한 내수면어업 공동체 경영으로 어업인 다수의 공신력 확보 등임
- 마지막으로 질서유지는 불법어업 없는 내수면 어촌을 선포하여 삼중자망 등 완전척결, 자발적으로 불법어구 소각을 통한 건전한 조업관행 정착, 감시조를 편성하여 불법어업 통제 및 단속 강화,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 및 삼중자망/이각망 등 어구 제한, 불법어구 자진철수로 불법조업 분쟁 해소, '회의를 통한 질서유지에 대한 사업추진' 원칙으로 다수의견 반영 등임

5) 복합어업

- 복합어업 유형은 마을어업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어선어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유형은 마을어업의 세부유형과 유사하며, 마을+ 어선어업형이 이에 해당됨. 세부유형은 마을어업과 유사하며, 도시근교형(시,군,읍 소재지 및 인접의 마을어업 중심의 어촌계로서 생활여건이 도시형인 어촌계), 취약지구형(교통, 통신이 불편한 낙도 벽지 및 접적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어업 중심의 어촌계), 연안촌락형(도시근교형 및 취약지구형이 아닌 마을어업 중심 어촌계) 등임
- 따라서, 복합어업의 자율관리 사업은 마을어업과 어선어업 유형의 사업을 혼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유형들의 사업들이 다소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언급하였음을 밝힘
- 복합어업의 자율관리는 어촌계소속의 어업인들이 자율적 합의로 추진하고, 사업의 주체는 지선어촌계 구성원(어선어업자 포함)들이 중심, 사업 대상은 어촌계소속의 어장이며, 실시 내용으로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임
- 복합어업의 어장관리는 구체적으로 마을어장 내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수거/바다청소한 어장은 1~2년 동안 입어금지/재생산을 도모, 마을어장 임대 및 위탁경영에서 어촌계 직접 운영체제로 전환, 어촌계소속 어선업자 폐통발/폐그물 등을 자발적으로 수거, 스킨스쿠버와 협동으로 어항청소, 타 기관과 협조하여 마을어장주변 지속적 청소 등임
- 복합어업의 자원관리는 자원관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며, 첫째, 채포/채장금지의 경우는 치어보호구역 지정,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채장 설정 운영, 자원기반 조성을 위해 치어 등 자체적으로 재 방류, 어류의 산란기에 출어 금지 등이며, 둘째, 어획능력 삭감은 어구의 통수 제한. 금어기 이전 불법어구 자율적 철거, 자율적으로 개인별 어구수 감축 및 어구의 그물코를 제한, 내수면 자망그물량 축소 및 그물코 규격 확대 사용, 마지막으로 적정어구 규모 및 어구실명제 추진은 내수면 어선어업 그물의 적정규모 유지, 통발 및 자망 등 어구에 대해 어구실명제 실시 등임

제3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 경영개선은 관련 기자재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을 통한 바다 낚시객/관광객 유치, 산지 직판장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특정어종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산물 직거래 판매망 구축, '회의를 통한 사업 추진' 원칙으로 다수의견 반영, 투명한 어선어업 공동체 경영으로 어업인 다수의 공신력 확보 등임
- 마지막으로 질서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장 표시, 자체규약을 준수하여 어장의 경합적 이용 사전예방, 감시조를 편성하여 불법어업 통제 및 단속 강화, 공동체내 불법어업 감시센터 운영, 자체규약 위반시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여 자율적 질서유지 도모, 인근 어촌계와 어장이용 경합에 따른 문제를 상시 대화를 통해 해결 등임

다. 유형별 활용내용 분석

- 공동체 특성을 분류함에 있어 아직 완전하게 분류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의 공동체 유형 분류에 따라,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어업 등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실태를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도 검토하였음

1) 활동실태 개요

- 2006년 12월, 현재 총 443개 공동체(분석대상)가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어업이 222개(50%)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어선 82개(19%), 복합(마을+양식, 어선+마을) 74개(17%), 양식 56개(13%), 내수면 9개(2%) 순으로 참여하고 있음
 - 광역공동체는 23개소(5%)가 참여하고 있고, 대부분 마을어업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향후 어선어업과 광역공동체로의 참여확대 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여유형의 대부분의 공동체는, 어장청소(95%), 어종별 채포금지체장 설정(84%), 어장(마을, 양식) 관리(78%), 생산량 조절(70%), 자원조성·방류(67%), 불법어업 근절 노력(62%) 등의 분야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이 외에 참여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어업은 어장환경 개선(마을어업 공동체중 73% 참여), 어선어업은 특정어구 사용제한(52%), 복합어업은 조업금지기간 운영(60%) 등의 분야에서 많이 참여
- 그러나, 광역공동체 결성(1%), 그물코 확대(12%), 공동판매(14%), 무허가·무등록어선 발생 예방(22%), 어장휴식년제 운영(46%) 등의 분야는 활동이 미약하여 향후 중점적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마을어업은 어업외 소득개발(6%) 및 불법시설 예방(22%) 분야, 어선어업은 어구실명제(5%) 및 어구길이 제한(26%) 분야에서 중점지도 필요

<표 3-6>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총괄)

많이 참여하는 아이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아이템	
사업내용	%	사업내용	%
▷ 어장청소 실시	95	▷ 어구실명제·광역공동체 결성	1
▷ 금지체장 설정	84	▷ 어구길이 제한/그물코 확대	9/12
▷ 생산량 조절	70	▷ 공동판매, 불법시설 예방	26
▷ 자원조성·방류	67	▷ 무허가·무등록어선 발생 예방	22
▷ 불법어업 근절노력	62	▷ 어장휴식년제 운영	39
		▷ 조업금지기간 설정	46

나) 유형별 활동실태 및 보완점

○ 마을어업

- 마을어업자율어업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어장청소(98%), 마을어장 관리(93%), 체포금지체장 설정(85%)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은 광역공동체 결성 및 판매망 구축(3%), 어업 외 소득개발(6%), 무허가·무등록 어선 발생 예방 등임

제3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표 3-7> 마을어업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

많이 참여하는 아이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아이템	
사업내용	%	사업내용	%
▷ 어장청소 실시	98	▷ 광역공동체 결성·판매망 구축	3
▷ 마을어장 관리	93	▷ 어업 외 소득개발	6
▷ 채포금지체장 설정	85	▷ 무허가·무등록 어선 발생 예방	11
▷ 생산량 조절	78	▷ 불법시설 예방·공동판매	22
▷ 어장환경개선·자원조성	73	▷ 조업금지기간 설정	43
▷ 불법어업 근절 노력	62	▷ 어장휴식년제 실시	50

○ 양식어업

- 양식어업자율관리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어장청소(99%), 어장관리(82%), 채포금지체장 설정(77%)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어장휴식년제 실시(50%), 조업금지기간 설정(43%), 불법시설 예방·공동판매(22%)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함

<표 3-8> 양식어업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총괄)

많이 참여하는 아이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아이템	
사업내용	%	사업내용	%
▷ 어장청소 실시	99	▷ 공동판매/광역화 결성	4/0
▷ 어장(마을,양식) 관리	82	▷ 무허가·무등록 어선 발생 예방	9
▷ 채포금지체장 설정	77	▷ 조업금지기간 설정	16
▷ 생산량 조절	61	▷ 어장휴식년제 실시	20
▷ 어장환경 개선	61	▷ 자원조성·방류	30
▷ 불법어업 근절 노력	59	▷ 불법시설 예방	32

○ 어선어업

- 한편 어선어업자율관리공동체에도 어장청소(83%)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사업에 비해 참여도가 낮은 편임
-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은 자원조성·방류(49%), 그물코 확대(40%), 무허가등록어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발생 예방(27%) 등을 들 수 있음

<표 3-9> 어선어업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총괄)

많이 참여하는 아이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아이템	
사업내용	%	사업내용	%
▷ 어장청소환경개선	83	▷ 어구실명제/어장휴식년제	5/18
▷ 채포금지체장 설정	81	▷ 불법시설 예방	16
▷ 불법어업 근절노력	68	▷ 어구길이(량) 제한	26
▷ 조업금지기간 설정	59	▷ 무허가무등록 어선 발생 예방	27
▷ 특정어구 사용제한	52	▷ 그물코 확대	40
▷ 생산량 조절	51	▷ 자원조성·방류	49

○ 복합어업1(마을+양식)

- 복합어업1 자율관리공동체(마을+양식)에서는 어장청소(100%), 어장(마을, 양식) 관리(90%), 자원조성·방류(87%) 등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음
- 반면 불법시설 예방·특정어구 제한(42%), 어장휴식년제 실시(42%), 그물코 설정·특산품 개발(10%)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함

<표 3-10> 복합어업(1)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총괄)

많이 참여하는 아이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아이템	
사업내용	%	사업내용	%
▷ 어장청소 실시	100	▷ 광역화 결성·판매망 구축	0
▷ 어장(마을,양식) 관리	90	▷ 공동생산·공동판매	10
▷ 자원조성·방류	87	▷ 무허가·무등록 어선 발생 예방	10
▷ 채포금지체장 설정	84	▷ 그물코 설정·특산품 개발	10
▷ 불법어업 근절 노력	65	▷ 어장휴식년제 실시	42
▷ 조업금지기간 설정	58	▷ 불법시설 예방·특정어구 제한	42

○ 복합어업2(어선+마을)

- 복합어업2 자율관리공동체(어선+마을)에서는 어장청소(97%), 금지체장 설정(89%), 자원조성·방류(87%) 등에 참여도가 높음

제3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 그러나, 어장휴식년제(50%), 불법어업 근절 노력(50%), 특정어구 사용제한(27%) 등에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함

<표 3-11> 복합어업(2)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총괄)

많이 참여하는 아이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아이템	
사업내용	%	사업내용	%
▷ 어장청소 실시	97	▷ 마려수 제한·어구실명제·광역화	0
▷ 금지체장 설정	89	▷ 공동생산·공동판매	7
▷ 자원조성·방류	87	▷ 어업 외 소득개발	10
▷ 어장(마을,양식) 관리	85	▷ 어구길이 제한·그물코 설정	11
▷ 생산량 조절	81	▷ 특정어구 사용제한	27
▷ 무허가·무등록 어선 예방	61	▷ 불법어업 근절 노력	50
▷ 조업금지기간 설정	60	▷ 어장휴식년제 실시	50

○ 내수면

- 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는 금지체장 설정·불법어업 근절노력·어장청소 실시(100%), 자원 조성·방류(89%) 등에 참여도가 높음
- 한편, 조업금지기간 설정(44%), 무허가·무등록 어선 예방(33%) 등은 참여도가 낮아 향후 보완이 필요함

<표 3-12> 내수면 활동 아이템별 분석결과

많이 참여하는 아이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아이템	
사업내용	%	사업내용	%
▷ 금지체장 설정·불법어업 근절 노력·어장청소 실시	100	▷ 어장휴식년제·어구실명제	0
▷ 자원조성·방류	89	▷ 불법시설 예방	11
▷ 어구길이 제한·그물코 설정	56	▷ 무허가·무등록 어선 예방	33
		▷ 조업금지기간 설정	44

제2절 자율관리어업 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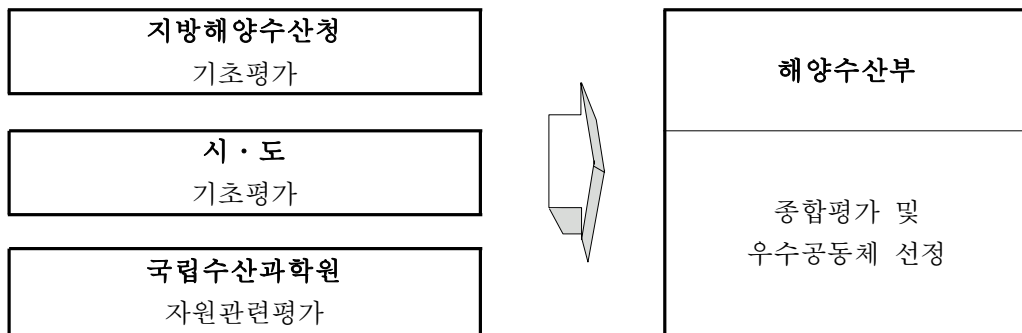
- 동 절에서는 자율관리어업 평가제도에 대하여 2005년 이전, 2006년, 전자평가보안 및 2006년도 하반기 평가지침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특히, 2006년도 하반기 평가문제 뿐만 아니라 2007년도 평가도 참고하여 제5장에서 개선(안) 제시에서 활용하였음

1. 평가시스템 분석

가. 2005년도 이전

1) 평가방법

- 자율관리어업의 시범사업의 평가체계는 각 항목별로 지방해양수산청과 시·도, 국립수산과학원의 3원 체계로 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한 평가의 종합으로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었음



[그림 3-1] 2005년 이전 자율관리공동체의 선정체계

제3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 동 평가방법은 선정된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각 담당하는 부분을 평가한 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선정을 하게 됨. 이 때 평가항목은 참여도, 노력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 등 5개분야로 구분하고 평가항목은 총 53개 항목에 총 배점은 2,260점임

<표 3-13> 2005년 이전 자율관리어업 평가항목

구 분	항목수	배 점	평가기관	평가항목
합 계	53			
참여도	3	200	지방해양수산청	- 전체 대상자중 참여인원비율
노력도	32	1,280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갯수, 사업별 실시회수, 개별사업당 사업실시 총물량, 개별사업별 참여인원비율 - 기금조성액 및 회원별 기금부담비율 - 자율관리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가율 - 전체회원의 회의 참가율 - 신규사업 계획 및 착수여부 - 자체금어기 등 자원보호강화규정 설정 및 준수여부 등
성과도	5	400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 자원증가율 - 소득증가율 - 어장청결도 등
지속도	10	300	지방해양수산청	- 사업계획의 타당성 - 발전가능성 - 자율관리어업 실행의지 - 자율관리규약준수여부 - 착수지연 사업수 비율 - 체육대회 개최등 회원간 단합여부
파급도	3	200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 자율관리 확산기여도(주변어촌계의 관심도) - 자율관리어업 실시 기간 - 언론매체 홍보실적 - 견학장소 제공등

- 각각의 분류별 평가는 평가기관별로 평가내용, 시기/회수, 배점, 평가기준, 적용어업으로 나뉘어져 있음. 이 중 시기/회수는 평가하는 시기와 회수를 정한 것이고, 배점은 해당 항목에 할당된 점수, 평가기준은 객관적 평가를 위해 등급화하여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리고 적용어업은 해당어업의 특성에 따라 항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어업을 명시한 것임

- 이렇게 구성된 평가체계와 평가방법을 가지고 각 기관에서 기초평가를 하게 되며, 기초평가 된 자료를 모두 중앙정부에서 취합하여 최종평가 및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임.

<표 3-14> 2005년 이전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양식(예시)

평가 기관	평가항목	시기/회수	배 점	배점기준	적 용 유형
지방청	1. 전체대상자중 자율관리어업 참여인원 비율	매년 1분기말 /년1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 100% ◦ 90 : 98%이상 100%미만 ◦ 80 : 95%이상 98%미만 ◦ 70 : 90%이상 95%미만 ◦ 60 : 80%이상 90%미만 ◦ 50 : 80%미만 	공통
지방청	2. 전체 대상어촌계 소유어장 중 자율관리어업 대상 어장 비율	매년 1분기말 /년1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 98%이상 ◦ 90 : 90%이상 98%미만 ◦ 80 : 90%미만 	마을 양식
지방청	3. 전체 대상어업 어선 중 자율관리어업 참여어선비율	매년 1분기말 /년1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 98%이상 ◦ 90 : 90%이상 98%미만 ◦ 80 : 90%미만 	어선

- 그러나 기존의 평가방법은 평가가 복잡하고, 평가의 공정성 문제, 평가기준 및 배점 애매 모호함, 종합적인 평가가 어려움 등이 있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각 공동체의 성격이 다름에도 대부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 그룹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사항과 자율관리를 통해서 행해야할 사항에 대한 평가의 구분이 없어 평가가 복잡함
- 둘째, 공동체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자율관리어업의 목적,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취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준에서 평가되고 있는 점. 자율관리어업은 단일목적의 경우가 없지만, 중점적으로 얻고자 하는 최종목표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자율관리어업의 성과가 높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낮은 것으로 평가될 위험성이 있음
- 셋째, 각 항목의 평가기준과 배점기준이 애매하여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웠음. 총 5개 분

제3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류의 총배점은 2,380점인데, 이 점수가 각각의 분류와 항목에 배분될 때 명확한 근거가 없음. 또한 평가기준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임의로 설정된 부분이 많고, 지역별 혹은 업종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음

- 넷째, 각 기관마다 별도로 주어진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종합적인 평가가 어려움. 현재 각 기관별로 배정된 평가항목은 각 기관별 업무의 특성보다는 임의로 배분된 것이 많고, 평가기관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기관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총점을 산출하는 것 보다는 계량화하기 곤란한 부분이 이를 종합평가에서 평가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 이 경우 중앙정부에서 모든 공동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자칫 부실평가가 될 수 있으므로 평가체계를 지역과 중앙 등으로 다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평가결과 활용

- 2005년 이전의 평가활용은 지방청별(시도) 어촌지도사에 의해 53개 항목 전자실적 평가 실시하여, 시도 및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로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함
-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로 선정된 지원대상 공동체를 대상으로 우수 자율관리공동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등 공동체 확정
- 최우수·우수·장려1·장려2 공동체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였음

<표 3-15> 2005년 이전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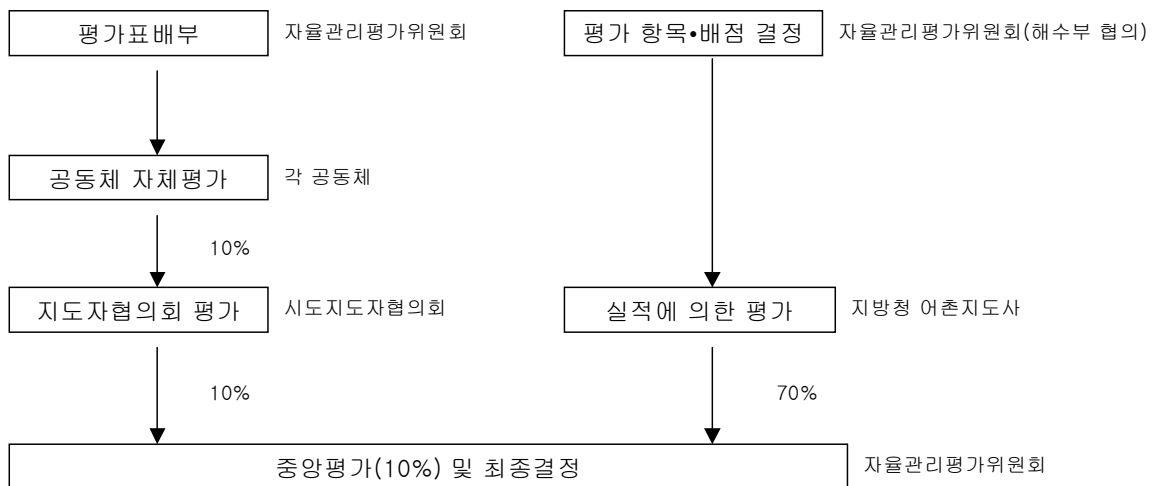
구 분	계	최우수	우수	장려1	장려2
계	238	1	13	108	116
2002	48	1	2	35	10
2003	58	-	2	32	24
2004	72	-	4	30	38
2005	60	-	5	11	44

※ 최우수·우수공동체 : 장려공동체 중 심사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전국 최고점수를 받았거나 지역 최고점수를 받은 공동체를 심사 선정

나. 2006년도

1) 평가시스템 개요

- 어촌지도사 전자 실적평가에 추가하여 어업인과 지도자협의회 자체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자율평가 체제 구축
- 어촌지도사의 전산실적 평가(70%), 공동체 위원장 자체평가(10%),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10%), 자율관리평가위원회 평가(10%)



[그림 3-2] 2006년도 평가 흐름도

- 민간주도의 자율관리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어촌지도사 및 어업인 자체평가를 검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등급결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자율평가위원회는 민·관·하계 전문가, 어업인 등 19명(수산회 8, 교수 및 연구원 3, 어업인대표 1, 수협 1,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수산회가 사무국 기능 수행

- 공동체 등급화의 본격 추진으로 공동체간 선의의 승급경쟁을 유도하여 향후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추구하였으며, 공동체 등급은 풍요(34개소), 모범(26개소), 협동(248개소), 참여('06년 신규공동체) 나타남
- 등급결정에 따라 풍요등급 2억원, 모범등급 1억원의 육성사업비를 지원하여 발전의 동기 부여(총 96억원)하였고, 풍요등급 중 상위 2개소(전남 광립, 경북 죽변자망)는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개소당 3억원 지원)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여한바 가 있음

2) 평가단계별 평가내용

<전자실적평가 실시>

- 지방청별 어촌지도자 전자실적 평가입력(항목별 분기 1회, 연간 1회)
- 전자실적평가점수. 자체·시도지도자협의회 점수 합산 및 자료 분석('06.3.29)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평가자료 분석

<공동체 자체평가 실시>

- 해양수산부 어촌지도사 실적평가 완료('06.1)
- 자율평가제도 계획 수립('06.1)
- 공동체 자체평가서 배송('06.2.1)
 - 대상: 308개 공동체
- 공동체 자체평가서 회수('06.2.25)
 - 현재 308개 공동체 중 305개 공동체 회수 (약 99% 회수)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

-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회의 개최('06.2.20~'06.2.28)
 - 공동체 자체평가서 12개 각 시도별 평가위원회로 배송
-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결과 회수('06.2.28)
 - 총 12개 시도별 평가위원회 (100% 회수)
- 자체평가점수 및 시도지도자협의회 자율평가점수 자료정리 ('06.3.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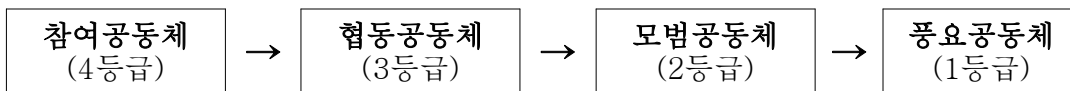
- 자율관리평가위원회 제출자료 확보 및 공동체 현지점검을 위한 자료 확보

<자율관리평가위원회 개최(중앙단위 평가)>

- 자율관리평가위원회 1차 회의('06.4.5)
 - 공동체 평가점수 부여 및 등급결정을 위한 사전회의 (현지점검계획 확정, 효율적인 평가방법안 제시)
- 공동체 현지점검('06.4.7~14)
 - 자체평가와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등급 및 점수 결정 자료확보
- 자율관리평가위원회 최종 회의('06. 4.26)
 - 308개 공동체 점수 및 등급부여, '0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공동체 선정, '06년 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의견제시
- 해양수산부 최종 제출('06. 4.28)

3) 공동체 등급 확정

- 4개 등급으로 명칭을 공모('05.3월)하여 등급명 선정
- 등급구분 및 명칭 부여



- 풍요공동체: 명실공히 다른 공동체의 귀감이 될 만큼 구성원의 참여도, 규약준수여부, 사업성과, 노력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공동체
- 모범공동체: 규약에 따라 자원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되는 공동체
- 협동공동체: 공동체 구성원간 결속이 강화되어 규약의 준수 및 자원관리 사업에 착수하는 단계의 공동체
- 참여공동체: 새로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성원간 합심하여 자율관리어업을 발전시키려는 출발단계의 공동체

○ 등급부여

- 절대평가를 통해 우수한 공동체는 모두 1등급 및 2등급으로 평가하여 자율관리어업 확산 유도

○ 등급결정

- 공동체 자체평가 및 시도지도자협의회에 의한 자율평가, 자율관리위원회의 중앙평가 (현지점검 포함)에 지방청별 계량적 실적평가를 합산하여 최종등급 결정
-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점수 비율: 전자실적평가(70%), 공동체 자체평가(10%), 시도지도자협의회 자율평가(10%), 자율관리평가위원회의 중앙평가(10%)

<표 3-16> 2006년도 등급별 평가결과

등급별	공동체수
풍요(1등급)	34개
모범(2등급)	26개
협동(3등급)	248개
참여(4등급)	신규 공동체

4) 2006년 자율관리평가 문제점

가) 기관별 평가 문제점

<공동체 자체평가>

- 대부분의 공동체 자체점수가 상향평가되어 객관성 결여
 - 평가하는 공동체의 평가배경 및 이해도가 낮아 평가의 신뢰성이 낮음
- 공동체 자체평가 점수기준: 부여된 점수기준이 모호해서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점수를 비율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 대두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

- 원칙적으로는 시도지도자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등이 모여서 각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나, 물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공동체 위원장들이 모여 평가하였음.
- 따라서 시도지역의 모든 공동체 위원장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평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에 참여한 일부 공동체위원장들의 주관이 많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가 지역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고,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커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신뢰감이 떨어짐..
- 그렇기에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전자실적평가>

- 어촌지도사의 주관에 따라 평가편차가 커 객관적 신뢰도가 낮음
 - 지역별, 업종별 편차가 커서 지역별, 업종별 평가의 객관성이 낮음
 - 지역편차, 판단의 임의성, 객관적 판단의 기준제시, 조사표의 주관성 문제(평가의 강조점이 지방청별로 다름)
- 지역별·업종별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항목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낮음
- 평가 일부항목 중 입력 누락 등의 문제야기
 - '05년 가입공동체는 노력도 계산에 불이익(분기별 입력 시 일부 누락)
- 입력작업 시 '06년 입력에 따른 문제 야기
 - '05년말까지 입력실적평가를 해야 하나 사정상 지방청에서 '06년에 입력
 - 전산프로그램 작업상 '06년 입력 누락
- 현실적으로 평가기준이 모호한 항목이 많아 객관적 평가가 어려움
 - 평가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함
 - 파급도 계산시 어촌지도사들의 자의적 평가문제(평가재량권 문제)

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

<공동체 자체평가>

- 자체평가서의 보완을 통한 평가점수의 객관성 확보
 - 평가 전체의 점수부여가 아닌 항목별 점수부여로 공동체 점수편차를 최소화
 - 평가항목의 단답화를 통한 평가의 계량화
- 자체평가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확대
 - 방문교육 및 지도자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평가서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 있음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

-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위원 확충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있음.
- 구체적인 점수명시보다는 『상·중·하』로 평가를 유도하여 평가 편차가 크지 않도록 할 필요성 있음.

<전자실적평가>

- 어촌지도사들의 평가재량권 범위가 넓지 않도록 평가 항목의 수정
 -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별, 업종별 맞춤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업종별, 지역별, 육성사업비 지원 여부 등의 변수 고려)
- 조사의 객관성 및 엄격성 유지를 위한 어촌지도사 평가교육 실시(평가기준제시)
- 전자실적평가 방법제안
 - 각 지역별 평가 후, 평가 상위 공동체에 대한 전체평가
(지역별 평가 → 지역별 평가 상위공동체 선정 → 지역별 상위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체 단위 평가)
- 업종별, 지역별, 육성사업비 지원여부 평가 후 상호 변수를 고려하여 평가점수 부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3-17> 2006년도 자율관리공동체 자체 평가서

중요영역	세 분류	공동체명		소재지	자체	중간	최종
		세 분류 (평가내용)					
참여	1	우리공동체는 참여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작년도(____년) 참여인원 ____명 중 현재까지 ____명이 계속하여 참여>			예, 아니오		
	2	우리공동체는 시작년도 보다 새로운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다 (시작년도 ____명 → 신규 가입자 ____명)			예, 아니오		
준수	3	우리공동체는 수산업법보다도 더 엄격하게 자원관리(크기 및 어피제한 등)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자원관리 내용 : _____)			예, 아니오		
	4	우리공동체는 자율규약 등의 위반시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위반 ____건, 제재 ____건)			예, 아니오		
보고	5	마을/양식과 어선어업 구성원들이 수산관련 법규에 규정된 어획실적보고를 하고 있다. (시작년도 : _____ 어획실적보고내용 _____)			예, 아니오		
	6	우리 공동체는 어획실적보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육 _____회, 홍보 _____회)			예, 아니오		
소득	7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장의 환경이 개선되어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시작년도 생산량 _____톤, 2005년도 생산량 _____톤)			예, 아니오		
	8	우리공동체의 개별 어가소득이 시작년도 보다 나아졌다 (시작년도 평균소득 _____천원, 2005년도 평균소득 _____천원)			예, 아니오		
사업	9	우리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작년도 보다 확대되었다 (시작년도 ____건 → 2005년도 ____건)			예, 아니오		
	10	우리공동체는 정부지원 없이 자체 사업비로 자율관리를 추진한 적이 있다 (사업비 _____천원, 사업내용 _____)			예, 아니오		
협조	11	우리공동체는 정부(해양수산부, 시/도/군, 과학원 등)에서 자율관리 추진 도움을 받고 있다 (기관명 : _____, 협조내용 _____)			예, 아니오		
	12	우리공동체의 민간기관(수협, 수산회 등)과 자율관리 업무 협조를 잘하고 있다 (기관명 : _____, 협조내용 _____)			예, 아니오		
갈등	13	우리공동체의 내부 갈등(분쟁)은 공동체 출범 이후에 많이 해소되었다 (해소된 갈등 사항 : _____)			예, 아니오		
	14	우리공동체는 공동체 출범 이후 인근 공동체와 갈등(분쟁)이 많이 해소되었다 (해소된 갈등 사항 : _____)			예, 아니오		
교육	15	우리공동체는 자율관리 규약을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 (내용 : _____)			예, 아니오		
	16	우리공동체는 참여자에게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실적 연평균 _____회)			예, 아니오		
목표	17	우리공동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다 (구체적 목표 : _____)			예, 아니오		
	18	우리공동체는 자율관리 사업확대 등을 위해 자체자금 적립 목표가 있다. (목표액 : _____천원, (확대희망 사업 : _____)			예, 아니오		
계획	19	우리공동체는 자율관리 구성원의 참여 및 미참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구체적 계획 : _____)			예, 아니오		
	20	우리공동체는 인근의 공동체와 합하여 광역공동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 희망 공동체 : _____)			예, 아니오		
공동체	공동체 자체평가 점수 :		점 (귀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을 자체평가한다면 100점만점중 몇점인 기재)				
시·도	지도자협의회 평가점수 :			변동사유 :			
수산회	자율평가위원회 평가점수 :			변동사유 :			

2. 전자평가 보완 및 '06년도 하반기 평가지침

가. 보완배경

- 2005년도에 평가를 해본결과, 자율관리어업은 '01년도 시작한 후 참여공동체수가 443개 ('06.6)로 늘어나고 참여유형도 마을어업 위주에서 어선어업 및 광역공동체로 다양화되고 있음. 또한 내수면 어업도 점차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기존 전자실적 평가시스템은 참여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기준이 모호하여 각 지방청에서 개선을 요구함
- 5개분야 39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매분기 또는 연간 실적을 전담 어촌지도사가 평가 실시
 - 노력도(매분기) : 23개항목 500점
 - 성과도(연 1회) : 4개항목 100점
 - 파급도(연 1회) : 4개항목 150점
 - 참여도(연 1회) : 3개항목 125점
 - 지속도(연 1회) : 5개항목 125점

나. 주요 개선·보완내용

- 2005년도 기존 5개분야 39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4개의 참여유형별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평가항목별 실시여부에 따라 기본점수를 부여(배점 20%)하고, 구성된 참여율(배점 30%)과 실적율(배점 50%)에 따라 추가점수를 부여함.
- 공동체 활동실적에 대하여 계량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파급도 내에 “조사자 의견” 평가항목을 추가함. 즉, 공동체 어장의 빈매여부, 광역 또는 복합어업공동체 여부, 위원장의 리더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기준 적용을 위해 지방청 어촌지도사들이 평가함을 고려하여, 평가자들이 숙지해야 할 “전자평가 지침서”를 마련하였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개선·보완된 전자평가 시스템은 '06년도 4/4분기까지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하며, '07년도 1/4분기부터는 “자율관리어업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06.8~'07.4)”용역 결과에 따라 구축될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표 3-18> 2006년도 하반기 평가개선 내용

	기 존		개 선							
			마을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어업	
	항목수	평점	항목수	평점	항목수	평점	항목수	평점	항목수	평점
계	39	1000	30	1000	29	1000	23	1000	23	1000
노력도	23	500	19	600	19	650	14	684	14	684
참여도	3	125	2	100	1	50	1	56	1	56
성과도	4	100	3	100	3	100	2	60	2	60
지속도	5	125	4	100	4	100	4	100	4	100
과급도	4	150	2	100	2	100	2	100	2	100

다. 전자실적 평가지침

- 평가목적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의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2007년도 육성사업비 지원대상공동체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평가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전담 어촌지도사))
- 평가대상 : '06.6월말 현재 참여공동체 443개소/활동실적 평가대상기간 : '06.1.1~6.30
 - 평가내용 : 2006년도 1/4분기, 2/4분기 노력도에 대한 공동체 활동실적을 각각 평가, 단, 조사자의견은 2/4분기 평가시 1회만 평가(평가시기 : '06 8.14~8.25)

<표 3-19> 2006년도 하반기 유형별 평가 점수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계		320점	345점	362점	362점
1/4분기	노력도	150	162.5	171	171
2/4분기	노력도	150	162.5	171	171
	조사자의견	20	20	20	20

제3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제도 분석

○ 평가시 고려사항

- 공동체 참여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이 다르게 적용됨으로 유의
- 공동체 전 어장을 “빈매” 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기타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서를 참고하여 평가

<표 3-20> '06년 하반기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평가항목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1년간 총점수	1,000	1,000	1,000	1,000
I. 노력도(분기 1회 평가)	600	650	684	684
1. 자원관리사업	50	50	105	115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	-	30	30
나. 공동판매 실시	5	5	-	5
다. 채포채장제한	10	10	10	10
라. 조업일수 단축	-	-	30	30
마. 어장휴식년제 실시	10	10	-	-
바. 생산량조절 실시	5	5	-	5
사. 특정어구어법 사용제한	-	-	25	25
아. 생산시기 조절 실시	10	10	-	-
자. 어장감시조 운영	10	10	10	10
2. 어장환경조성사업	20	33	6	-
가. 투석, 해중립 등 어장조성 실시	7	-	-	-
나. 바위닦기 또는 저질개선 등 실시	7	7	-	-
다. 해적생물구제 실시	6	6	6	-
라. 양식장 개발	-	19.5	-	-
3. 자원조성사업	20	20	-	20
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실시	10	10	-	10
나.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10	10	-	10
4. 어장정화사업	20	20	20	10
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10	10	10	-
나.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10	10	10	10
5. 자율관리위원회 운영	10	10	10	6
가. 공동체 주관 어업인 의식개혁교육 실시	4	4	4	4
나. 선진지 견학 실시	4	4	4	-
다. 공동체 행사 및 홍보활동 등 실시	2	2	2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3-20 계속> '06년도 하반기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평가항목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6. 수익확대사업 추진	20	20	20	10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	10	10	10	-
나. 자체상품개발 및 포장지 개발	10	10	10	10
7.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10	10	10	10
가.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10	10	10	10
II. 참여도(연 1회 평가)	100	50	56	56
1. 단체, 협회 어선어업인의 참여인원 비율	-	-	56	56
2. 공동체 소유어장중 사업대상어장 비율	50	50	-	-
3. 참여어촌계 소속 어선의 자율관리참여 비율	50	-	-	-
III. 성과도(연 1회 평가)	100	100	60	60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30	30	30	30
2.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30	30	30	30
3.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40	40	-	-
IV. 지속도(연 1회 평가)	100	100	100	100
1.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25	25	25	25
2.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25	25	25	25
3.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25	25	25	25
4. 공동체 회원증가율	25	25	25	25
V. 파급도 :	100	100	100	100
1.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50	50	50	50
2. 조사자 의견 등	50	50	50	50

제4장 자율관리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

-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결과는, 자율관리공동체 81.0%, 관련기관/전문가 52.5%가 긍정 평가를 한 반면, 자율관리 공동체 3.8%, 관련기관/전문가 6.3%만이 부정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 증대'라고 자율관리공동체/전문가가 각각 82%/85%로 응답하였으나, '불법어업 근절(15%, 11%)'이나 '어업인들과의 분쟁 조정(3%, 1%)'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9개 공통 측면별 평가에서는 어업질서 확립효과 측면의 평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약 준수 정도, 어장환경 개선 효과도 타 측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은 어촌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율관리어업 추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그중에서도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 증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공동체 구성원 가구 소득은 자율관리 참가 전/후의 자율관리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전에는 연평균 2,5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실시 이후에는 2,500만원 이상 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나타남
- 이와 같이, 자율관리 실시 효과 측정에 있어서, 정성적인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량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소득이라고 판단됨.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소득측정에 대한 지표개발을 시도하였으며, 측정의 이론적 검토, 일본의 사례, 타기관의 평가사례 및 적용가능성 등을 통하여 자율관리어업 실시효과 측정 지표 개발을 제시하였음 .

제1절 측정방법 이론 및 사례 검토

- 본 절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분석방법론으로 정량 및 정성적 분석들, 유무검정, 편익의 현재가치화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 특히, 일본의 자원관리형어업에 대한 성과분석 평가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 성과분석에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음. 또한, 통계청 어가지표를 통하여, 동 성과 분석을 하기위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1. 분석방법론

- 일반적으로 사업의 측정지표는 정성적방법과 정량적 방법으로 구분됨. 이러한 분석방법에서의 차이는 정량은 '수치'를 중시하는 것이고 정성은 '상황 묘사'가 중요한 것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화학에서 물질을 분석할 때 '이 시료에 어떤 어떤 물질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성 분석이고 '이 시료에 특정한 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량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량이 정성보다 더 정확, 정밀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량(수치)만 강조하다 보면 수치 자체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 수가 주는 의미를 놓쳐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정성적 방법임

가. 정성적 방법

- 정성적 방법(qualitative method)은 Quality에 의한 방법,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과의 심층인터뷰라던가 혹은 태도관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법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더 심층적인 분석, 동기 등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떤 제품 사용의 동기, 태도형성의 원인, 심리적 고려 사항들을 알아볼 때 쓰임

- 또한, 사업의 중장기 예측에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주관적인 성질을 가짐.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의 정보가 중요하게 활용되며, 통계적으로 엄격한 결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이러한 정성적 분석에는 델파이(delphi)법, 패널 동의(panel consensus)법 등의 방법이 있음.

나. 정량적 방법

- 정량적 방법(quantitative method)은 Quantaty에 의한 방법, 즉 몇 백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질문서나 전화서베이(Telephone survey), 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향, 통계 등을 조사할 때 많이 쓰임.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인지도라던가 선호도, 기억요소 등을 알아볼 때 쓰는 방법임
- 수치에 의해 주관성이 배제되므로, 통계적, 객관적인 성질을 가짐. 또한, 정성적 방법에 비해 비교적 적은 양의 자료를 가지고도 타당한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러한 정량적 분석은 인과형 예측방법(causal forecasting method)과 시계열 예측방법(time series analysis)으로 분류됨.

다. 정성 및 정량적 방법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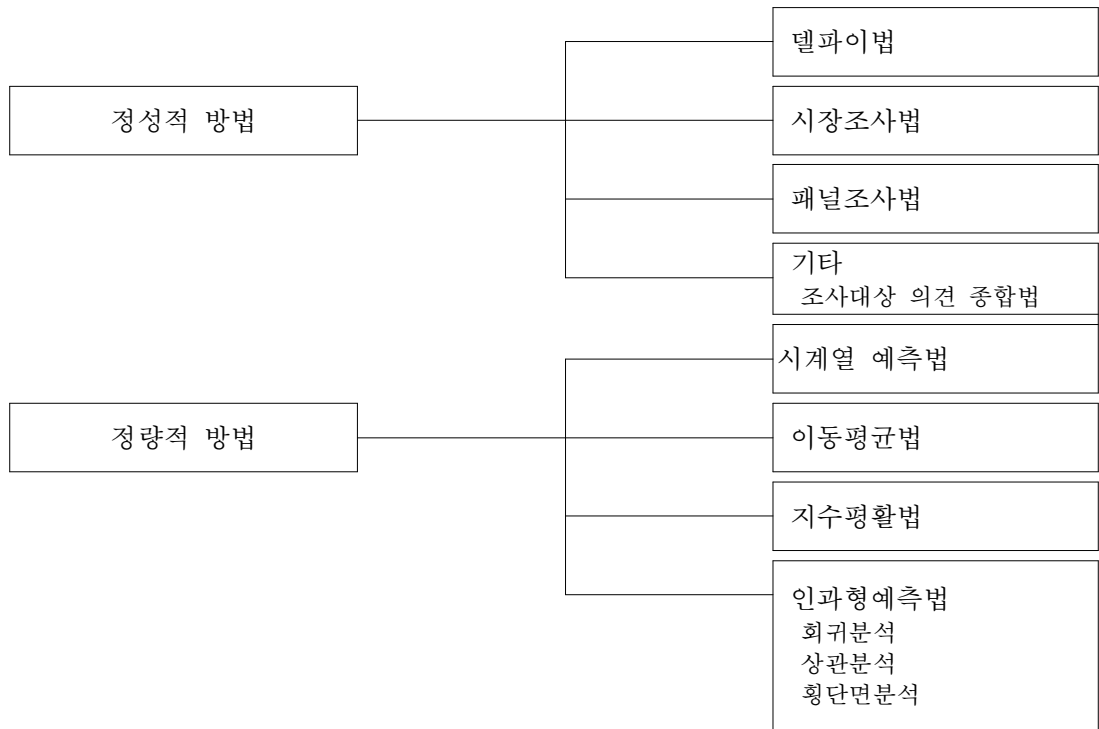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성적 분석 방법은 구체적인 수치보다도 정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함. 그러나 정량적인 분석방법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율관리공동체 소득성과 지표개발은 정성적인 분석방법 보다도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자율관리 참여 전후에 대한 소득 효과를 수치화 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4-1> 정성 및 정량적 분석방법의 주요 차이점

정성적 분석방법	정량적 분석방법	비 고
심리적 고려사항을 분석 주관적 요소의 개입 여지가 높음 개별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음	객관적인 사실 변화, 통계를 분석 주관적 요소의 개입 여지가 낮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음	정량적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정석적 방법임

- 다음으로 정성적 방법으로는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패널조사법, 기타로는 조사대상 의견 종합법 등이 있으며, 정량적 방법으로는 시계열 예측법,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인과형 예측법 등이 있음



[그림 4-1] 정성 및 정량적 분석방법의 종류

2. 유무검증

-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 효과를 분석하려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B/C 분석의 계량적인 수치를 통하여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이 경우, 분석의 신뢰도는 B/C분석에서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느냐 이며, 이와 같은 편익과 비용을 추정할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with project)와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without project)의 차이에 의거하여 편익과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제학적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하여야 만 진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before project)과 사업을 한 후(after project)의 차이를 비교해서는 안 됨
- 이와 같이 사업시행전과 후의 차이에 따른 B/C분석을 전후검증이라고 하고,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B/C분석을 유무검증이라고 한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항상 기회비용의 개념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검증에 의한 B/C 분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⁶⁾

<표 4-2> 사업전후 효과분석 일반적인 방법

구 분	A	B	C(A-B)	검정방법
접근 방법	사업을 수행 했을 경우 (with project)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without project)	사업효과	유무검정
	사업시행 후 (after project)	사업 시행 전 (before project)	사업효과	전후검증

- 예를 들어,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하였다고 가정하면, 자율관리어업을 수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업소득이 100만원이고, 자율관리어업을 한 후의 어업소득은 자율관리어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80만원으로 감소할 수 있음

6)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2003.12, p.360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관리어업 사업 전후만을 비교하면, 자율관리어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소득은 20만원(=100만원-80만원)감소함으로써 이 사업의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
- 그러나 자율관리어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업소득은 80만원보다 더 적은 50만원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관리어업의 추진 유무에 의해 어업소득은 20만원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30만원(=80만원-50만원)의 감소폭 축소효과(편익)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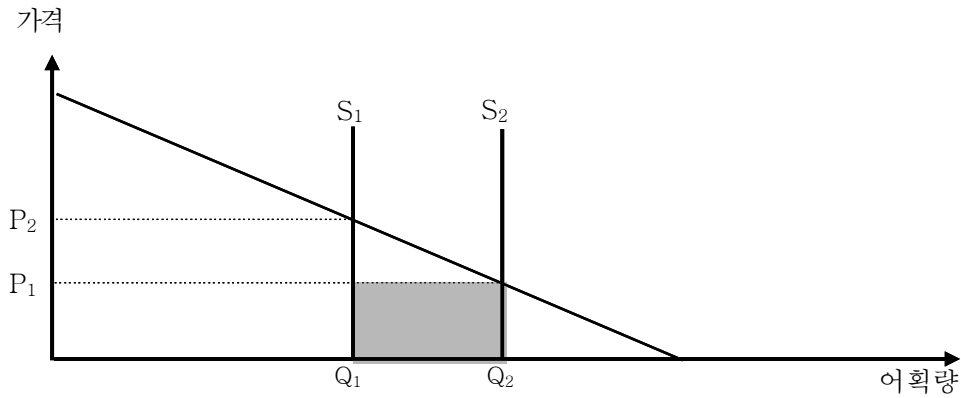
<표 4-3> 유무검정과 전후검정의 특징

구 분	내 용			비 고
전후검정	가 정	자율관리실시전 (Before)(A)	자율관리실시후 (After)(B)	(B)-(A)
	실시 전 : 100만원 실시 후 : 80만원	100만원	80만원	- 20만원
유무검정	가 정	사업시행 시 (with project)	시행하지 않은 경우 (without project)	감속폭 축소효과
	시행 유 : 100만원 시행 무 : 50만원	100만원	80만원→ 50만원	30만원

3. 편익의 현재가치화

가. 자율관리어업의 직접적 효과: 자원회복효과(생산자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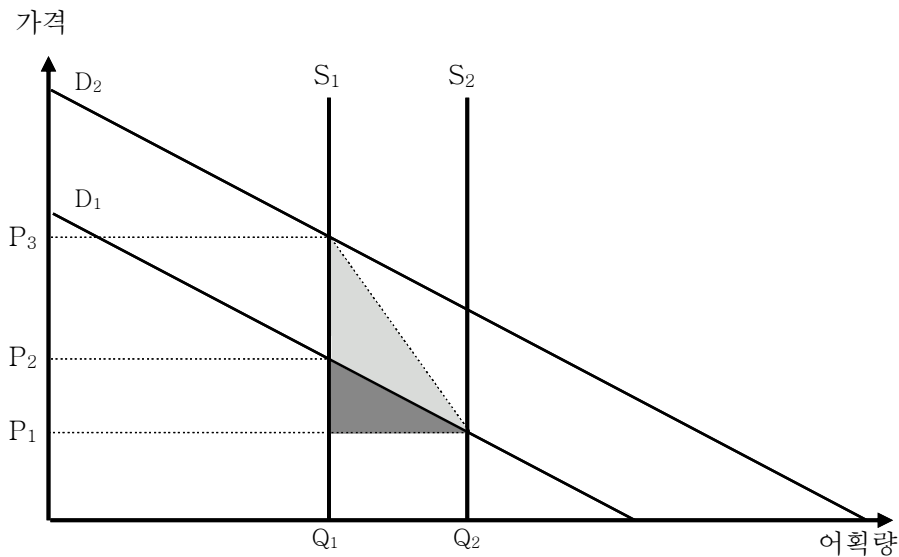
-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어획량 증가로 인한 직접적인 편익은 추가적으로 어족자원을 더 소비함으로써 증가하는 편익을 말함. 만약 공급이 S_1 에서 이루어지다가 S_2 로 증가하면서 Q_1 에서 Q_2 까지 소비량이 증가한다. 만약, 수요가 고정되어 있다면 이로 인하여 가격은 P_2 에서 P_1 로 하락하고 추가적인 소비량 증가에 의해 자원회복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생산자 잉여로서 그 편익은 $P_1 \times (S_2 - S_1)$ 로 정의될 수 있음



[그림 4-2] 어업생산량 증가로 인한 직접적 편익증가효과(생산자잉여)

나. 자율관리어업의 간접적 효과: 소비자잉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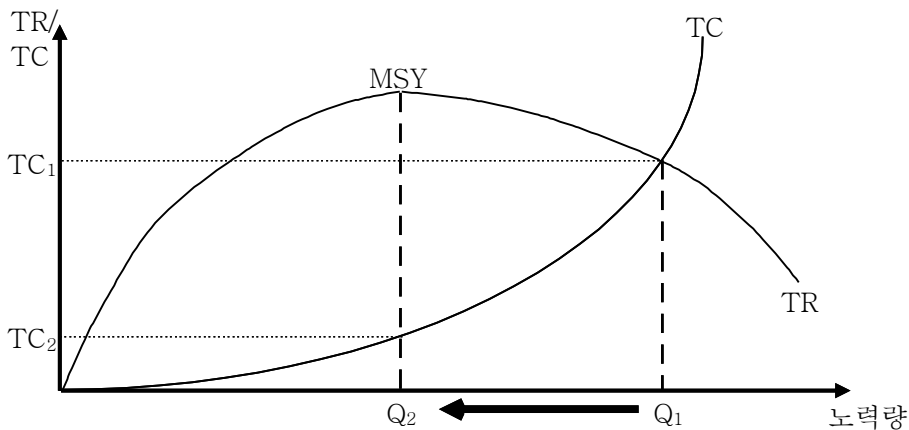
- 직접적인 편익 이외에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의 수산자원을 소비할 수 있음으로 소비자의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만약 수요곡선이 D1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어획량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 잉여는 $(P_2 - P_1)(Q_2 - Q_1)$ 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수요가 증가되어 수요함수가 D1에서 D2로 이동하게 되어 소비자 잉여는 $(P_3 - P_1)(Q_2 - Q_1)$ 로 증가함



[그림 4-3] 어업생산량 증가로 인한 소비자 잉여 증가

다. 자율관리어업의 간접적 효과: 어획비용의 감소

- 어획비용의 감소란 어획활동을 위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던 노력이 감소함에 따라 어획 노력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어 나타나는 편익임. 이는 다른 산업에 투입되어 새로운 생산 활동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좀더 많은 편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절약된 비용만큼만 편익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Q_1 까지 어획노력이 투입되었다가 자율관리어업으로 인하여 점 Q_2 까지 어획노력이 감소함에 따라 TC_1-TC_2 만큼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참고로 여기에서 TR(Total Revenue : 총수익), TC(Total Cost : 총비용), MSY(Maximum Sustainable Yield : 최대지속적 생산량)를 가르킴



[그림 4-4] 어획노력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효과

라. 자율관리어업의 간접적 효과: 기타의 효과

- 생계를 위하여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닌 여가선용이나 취미 활동으로 어획행위를 하는 사람의 경우 어획량의 증가는 심미적인 측면에서의 편익을 준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편익을 레크리에이션 편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여행비용법 등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측정될 수 있고 높은 지불의사액을 갖고 있어 큰 편익을 차지할 수 있으나 이러한 편익을 즐기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은 점과 자료의 활용 및 이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큰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고 동시에 연구가 짧은 시간동안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4. 일본 및 기타사례

가. 일본의 사례

1) 자율관리형어업 추진 현황

- 일본의 자원관리형 어업은 서구를 비롯한 기타 국가들의 협동적 관리어업과는 달리 공동체적 관리어업이라 할 수 있으며, 어업협동조합 혹은 마을이라는 사회단위가 그 중심을 이루기 때문임. 이러한 공동체적 어업자원관리 형태인 일본의 사례는 그 역사도 깊고 사례도 다양함
-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원관리형 어업의 형태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주된 목표를 중심으로 자원관리, 생산관리 및 경영관리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전일본해원조합동맹의 정의에 의하면 자원관리형어업이란 “국민의 식생활이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수산단백질 식량의 수요량을 자급하기 위해서 자원과 어획노력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자원관리형어업에 있어서 관리의 대상은 어업자원의 유지·증대에 직접 관여하는 자원관리와, 어업노력을 규제하기 위한 어기, 어선, 어구 등을 중심으로 한 어업관리라고 하고 있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이러한 자원관리형 어업은 '70년대말부터 '80년대초까지는 지구별어협의 조합원들이 자율 관리 조직을 결성하여 각자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음. 이후 '77년에 학계에 의해 이 형태가 소개되고, '83년 일본 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자원관리형어업의 확립에 관한 결의”를 행하기까지는 정부의 지원과는 무관하였음
- 1983년부터 1990년까지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기는 하였지만, 특별한 지원이 없이 사회적 운동의 성격이 강하였음
 - 일본 수산청에서는 1984년 예산으로 자원관리형어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조치를 취하였는데, 청내의 의사통일의 촉진을 위해서 1983년 6월에 「자원관리형어업으로의 이행에 대해서」를 연구부에서 취합하였음.
- 일본 수산청은 1984년 이후 30년에 걸쳐 자원관리형어업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정부지원 없이 어업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일본 자원관리형어업을 실천하는 조직 수는 증가하다가 2003년 어업센서스에 의하면 처음으로 감소하여 자원관리형어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임

2) 자원관리형어업 정부지원

- 주지하는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공적규제에 의한 구분방식 외에, 자원관리형어업에서 자원관리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이 있음. 일본의 자원관리형어업은 다분히 자생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자원관리형 어업의 특징은 어업활동에서 여러 가지를 인내하고, 공동체 자체 자금지출하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높은 수익 달성을 위한 인내의 어업)
- 그러나 1991년에서 1995년 동안 일본 정부의 주도로 「자원관리형어업의 종합대책」이 만들어져 추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히 확산되었음. 여기에서 지원이라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조장을 위한 인센티브의 성격이 강하였고, 중앙정부의 주도라고 보기는 힘들
 - 즉, 중앙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실질적인 추진은 지역 어업인 혹

은 어업인단체들의 자율적인 추진과 지방정부의 조장정책이 주가 됨

- 이후 오늘날까지 자원관리형어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적 자원관리형 어업, 자본회복계획 등과 같은 형태로 파생 혹은 발전되어 오고 있음

3) 실패 원인 및 정책방향 전환

-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자원관리형 목적이 자원회복, 자원의 합리적 이용, 어가소득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함.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자원관리형 어업의 커다란 중심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자원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음. 자원관리형 어업이 “종래의 어획만을 생각한 어업이 자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발한 어업형태라는 점을 감안하기 때문임
- 따라서, 자원관리형 어업을 통한 자원회복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기다림”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원관리형 어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얻고자 할 경우 상당기간을 어업자들이 기다려야 함. 그 이유는 대부분 자원관리의 수단으로 금어기와 같은 각종 제한, 혹은 재방류 등의 어획감소 수단을 취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기다림”은 공동체 전체의 합의와 그들 모두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자원관리어업 실행 후의 결과가 반드시 소득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음. 결국 어떠한 보조적인 수단, 예를 들어 소득보전 수단과 같은 것이 없을 경우 합의를 도출하기 힘든 것이 현실임. 일본에서 많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음에도 일본 전체 어촌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인식한 일본 수산청은 그 동안 자원관리형어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던 광역의 자원관리형어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원관리형어업의 일부를 자원회복계획으로 이행하고, 소규모 정착성 어종에 대한 자원관리는 기존의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자원회복계획은 수산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간여와 지원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자원관리형어업과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합적 자원관리형 어업형태이며, 이는 단순히 자원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단 즉 품질관리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자원회복 때까지의 수익감소를 만회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복합적 자원관리형 어업 이외에 현재 일본 수산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관리수단인 자원회복계획이 있음. 재배어업이 자원관리형 어업의 한 형태라고 한다면 이를 포함하는 자원회복계획도 당연히 자원관리형 어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음. 동 자원회복계획은 기본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회유하는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가유지형에서 대상으로 하는 정어리 등이 대표적임

-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으로는 자원관리형어업 추진 종합대책 사업(1991-1997)이 있으며,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광역회유 자원 5년간, 연안특정자원 3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자원 등의 현 상태 조사, 관리수법의 검토 및 자원관리지침 책정(관리효과의 예측 등)을 실시하고, 어업자에 의한 관리조직의 구성 및 구체적인 관리수법의 검토를 한 후, 자원관리계획이 전국 각 지역에서 다수 책정되는 등 자원관리형어업의 추진에 관한 사업임

- 다음으로 복합적('90-'02) 및 다원적 자원관리형어업의 추진사업('03-)이 있으며, 동 사업은 양, 질(가격), 코스트 대책으로 폭 넓은 사업실시로 이행하였으나 지역간의 대책 내용의 차이 및 광역적인 대처방안 등에서는 한계가 나타남. 그 외에도 자원관리협정제도 신설이 있음

4) 한국과 일본의 공동체 평가방법 비교

- 한국과 일본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하여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첫째, 먼저 동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공히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4장 자율관리어업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

- 둘째, 따라서 실질적인 추진조직은 일본의 경우 지역어업인, 어업인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자원조장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일본에 비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해 한국은 우수 공동체에 대하여 육성사업비(인센티브 : 중앙 50%, 지자체 40%, 자담 1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91-'95 기간에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였으나 그 이후로 최근까지 타 계획과 연계하여 자율관리형 어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정부지원은 한국만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넷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어촌계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복합적 자원관리형 어업 및 자원회복계획 등과 연계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섯째, 정부지원 기준 및 공동체 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특별한 평가가 없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음. 일본은 자율관리형어업의 성과로 소득을 염두 해두고 있는 것은 한국과 유사하나 동 운동을 통하여 자원회복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소득으로 연계되는 기간이 상당함을 고려하여 소득은 기다림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의 자율관리어업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확산해서 정착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전체 어촌의 도입이 되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4-4> 한국과 일본의 자율관리어업 평가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차이점
중앙정부의 역할	계획수립, 사업실시요령, 예산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수립, 예산편성	유사
실질적 추진 조직	중앙정부(지방청), 시도	지역어업인, 어업인단체 자율적 추진, 지방정부 자원조장정책 연계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 추진
정부지원 여부	- 육성사업비(인센티브) 지원, - 중앙 50%, 지자체 40%, 자담 10%)	- '70-'82 : 어협자율관리 조직결성 (독자적 운영) - '83-'90: 정부적극 권장, 지원없음, 사회적운동 성격 강함 - '91-'95 : 중앙정부 일부 지원 (급속히 확대), 조장을 위한 인센티브, 중앙정부 주도가 아님 - '96-'05 : 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별도의 지원 없음	한국만 인센티브 제공
향후 추진계획	대부분의 어촌계 참여 유도	복합적 자원관리형 어업, 자원회복계획 등 연계 발전도모	한국은 모든 공동체 참여 유도
정부지원 기준	매년 공동체 평가하여 우수공동체 지원	예산신청시 검토하여 지원 (수산정책자금 지원 유사)	일본 없음
공동체 평가 여부	평가함	특별한 평가 없음	일본 없음
소득증가 여부	1년 단위로 평가	- 소득은 기다림의 산물 (자원회복은 상당시간 소요)	인식의 차이
성공여부	어느정도 확산됨	- 타 계획과 연계 추진 - 전체어촌 도입 못함/실패 (소득보전 수단 없음)	한국 확산중

나. 통계청 어가평가지표

- 통계청에서 어가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초자료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함
- 즉, 은행자동이체 파악, 수입의 경우는 수산물판매대금, 급여, 조의금, 임대료, 축의금 등이며 현물의 경우는 품삯, 임대료로 받음 수산물, 선물받은 것 등임
- 지출의 경우는 현금 지출 시에는 종패, 양식용 사료, 어구 등 구입, 비료, 농기구 등 구입, 생활물품 구입, 노임 지불, 부채반제, 이자지출, 임차료 지불, 토지구입, 세금납부, 저축, 교통비, 오락비, 기타가계비 지출 등의 조사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현물 지출 시에도 품삯 또는 임대료로 수산물 등 지불, 외상구입, 선물증여, 식사제공 등의 조사가 필요함
- 또한, 어업투입내역의 경우는 노동투입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주, 배우자, 기타가족, 고용노동, 품앗이, 일손돕기 등의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선사용시간의 조사에서도 자가, 임차 등의 자료가 필요함

1) 어가의 생산성지표

- 노동생산성 :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써 얻은 생산량의 비율
 - 어업부가가치÷영어시간
 - ※ 노동생산성 지표는 자본생산성 지표와 함께 어업과 타 산업 또는 어가 상호간의 경제적 능률을 비교하는 주요지표
- 자본 생산성 : 투하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을 말하며, 자본계수와는 역수의 관계에 있음
 - 어업부가가치÷어업자본액×100
- 자본구성도(자본장비율) : 일반적으로 노동자 1인당 자본액을 말하는데 어업의 경우 가족노동이 많고 노동의 계절성 때문에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노동자 1인당 자본 장비율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시하지 않음

- $\text{어업자본액} \div (\text{노동생산성} \times \text{자본계수})$

- 자본계수 : 일정한 기간의 생산량에 대한 자본량의 비율
- $\text{어업자본액} \div \text{어업부가가치}$

2) 어가경제 안정성 지표

- 유동비율 :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표준비율은 200% 이상으로 보고 있음
- $\text{유동자산} \div \text{유동부채} \times 100$
- 부채비율 : 회사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기업자본 구성의 안정도, 특히 타인자본 의존도를 표시하는 지표임
- $\text{부채} \div \text{자기자본} \times 100$
- 자기자본비율 : 총자산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
- $\text{자기자본} \div \text{총자본} \times 100$
- 자본부채비율 : 총자본 \div 부채총액 $\times 100$
- 고정비율 : 기업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운용기간이 장기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어느정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 $\text{고정자산} \div \text{자기자본} \times 100$
- 고정장기적합률 : 고정자산 대 장기자본비율 이라고도 한다. 자기자본에 고정부채와 준비금을 보탠 장기자금으로 고정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조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사용함
- $\text{고정자산} \div (\text{고정부채} + \text{자기자본}) \times 100$
- 어업고정자본비율 : 어업고정자본 \div 자기자본 $\times 100$

5. 소결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방법론에 있어서는 자율관리 소득 성과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방법보다도 정량적인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또한 유무검증에서 언급되었듯이 자율관리 실시 전후에 대한 평가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 사업실시 전(Before Project)과 사업실시를 한 이후(After Project)의 차이를 B/C분석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B/C분석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임으로 현재보다는 향후에 이런 기법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자율관리어업 평가 관련 기법을 접목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특별한 평가보다도 예산 신청 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원관리형어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할 수가 없었음
- 특히 일본의 경우는 지역어업인, 어업인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공동체의 자담을 이용하여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원관리형어업에 한정하는 것보다도 복합적 자원관리어업 및 자원회복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타 분야의 적용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청 어가평가지표는 가장 바람직한 평가지표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접목하는 것이 평가지표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어가의 생산성 지표, 어가의 안정성지표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접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음

제2절 자율관리 평가 소득지표 개발(안)

- 본 절에서는 자율관리 평가 소득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평가목적 및 방향, 소득 관련 용어의 정의, 자율관리 평가 소득지표 개발 대상, 자율관리 공동체 성과 소득지표 측정방법(시나리오별) 및 이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하여 자율관리 참여 전/후 소득 평가지표 개발(안)을 제시하였음

1. 평가목적 및 방향

- 자율관리어업은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성과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의 참여 전/후를 소득 비교를 통하여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수립과 대내외 참고자료로 활용
- 자율관리 평가소득지표 개발 방향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지표 작성(안)을 제시하고, 참여 전/후의 효과를 정량적(계량적,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음
- 또한, 평가작성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전산화 하되, 적극 참여하는 기관 및 공동체에 대하여 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동 평가가 실현가능하도록 하였음

2. 소득관련 용어의 정의

- 자율관리어업 소득 변화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파악되어야 할 용어는 크게 어가수지, 어가부채, 어가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음

가. 어가수지

- 어가수지 중에서 소득과 관련있는 것은 어가소득 경상소득, 어가 순소득,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등이 있음
- 그 외에도 어업총수입, 어업경영비, 가계비, 어가경제 잉여 등임

<표 4-5> 어가수지관련 용어의 개념 정리

용 어	정 의
어가소득	어업소득, 어업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금액
경상소득	어가순소득과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
어가 순소득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을 합산한 금액
어업소득	어업총수입에서 어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어가의 당해년도 어업생산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소득을 의미
어업총수입	어가가 당해년도의 어업경영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으로 수산물의 판매수입, 현물지출분 평가액, 수산물의 자가소비 평가액, 수산물 재고증감액을 합산한 총액
어업경영비	어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소모적 비용으로서 현금어업지출, 어업지출현물 평가액, 어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어업생산자재 재고증감액을 합산한 금액
어업외소득	어가가 어업이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을 합산한 금액
겸업소득	어가가 어업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농업, 수산물가공, 기타겸업에서 얻은 소득과 산나물 채취 등의 판매수입을 모두 합산한 금액
사업외소득	어가가 사업외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어가 가구원이 노동력을 제공 하고 얻은 노임, 급료 등의 근로소득과 그외 임대료, 이자 및 배당수입, 유가증권매매차입금등의 자본수입을 합산한 금액
이전소득	어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비경상소득	어가가 비경제적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비경상적인 수입으로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사고보상금, 기타비경상적인 수입을 모두 합산한 금액
처분가능 소득	어가소득에서 가계비의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어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며 가계비의 소비지출과 어업 및 어업외 사업을 위한 생산적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가계비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소모적 비용으로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등의 소비지출과 가계부문조세, 공적연금, 출타자녀교육비, 등 비소비 지출을 합산한 금액
어가경제 잉여	분가능소득에서 가계비의 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잉여금은 흑자 손실은 적자를 의미

나. 어가부채

- 부채는 어업경영자 이외의 채권자가 어가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청구권을 말하며, 경영주 입장에서 보면 채무로서 차입금과 미불금 및 선수금이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종류별 : 차입금, 미불금 및 선수금
 - 성질별 : 고정부채, 유동부채
 - 차입처별 : 금융기관, 사채

다. 어가자산

-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대동물, 대식물 등과 같이 1회의 생산 과정(회계기간/년)동안에 전부 소모되어 생산물로 전환되지 않고 수년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유형자산과 형태를 가추지 않고 어가의 자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어업권, 경작권, 전세권 등 무형자산이 해당되며, 토지는 다른 자산에 비해 영구적이므로 감가상각은 하지 않음
- 유동자산 : 당해회계년도에 생산하여 기간동안에 대부분 처분이 되는 농수산물과 1회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그 가치가 생산물로 거의 전환되는 재고자산과 자체로서는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못하고 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으로서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투입될 수 있는 현금과 예금, 미수금 및 선급금 등 당좌예산이 해당 됨

※ 고정자산의 평가방법

- 감가상각 및 평가액 산출방법 : 고정자산중 토지, 대동물, 대식물과 유동자산은 연초 연말 가격으로 각각 평가하고 건물,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등은 내용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감가상각비 = 연초 제조달가격×사용월수내용년수12 - 연초 평가액 = 연초 제조달가격 - (당해년도 감가상각비 × 경과년수)
 - 연말 평가액 = 연초 평가액 + 연중 증가액 - 연중 감소액 - 당해년도 감가상각비

3. 자율관리 평가 소득지표 개발 대상

가. 어업에서 일반적인 소득의 개념

○ 일반적으로 어업에서 소득이라 함은 어가소득 혹은 어업소득을 말함

1) 어가소득

- 어가소득 : 어업소득 + 어업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 이와 같이, 어가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6가지 이상을 파악해야 함

<표 4-6> 어가소득 계산시 필요한 소득 항목들

구 분		계 산 방 법
어업소득		어업총수입-어업경영비
어업외 소득	겸업소득	농업, 수산물가공, 기타겸업(유어낚시, 어촌관광 등)에서 얻은 소득과 산나물 채취 등의 판매수입을 모두 합산한 금액
	사업외소득	근로소득(노임, 급료 등)+자본수입(임대료, 이자 및 배당수입, 유가증권매매차입금등)
이전소득		어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비경상소득		어가가 비경제적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비경상적인 수입으로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사고보상금, 기타비경상적인 수입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어업소득

- 어업소득이하 함은 어업총수입에서 어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어업총수입-어업경영비)으로서 어가의 당해년도 어업생산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소득을 의미함
- 어업총수입 : 수산물의 판매수입, 현물지출분 평가액, 수산물의 자가소비 평가액, 수산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재고증감액을 합산한 총액

- 어업경영비 : 현금어업지출, 어업지출현물 평가액, 어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어업 생산자재 재고증감액을 합산한 금액

나. 자율관리 성과 측정 소득지표 대상

- 어가소득 및 어업소득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 소득의 개념이 매우 다양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해당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어가소득(어가부채), 농가소득,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등으로 소득이라함은어가, 농가, 가구 등이 대상임
 - 자율관리어업의 경우도 참여하고 있는 어가의 소득의 증감이 중요하며, 특히, 어업소득 뿐만 아니라 어업외소득도 중요함을 감안하여 어가소득을 지표로 삼아야 함
- 즉, 자율관리어업은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자율관리 어업의 성과는 참여하고 있는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어가소득에 대한 측정이 성과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4. 자율관리 공동체 성과 소득지표 측정방법(안)

- 자율관리공동체 성과지표 소득지표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1안(공식적인 어가소득자료 활용하여 측정 방법, 제2안(통계청 어가경제조사 방법 준용), 제3안(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시 산출하는 방안), 제4안(공동체별 생산량/생산액, 어업경비 월별 작성 방안) 등 4가지 방안에 대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음

가. 제1안 : 공식적인 어가소득자료 활용하여 측정 방법

1) 어가소득 변화 추이

-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5년간('01~'05) 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어업소득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고, 어업외소득은 감소, 이전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5년간 평균적으로 어업소득율은 42%, 어업외소득은 37%, 이전수입은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4-7> 어가소득 연도별 추이

구 분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 어가소득	천원	21,463	21,590	23,916	26,159	28,028	-
- 어업소득율	%	39.8	39.0	44.9	45.8	42.7	42.44
- 어업외소득율	%	39.3	39.8	36.0	35.0	33.5	36.72
- 이전수입율	%	20.9	21.2	19.1	19.2	23.8	20.84
○ 어가부채	천원	22,848	28,792	29,836	32,544	34,531	-

자료 : 어업기본통계현황 각 년도, 해양수산부

주1) 어가소득 = 경상소득(어업소득+어업외소득+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주2) 2003년부터 이전소득에서 비경상소득 분리

2) 유형별 어가소득

- 자율관리어업은 마을, 어선, 양식, 내수면, 복합어업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마을 어업 유형은 어선비사용가구 적용, 어선어업은 동력선 사용가구, 양식은 양식업 가구를 적용, 내수면의 경우는 어선비사용가구, 복합은 어선비사용가구+동력선가구를 적용하여 비교하는 기초자료 활용
 - 어선비사용가구 → 마을어업, 내수면어업
 - 동력선사용가구 → 어선어업
 - 어선비사용가구+동력선가구 → 복합어업

<표 4-8> 어업형태별 어가소득

(단위 : 천원)

구분	어가소득	어선비사용가구	동력선사용가구	양식업가구
2001	22,252	17,730	21,410	30,046
2002	21,816	19,001	22,629	24,082
2003	23,916	21,332	23,324	25,477
2004	26,159	20,907	25,744	27,294
2005	28,028	21,774	25,898	34,221

주) 어가소득 '03-'05은 어업기본통계현황 자료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 각년도

3) 어가소득자료 기준 비교법(안)

- 어업형태별 공식적인 통계자료의 어가소득을 기준으로 어업소득율, 어업외소득율, 이전수입율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방안이며, 단계별 추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추정방법(2005년도)

- 유형별 기준이 되는 어가소득 :

- 마을(21,774천원), 어선(25,898천원), 내수면(21,774천원), 복합(23,836천원)/마을+어선 평균

제4장 자율관리어업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

□ 2단계 추정방법

○ 유형별 기준이 되는 소득율 :

- 어업소득율 : 42.7%, 어업외소득율 : 33.5%, 이전수입율(비경상소득포함) : 23.8%

□ 3단계 추정방법

○ 소득율 증감율 기준 : -30% -20% -10% 0% +10% +20% +30

□ 4단계 추정방법

○ <어선어업 예시 : 모든 소득율 10% 증가 가정>

- 어선(25,898천원) × [((어업소득율 : 42.7%, 어업외소득율 : 33.5%, 이전수입율(비경상소득포함) : 23.8%))×10%] = 25,898천원 × 10% = 25,898+2,290 = 28,188천원

<표 4-9> 자율관리공동체 유형별 소득 증감율 추정(예시)

(단위 : 천원)

공식통계 어가소득('05)(A)		전년대비 어선공동체 소득 증감율			연간 공동체 소득 증가율 추정
		어업소득(B)	어업외소득(C)	이전소득(D)	
마 을	21,774	-30%...+...30%	-30%...+...30%	-30%...+...30%	증감율(B+C+D)×A 를 계산하여 비교
어 선	25,898	-30%...+...30%	-30%...+...30%	-30%...+...30%	
양 식	34,221	-30%...+...30%	-30%...+...30%	-30%...+...30%	
내수면	21,774	-30%...+...30%	-30%...+...30%	-30%...+...30%	
복 합	23,836	-30%...+...30%	-30%...+...30%	-30%...+...30%	

주) 증감율 기준 : -30% -20% -10% 0% +10% +20% +30

나. 제2안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방법 준용

-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가경제조사 방법을 준용하는 방안임
 - 조사대상 : 전체 자율관리어업 유형별 참여공동체(마을, 어선, 양식, 내수면, 복합)
 - 조사방법 : 어가소득과 관련된 설문조사 작성(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비경상소득 포함), 이를 어가에 비치하여 매일 발생하는 어업 경영상황과 가계수지상황을 어가에서 직접 기입)
 - 조사체계 : 표본 자율공동체→지방청 전담지도사 → 해수부 자원관리과
 - 조사실시 기간 : 매월 1일 ~ 말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단위로 1년간 조사실시
 - 표본설계 :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 복합어업은 모집단의 10%,마을어업은 공동생산임으로 어촌계 총회자료 활용
 - 표본관리 : 조사구내 모집단 명부를 관리하여 어업소득, 어업형태 등 유사 순위에 따라 대체하여 조사구내 대상가구수 유지
 - 작업처리 순서 : 매월 : 현장조사→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 입력 → 전산내검 → 해수부 내검
 - 자료입력 방법 : 지방청 자율관리 전자평가 입력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의 경우는 276개 조사구에서 조사구당 4 ~ 5호씩 표본어를 추출하여, 1175호를 선정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
 - 이들 조사대상중에는 자율관리공동체가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계청으로부터 협조 및 확보하여 활용

제4장 자율관리어업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

<표 4-10> 통계청 어가경제조사와 자율관리공동체 어가소득 조사 비교

구 분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소득 조사
조사목적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어업정책 수립과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의 참여 전/후를 소득 비교를 통하여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수립과 대내외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주기	연 간	좌 동
조사대상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해면어업 어선 비사용가구, 해면어업 무동력선 사용가구, 해면어업 동력선 사용가구, ·해면어업 양식업 가구	전체 자율관리어업 유형별 참여공동체 (마을, 어선, 양식, 내수면, 복합)
조사지역	전 국	참여자율관리 공동체
조사방법	○ 일계부(자계식 기입조사) *) - 어가에 비치하여 매일 발생하는 어업 경영 상황과 가계수지상황을 어가에서 직접 기입 ○ 원부(면접조사) **) - 연2회(연초, 연말) 조사원이 어가 재산(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경영주와 면접조사하며 연중 변동사항은 수시로 면접조사	어가소득과 관련된 설문조사 작성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비경상소득 포함)하여 어가에 비치하여 매일 발생하는 어업 경영상황과 가계수지상황을 어가에서 직접 기입
조사체계	- 담당공무원 또는 표본어가 → 지방청 및 사무소 → 통계청농수산과	- 표본 자율공동체 → 지방청 전담 지도사 → 해수부 자원관리과
조사대상 기간/시점	대상기간 : 조사대상년도 1. 1. ~ 12. 31.	조사대상년도 1. 1. ~ 12. 31
조사실시 기간	기간 : 조사대상년도 매월 1일 ~ 말일 * 일계부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단위로 1년간 조사실시 * 원 부 : 매년 연초 및 연말 실시하나, 연중변동사항은 수시조사실시	매월 1일 ~ 말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단위로 1년간 조사실시

*) 일계부 : 어선 및 어장면적, 작물재배현황, 수입 및 지출, 어업노동 투입내역, 수산물생산량, 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중 자가소비량 등

**) 원부

· 어가자산 :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

·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선박및기계기구비품, 대식물, 대동물의 유형자산과 어업권, 영업권, 전세권 등의 무형자산으로 구분

· 유동자산 : 현금, 예금, 보험금, 유가증권 등의 당좌자산과 미처분농수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사용중인 어업용자재 등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 어가부채 : 어업경영자이외의 채권자가 어가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청구원을 말하며 차입금과 미불금 및 선수금으로 구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4-11> 통계청 어가경제와 자율관리공동체 어가소득 조사방법론 비교

구 분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소득 조사
표본 설계	모집단	2000년 어업총조사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 어가(81,571호)를 모집단으로 하고 전업어가와 1종겸업어가로 구성된 부차모집단1과, 2종겸업어가로 구성된 부차모집단2로 구분함	자율관리공동체 전체
	추출틀	2000년 어업총조사시 사용한 농·어업 조사구를 사용하여 부차모집단1과 부차모집단2로 나누고, 부차모집단1에서 6가구가상의 어가가 있는 조사구를 표본 추출틀로 사용함.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 복합어업은 모집단의 10%, 마을어업은 공동생산임으로 어촌계 총회자료 활용
	층화	2000년 인구주택조사구 3,333개 조사구 중 전업및겸업어가수가 6호이상인2,137조사구를 대상으로 몇 개의 도 또는 직할시를 병합하여 지역층을 구성하고, 각 지역층에서 유의적인 층화변수를 선택하여 층화함.	소득이 최저,중간, 최상을 층화하여 선택함
표본 추출법	층별 표본 조사구	네이만배정법을 사용하여 배정/크기비례확률 계통추출	-
	표본조사구		
	전업및 1종겸업표본가구	표본조사구내 가구를 판매금액에 따라 정렬한 후 계통추출	-
	2종겸업표본가구	표본조사구내의 2종겸업가구 중 랜덤추출	-
	표본규모	276개 조사구에서 조사구당 4 ~ 5호씩 표본어가를 추출하여, 1175호를 선정	마을어업 전체, 어선어업은 모집단중 10% 선택
표본오차	목표오차 5%내외		
표본 관리	조사구 관리	조사구내 모집단 명부를 관리하여 어업소득, 어업형태 등 유사 순위에 따라 대체하여 조사구내 대상가구수 유지	좌동
	표본 관리	매년 정기적인 조사구내 가구명부 작성 및 규모, 성격 등을 파악하여 표본변경시 반영함	좌동
	비표본오차 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사자료 수집의 정확성 도모, 매일 자료의 내검 및 수준분석을 통해 비표본오차 최소화 노력	좌동
자료 처리 방법	작업처리 순서	매월 : 현장조사→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 입력 → 전산내검 → 본청내검 매년 : 년도별 자료집계→ 분석 → 보고서 발간	매월 : 현장조사→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 입력 → 전산내검 → 해수부내검
	자료입력 방법	온라인 입력	지방청 자율관리 전자평가 입력

다. 제3안 : 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시 산출하는 방안

1) 어촌계분류평정시 소득 산출 방법

- 어촌계 분류평정 요령에 따르며, 본 평정의 목적은 매년 어촌계의 발전수준, 종사유형, 입지유형 등을 분류 평정하여 어촌계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05 발전 수준별 평정 결과를 살펴보면, 어촌계 1,952개소중에서 복지어촌 228개소(12%), 자립어촌계 682개소(35%), 성장어촌계 1,042개소(53%)로 나타남
- 평정기준중에서 평정기준일은 평가년도 말(12. 31 현재), 평정대상 어촌계는 평가년도 기준, 12. 31 현재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득한 어촌계임

<표 4-12> 지역별 어촌계 및 계원 현황(2005. 12. 31 현재)

구 분	계	경 인	강 원	충 청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부 산	제 주	
어촌계	1,952	106	76	138	64	836	156	435	41	100	
구 성 원	계	175,145	11,735	6,548	11,847	7,238	77,187	8,936	31,478	4,435	15,741
	계 원	153,535	11,352	5,485	11,241	6,436	62,862	8,922	29,771	3,765	13,701
	준계원	21,610	383	1,063	606	802	14,325	14	1,707	670	2,040

- 평정방법은 조합 직원이 어촌계를 직접 방문하여 어촌계장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어촌계평정 세부 작성요령에서 입지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근교형 : 시·군 소재지 및 인접의 어촌계로 생활여건이 도시형인 어촌계
 - 취약지구형 : 교통·통신이 불편한 낙도벽지 및 접적 지역내에 위치한 어촌계
 - 연안촌락형 : 도시근교 및 취약지구형이 아닌 어촌계
- ※ 행정구역상 시·군 소재지내 있더라도 교통·통신이 불편한 곳이면 연안촌락형이나 취약지구형으로 봄
- ※ 낙도는 교량이나 제방에 의하여 연륙되지 아니한 면단위 이하 도서를 말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벽지는 정기 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편도 3회 이하 운행하고 군·면사무소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계

- 종사유형은 어선어업협, 양식어업협, 복합형으로 구분
 - 어선어업협 : 어촌계원의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생산기반이 어선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어촌계
 - 양식어업협 :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등에 주로 종사하는 어촌계
 - 복합형 : 어선어업협과 양식어업의 세력이 비슷한 어촌계

- 소득수준은 전체 100점에서 20점이며, 어촌계 관내 어가의 호당 평균소득을 말하여, 어촌계분류 호당 어가소득 평정기준 다음과 같음

<표 4-13> 어촌계분류 호당 어가소득 평정기준

(단위 :천원)

연 도 별	통계청 발표 어가소득		2006년 배점(평균소득)
	소 득 액	신 장 율	
2000	18,875	2.4%	20점 (32,000 이상) 15점 (30,000 이상) 10점 (30,000 미만)
2001	22,252	17.9%	
2002	21,816	△2%	
2003	23,916	9.6%	
2004	26,159	9.4%	
2005	28,028	7.1%	
2006(추정)	30,382	8.4%	

※ 2006 어가 평균소득 : 통계청 발표 2000년대 이후 평균 신장률 잠정치(8.4%)를 적용하여 추정

○ 소득 = (어업소득+어업외소득) - 생산에 필요한 제비용(경영비, 감가상각비)

※ 어업외소득 = 농업소득+기타겸업소득+사업외소득+이전소득

- 이전소득 : 대체소득(代替所得). 정부기관에 의한 연금·유족원호금·육영자금과 개인이 회사(의료보험연합회 등)에서 받는 치료비 등의 사회보장 급부나 개인이 기업으로 받은 기부 등
- 수개 마을(리·동)로 구성된 어촌계의 호당소득은 적수를 산출하여 계산함

$$\frac{(00리 어가수 \times 00리 어가평균소득) + (\Delta\Delta리 어가수 \times \Delta\Delta리 어가평균소득)}{(00리 어가수 + \Delta\Delta리 어가수)}$$

$$(00리 어가수 + \Delta\Delta리 어가수)$$

※ 이 경우 소득 조사는 전체조사(전체조사), 15호 이상 조사(15~60호), 25% 표본조사(60호 초과)하며, 호당평균소득 표에 의거 산출

- 호당 평균소득의 산출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 (A) : 어촌계 관내의 어가수
 - (B) : 어촌계 어가 평균소득(관내 어가별 소득합계/어가수)
 - (C1,C2,C3 . . .) : 어촌계 적수(어촌계 관내의 어가수 × 평균소득)
 - (D) : 조합관내 총 어가수
 - (E) : 조합 어가 평균소득((F)/(D))
 - (F) : 조합 적수(어촌계 적수의 합계(C1+C2+C3 . . .))

2) 어촌계 분류평정 활용 방안

- 수협중앙회에서는 2006년 12월 기준, 1,952개 모든 어촌계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되, 자생단체(어선어업)의 경우는 추가하여 소득 평가하는 방안. 즉, 동일한 공동체(어촌계)에 대해 수협에서 소득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동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제1안으로는 수협중앙회가 평가(평정)시스템(전산화)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율관리 공동체 소득 측정을 어촌계분류 평정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 제2안으로는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 어촌계분류평정과 연계하여 수협중앙회의 일정한 평가권한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협의 자율관리 확산 및 정착에 대한 역할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음

라. 제4안 : 공동체별 생산량/생산액, 어업경비 월별 작성

- 공동체별로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생산된 생산량과 생산액을 월별로 작성
 - 단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작성
- 동시에 어업관련 경비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 지방청에서 월별로 수집한 자료를 지방청별로 분기별로 수익 및 비용추이를 분석하여 전산 입력 한 이후, 그 결과를 중앙단위 평가위원회에서 집계하여 평가 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

5. 소득평가지표 평가방안 장단점 분석

-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 평가 지표 방안에 대하여 네 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음. 이러한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장·단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제1안인 공식적인 어가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조사자가 간단히 질문하여 자료를 만들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소득 성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 오차의 범위가 매우 클 가능성이 높고 이는 현실을 반영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2안인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방법의 준용은 어가의 생산성 및 안정성 지표등을 산정할 수 있으나, 공동체 위원장들에게 많은 부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관리인력 및 추진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실 적용에 있어서 무리가 따름
- 제3안인 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시 산출하는 방안은 참여공동체가 어촌계인 경우가 많고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하는 어촌계 분류평정자료에 추가하여 산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수협중앙회 입장에서 조사 인력의 부족 및 신뢰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동 방안은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4안인 공동체별 소득과약안은 공동체 위원장이 간단히 작성하여 지방청에 제출하게끔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어가소득은 어업소득, 어업 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이전소득, 비 경상소득 등 매우 복잡하고 이를 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따라서 어가소득을 어업소득으로 전환하여 간단한 평가서를 만들어 공동체 위원장이 작성케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제1안에서 제4안까지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제4안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단, 어가소득을 어업소득으로 개념을 바꾸어 접근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4장 자율관리어업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

<표 4-14> 소득평가지표 평가방안(안) 장단점 분석

	구 분	장 점	단 점
제1안	공식적인 어가소득자료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조사자가 간단히 질문하여 추정 가능함. 공동체들에게 부담 최소화	추정결과치의 오차범위가 클 가능성이 있음
제2안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방법 준용	- 공동체 소득평가가 현실에 근접함. 어의 생산성지표 및 어가경제 안정 성 지표 산정을 통하여 성과 자료 활 용 가능 <통계청 표본어가 1,175호 활용>	공동체 위원장들에게 많은 부담됨. 계산이 복잡함, 관리인력 및 추진비용 과다
제3안	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시 산출하는 방안	- 현재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인력 과 평가(평정)시스템(전산화)을 지니고 있음으로 가능함 - 수협중앙회의 일정한 역할 및 평가권 한 부여 가능	현행 소득측정방법 개선 필요
제4안	공동체별 생산량/생산액, 어업경비 월별 작성	공동체위원장이 간단히 작성 가능	어업소득은 파악이 되나,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등은 파악이 어려움

6. 소 결

- 자율관리 소득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수부, 지방청, 시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를 제1차('06.12-19), 제2차('07.2.22-23), 제3차('07.4.6-7) 등 3차례 실시하였으며, 지도자협의회 회의('07.027-28), 자율관리남해안 담당자 Workshop('07.3.27-28)을 통하여 논의를 하였음
- 또한, 동서해안에 있는 공동체를 현장 방문하여 평가지표 개발시 현장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

가. 소득효과 측정 기본방안

- 자율관리어업 소득 측정은 조사방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어업소득과 자율관리어업에 의한 어업의 소득으로 한정
- 본 연구 관련 Workshop 및 토론회에서 연구팀은 어가소득을 소득지표의 범위로 제시하고, 소득 산출은 수협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촌계 분류평정시 적용하는 소득 산출 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음
 - ※ 어가소득 :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금액
-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어촌계 분류평정시 적용하는 소득측정은 조사인력 부족, 조사결과 의 신뢰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 견지
 - ※ 어촌계 분류평정 : 매년 어촌계의 자금자립도, 소득수준 등 26개 항목을 어촌계장과 의 면담조사를 통해 평정하여 복지, 자립, 성장어촌계로 분류
- 따라서, 구체적인 측정항목 및 방법은 현지실사(공동체의 기록실태조사)와 지도자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조사항목 및 서식을 개발하였고, 지방청 협조하에 공동체 위원장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나. 소득성과지표 개발(안)

1) 소득의 개념

- 소득 : 어업소득과 자율관리어업 관련 어업의 소득으로 함
 - 어업소득은 총소득에서 어업경비를 차감하여 측정
 - ※ 총소득은 어업활동으로 인한 어획물의 총판매액(사매매를 포함)
 - 어업의 소득은 어업소득 이외에 자율관리사업과 관련된 체험어장 및 유어장 운영, 낚시 어선어업 수익, 축제개최 수익 등을 말함
- 어업비용 : 어업활동에 소요된 현금으로 지출된 어업기자재구입비, 인건비, 유류비 등의 경비를 말함

2) 자료활용 및 표본의 추출

- 현지 점검결과 총소득 측정에 있어서 유형별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마을어업: 공동체 단위로 판매장부를 기록하고 있어 측정에 어려움 없음
 - 대부분 수협에 위판을 하거나, 상인에게 직접 판매 형태
- 어선어업(양식어업): 수협에 위판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용이하나, 주로 상인에게 판매하거나 활어를 인근 횃집에 공급 혹은 통신판매 등의 경우에는 집계에 한계
 - 공동체별로 위원장이 집계하여 기록함에 있어서 일부는 중도매상을 통하거나, 선협적 추정하는 정도임
- 복합형(어선+마을)어업: 마을어장에서의 수익은 공동체 단위로 집계가 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이외 부분은 상기의 어선어업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점 발생. 따라서 어선+마을을 모두 반영한 소득측정에는 한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마을 및 양식어업은 결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그 이유는 마을어업의 경우 정관에 의한 결산보고서 및 약식결산보고서 등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양식어업의 경우는 대부분 공동체 및 개인이 하고 있어 어업의 특성상 결산자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어선 및 내수면어업의 경우는 대부분 개별어선어업자 혹은 개인별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동체 소속 어선 중 10%를 조사하여 평균치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어선어업의 경우 공동체 소속 어선이 50척일 경우는 10%에 해당되는 5척을 개별 조사하여 평균치를 기재토록 함
 - 내수면 어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선어업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이 경우도 공동체 구성원 중 10%에 해당되는 어업인을 조사하여 평균치를 기재토록 함
- 마지막으로 복합어업의 경우는 대부분 마을 + 어선어업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마을과 어선의 평가를 종합하여 기재토록 하는 방안
 -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중 마을어업에 속해있는 경우는 결산자료를 사용하고,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참여어선수의 10%에 해당하는 어선을 조사하여 평균치를 기재토록 함
 - ※ 단, 마을어업의 소속되고 어선어업에도 종사하는 경우는 마을어업 총 소득에서 구성원 1인당 소득을 구하여 어선어업과 합치도록 함

<예시>

A 마을어업 구성원 중 자율관리공동체 참여 수 : 총 100명 중 50명 참여

B. A중에서 어선어업 종사자 수 : 10명

C. 계산방법 : 40명은 어촌계 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1인당 소득 산출

나머지 10명(어선어업종사)은 1인당 소득(어촌계 결산) + 어선어업소득

3) 조사 주체 및 조사 방법

- 조사의 기본적인 주체는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이 직접 작성토록 하며, 작성은 지표작성

제4장 자율관리어업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

표(안)에 기재하여 분기별로 지방청에 제출토록 함

- 그 이유는 공동체 위원장이 대부분의 소득관련 정보를 지니고 있거나 알고 있음을 고려하여 위원장으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는 것이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할 것으로 판단됨

4) 자료 처리 방법

- 월별로 공동체위원장은 소득지표 작성표(안)에 직접 기재를 하여 지방청으로 송부, 지방청은 분기별로 이를 취합하여 전산입력을 하고 이를 수산회(해수부)가 활용토록 함
 - 소득평가는 연간 평가임을 고려하여 지방청 담당자는 분기별로 취합하여 연말에 전산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평가 유도 방법

- 소득 파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그 이유는 소득 지표작성이 어려움을 감안하고, 협조 여부의 차별화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작성이 가능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소득 파악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평가 시, 최고 가산점 30점(1,000만점 시)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15> 자율관리어업 소득성과지표 개발(안)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소득의 개념	어업소득과 자율관리어업 관련 어업의 소득 어업소득 : 총소득-어업경비	조사의 어려움 반영
자료활용 및 표본추출	마을/양식어업 : 결산자료 기초로 작성 어선/내수면어업 : 공동체 소속 어선 10% 평균치 복합어업 : 결산장부 + 어선공동체 10% 평균치	참여유형별 감안
조사 주체	공동체위원장이 월별로 작성	위원장이 모든 것 파악
조사 방법	소득성과 지표작성 표(안)에 조사하여 직접 기재	조사표 작성
자료처리방법	매월 : 위원장 → 지방청 분기별 : 지방청 → 전산입력 → 해수부(수산회)	전산화 필요
평가유도방법	- 소득파악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평가시 인센티브 제공 - 평가시 최고 가산점 30점(1,000점 만점시)	작성에 어려움 감안, 협조 여부 차별 필요

6) 유형별 자율관리 소득성과 지표 작성(안)

- 자율관리 소득 성과지표 작성(안)은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마을어업과 양식어업을 하나의 통합조사표를 만들었으며 어선어업과 내수면어업도 하나로 통합하여 소득성과 지표 작성(안)을 제시하였음
- 기본적으로 이러한 작성(안)은 월별로 작성하여 지방청에 제출케 하고, 어업인들은 간단하고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매우 단순화시켜 초안을 만들었음
- 특히, 어업소득의 경우는 계통출하 및 비계통출하, 인터넷 판매 등의 유형별로 작성케 하였고 어업의 소득은 낚시어선, 체험어장, 유어장, 축제개최에 따른 수입을 기재케 하였음
- 다음으로 어업비용의 경우는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원 조성비, 인건비, 유류비, 어구비 등을 작성케 하여 합계가 간단히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함

가) 마을/양식/내수면어업 성과지표(안) 및 메뉴얼

- 마을/양식/내수면어업에 대한 자율관리 소득성과 지표작성(안)을 제시하면, 기본적으로 월별로 작성하여 지방청에 제출케 하되, 작성의 주요내용은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 어업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케 함을 원칙으로 함
- 여기에서 어업소득의 항목은 계통출하, 비계통출하(사매매), 인터넷판매, 기타판매 등을 말하며 어업외소득이라 함은 낚시어선수입, 유어장운영수입, 축제개최수익, 낚시터입장료수입(내수면), 기타수입 등을 말함
- 어업비용이라 함은 마을/양식/내수면어업에서 소요되는 자원조성비(치어,치패), 인건비, 유류비, 기타비용을 말함

제4장 자율관리어업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

<표 4-16> 마을/양식/내수면어업 자율관리 소득성과 지표 작성(안)

년도()년 ()월		공동체명 :		위원장명 :	
소 득		비 용			
어업소득(만원)		어업외소득(만원)		어업비용(만원)	
계통출하		낚시어선 수익		자원조성비 (치어,치패)	
비계통출하 (사매매)		유어장 운영 수익		인건비	
인터넷판매		축제개최 수익		유류비	
기타판매		낚시터입장료 수익(내수면)		기타비용	
		기타 수익			
총계					

※ 결산장부 확인

- 마을/양식/내수면 소득성과 지표 작성과 관련된 매뉴얼을 제시하면, 어업소득의 경우는 계통출하와 비계통출하로 구분하되, 개통출하는 수협을 통한 판매를 말하고 비계통출하는 사매매, 인터넷판매, 기타판매 등을 가르키며, 기본적으로 동 자료는 결산장부를 참고하여 기재케 함.
- 다음으로 어업외소득이라 함은 어촌계 소속의 낚시어선이 올리는 소득을 말하며, 동 소득의 경우는 어촌계소속 낚시어선들의 해당 평균을 적용케 함. 또한 유어장 운영수익이라 함은 체험학습 및 낚시등 관광용 어장에서 올리는 수익과, 어촌계 및 특정양식어업에서 축제를 통하여 올리는 수익을 말하며, 동 자료의 경우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관계되는 것이므로 결산장부를 참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내수면의 경우는 내수면에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수익금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기재케 함.
- 어업비용에서 자원조성비용이 마을어장(내수면 포함) 및 양식장 등에 치어 및 치패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하며, 동 자료는 결산장부를 참고하면 될 것임.
- 다음으로 인건비의 경우는 일용인건비와 상시고용인건비로 구분하되 동 인건비를 직접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불하는 비용을 기재케 하고 유류비의 경우는 수협에서 공급받는 면세유임을 감안하여 수협 및 결산장부를 통하여 기재케 함

<표 4-17> 마을/양식/내수면 소득성과 지표작성 메뉴얼

작성항목		평가 세부지침(안)	비고	
어업 소득	계통출하	수협을 통한 위판 판매액을 말함	결산장부 참조	
	비계통 출하	사매매		현지 중간상인, 횡집 등에 판매한 금액
		인터넷판매		인터넷을 통한 주문 판매액
		기타판매		그 이외 판매한 금액
어업외 소득	낚시어선 수익	어촌계 소속의 낚시어선이 올리는 소득	어촌계소속 낚시어선 적당 평균 적용	
	유어장*) 운영 수익	체험학습 또는 낚시등 관광용 어장에서 올리는 수익	결산장부 참조	
	축제개최 수익	어촌계 및 특정 양식어업에서 축제를 통하여 올리는 수익		
	낚시터 입장료 수입	내수면에서 유료 낚시터운영으로 올리는 수익금	내수면 해당(결산장부 참조)	
	기타 수익	기타 어업외 소득사업으로 올리는 수익		
어업 비용	자원조성비	마을어장 및 양식장에 치어 및 치패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함	결산장부 참조	
	인건비	자가인건비(어촌계원 및 양식장 운영자)는 제외하되, 상용(상시 근무)인건비 및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고용하는 일용인건비를 말함	마을어업 : 일용인건비×인원수 양식업 : 상시 고용인건수(월급여)	
	유류비	수협에서 공급받는 면세유류 구입 금액을 말함	결산장부 참조	
	기타비용	그 이외 필요한 어업경비를 말함		

*) 유어장의 지정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55조에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 또는 낚시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을 지정받아 운영.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4조(유어장의 지정등)에 근거함.

나) 어선어업 성과지표(안) 및 메뉴얼

- 어선어업에 대한 자율관리 소득성과 지표작성(안)을 제시하면, 마을/양식/내수면어업과 같이,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작성하여 지방청에 제출케 하되, 작성의 주요내용은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 어업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케 함을 원칙으로 함

제4장 자율관리어업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

- 여기에서 어업소득의 항목은 계통출하, 비계통출하(사매매), 인터넷판매, 기타판매 등을 말하며 어업외소득이라 함은 낚시어선수입, 축제개최수익 등을 말함
- 어업비용이라 함은 어선어업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어구비, 유류비, 기타비용을 말함

<표 4-18> 어선어업 자율관리 소득성과 지표 작성(안)

평가년도()년 ()월		공동체명 :		위원장명 :	
소 득				비 용	
어업소득(만원)		어업외소득(만원)		어업비용	
계통출하		낚시어선 수익<어선>		자원조성비	
				인건비	
비계통출하 (사매매)		축제개최 수익		어구비	
인터넷판매		기타 어업외 수익		유류비	
기타판매				기자재 기타비용	
총계					

※ 공동체 소속 어선(구성원)어업 1척(1인) 기준임

- 어선어업 소득성과 지표 작성과 관련된 매뉴얼을 제시하면, 어업소득의 경우는 계통출하와 비계통출하로 구분하되, 계통출하는 수협을 통한 판매를 말하고 비계통출하는 사매매, 인터넷판매, 기타판매 등을 가르킴
 - 어업소득 산정은 1척당 평균(표본 10%) × 공동체 소속 어선척수
- 다음으로 어업외소득이라 함은 공동체 소속의 낚시어선과 축제를 통하여 올리는 소득을 말하며, 동 소득의 경우는 공동체 소속 낚시어선들의 척당 평균을 적용케 함.
- 어업비용에서 자원조성비용은 공동체 주어장에 치어를 방류하기 위해 구입한 비용(자담 포함)을 말하며, 특정 어선어업 공동체가 이에 해당됨
- 다음으로 인건비의 경우는 승선 고용인건비(선주제외)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1일/월/항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차당 척당 평균인건비를 가르킴. 어구비의 경우는 1척당 자망/통발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유류비의 경우는 수협에서 공급받는 면세유임을 감안하여 수협을 통하여 기재케 함

- 공동체 소속 어선 중 10%를 조사하여 평균치 적용하여 작성

<표 4-19> 어선어업 소득성과 지표 작성 매뉴얼

작성항목		평가 세부지침(안)	비고	
어업 소득	계통출하	수협을 통한 위판액을 말함	1척당 평균 × 공동체 소속 어선척수	
	비계통 출하	사매매		현지 중간상인, 횃집 등에 판매한 금액
		인터넷판매		인터넷을 통한 주문 판매액
		기타판매		그 이외 판매한 금액
어업외 소득	낚시어선 수익	공동체 소속의 낚시어선이 올리는 소득	척당 평균 적용 × 공동체 소속 어선척수	
	축제개최 수익	어선어업 및 내수면어업 공동체에서 축제를 통하여 올리는 수익		
어업 비용	자원조성비	어선공동체에서 주어장에 치어 방류하기 위한 구입 비용	해당공동체 (공통경비)	
	인건비	승선 고용인건비를 말함(선주 제외)	1일/월/항차당 해당 척당 평균 인건비	
	어구비	1척당 자망/통발 등을 구입하는 비용	1척당 평균	
	유류비	수협에서 공급받는 면세유류 구입 금액을 말함	1척당 평균 × 공동체 소속 어선척수	
	기타비용	그 이외 필요한 어업경비를 말함		

- 특히, 어선어업의 경우는 소득지표 자료 작성시, 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촌지도사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함

다. 자율관리 공동체 소득자료 활용 방안

1) 유형별 소득평가 현황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득자료 파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소득파악 방법으로는
 - 마을어업 및 내수면의 경우, 어촌계 결산장부 및 작업일지 등을 통하여 파악가능
 - 양식어업의 경우도 결산장부, 작업일지 등을 통하여 파악가능

제4장 자율관리어업 실시효과 측정지표 도출

- 어선어업 및 복합어업의 경우는 개별적인 어선어업자들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함
- 그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 공동체 소득성과 지표 작성이라고 판단됨

<표 4-20> 자율관리 공동체 소득파악 방법

소득파악 방안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전자평가 (연소득 증가율)	+++	+++	+	++	++
공동체 활동관리 카드	++	++	+	+	++
소득성과 지표 작성(안)	+++	+++	+++	+++	+++

주) 소득파악정도 : +가 많을수록 현실적인 파악가능

2) 공동체 소득자료 파악 및 활용 방안

- 자율관리 공동체 소득파악 및 이를 통한 활용방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먼저, 전자평가 및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자율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정책자료만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가 있음
- 둘째, 지방청 어촌지도사들의 전자평가 항목에서 소득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이 있으나, 동 평가는 전자평가 항목에서 공동체회원 1인당 연소득 증가율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율관리실시 전/후 소득파악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따라서, 현행 전자평가 소득증가율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현 상태를 고려한 공동체 소득자료 개선방안으로는 마을/양식/내수면 등은 결산장부 및 작업일지를 토대로 소득성과 지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선어업 및 복합어업의 경우는 표본집단을 선정하여 소득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정책자료만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마지막으로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도별 소득파악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임. 그러나 동 소득파악 방안은 근본적으로 공동체 방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으므로 신뢰성에 문제가 우려됨

<표 4-21> 자율관리 공동체 소득자료 활용 방안

구 분	검 토 의 건
현행 자료는 정책적 참고	- 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파악을 서류 근거하에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움 - 따라서, 해수부 내부적인 정책자료만으로 활용 필요
전자평가 항목에서 소득부분 삭제 방안	- 전자평가 항목에서는 공동체 회원 1인당 연소득 증가율을 파악하는 것임으로 정확한 소득파악과는 거리가 있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성과지표를 통한 활용 방안	- 마을/양식/내수면은 결산장부 및 작업일지를 토대로 지방청에서 활동 관리 카드나 소득성과 지표작성(안) 파악함 - 이와 별도로 유형별 소득 성과지표 작성을 통해 집계함 - 이를 자율관리어업 정책자료로 활용함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도별 소득파악	- 소득 증감에 대한 정확한 근거서류가 없는 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 문제 항상 존재함 - 통계적 기법(모집단, 표본집단)을 활용하여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소득파악을 하여 대내외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 1년 단위 혹은 2년단위로 소득 평가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 본장에서는 제3장에서 언급한 분석한 근거로 기관별(공동체자체, 지도자협의회, 지방청 전자평가, 지역협의회, 수협) 평가에 대한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자율관리평가체계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자율관리참여 공동체의 기준(구성원 수) 및 공동체 유형별 개념 및 판단기준 등을 언급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관별 개선(안)에 근거하여 평가할 기관별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기관별 평가항목 뿐만 아니라, 기관별 평가 개선(안)에 근거하여 평가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평가 메뉴얼을 작성하였음

제1절 기관별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자율관리공동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신뢰성 등으로 볼 수 있음. 본 절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기존의 기관별 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 및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관별 평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음
- 또한, 기관별 평가에서 누락된 시·도 중심의 지역협의회 및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할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여 개선방향에 포함시켰음
- 다음으로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관별 평가에서 공동체 방문 및 면담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음

1. 공동체 자체 평가

가. 평가문제점 분석

- 제3장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동체 자체 평가는 중분류 10개(참여, 준수, 보고, 소득, 사업, 협조, 갈등, 교육, 목표, 계획)을 중심으로 총 20개 문항에 대하여,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성격에 맞추어, 스스로 평가를 하여왔음. 그러나, 지금까지 공동체 자체평가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 첫째,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임. 즉,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해 해당 위원장이 평가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 사실임
- 둘째,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임. 즉, 지금까지 공동체 자체평가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공동체 자체 평가가 매우 높게 평가가 되어 공동체간의 변별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객관성도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 셋째,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일부 양심적인 공동체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위원장들이 모든 항목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일부 양심적인 공동체는 낮은 점수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양심적인 이들 공동체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분석됨
- 넷째,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 이유는 평가하는 공동체 위원장들이 평가의 배경 및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임

<표 5-1> 자율관리 공동체 자체평가의 문제점

구 분	문 제 점	비 고
공정성	해당 공동체에 대하여 위원장이 평가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함	자체평가는 다른용도로 활용
객관성	대부분의 공동체 자체점수가 상향 가되어 객관성 결여	변별력 결여
형평성	대부분의 위원장은 모든 목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양심적임 공동체는 불이익을 당해 형평성 결여	양심의존 불가능
신뢰성	평가하는 공동체의 평가배경 및 이해도가 낮아 평가의 신뢰성이 낮음	평가결과 신뢰 의문

나. 개선방향

- 자율관리공동체 자체 평가서에서 제기된 문제점 중에서 공정성의 경우는 자체평가는 공정성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객관성 및 형평성의 경우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신뢰성의 경우는 평가서의 배경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나 평가서 항목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공동체 위원장이 자체평가를 하는 한, 신뢰성의 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공동체 자체평가는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자율관리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나, 이미 지적한대로 동 자체평가는 공동체 평가에서 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5-2> 자율관리 공동체 자체평가 개선방향

구 분	개 선 방 향	비고
공정성	공동체 위원장의 자체 평가는 공정성 확보 불가능	-
객관성	객관성 유지를 위한 변별력 제고는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려움	-
형평성	대부분의 위원장이 높은 점수를 주는 한, 양심적인 공동체 불이익 해소는 불가능함	-
신뢰성	자체 평가서의 배경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확대 필요	평가항목 개선 및 교육 및 홍보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신뢰성 미확보
현행유지 여부	공동체 자체평가는 평가에서 배제함	문제점이 많아 평가에서 배제

2. 지도자협의회 평가

가. 평가문제점 분석

- 5차례의 걸쳐 Workshop 및 토론회, 현장조사 결과 지도자 협의회의 평가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첫째, 일부 위원장의 의견만 반영되는 경향이 나타나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 즉, 해당 공동체 위원장 모두가 모여 평가를 해야 하나, 지리적,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일부 위원장들만 모여 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짐.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위원장들이 모여서 함께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둘째, 일부 위원장들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즉, 모든 공동체 위원장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셋째, 기존의 지도자 협의회 평가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동체 간의 형평성 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 넷째, 지역편차를 해소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즉, 지역마다 평가기준이 달라서 지역간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3> 지도자협의회 평가 문제점

구 분	문 제 점	비 고
공정성	시도지도자 협의회 소속 모든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들이 모여, 각 공동체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나, 물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공동체 위원장들만 모여 평가함으로써 인해 공정성에 일부 결여	일부 위원장 의견 반영
객관성	해당지역 모든 공동체 위원장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평가에 참여한 일부 위원장 의견이 주관적으로 작용하여 객관성 확보가 의심됨	주관적 평가 불가피함
형평성	정확한 평가기준에 근거/평가하지 못하여 공동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평가기준 준수 미흡
신뢰성	시도지도자 협의회 평가가 지역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고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 신뢰성이 떨어짐	지역 편차 미 해소

나. 개선방향

- 지금까지 지적된 바와 같이 지도자 협의회 평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가능한 많은 공동체 위원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즉, 시도지도자협의회 평가위원의 확충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객관성 및 형평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항목과 평가 매뉴얼 및 평가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문제점을 해결토록 함
- 셋째, 평가 시 공동체 및 지역 간의 편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점수보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상·중·하』로 평가토록 함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넷째, 자율관리참여 공동체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평가 대상 공동체를 방문하지 않고 공동체 자체 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표 5-4> 지도자협의회 평가 개선방향

구 분	개 선 방 향
공정성	- 가능한 많은 공동체 위원장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위원장 다수 포함 필요
객관성	- 일부 위원장의 주관적 의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성적으로 접근
형평성	- 평가서를 지도자 협의회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여 추진 필요
신뢰성	- 지역 편차 최소 및 최대 범위 제시
현행유지	- 여러 차례의 토론회 및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일부 문제 해결 방안 강구 필요, 평가항목과 평가 매뉴얼 개발
방문조사 여부	- 자율관리 공동체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 없이 평가함

3. 지방청 전자평가

가. 평가문제점 분석

- 지방청 전자평가 문제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2007년 평가에서 상당한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언급하기로 함
- 먼저, 지방청 전자평가의 문제점으로 첫째,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들의 주관적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청별로 편차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지방청 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에 기준을 나름대로 각각 설정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됨
- 둘째, 공정성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일률적인 평가항목으로 인하여 지역별, 업종별 여건이 반영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 셋째, 평가기준이 모호하여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구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체적이지 못한 평가항목으로 인하여 평가자로 하여금 혼돈을 야기 시켜 객관성 및 형평성을 미 확보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전자 입력 시, 일부 항목을 누락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전자평가 입력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분석이 어려운 상황임. 예를 들면, 지방청별, 유형별, 항목별 결과를 보고 싶을 경우 이에 따른 결과치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표 5-5> 지방청 전자평가 문제점

구 분	문 제 점	비 고
주관성 신뢰성	- 지역편차 판단의 임의성, 객관적 판단의 기준, 조사표의 주관성 문제 - 지역별, 업종별 편차가 커 각 평가의 주관성 배제 - 어촌 지도사들의 주관에 따라 편차가 커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음	지방청별 평가의 초점 상이
공정성	- 지역별, 업종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평가 항목으로 인하여 공정성이 낮음	공정성 문제
객관성 형평성	- 평가기준이 모호한 항목이 많아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음	평가기준 모호
전자평가 입력문제	- 일부 평가항목 누락에 따른 문제 및 결과 처리 미활용	입력 문제

나. 개선방향

- 지금까지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지방청 전자평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자율관리공동체 유형을 마을, 어선, 양식, 내수면, 복합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에 따른 항목을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평가에 혼동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기본적으로 유형별 평가 항목 수는 30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평가항목 매뉴얼 개발을 통하여 지방청 전자평가가 혼란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함
- 둘째,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기존의 평가와 혼돈을 피하고 익숙해져 있는 5개의 카테고리를 준용하여 세부평가 항목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기본적으로 노력도의 경우는 분기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평가이고, 자율관리어업에서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를 60%로 하고 나머지는 40%로 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셋째, 평가 시 지도사들이 확인을 거쳐 항목을 평가할 경우는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 확인하고, 없을 경우 평가 불가로 처리하여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토록 함
- 마지막으로, 지방청 전자평가의 경우 지도자 협의회, 지역 협의회와 달리 전담 지도사가 있고, 몇 년동안 계속 공동체와 접촉하여 서로간의 유대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5-6> 지방청 전자평가 개선방향

구 분	개 선 방 향
유형구분	마을, 어선, 양식, 내수면, 복합어업 유형으로 평가(안) 마련
항목 구체화	- 기본적으로 30개의 항목을 넘지 않도록 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목별 평가 구체화 - 유형별 평가 항목 매뉴얼 개발 및 평가 절차 개선
평가항목	기존과 동일하게 노력도,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과급도 등 5개 카테고리로 구분 노력도: 60%, 참여도: 10%, 성과도:10%, 지속도: 10%, 과급도: 10%
평가 시 확인 문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 확인하고 없을 경우 평가 불가로 처리
방문조사 여부	지방청은 전담지도사가 있으므로 현장 방문 및 조사를 통하여 평가

4. 지역협의회

가. 자율관리 추진 관련 역할

- 지역협의회 구성은 지방청, 지자체, 과학원, 지구별 수협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 협의회는 육성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과거에 우수공동체 선정 시, 참여한 경험이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에서는 참여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율관리 지역협의회 개최 및 공동체 애로사항 해결, 육성사업 추진과 사업비 집행 및 관리를 해오고 있음
- 아울러 자율관리어업 분쟁사항을 발굴하거나 정착성 수산동물의 자원조사 및 평가를 시도 수산 연구소로 하여금 실시케 하고 있음.

나. 공동체 평가 참여 방향

- 따라서, 지역협의회가 공동체 평가에 참여해야 되는 필요성 및 당위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지자체에서 육성 사업비를 40%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비례하는 평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 및 Workshop에서도 지역협의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둘째, 시도에서는 자율관리 확대 및 정착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자율관리 육성사업비 집행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책임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셋째, 지역협의회에서는 2004 및 2006년도에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공동체 선정 시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넷째, 지역협의회는 다수 기관(지방청, 지자체, 과학원, 지구별 수협장)이 참여하고 있어, 일부 평가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지역협의회에서 평가 할 경우는 해당 공동체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와의 접촉 없이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수산관련 법규 준수 중심의 평가 항목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제5장 제3절 참조), 만약 동 협의회에서 평가에 참여 한다면 자율관리공동체의 수산관련 법규 준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지역협의회는 평가항목과 평가메뉴얼, 평가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그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표 5-7> 지역협의회의 공동체 평가 참여 필요성

구 분	필 요 성	비고
자율관리 육성사업비 지원	지자체에서는 육성사업비의 40%를 부담하고 있어 평가참여 요구	지자체의 부담 비중 고려 평가 참여 필요
자율관리 확대 및 정착 기여	참여 공동체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 사업비 집행관리 담당	사업비 집행 담당에 따른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 부여 필요
기존 우수공동체 평가 참여	육성사업비 지원 시, 우수 공동체 선정, 참여 경험 있음	기존 우수 공동체 평가 경험 활용 가능
다수 기관 구성	다수 기관(지방청, 지자체, 과학원, 지구별 수협장)이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별 불참 문제 해소 가능	다양한 기관 평가 참여 가능
현장 방문 조사 여부	공동체 해당 관련 행정 자료를 통하여 현장 방문 조사 없이 평가 가능	어업인 불편 초래 없이 평가 가능
평가 항목	수산관련 법규 준수 중심 평가 항목 개발 가능(제5장 제3절 참조)	현행 수산 관련 법 준수 유도 효과 있음

5. 수협(중앙회)

- 수협은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의 본연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어업인에 대한 지도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수협법 제65조(지도사업의 종류)에는 수산종묘의 생산보급,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어업질서 및 어업분쟁의 조정, 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수산기술자 육성과 경영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자율관리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들이며 수협에서는 회원조합에 대한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율관리공동체 지도자 양성교육(천안 연수원), 자율조정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 자율관리어업 전국 대회 개최(2~5회)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수협은 자율관리 평가에 대하여 참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본 연구팀은 5회에 걸친 토론회 및 Workshop을 통하여 논의를 하였고, 수협의 평가 참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수협의 협조 하에 검토하였음
- 그러나, 수협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평가에 참여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 부분에 있어 수협측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따라서, 수협이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평가항목 중에서 노력도 중 공동판매부분에 수협의 계통출하도 이에 포함을 시키고 평가관련 자료는 공동체의 평가자료를 수협조합을 통해 지방청에서 취합·등록

<표 5-8> 수협의 공동체 평가(안)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고
노력도 중 1.자원관리 사업 가. 공동판매	계통출하도 공동판매에 포함시켜 계산, 계통출하 자료는 지방청에 협조 및 제출, 출,	일부 평가 항목만 참여

6. 소결

- 기관별 평가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음
- 이를 기초로 기관별 평가 참여 내용 및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기관별 평가 참여내용 및 개선방향 종합

- 먼저, 공동체 자체 평가의 경우는 대부분의 공동체가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평가 배제하는 방향 보완
- 다음으로 지도자 협의회의 경우는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일부 공동체 위원장의 의견 반영과 지역간 편차 문제가 제기 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수의 공동체 위원장을 참여케 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지방청 전자평가의 경우는 2005 평가를 개선하여 2006년도에 어느 정도 유형별, 항목별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이를 활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복합어업을 추가하고 평가항목을 수정/보완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수협의 경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기관 평가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평가항목 중 공동체 판매 항목에서 수협의 위판 물량을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좋다고 사료됨
- 마지막으로, 지역협의회는 경우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 및 평가가능 항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평가 항목은 수산관련 법규 중심으로 항목을 개발하여 별도의 기관으로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지역협의회는 다수 기관(지방청, 지자체, 과학원, 지구별 수협장)이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별 불참 문제 해소 및 수산관련 준법 유도가 기대됨

<표 5-9> 기관별 평가참여 내용 및 방향 종합

평가기관	평 가 참 여 내 용	방 향
공동체 자체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므로 평가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평가배제
지도자 협의회	많은 수의 공동체 위원장이 참여하도록 하고,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 개선 및 평가 절차 및 매뉴얼 개발 필요	공동체자체평가 기초, 수정보완
지방청 전자	유형별(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 수정 및 보완	수정보완
수 협	별도의 평가를 부여하기 보다는 공동체 판매에서 수협의 계통출하 부분 반영(평가항목 중 공동체 판매)	평가항목 일부 참여
지역협의회	다수 기관(지방청, 지자체, 과학원, 지구별 수협장)이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별 불참 문제 해소 및 수산관련 준법 유도 기대 가능	평가 항목 및 절차 통해 평가 참여

나. 어업인 면담 및 현장조사 최소화

- 자율관리공동체 평가를 위하여 해당되는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어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함.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관리참여 어업인들에게 면담이나 현장조사로 인해, 자율관리 참여가 귀찮게 한다고 느끼거나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면 평가 대상인 공동체들이 문제를 제기 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향후 자율관리 평가에서는 지도자 협의회, 수협, 지역협의회 등의 경우는 현장 조사 없이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 전자평가의 경우는 자율관리 전담 지도사가 있으므로 공동체위원장 및 위원 면담,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표 5-10> 현장조사 여부에 따른 평가 방법(안)

평가기관	현장조자유무	사 유
지 도 자 협 의 회	×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평가
지 방 청	○	전담지도사가 현장 및 면담조사 통해 평가
수 협	×	수협 자체정보를 지방청에 제공하여 평가
지역협의회	△	- 도 및 시/군/구 자체행정 자료 활용하여 평가 -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되, 이를 최소화

제2절 기관별 평가체계 개선(안)

-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기관별 평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평가체계 및 기관별 평가비중에 대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코자 함. 특히, 제5장 제1절 기관별 평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해 충분히 언급되었으므로, 본 절에서는 평가체계 및 기관별 평가 비중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함

1. 평가체계 개선(안)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의 기관별 평가는 지방청 전자평가 70%, 공동체 자체 평가 10%, 지도자협의회 평가 10%, 중앙단위 자율관리 평가위원회 10% 등 기관별 평가비중이 주어져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평가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음. 즉, 평가체계 자체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평가에 부합되는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왔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중앙단위 자율관리 평가 위원회의 10% 부여는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목적 및 필요성에 비추어 확인 및 점검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평가시스템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공동체 평가에 대하여 상호 확인 및 검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예비평가와 본 평가로 2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코자 함
- 즉, 예비평가는 지방청 전자평가, 지역협의회, 시도지도자 협의회 등의 평가를 말하며, 동 예비평가의 결과를 전산화 시켜 동 결과를 해수부 및 수산회 사무국에서 활용토록 함
- 여기에서 공동체 자체평가는 제5장 제1절에서 언급되었듯이,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의 확보가 어려워 평가에서는 배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본 평가는 중앙단위 자율관리평가위원회의 평가로서 예비평가 검증, 최종결정, 공동체 등급 결정 등의 역할을 담당케 하도록 함. 여기에서 본 평가의 대상은 공동체 전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체 예비평가에서 도출된 공동체 순위 중에서 일정한 상위 고득점 공동체 순위를 정하여 실사 대상 확정, 실사 대상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 및 검증토록하고, 동 결과를 근거로 유형별 공동체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
- 이를 기존의 평가 체계와 개선안 평가와의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기존의 평가에서는 예비평가와 본 평가 구분 없이 수평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평가체계를 예비평가와 본 평가로 구분함

<표 5-11> 현행 및 개선(안) 평가체계 비교

		현행 평가 체계	평가 체계 개선(안)
예비 및 본 평가 구분		없 음	있 음
기 관 별 평 가 체 계	지 방 청	○ 지방청→전자평가→해수부→수산회 ○ 공동체자체→지방청 취합→ 수산회 입력 및 분석 작업	○ 지방청→전자평가→수산회/해수부 배 제
	지도 자협 의회	○ 지도자협의회 평가→지방청 취합→ 수산회 입력 및 분석 작업	○ 지도자협의회 평가→ 지방청 취합→ 전자입력→수산회 종합 분석
	지역 협의 회	없 음	○ 지역협의회 평가→ 시·도 전자입력 → 수산회 종합 분석
	위 원 회	○ 중앙단위 자율관리 평가위원회→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수 약 1.5배미만을 대상으로 현장 검증 및 등급 확정	○ 중앙단위 자율관리 평가위원회→ 절 대평가 80점 이상 공동체 실사→ 현장 검증→ 등급확정
특징	지방청 전자평가를 제외한 것은 수작업	모든 자료 전산화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 기본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입력은 전산화하고, 그 결과를 다양하게 분석 가능토록 함
- 평가위원회는 참여기관별 평가를 취합한 결과, 상위등급이 예상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각 기관별 평가결과를 검증하고 최종 등급 확정

<표 5-12> 기관별 공동체 평가 추진체계(안)

구 분	예 비 평 가	본 평 가
담 당	지방청 단위의 기관별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등), 지역협의회, 시·도 지도자협의회 등 3개 기관	중앙단위 자율관리평가위원회
역 할	3개 기관 평가 결과 취합 정리	현장점검, 각 기관별 평가 결과 검증, 공동체 최종 등급결정
평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 전자평가 결과 → 해수부 → 수산회 사무국 ○ 지도자협의회 → 수산회 사무국 ○ 지역협의회(시도수산과 주관) → 해수부 → 수산회 사무국 ※ 전자입력 	수산회 사무국(예비평가 종합분석) → 중앙단위 자율관리평가위원회 상정
평가대상	지방청 자율관리 참여공동체	참여기관별 평가를 취합한 결과, 상위등급이 예상되는 공동체 대상
평가기간 (‘08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평가대상 기간 : ‘07년(1년간) ○ 지방청 전자평가 : 연중 ○ 기타 기관별 평가 : 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회 사무국 : 4월 ○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 5월 ○ 최종확정 : 6월 ※ 자율관리 지방비 예산확보가 9월 까지인 점 고려

2. 기관별 평가비중 개선(안)

- 기관별 참여 비중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기존의 기관별 평가에서 해당되는 기관의 평가가 문제가 없었는지와 둘째, 별도의 기관이 참여시 평가할 항목이 구체적으로 있고, 동 평가가 자율관리 평가에서 중요한지 셋째, 평가의 단순화와 어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 가능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가. 제1안 : 현행 평가체계 유지

-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바와 같이, 3차례('05, '06, 07) 공동체 자체평가를 해본 결과, 공동체 스스로 자체평가 결과가 대부분 만점을 주었음. 그러나 양심적인 몇몇 공동체인 경우 낮은 점수를 주어, 공정성과 형평성, 신뢰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공동체 자체평가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대신할 타 기관(지역협의회 및 타 기관(수협, 시도))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타기관의 참여를 고려할 때, 현행 기관별 평가 비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제2안 : 예비평가/본 평가 구분, 지역협의회 참여

- 예비평가 및 본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안. 즉, 예비평가는 지방청 단위의 기관별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타기관 등)를 하고, 참여기관별 반영비율은 전담 어촌지도사 평가(60%), 지역협의회 평가(30%), 지도자협회의 평가(10%)로 단순화함
- 본 평가는 이를 기초로 한국수산물 사무국에서 취합 정리하여, 중앙단위 자율관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순위를 부여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해당되는 공동체에 대해 현장 확인 점검하여 등급부여
- 공동체 자체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참여시키는 방안 강구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 지자체, 지방청, 과학원, 지역 수협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참여
- 대부분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별 불참 문제 해소 가능
- 공동체 자체 평가를 배제시키는 대신에 지역협의회 30% 부여
 - 약 5차례의 토론회 등에서 시도지역협회에 비중을 30%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본 연구팀에서도 이를 검토한 한 결과 동 의견이 합리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음. 그 이유는 지방청의 70% 비중이 너무 높아 이를 10% 삭감하고(70%→60%), 배제된 공동체 자체평가 10%와 중앙단위 공동체평가위원회 10%를 합하여 30% 비중을 배정하는 방안임
 - 참고로 전남어촌지도사 전자실적 평가(70%)는 지방청의 요구를 감안하여 10% 하향 조정함
- 시도지역협의회에서 평가할 항목은 유형별 총 10개이며,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다음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기본적으로는 수산관계법령 준수와 연계하고, 전자평가와 중복이 없도록 하고, 현장방문조사 없이 가능함 범위내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방안임(제5장 제3절 참조)

다. 제3안 : 예비평가/본 평가 구분, 지역협의회, 수협중앙회 참여

- 제2안과 유사하게, 예비평가 및 본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안. 즉, 예비평가는 지방청 단위의 기관별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타기관 등)를 하고,
- 본 평가는 참여기관별 평가를 취합한 결과, 상위등급이 예상되는 공동체 대상에 대해, 국수산회 사무국에서 취합 정리하여, 중앙단위 자율관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순위를 부여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공동체에 대해 현장 확인 점검하여 등급부여
- 공동체 자체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참여시키는 방안 강구
 - 지자체, 지방청, 과학원, 지역 수협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참여
 - 대부분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별 불참 문제 해소 가능
- 수협 평가 배점 비중을 10% 부여 방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제2안에서 지역협회의 10%를 수협에 부여(지역협의회 : 30%→20%)
- 지방청 전자평가 실적 60%, 지역협의회 20%, 지도자협의회 10%, 수협 10%

- 제5장제1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수협의 평가 참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수협의 협조 하에 검토하였으나, 수협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평가에 참여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 부분에 있어 수협측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수협에서 어업소득 관련하여 평가하는 문제도 검토하였으나, 단일항목, 입력 및 결과에 대한 신뢰도 등의 이유로 불가 입장을 나타남

- 따라서, 수협은 지방청 전자평가의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함

라. 제4안 : 전자평가 50%, 다양한 기관 평가 참여

- 예비평가 및 본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안. 즉, 예비평가는 지방청 단위의 기관별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타기관 등)를 하고,

- 본 평가는 참여기관별 평가를 취합한 결과, 상위등급이 예상되는 공동체 대상에 대해, 국수산회 사무국에서 취합 정리하여, 중앙단위 자율관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순위를 부여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공동체에 대해 현장 확인 점검하여 등급부여

- 제1안에서 전자평가 실적을 70%→50%로 줄이는 대신 타 기관 평가 부여
 - 지방청 전자평가 실적 50%, 지역협의회 평가 15%, 지도자협의회 15%, 공동체 자체평가 10%, 어업인단체(수협) 10%하는 방안

-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취지는 좋으나, 공동체 자체평가, 지도자협의회, 지역협의회 평가가 중복될 수 있음. 또한,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공동체 자체평가와 수협의 평가는 별도의 기관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제5장 제1절 참조)
 - 평가시 지역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형평성 및 공정성에 문제 우려
 - 너무 많은 기관 참여(5개)로 인하여 평가가 복잡하고, 늦어질 수가 있음

3. 평가개선(안) 장단점 분석

- 지금까지 검토한 평가개선(안)들인 제1안에서 제4안까지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안)별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제1안(현행평가체계 유지)의 경우는 기존방식대로 하면 혼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나, 자체평가의 심각한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타 기관의 평가참여가 배제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음

- 제2안(예비평가/본 평가구분, 지역협의회 참여)은 공동체 자체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자체평가를 제외하는 대신에 지역협의를 참여시켜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케 하고, 기관별 특성을 살린 평가항목을 제시하여 최대한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시키는 안임

- 제3안(예비평가/본 평가 구분, 지역협의회, 수협중앙회 참여)은 공동체 자체평가대신 지역 협의회를 참여시켜 구체적인 평가를 부여하는 것이나, 수협중앙회가 참여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별도의 평가항목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 제4안(전자평가 50%, 다양한 기관 평가 참여)은 다양한 기관이 평가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에따른 기관별 평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지역의 특수한 관계로 인한 평가의 형평성과 공정성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많은 기관 참여 및 기관별 특성고려 평가항목을 만들고, 공동체 평가에서 기관별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케 한다면, 제2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5-13> 기관별 평가 개선(안)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제1안	현행평가체계 유지	기준에 하는 방식임으로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공동체 자체평가 문제 및 타기관의 평가참여가 없음
제2안	예비평가/본 평가 구분, 지역협의회 참여	공동체자체평가를 보완 지역협의회(다양한 기관별) 참여 가능	공동체 자체 및 수협 평가 배제
제3안	예비평가/본 평가 구분, 지역협의회, 수협중앙회 참여	공동체자체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 참여, 구체적인 기관별 평가 부여	별도의 지자체만의 평가 없음(지역협의회 회장이 지자체임)
제4안	전자평가 50%, 다양한 기관 평가 참여	다양한 기관 참여	지역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 여 형평성 및 공정성에 문제 우려

4. 기관별 평가 개선(안) 요약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별 평가 배점(안)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구체적인 (안)을 살펴보면, 제1안의 경우는 현행체제대로 70%(전자실적 평가), 10%(공동체 자체 평가), 10%(지도자협의회 평가), 10%(자율관리평가위원회)등임. 여기에서는 예비평가와 본 평가 구분 없이 하는 것임
- 제2안은 예비평가와 본 평가를 구분하되 예비평가에서는 60%(전자실적평가), 30%(지역협의회), 10%(지도자협의회평가)등이고, 본 평가에서는 자율관리 평가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검증 및 확정하는 방안임
- 제3안은 예비평가와 본 평가를 구분하되 예비평가에서는 60%(전자실적평가), 20%(지역협의회평가), 10%(지도자협의회평가), 10%(수협중앙회)등이고, 본평가 에서는 자율관리 평가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검증 및 확정하는 방안임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 제4안은 예비평가와 본 평가를 구분하되 예비평가에서는 50%(전자실적평가), 10%(공동체 자체평가), 15%(지도자협의회평가), 15%(지역협의회평가), 10%(어업인단체평가)등이고, 본 평가에서는 자율관리 평가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검증 및 확정하는 방안임.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안이 공동체 평가에서 기관별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케 하면,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5-14> 자율관리 평가 참여기관별 배점(안)

안	구분	평가 구분	반영	참여기관	현행과 비교
제1안	-	전자실적 평가	70%	지방청	-
		공동체 자체평가	10%	공동체	
		지도자협의회평가	10%	지도자협의회	
		자율관리평가위원회	10%	평가위원	
제2안	예비 평가	전자실적 평가	60%	지방청	공동체 자체평가 배제, 위원회 검증 및 확정
		지역협의회	30%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평가	10%	지도자협의회		
	본 평가	자율관리평가위원회	검정 및 확정	평가위원	
제3안	예비 평가	전자실적 평가	60%	지방청	공동체 자체평가 삭제, 위원회 검증 및 확정
		지역협의회평가	20%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평가	10%	시도지도자협의회	
	수협중앙회	10%	수협		
	본 평가	자율관리평가위원회	검정 및 확정	평가위원	
제4안	예비 평가	전자실적 평가	50%	지방청	지역협의회, 수협 추가, 전자평가 70%→50%
		공동체 자체평가	10%	공동체	
		지도자협의회평가	15%	시도지도자협의회	
		지역협의회평가	15%	시도지역협의회	
		어업인단체평가	10%	수협중앙회	
	본 평가	자율관리평가위원회	검정 및 확정	평가위원	

*) 지역단위 구성원 : 지자체 중심이 되어 지자체(위원장), 지역연구소, 수협조합장 등 포함 사무국 역할(시도)

5. 소결

-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 시스템은 예비평가와 본 평가로 2원화함
- 예비평가는 지방청 전자평가,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 등이며, 본 평가는 예비평가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예비평가결과를 최종 결정하고 아울러 공동체의 등급을 확정함
- 지역협의회는 지방청 10% 삭감(70%→60%), 배제된 공동체 자체평가 10%와 중앙단위 공동체평가위원회 10%를 합하여 30% 비중을 배정함
 - 결론적으로 예비평가는 지방청 전자평가 60%, 지역협의회 30%, 지도자협의회 10%로 함

<표 5-15> 자율관리 평가 참여기관별 최종(안)

구분	평가 구분	반영	참여기관	현행과 비교
예비 평가	전자실적 평가	60%	지방청	공동체 자체평가 배제, 위원회 검정 및 확정
	지역협의회	30%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평가	10%	지도자협의회	
본 평가	자율관리평가위원회	검정 및 확정	평가위원	

제3절 참여기준 및 기관별 평가항목 개선(안)

- 본 절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구성원 기준과 유형별 특히, 복합어업에 대한 기준, 제5장 제2절에서 제시된 기관별 평가항목개선안 중에서 지도자협의회 평가, 지역협의회 평가, 전자평가 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1. 자율관리 참여 구성원 기준

가. 참여 구성원 기준 필요성

- 지금까지 자율관리 신규공동체에 대해 구성원들의 참여범위 및 기준이 없어,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였음. 즉, 하나의 기존 공동체(자연부락, 어촌계, 임의단체 등)가 공동체 구성원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별도로 각각 조직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되었고,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자율관리 지원금(육성사업비)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음이 사실임
- 평가에 있어서는 일부 배려를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다수참여 공동체와 소수참여 공동체 간의 차별이 없었고, 신규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할 경우, 구성원 조직에 대한 공동체 자체노력들이 미흡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가 자율관리 신규 참여시, 참여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제한을 두어 공동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 및 유도, 단일공동체가 2개 이상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참여 차단, 육성사업비 지원 시에도 소수의 참여공동체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 구성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나. 유형별/지방청별 참여공동체 구성원 수

- 동 연구에서는 자율관리참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현황(2006년 12월 기준 445개소)을 12개 지방청별/5개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고, 또한, 수협법에 근거한 어촌계 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참여공동체 구성원 기준(안) 제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1) 유형별 참여공동체 구성원 현황

가) 마을어업

- 지역별 마을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여수, 포항이 각각 39개소로 자율관리 개소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96명, 6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 참여 인원이 많은 지역은 대산 및 울산 각각 117명, 평택 106명 등으로 분석되었음
- 지방청별로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중에서 동해청 15명이 최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마산청 및 포항청이 각각 16명, 목포청이 18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6> 마을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지방청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군 산	9	170	30	74
대 산	12	607	20	117
동 해	23	604	15	93
마 산	33	559	16	63
목 포	35	275	18	58
부 산	3	108	34	79
여 수	39	249	21	96
울 산	11	314	33	117
인 천	1	51	51	51
제 주	28	504	30	91
평 택	11	213	23	106
포 항	39	314	16	63
합 계	244	-	-	-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 다음으로 마을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50인 이하의 마을어업 자율관리공동체가 103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1~100인으로 95개로 나타났음

<표 5-17> 마을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구 간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50인 이하	103	15	50	35
51~100	95	51	100	73
101~150	21	150	103	120
151~200	11	151	195	167
201~250	6	249	206	231
251~300	1	275	275	275
301~350	2	314	314	314
351~400	1	366	366	366
501~550	1	504	504	504
551~600	1	559	559	559
601~650	2	607	604	606
합 계	244	-	-	-

나) 양식어업

- 지역별 양식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목포에 35개소, 여수에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 평균 44명, 74명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청별로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중에서 목포청 관할 공동체중에서 6명이 최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수청 소속 공동체 11명, 마산청 15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5-18> 지방청별 양식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지방청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마 산	5	60	15	31
목 포	35	105	6	44
부 산	3	97	27	65
여 수	12	236	11	74
포 향	1	20	20	20
합 계	56	-	-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양식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50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37개소), 그 다음으로는 51~100인 구간으로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19> 양식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구 간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50인 이하	37	50	6	28
51~100	15	97	52	73
101~150	2	132	105	119
151~200	1	165	165	165
201~250	1	236	236	236
합 계	56	-	-	-

다) 어선어업

- 지역별 어선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마산에 21개소, 목포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 평균 53명, 65명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청별로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중에서 포항청 11명이 최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마산청 19명, 목포청 20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5-20> 지역별 어선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지방청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군 산	11	195	24	79
대 산	7	56	29	37
동 해	3	121	25	88
마 산	21	269	19	53
목 포	10	233	20	65
부 산	2	106	24	65
여 수	2	52	43	48
울 산	2	78	28	53
인 천	3	70	40	52
제 주	2	123	53	88
평 택	1	70	70	70
포 항	7	121	11	47
합 계	71	-	-	-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 어선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총 71개 자율관리 공동체중 50인 이하 구간에 41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100인에는 19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1> 어선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구 간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50인 이하	41	50	11	30
51~100	19	96	51	71
101~150	8	131	106	118
151~200	1	195	195	195
201~250	1	233	233	233
251~300	1	269	269	269
합 계	71	-	-	-

라) 복합어업

- 지역별 마을어업(복합: 마을+어선+양식)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대산이 12개소(평균 94명), 인천 및 여수가 각각 9개(평균 75명), 8개(평균 101명)로 가장 많은 마을어업(복합) 자율관리공동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 참여 인원이 많은 지역은 평택(136명), 제주(135명) 등 인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방청별로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중에서 대산청 21명이 최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군산청 28명, 인천청 42명인 것으로 나타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5-22> 지역별 마을(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지방청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군 산	5	129	28	83
대 산	12	266	21	94
동 해	1	46	46	46
부 산	1	116	116	116
여 수	8	175	48	101
인 천	9	125	42	75
제 주	1	135	135	135
평 택	2	216	56	136
합 계	39	-	-	-

- 마을어업(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51~100인에 해당하는 자율관리공동체가 19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150인 구간에는 9개의 마을어업(복합) 자율관리 공동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5-23> 마을(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구 간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50인 이하	6	49	21	39
51~100	19	91	51	67
101~150	9	135	105	121
151~200	3	175	167	172
201~250	1	216	216	266
251~300	1	266	266	266
합 계	39	-	-	-

- 지역별 양식(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대산에 2개소, 목포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 평균 62명, 120명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대산청이 60명으로 최소인 것으로 나타남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24> 지역별 양식(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지방청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대 산	2	64	60	62
목 포	1	120	120	120
합 계	3	-	-	-

- 양식(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51~100인에 해당하는 자율관리 공동체가 2개, 101~150인 구간에는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5> 양식(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구 간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51~100	2	64	60	62
101~150	1	120	120	120
합 계	3	-	-	-

- 어선어업(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산이 1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목포가 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지역별 평균 참여 구성원을 보면 대산지역의 어선어업(복합) 자율관리 공동체는 평균 80명, 목포는 평균 92명으로 나타났으며 마산에는 1개의 자율관리공동체에 686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청별로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중에서 목포청 25명이 최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해청 26명, 인천청 40명인 것으로 나타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5-26> 지역별 어선(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지방청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대 산	12	112	43	80
동 해	1	26	26	26
마 산	1	686	686	686
목 포	3	214	25	92
부 산	1	374	374	374
여 수	2	100	89	95
인 천	2	359	40	200
제 주	0	-	-	-
평 택	1	72	72	72
합 계	23	-	-	-

- 어선어업(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51~100인에 11개소가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참여 인원은 83명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0인 이하 구간에는 6개소(평균 37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7> 어선(복합)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구 간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50인 이하	6	50	25	37
51~100	11	100	56	83
101~150	2	112	107	110
151~200	0	-	-	-
201~250	1	214	214	214
251~300	0	-	-	-
301~350	0	-	-	-
351~400	2	374	359	367
401~450	0	-	-	-
451~500	0	-	-	-
501~550	0	-	-	-
551~600	0	-	-	-
601~650	0	-	-	-
651~700	1	686	686	686
합 계	23	-	-	-

마) 내수면어업

- 지역별 내수면어업 자율관리공동체를 살펴보면 대산청에 6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2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방청별로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중에서 대산청 13명이 최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군산청 15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8> 지역별 내수면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지방청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경기도	1	23	23	23
군 산	2	37	15	26
대 산	6	55	13	32
합 계	8	-	-	-

- 내수면어업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50인 이하가 7개소(평균 26명), 51~100인 1개소(55명) 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9> 내수면 자율관리 구성원 참여 현황>

구 간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 고	최 저	평 균
50인 이하	7	47	13	26
51~100	1	55	55	55
합 계	8	-	-	-

2) 어촌계 최소 구성원 현황

가) 수협법상에서 어촌계 최소구성원 수

- 수협법 제2조(어촌계의 목적)에서는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3조(어촌계의 명칭)에서는 수협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수협법 제15조 (어촌계)에서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어촌계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수협법 시행령 제4조(어촌계의 설립)에서 어촌계의 구성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촌계는 구역안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또한,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개의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법에서는 어촌계 최소 구성원은 최소한 10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어촌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자율관리공동체가 대부분 어촌계 중심임으로 최소 구성원 마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즉,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최소 구성원은 적어도 10명 이상이 되어야 관련 규정과도 부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음

나) 어촌계 최소구성원 현황

- 수협중앙회에서 발간되는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06.12.31)”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어촌계수는 1,969개소이며, 어촌계원수는 약 157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어촌계 1개소당 어촌계원수는 평균 약 80명인 것으로 분석됨
- 어촌계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이 850개소(63,853명)로 전국에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남이 437개소(29,191명)로 22%, 경북이 156개소(8,586명)로 8%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어촌계 평균 구성원수는 제주가 13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인지역 133명, 전북이 103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지역을 제외하고는 1개소당 평균 어촌계 구성원수는 모두 100명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5-30> 지역별 어촌계 구성원 현황

구 분	어촌계수(a)	어촌계원수(b)	(b)/(a)
계	1,969	157,117	79.80
경 인	104	13,870	133.37
강 원	77	5,750	74.68
충 청	140	12,070	86.21
전 북	64	6,575	102.73
전 남	850	63,853	75.12
경 북	156	8,586	55.04
경 남	437	29,191	66.80
부 산	41	3,569	87.05
제 주	100	13,653	136.53

자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수협중앙회, 2006.12에서 정리

- 지역별/어촌계별로 어촌계 최소 구성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어촌계는 전남(완도군 수협)이 4명으로 가장 적고, 그 다음으로 충청(당진 수협) 및 경남(거제 수협)에서 9명, 강원(고성군)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이외의 모든 지역은 최소구성원이 10명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구성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모슬포 수협) 21명, 경인(경인북부 수협) 16명, 전북(고창 수협) 13명 인 것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로 조사됨

<표 5-31> 조합별/어촌계별 최소 구성원 현황

구 분	조합명	어촌계명	최 소 구 성 원 수				
			고성군	전업	겸업	피용	준계원
경 인	경인북부	내리	16	11	5	-	31
강 원	고성군	동호	10	10	-	-	-
충 청	당진	영인	9	-	9	-	-
전 북	고창	후포	13	13	-	-	-
전 남	완도군	허우리	4	-	4	-	-
경 북	포항	청림,일월동	12	8	4	-	-
경 남	거제	와현	9	-	9	-	-
부 산	부산	길천	12	10	2	-	-
제 주	모슬포	영락	21	1	20	-	-

자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수협중앙회, 2006.12에서 정리

- 수협법 시행령 제4조(어촌계의 설립)에서 어촌계 구성원을 10명이상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자율관리 참여 공동체 최소 구성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별 /어촌계 구성원 10인 이하 현황을 살펴보았음

<표 5-32> 지역별/어촌계 구성원 10인 이하 현황

구 분	조합명	어촌계명	구 성 원 수					
			계	전업	겸업	피용	준계원	
강 원	고성군	동호	10	10	-	-	-	
충 남	당진	영인	9	-	9	-	-	
전 남 (12개소)	완도군	대당리	10	3	7	-	2	
		해남군	8	-	8	-	-	
		전남동부	7	-	7	-	2	
		목포	4	-	4	-	-	
	해남군	내송	7	-	7	-	-	
		육지	10	10	-	-	120	
	전남	기동	기동	6	-	6	-	-
			남해군	10	-	10	-	-
		동부	통사	7	-	7	-	-
	목포	장동	7	-	7	-	-	
	신안군	송곡	10	2	8	-	1	
	육지	우도	10	10	-	-	-	
경 남	거제	와현	9	-	9	-	-	
	남해군	노도	10	8	2	-	-	

자료 :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수협중앙회, 2006.12에서 정리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 2006년 12월 현재, 약 2,000여개의 어촌계중에서 구성원이 10인 이하인 어촌계는 총 15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전남지역이 12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경남 2개소, 강원 및 충남이 각각 1개소 인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이, 10인 이하로 구성된 어촌계는 수협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엄격한 의미에서 어촌계로써의 자격이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율관리공동체 참여 최소 구성원(안)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임을 감안하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유형별 참여 최소 구성원 기준(안) 제시

- 2006년 12월 기준, 445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유형별 자율관리 참여 구성원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어업이 244개, 평균 81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어선(71개)은 평균 59명, 양식(56)은 평균 5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자율관리공동체는 686명(어선복합), 가장 작은 인원이 참여한 자율관리공동체는 6명(복합양식)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금까지 유형별 자율관리 참여 구성원중에서, 마을어업의 경우는 최저 15명, 양식어업 6명, 어선어업 11명, 복합 21명~60명, 내수면 13명으로 나타나, 극소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표 5-33> 자율관리 참여 구성원 현황

유형	개소수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수		
		최고	최저	평균
마을	244	607	15	81
양식	56	236	6	50
어선	71	269	11	59
마을(복합)	39	266	21	92
어선(복합)	23	686	25	130
양식(복합)	3	120	60	81
내수면	9	55	13	30
합계	445	-	-	-

※ 마을(복합) : 마을+어선+양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수협어촌계 현황('06.12.31, 1,969개소)에서 어촌계 최소 구성원 자료, 수협법 시행령 제4조 어촌계 구성원 규모, 자율관리참여 445개소('06.12)에서 유형별 최소 구성원 수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
- 자율관리 참여 최소 구성원 개선(안) 제시에 있어서, 마을/양식/어선/내수면 등 4개 유형은 첫째, 수협법 제4조의 어촌계 구성원 10명을 기준, 둘째, 약 2천여개 어촌계 중에서 대부분 최소 구성원이 10명이 넘었고, 셋째, 자율관리 참여 공동체 445개중에서 양식어업을 제외하고는 10인 이상, 넷째, 자율관리어업 취지가 자율적 공동체 구성임으로, 구성원수로 인해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즉, 참여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최소 참여 인원을 10명으로 제안함

<표 5-34> 자율관리 참여 최소 구성원 개선(안)

유형	수협 어촌계 현황 ('06.12)	수협법 시행령 제4조	참여 공동체 최소 구성원수 (445개소)	개선안 (안)	사유
마을	어촌계 1,969개소중 10인 이하 15개소 (최소 4인) ※ 대부분 10인 이상임	어촌계 설립 10인 이상	15	10	어촌계 10인 이상 규정 및 기존 공동체 10인 이하 없음
양식			6	10	어촌계 10인 이상 규정 및 최소 구성원 10인 이상 필요
어선			11	10	어촌계 10인 이상 규정 적용 및 기존 10인 이하 없음
복합			21-60	20	기존 20인 이하 없음. 복합어업(마을+어선) 고려하여 마을어업보다는 많아야함
내수면			13	10	어촌계 10인 이상 규정 및 기존 공동체 10인 이하 없음

- 다음으로 복합어업의 경우는 구성원들의 구성이, 대부분 마을어업 및 자연부락 단위 구성원 중에서 어선어업자들이 함께 이루어져 있음. 이러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구성원은 첫째, 최소한 마을어업 유형보다는 많아야 하고, 둘째, 자율관리 참여 공동체 445개중에서 복합어업 유형은 20인 이상임을 고려하고, 셋째, 복합어업은 대부분 서해/남해안/도서지방 등 대부분 분포하고 있음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20인을 최소구성원으로 제안함

- 최소 구성원에 대한 기준 뿐만 아니라, 평가시 참여 구성원들에 비례하여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함. 즉, 지도자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지방청 전자평가지 종합의견에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2. 참여 공동체 유형별 기준

- 일반적으로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어업 형태의 공동체 유형분류에 근거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의 개별적인 자율관리규약, 사업 세부추진 내용 분석, 현장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8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음
- 그러나, 어선어업이 포함된 복합적인 유형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분류로는 마을, 어선, 양식, 내수면 등 4개 유형과 더불어 복합(마을+어선 중심)어업 등 총 5개의 유형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 여기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마을어업과 양식어업의 구분 기준은
 - 마을어업이란 함은 어촌계 소유의 마을어장과 양식어업에 있어서 간석지의 패류양식(바지락, 가무락 등), 굴투석식 양식 등을 말함
 - ※ 사유 : 자율관리어업에 있어서 자원관리, 어장관리, 생산관리, 어업질서 등의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
 - 양식어업이라 함은 시설물을 이용하여 양식하는 가두리(어류), 수하식(미더덕, 굴, 미역, 전복) 등을 말함
- 복합어업의 경우는 대부분 도서 및 연안해역 마을어업에서 어촌계원 중 어선어업자들의 참여로 인하여 나타나는 유형임. 따라서, 어선어업 참여비중을 고려하여 복합어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

<표 5-35> 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 기준(안)

유형	변경유형에 따른 유형별 개념	참여형태
마을	- 어촌계 소유/간석지 패류양식(바지락, 가무락 등) - 당초와 동일	70% 이상 (복합과 구분)
어선	- 어선어업관련 협회, 단체 등의 자생단체를 중심	100%
양식	- 수하식, 가두리 등 특정 시설이용한 양식어업에 한정 - 기존의 굴, 전복 등 살포식어업은 마을어업으로 분류	100%
내수면	- 내수면에서 실시하는 모든 어업 (마을, 어선, 양식 구분 없음)	100%
복합	- 마을어업에서 어선어업자들의 참여비중을 고려하여 개념 구분	어선어업 참여 비 중에 따라 구분

2) 복합어업 기준

- 자율관리 445개 참여 공동체 중에서 복합어업으로서 구체적인 자료(참여인원, 어선척수 등)가 있는 지방청은 2곳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확보된 군산청과 여수청 소속의 복합어업 공동체 자료를 이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복합어업 기준을 만드는데 참조하였음
- 자료가 확보된 군산청 소속의 복합어업 유형의 자율관리공동체는 총 11개소였으며, 동 유형에서의 평균 참여인원은 77명, 어선척수는 42척으로 파악됨. 이중에서 50인 이하로 구성된 범위에서는 어선어업 종사자수가 25-96% 차지, 51-100인 범위는 40-60%, 101인 이상 범위에서는 16-97% 분석됨
- 군산청 복합어업 분석에서의 시사점은 50인 이하에서, 어선어업 종사자 최소 비율은 25%, 101인 이상에서는 16%로 나타나, 적어도 동 어업어업 종사자 최소 비율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그 이유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복합어업 공동체 현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36> 군산청 복합어업 어선어업 종사자 구성 현황

(단위 : 명, 척)

번호	구 분	참여인원(a)	어선척수(b)	비율(b/a)
1	50이하	21	16	76
2		24	23	96
3		28	7	25
4		35	15	43
5	51-100	53	32	60
6		61	28	46
7		88	35	40
8		93	47	51
9	101	115	39	34
10		129	20	16
11	이상	201	195	97
평균		77.09	41.55	53.09

자료 : 참여공동체 445개소(2006.12 기준)에서 정리

*) 해당되는 3개 공동체는 구성원보다 어선척수가 많아 제외함

- 다음으로 자료가 확보된 여수청 소속의 복합어업 유형의 자율관리공동체는 총 7개소였으며, 동 유형에서의 평균 참여인원은 108명, 어선척수는 49척으로 파악되어 군산청 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 중에서 50인 이하로 구성된 범위에서는 어선어업 종사자수가 59-86% 차지, 101이상인 범위는 15-50%로 분석됨

<표 5-37> 여수청 복합어업 어선어업 종사자 구성 현황

(단위 : 명, 척)

번호	구 분	참여인원(a)	어선척수(b)	비율(b/a)
1	50이하	49	29	59
2	51-100	53	36	68
3		58	50	86
4		83	58	70
5	101 이상	167	60	36
6		173	26	15
7		175	87	50
평균		108.29	49.43	54.86

자료 : 참여공동체 445개소(2006.12 기준)에서 정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여수청 복합어업 분석에서의 시사점은 101인 이상에서는 15%로 나타나 군산청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적어도 동 어업어업 종사자 최소 비율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이, 자율관리어업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선어업이고, 어선어업이 포함된 복합어업의 유형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별도로 복합어업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음
- 참여 구성원중에서 어선어업종사자의 비중을 고려하여 기준(안)을 만들었으며, 참여구성원 중에서 15%-30% 정도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복합어업으로 분류함

<표 5-38> 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 복합어업 기준(안)

참여 구성원	공동체 중 어선어업종사자 비중	어선어업 종사자수 (최저/최고치 기준, 반올림)	사유
20명미만	30%	6명	기존 참여공동체 모두 30%이상임
20-50	25%	5명 - 13명	기존 참여공동체 모두 25%이상임
51-100	20%	10명 - 20명	기존 참여공동체 모두 20%이상임
101-200	15%	15명 - 30명	기존 공동체중에서 15%비중 차지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
201-300	15%	30명 - 45명	기존 참여공동체는 없더라도 잠재성 및 광역공동체 고려, 참여유도 필요
301-400	15%	45명 - 60명	
400명 이상	15%	60명	

3. 기관별 평가개선(안) 기준

-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제5장 제2절에서 제2안(예비평가/본 평가 구분, 지역협의회 참여)으로 하고, 본(안)의 예비평가는 지방청 단위의 기관별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타기관 등)로 하고, 참여기관별 반영비율은 지방청 전담 어촌지도사 전자평가(60%), 지역협의회 평가(30%), 지도자협회의 평가(10%)로 단순화, 본 평가는 중앙단위 자율관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순위를 부여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해당되는 공동체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하여 등급 부여하는 방안임
- 이를 근거로, 기관별 평가항목개발의 기준은 첫째, 타 평가기관의 중복성 여부, 둘째, 어업인 접촉 최소화 가능 여부, 셋째, 자율관리 평가항목이 있는지 여부, 넷째, 타 기관평가에서 평가항목이 있더라도 해당기관의 중복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은 포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음
- 참여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작성하되 유형별로 공통적인 항목과 참여유형별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

<표 5-39> 기관별 평가항목 개발의 기준

구 분	사 유
타 평가기관 중복성 여부	기본적으로 예비평가 3개기관 및 본 평가에서 위원회가 참여함으로 기관별 평가항목간에 중복성 최소화 필요
어업인 접촉 최소화 가능 여부	평가하는 4개기관이 개별적으로 어업인들을 접촉함에 따른 자율관리 공동체 불편 최소화
기관별 자율관리 평가항목 발굴	기관별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발굴하여 현실을 최대한 반영 필요
타 기관평가와 중복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경우 포함	타 기관에서 평가 하더라도 다른 기관이 좀 더 현실을 반영하는 평가가 가능하다면 이를 고려함

4. 시도 지도자협의회평가 개선(안)

- 먼저 시도지도자협의회가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평가비중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항목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평가항목 개선(안) 기준

- 시도지도자 협의회 평가 문제는 여러 차례 토론회와 현지 방문 및 지도자협의회 개최시 (‘07.2) 직접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음 결론을 얻었음
- 지도자협의회 평가항목 개발기준은 타 기관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지역협의회) 항목과의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일부 중복되더라도 지도자협의회에서 더 잘 평가할 수 있고, 중요성이 큰 항목은 평가에 포함하였음
-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문항 수는 5개 문항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정성적인 방법을 준용하되, 개별항목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상 : 200점, 중 : 180점, 하 : 150점
 - 사유 : 주관성을 전혀 배제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하 기준 점수를 150점(하)으로 하고, 최고점수인 상은 200점으로 배정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최소한 1,000점 만점에 750점이 기본 점수가 됨으로 시도지도자협의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음

나. 지도자 협의회 평가항목 개선(안)

- 지도자 협의회 평가항목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를 시도하였으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타 기관평가와 중복이 되지 않고, 지도자 협의회가 잘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 구체적인 평가항목개선안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평가항목은 5가지로 한정하였고, 배점의 범위는 상/중/하로 함
- 평가항목은 자율관리 공동체 추진력의 정도, 주변공동체의 영향을 미치거나 광역화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주변파급(광역화)정도, 해당어촌 및 지역사회 평판 등을 고려한 위원장의 리더십, 해당공동체의 단합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회원상호간의 결속/단결, 지도자 협의회 활성화에 위하여 적극 참여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 협의회 참여정도 등을 제시함
- 이러한 5가지 평가항목 배점의 최고점수는 200점으로 하고, 지방청간 공동체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항목별 최하 기본점수(하) 150점 부여함. 따라서, 최고점수는 1,000점이고, 최하점은 750점으로 되어 편차를 최소화하였으며, 동 평가는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음

<표 5-40> 지도자협의회 평가항목 개선(안)

평가항목		배점 범위	선정사유 및 평가 범위
1	자율관리어업 추진 정도	상(200), 중(180), 하(150)	공동체 추진력
2	주변 파급(광역화) 정도	상(200), 중(180), 하(150)	주변공동체에 영향 및 광역화 노력/성과 정도
3	공동체 위원장 리더십	상(200), 중(180), 하(150)	해당어촌 사회 평판 고려
4	회원상호간의 결속/단결	상(200), 중(180), 하(150)	해당공동체 단합정도
5	지도자협의회 참여정도	상(200), 중(180), 하(150)	지도자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참여 정도
총점(5개항목)		1,000점(100%)	

다. 지도자협의회 평가 절차

- 지도자협의회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산화하여 평가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러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음
- 크게 4단계로 나누어 평가에 임하되, 1단계는 지역별 지도자협의회 평가단 구성하고 각각의 평가위원별로 지역단위로 평가대상 공동체를 할당 및 평가하도록 함
- 2단계에서는 지도자협의회별로 세부 지역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3단계에서는 지도자협의회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청에서 전산 입력케 하고, 4단계에서는 해수부/한국수산회에서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함
- 지도자협의회 평가 절차는 기본적으로 지방청의 협조를 받아, 지역협의회에서 평가를 하고, 동 결과를 전산 입력하여 평가 결과를 바로 집계할 수 있는 방안임
- 동 평가 절차는 기존에는 한국수산회 사무국에서 지도자협의회와 협력하여 평가 결과를 FAX나 우편으로 전송받아 수작업으로 전국적인 집계 및 분석을 하였으나, 동 절차를 따르게 되면, 제한된 시간에 평가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1년에 1번만 평가하는 것이므로 지방청에서 전산입력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5-41> 지도자협의회 평가 절차(안)

단계별	세부내용	역할분담 기관
1단계	- 지역별 지도자협의회 평가단 구성, 지역단위로 평가대상 공동체를 할당 및 평가	평가단 구성
2단계	- 평가단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별로 평가	위원별 평가
3단계	- 지방청 협조를 통하여 평가결과 지방청에서 전산입력	지방청
4단계	- 평가결과를 수산회 및 해수부에서 활용	수산회/해수부

라. 지도자협의회 구성 및 평가위원 현황

- 시·도 자율관리지도자협의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지방청별로 회장과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보면, 위원회별로 최소 8개에서 최대 83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공동체 수가 많은 지방청의 경우는 공동체 위치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되는 공동체를 지도자협의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5-42> 시·도 자율관리지도자협의회 구성 현황(2006년)

지 역(청)	회 장	위 원	공동체 수
부산	이종옥(녹산)	부회장(최주태) 고문(김보섭) 감사(이성연) 총무(신경현)	녹산공동체외 8개소
인천	최동희(연평)	부회장(장주봉) 간사(이권)	연평공동체외 15개소
전남(여수)	황종운(안도)	부회장(이철주) 총무(이유곤)	안도공동체외 62개소
경남(마산)	김재균(삼진수산) (‘06년 김옥유에서 변경)	부회장(전정권) 부회장(최동진) 감사(전용우)	삼진수산영어법인 외 59개소
울산	신진호(당사) (‘06년 김선호에서 변경)	-	당사공동체외 11개소
강원(동해)	김계진(거진) (‘06년 김진영에서 변경)	-	거진공동체외 27개소
전북(군산)	이수용(하전)	부회장(추영길) 총무(박종운)	하전공동체외 26개소
제주	강창송(동귀)	부회장(김정기) 사무국장(손석찬) 감사(강도일)	동귀공동체외 30개소
전남(목포)	양태성(광립)	부회장(박성훈) 총무(이민국)	당목공동체외 83개소
경북(포항)	김현찬(하정2리)	부회장(안용원) 총무(원성출) 감사(신규섭) 감사(박상복)	하정2리공동체외 46개소
경기(평택)	장천수(탄도)	부회장(조성원)	탄도공동체외 14개소
충남(대산)	김필문(과도리)	부회장(이운우) 간사(박태용)	과도리공동체외 50개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시·도 자율관리지도자 협의회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해당청별로 선정된 공동체 위원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공동체중에서 회장과 위원들로 이루어져 자율관리 공동체의 지역에서의 활동 및 실정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거나, 교류가 없는 공동체는 낮은 점수의 평가가 우려되어,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기본점수 부여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함

<표 5-43> 2007년도 시도 지도자 평가위원회 현황

시·도(청)	공동체명
부산	녹산, 다대, 이천, 송정, 이동, 동선, 중리, 동리
인천	연평, 큰무리, 승봉, 소청, 연지
경기(평택)	탄도, 석천, 오이도, 제부, 선감
충남(대산)	과도, 도황, 법산, 라향, 창리, 무창포
전남(목포)	광립, 마리, 방축, 주포어선, 금호
전북(군산)	하전, 장자도, 격포선주협회, 치도, 용기
전남(여수)	안도, 우두, 오복, 내저
경남(마산)	삼진수산, 두포, 삼천포죽방림, 거제다대, 은점, 고포, 원항
울산	당사, 진하, 일산, 정자, 강양
경북(포항)	하정2리, 강사1리, 대동배1리, 장길리, 기성
강원(동해)	거진, 내물치, 삼척대진, 사천, 남애2리
제주	동귀, 강정, 사계, 태흥2리

- 즉, 지방청 소속의 내부 공동체간의 편차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편차도 우려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성/객관성/형평성/신뢰성 문제 해소, 전체평가에서 배점 비율이 10%임을 감안하고, 자율관리어업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평가에 참여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으므로 최대한 편차를 줄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지역협의회 평가개선(안)

- 지역협의회 평가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평가비중에서 30%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항목선정기준, 마을 및 양식어업, 어선 및 내수면 어업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가. 평가항목 선정 기준

- 기본적으로는 수산관계법령 준수와 연계하고, 전자평가와 중복이 없도록 하고, 현장방문 조사 없이 가능함 범위내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방안임
- 당초 초안은 25개 항목이었으나,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및 타 기관 평가와의 중복성을 배제하여 8개 항목을 도출하였음
- 지역협의회 평가항목 개발기준은 타 기관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지도자협의회) 항목과의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원칙함. 그러나 일부 중복되더라도 지역협의회에서 더 잘 평가할 수 있고, 중요성이 큰 항목은 평가에 포함하였음
-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문항 수는 8개 문항, 지역협의회 종합의견 20%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정량적인 방법을 준용하되, 개별항목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8개 문항 : 80%적용(최고 100점, 최저 0점 부여)
 - 종합의견 : 20%적용(지역협의회 종합의견)/한정면허 여부 등을 반영함
- 지역협의회 평가는 객관적인 행정적인 자료를 기초로 평가함으로 8개 문항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800점(1문항당 100점)으로 하고, 지역협의회 종합의견을 200점으로 하여 8:2 비율임(전체 1,000점임)

나. 유형별 평가항목(안)

- 지역협의회에서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등 5개의 유형별로 평가할 평가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마을/양식어업 유형

- 지역협의회 평가항목 개발기준은 타 기관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지도자협의회) 항목과의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일부 중복되더라도 지역협의회에서 더 잘 평가할 수 있고, 중요성이 큰 항목은 평가에 포함하였음
-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문항 수는 8개 항목, 지역협의회 종합의견 20%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정량적인 방법을 준용하되, 개별항목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8개 문항 : 80%적용(항목당 최고 100점, 최저 0점 부여 : 800점)
 - 종합의견 : 20%적용(지역협의회 종합의견 : 200점)
- 마을/양식어업 유형에서 8개 항목의 내용은 살펴보면, 어장관리규약에 의한 및 행사계약 여부, 어장표시 설치, 어장구역 이탈/과점, 어장관리규약 등 준수, 어촌계 항포구 등 불법 어구 방치 여부, 염산등 유해물질 사용 및 방치, 무등록 및 방치폐선 발생, 무허가 어선 및 무면허 양식시설 위반 등임
- 이들 8개 항목들은 마을/양식어업 유형에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동 평가 항목들은 자율관리어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종합평가 20%(200점) 부여는 시도별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위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토록 하고, 평가대상 개별공동체의 특성이나, 이용하고 있는 어장(마을/양식 등)이 보상을 받고 난 이후, 관계기관(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력 등)에서 허락한 한정면허 대상인지를 고려하여 종합평가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해당공동체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육성사업비(인센티브) 지원대상이 될 경우, 한정면허 기간으로 인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임

<표 5-44> 마을/양식어업 유형 지역협의회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배점내용	
	배점	배점기준
어장관리규약에 의한 및 행사계약 여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행사계약 : 100 · 50~99% 행사계약 : 70 · 20%~49% 행사계약 : 50 · 20%미만 행사계약 : 30 · 0% 행사계약 : 0
어장표시 설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설치 : 100 · 50~99% 설치 : 70 · 20%~49% 설치 : 50 · 20% 미만 설치 : 30 · 0% 설치 : 0
어장구역 이탈·과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탈 및 미과점 : 100 · 이탈 및 과점 20% 미만 : 70 · 이탈 및 과점 20%~49% : 50 · 이탈 및 과점 50%~99% : 30 · 이탈 및 과점 100% : 0
어장관리규약 등 준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미위반 : 100 · 50% 미만 위반 : 70 · 50%~69% 위반 : 50 · 70~99% 위반 : 30 · 100% 위반 : 0
어촌계 항포구 등 불법어구 방치 여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방치 : 100 · 1건 방치 : 70 · 2~5건 방치 : 50 · 6~9건 방치 : 30 · 10건 이상 방치 : 0
염산등 유해물질 사용 및 방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 및 미방치 : 100 · 미사용 및 미방치 20% 미만 : 70 · 미사용 및 미방치 20%~49% : 50 · 미사용 및 미방치 50%~99% : 30 · 사용 및 방치 100% : 0
무등록 및 방치폐선 발생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록어선 미발생 : 50 · 무등록어선 1척 발생 : 30 · 무등록어선 2척~4척 발생 : 10 · 무등록어선 5척이상 발생 : 0 · 방치폐선 미발생 : 50 · 방치폐선 1척 발생 : 30 · 방치폐선 2척~4척 발생 : 10 · 방치폐선 5척이상 발생 : 0
무허가 어선 및 무면허 양식시설 위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위반 : 100 · 위반 1건 발생 : 70 · 위반 2건~5건 발생 : 50 · 위반 6건~9건 발생 : 30 · 위반 10건이상 발생 : 0
소 계	800	
종합의견	200	협의회 종합토론(한정면허 여부 등 고려)
총 8 문항/종합의견	1,000	

2) 어선어업 유형

- 지역협의회 어선어업 유형 평가항목 개발기준은 마을/양식어업과 같이, 타 기관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지도자협의회) 항목과의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원칙함. 그러나 일부 중복되더라도 지역협의회에서 더 잘 평가할 수 있고, 중요성이 큰 항목은 평가에 포함하였음
- 지역협의회 평가는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문항수는 8개 문항, 지역협의회 종합의견 20%, 평가방법은 정량적인 방법을 준용, 개별항목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8개 문항 : 80%적용(항목당 최고 100점, 최저 0점 부여 : 800점)
 - 종합의견 : 20%적용(지역협의회 종합의견 : 200점)
- 어선어업 유형의 8개항목 내용은 살펴보면, 과징금 납부, 조업구역 준수여부, 허가받은 이외 어업발생 여부(소형기저 잔존), 허가이외 어업발생 여부(삼중망 등), 업종간 분쟁해소, 어구실명제 및 적정어구 사용 실시(그물코 포함), 어촌계 항·포구 불법어구 방치, 무허가 어선어업 발생 등임
- 이들 8개 항목들은 어선어업 유형에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동 평가 항목들은 자율관리어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종합평가 20%(200점) 부여는 시도별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위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토록 하고, 평가대상 어선어업 공동체의 특성과 수산자원회복동참여부, TAC참여 등 어선어업자들이 정부 수산관련 정책에 얼마나 협력 및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평가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수산자원회복등과 같은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선어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45> 어선어업 유형 지역협의회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배점내용		비고
	배점	배점기준	
과징금 납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납 : 100 · 1척 미납 : 70 · 2척~3척 미납 : 50 · 4~5척 미납 : 30 · 6척이상 미납 : 100 	
조업구역 준수여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위반 : 100 · 1건 위반 : 70 · 2~4건 위반 : 50 · 5~9건 위반 : 30 · 10건 이상 위반 : 0 	
허가받은 이외 어업발생 여부 (소형기저 잔존)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생 : 100 · 1척 발생 : 70 · 2척~3척 발생 : 50 · 4척~5척 발생 : 30 · 6척이상 발생 : 0 	
허가이외 어업발생 여부 (삼중망 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존재 : 100 · 1건 발생 : 70 · 2~5건 발생 : 50 · 6~9건 발생 : 30 · 10건 이상 발생 : 0 	
업종간 분쟁해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생 : 100 · 분쟁자체 해소 : 50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해소된 경우) · 분쟁 자체 미해소 : 0 	
어구실명제 및 적정어구 사용 실시(그물코 포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실시 : 100 · 50~99% 실시 : 70 · 20%~49% 실시 : 50 · 20%미만 실시 : 30 · 실시 않음 : 0 	
어촌계 항·포구 불법어구 방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방치 : 100 · 1건 방치 : 70 · 2~5건 방치 : 50 · 6~9건 방치 : 30 · 10건 이상 방치 : 0 	
무허가 어선어업 발생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생 : 100 · 1척 발생 : 70 · 2척~3척 발생 : 50 · 4척~5척 발생 : 30 · 6척이상 발생 : 0 	
소 계	800		
종합의견	200	지역협의회 종합토론	
총 8 문항/종합의견	1,000		

3) 복합어업 유형

- 지역협의회 복합어업 유형 평가항목 개발기준은 마을/양식/어선어업과 같이, 타 기관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지도자협의회) 항목과의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원칙함. 그러나 일부 중복되더라도 지역협의회에서 더 잘 평가할 수 있고, 중요성이 큰 항목은 평가에 포함하였음

- 지역협의회 평가는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문항 수는 8개 문항, 지역협의회 종합 의견 20%, 평가방법은 정량적인 방법을 준용, 개별항목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8개문항 : 80%적용(항목당 최고 100점, 최저 0점 부여 : 800점)
 - 종합의견 : 20%적용(지역협의회 종합의견 : 200점)

- 평가항목은 기본적으로 마을어업+어선어업의 형태를 띄고 있음을 감안하여, 마을어업 평가항목과 어선어업 평가항목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선별하여 평가항목을 작성하였음

- 복합어업 유형의 8개항목 내용은 살펴보면, 어장표시 설치, 어장구역 이탈·과점, 어촌계 항포구 등 불법어구 방치 여부, 무등록 및 방치폐선 발생, 무허가 어선 및 무면허 시설 위반, 허가이외 어업발생 여부(소형기저 잔존), 허가이외 어업발생 여부(삼중망 등), 업종 간 분쟁해소, 어구실명제 및 적정어구 사용 실시(그물코 포함) 등임

- 이들 8개 항목들은 마을+ 어선어업 유형에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토록 유도할 수 있으며, 동 평가 항목들은 자율관리어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종합평가 20%(200점) 부여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어장(마을/양식 등)이 보상을 받고 난 이후, 한정면허 대상인지 여부, 수산자원회복 동참여부, TAC참여 등 정부 수산관련 정책에 얼마나 협력 및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평가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46> 복합(마을+어선)어업 유형 지역협의회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배점내용	
	배점	배점기준
어장표시 설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설치 : 100 · 50~99% 설치 : 70 · 20%~49% 설치 : 50 · 20% 미만 설치 : 30 · 0% 설치 : 0
어장구역 이탈·과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탈 및 미과점 : 100 · 이탈 및 과점 20% 미만 : 70 · 이탈 및 과점 20%~49% : 50 · 이탈 및 과점 50%~99% : 30 · 이탈 및 과점 100% 설치 : 0
어촌계 항포구 등 불법어구 방치 여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방치 : 100 · 1건 방치 : 70 · 2~5건 방치 : 50 · 6~9건 방치 : 30 · 10건 이상 방치 : 0
무등록 및 방치폐선 발생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록어선 미발생 : 50 · 무등록어선 1척 발생 : 30 · 무등록어선 2척~4척 발생 : 10 · 무등록어선 5척이상 발생 : 0 · 방치폐선 미발생 : 50 · 방치폐선 1척 발생 : 30 · 방치폐선 2척~4척 발생 : 10 · 방치폐선 5척이상 발생 : 0
무허가 어선 및 무면허 시설 위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위반 : 100 · 위반 1건 발생 : 70 · 위반 2건~5건 발생 : 50 · 위반 6건~9건 발생 : 30 · 위반 10건이상 발생 : 0
허가외 어업발생 여부 (소형기저 잔존)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생 : 50 · 1척 발생 : 30 · 2척~3척 발생 : 20 · 4척~5척 발생 : 10 · 6척이상 발생 : 0
허가외 어업발생 여부 (삼중망 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존재 : 50 · 1건 발생 : 30 · 2~5건 발생 : 20 · 6~9건 발생 : 10 · 10건이상 발생 : 0
업종간 분쟁해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생 : 100 · 분쟁자체 해소 : 50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해소된 경우) · 분쟁 자체 미해소 : 0
어구실명제 및 적정어구 사용 실시(그물코 포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실시 : 100 · 50~99% 실시 : 70 · 20%~49% 실시 : 50 · 20%미만 실시 : 30 · 실시 않음 : 0
소 계	800	
종합의견	200	지역협의회 종합토론
총 8 문항/종합의견	1,000	

4) 내수면어업 유형

- 지역협의회 내수면어업 유형 평가항목 개발기준은 마을/양식/어선어업과 같이, 타 기관 평가(지방청 전자평가, 지도자협의회) 항목과의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원칙함. 그러나 일부 중복되더라도 지역협의회에서 더 잘 평가할 수 있고, 중요성이 큰 항목은 평가에 포함하였음

- 지역협의회 평가는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문항수는 8개 문항, 지역협의회 종합 의견 20%, 평가방법은 정량적인 방법을 준용, 개별항목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8개문항 : 80%적용(항목당 최고 100점, 최저 0점 부여 : 800점)
 - 종합의견 : 20%적용(지역협의회 종합의견 : 200점)

- 평가항목은 기본적으로 내수면어업 특성상 마을어업+어선어업의 형태를 띄고 있음을 감안하여, 마을/어선어업 평가항목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선별하여 평가항목을 작성하였음

- 내수면어업 유형의 8개항목 내용은 살펴보면, 내수면 어장관리규약 및 행사계약, 내수면 어장표시 설치, 내수면 어장구역 이탈·과점, 내수면 어장관리규약 등 준수, 내수면 무허가 어선 및 무면허 양식시설 위반, 내수면 불법어구 방치 여부, 내수면 무등록 및 방치폐선 발생, 내수면 어구실명제 및 적정어구 사용 실시(그물코 포함) 등임

- 이들 8개 항목들은 내수면어업에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토록 유도할 수 있으며, 동 평가 항목들은 자율관리어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종합평가 20%(200점) 부여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어장이 관계기관(농업기반공사)과의 사용계약 기간 확인 및 내수면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력 및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평가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47> 내수면어업 유형 지역협의회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배점내용	
	배점	배점기준
내수면 어장관리규약 및 행사계약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행사계약 : 100 · 50~99% 행사계약 : 70 · 20%~49% 행사계약 : 50 · 20%미만 행사계약 : 30 · 0% 행사계약 : 0
내수면 어장표시 설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설치 : 100 · 50~99% 설치 : 70 · 20%~49% 설치 : 50 · 20% 미만 설치 : 30 · 0% 설치 : 0
내수면 어장구역 이탈·과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탈 및 미과점 : 100 · 이탈 및 과점 20% 미만 : 70 · 이탈 및 과점 20%~49% : 50 · 이탈 및 과점 50%~99% : 30 · 이탈 및 과점 100% : 0
내수면 어장관리규약 등 준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미위반 : 100 · 50% 미만 위반 : 70 · 50%~69% 위반 : 50 · 70~99% 위반 : 30 · 100% 위반 : 0
내수면 무허가 어선 및 무면허 양식시설 위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위반 : 100 · 위반 1건 발생 : 70 · 위반 2건~5건 발생 : 50 · 위반 6건~9건 발생 : 30 · 위반 10건이상 발생 : 0
내수면 불법어구 방치 여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방치 : 100 · 1건 방치 : 70 · 2~5건 방치 : 50 · 6~9건 방치 : 30 · 10건 이상 방치 : 0
내수면 무등록 및 방치폐선 발생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록어선 미발생 : 50 · 무등록어선 1척 발생 : 30 · 무등록어선 2척~4척 발생 : 10 · 무등록어선 5척이상 발생 : 0
내수면 방치폐선 발생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폐선 미발생 : 5 · 방치폐선 1척 발생 : 3 · 방치폐선 2척~4척 발생 : 1 · 방치폐선 5척이상 발생 : 0
내수면 어구실명제 및 적정어구 사용 실시 (그물코 포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실시 : 100 · 50~99% 실시 : 70 · 20%~49% 실시 : 50 · 20%미만 실시 : 30 · 0% 전혀 실시 않음 : 0
소 계	800	
종합의견	200	지역협의회 종합토론
총 8 문항/종합의견	1,000	

다. 지역협의회 평가 절차

- 지도자협의회와 유사하게 지역협의회의 평가도 기본적으로 전산화하여 평가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러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음
- 크게 4단계로 나누어 평가에 임하되, 1단계는 시도별 지역협의회 평가단 구성하고, 시도별로 소속된 자율관리 평가대상 공동체를 평가하도록 함
- 2단계에서는 시도협의회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3단계에서는 지역협의회 평가결과를 도별(도 주관으로 평가위원회 개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 입력케 하고, 4단계에서는 해수부/한국수산회에서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함
- 지역협의회 평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시도별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 개최/평가/입력 하는 방안으로, 도 단위에서 전산 입력하여 평가 결과를 바로 집계할 수 있는 방안임
- 동 평가절차는 기존에 없는 것이므로, 시/도단위에서 평가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평가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를 시/도 담당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1년에 1번만 평가하는 것이므로 지역협의회(시/도 단위)에서 평가 및 입력은 큰 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5-48> 지역협의회 평가 절차(안)

단계별	세부내용	역할분담 기관
1단계	- 지역협의회 평가단 구성, 평가대상 공동체 확정	평가단 구성
2단계	- 협의회를 개최하여 평가함(시/군/구 협조)	지자체 협조
3단계	- 평가결과를 도 단위에서 전산입력	시/도
4단계	- 평가결과를 수산회 및 해수부에서 활용	수산회/해수부

라. 지역협의회 구성 및 평가위원 현황

- 지역협의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시/도별로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전북도만 제외하고, 대부분 해운/항만/수산 관련 부서의 국장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49> 시·도별 지역협의회 구성

지 역(청)	위원장	위 원
부산	부산시 항만농수산물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 부산청, 수과원 과장 부산, 부산동부, 의창수협 조합장 대항, 동선, 다대, 녹산공동체 위원장
인천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시, 인천청, 서해수산연구소 과장 용진수협 조합장 남3리, 소청, 연평공동체 위원장
전남	전남도청 해양수산환경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도, 여수, 목포청 과장 남해수산연구소 수산연구관 목포, 여수, 완도, 해남, 제3,4구잠수기수협 조합장 한국수산회 자문위원 사곡, 명천, 용곡, 야월공동체 위원장
경남(마산)	경남도청 농수산물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산청 수산물관리과장 양식환경연구소 수산연구관 경상대학교 교수 수산경영인 경남연합회 회장 거제, 남해 수협장 삼진, 학림, 저도, 다대, 남해잠수기 공동체 위원장
울산	울산시 경제통상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시, 울산청 과장, 수과원 담당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 과장 울산수협 조합장 방어진, 신암, 주전, 정자공동체 위원장
강원(동해)	환동해출장소 수산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동해출장소, 동해청 과장 속초수산물기술관리소 소장 동해수산연구소 연구관 삼척, 양양 수협 조합장 덕산, 심곡, 남애2리, 장사동공동체 위원장
전북(군산)	전북도청 수산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청, 군산, 고창, 부안군 과장 서해수산연구소 군산분소장 군산, 고창, 부안수협 전무 무녀도, 하전, 왕등도공동체 위원장
제주	제주도청 농수축산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 제주수산자원연구소 과장 수과원 자원조성연구소장 제주, 서귀포 수협 조합장 동귀, 신흥, 하모, 남원, 성산, 모슬포공동체 위원장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5-50> 시·도별 지역협의회 구성(계속)

지 역(청)	위원장	위 원
경북(포항)	경북도청 환경산림수산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 경주시, 포항청 과장 • 동해수산연구소 영덕수산물관리소장 • 후포수협 조합장 • 경북근해자망선주협회장 • 나정2리, 부경, 기성공동체 위원장
경기(평택)	경기도 농정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청 수산관리과장 •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해수산연구소 연구관 • 경기남부, 경인북부, 용진수협 조합장 • 탄도, 선감, 석천공동체 위원장
충남(대산)	충남도청 농림수산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청 해양수산과장 •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과장 • 서해수산연구소 연구관 • 대산청 수산관리과장 • 보령해양수산사무소 소장 • 보령, 서산, 서면, 안면, 당진 수협장 • 장고도, 파도리 어촌계 위원장
충북	충청북도 농정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축산과장 • 충주시 축산과장 • 수과원 내수면생태연구소장 • 대산청 수산관리과장 • 수협지점장 •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옥천군, 단양군 어업인 • 충북수산담당

- 지역협의회 구성원들은 해당 시도의 수산과장, 시군구 담당과장, 지역에 있는 연구소, 지방청(사무소), 수협장, 자율관리 공동체 위원장 등 해당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일부 기관의 미참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지방청 전자평가 개선(안)

- 지방청 전자평가 개선(안)을 도출하기위하여 Workshop 및 토론회를 해수부, 지방청, 시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를 제1차('06.12-19), 제2차('07.2.22-23), 제3차('07.4.6-7) 등 3차례 실시하였음
- 토론회 결과를 기초로 하고, 연구팀 자체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지방청 전자평가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항목 개선(안) 기준 및 특징

1) 평가항목 개선(안) 기준

- 참여유형은 기본적으로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어선어업과 마을(또는 양식)어업이 함께하는 복합어업을 추가하여 5개 유형으로 확정함
 - 기본유형의 평가항목과 매뉴얼을 먼저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복합어업에 적용할 평가항목과 매뉴얼을 도출하였음
- 유종별 구분 평가서 작성시 5개 분류내의 평가 문항수의 상이로 인한 유형간 편향성은 항목조정 및 점수를 동일하게 1,000점하여 개선함
- 평가내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생산량 조절과 생산시기 조절, 어획능력 삭감노력과 특정 어구어법 사용 제한 등)
 - 기존 평가항목 중 내수면공동체에 적용이 가능한 항목은 평가 매뉴얼에 반영(어소·어도 설치여부, 외래어종 구제 여부 등)
- 기존 평가항목 이외에 아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이들 평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항목들 중에서, 좀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은 타 기관평가에서 하도록 하였음

- 규약 및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는 자율관리어업에 있어 매우 중요함으로 평점을 대폭 확대(지방청 및 지역협의회 반영)
- 마력수 제한, 공동체 홍보, 광역화 추진노력, TAC 실시, 어장정비, 분쟁조정, 친환경 어구개발 등에 따라 가점 부여방안(지역협의회/지도자협의회 반영)
- 소형기저 근절 및 재진입 방지노력, 무허가/무등록 어선 발생예방 등에 따라 가·감점 부여방안(지역협의회 반영)

2) 평가 항목간의 특징

- 전자평가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정착시키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평가 항목은, 점수의 배점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자율관리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하여 유도하였음
- 먼저, 5개 모든 유형에서 “생산량 조절 실시/TAC” 항목의 경우는 자율관리어업을 추진 하는데, 어획노력량 및 생산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항목임으로 상대적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다음으로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의 경우는 마을, 양식, 복합 유형에서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성과의 지표로 중요함으로 상대적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어선/내수면어업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성과의 지표로 동 유형에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임
- 다음으로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및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는 자율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수산관계법령의 준수를 유도하여 관련 제도 및 법률이 준수 및 이를 통한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음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51> 유형별 세부 항목 중 상대적 높은 점수 항목

평가 항목	자율관리 공동체 유형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생산량 조절 실시/TAC	○	○	○	○	○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	○	×	×	○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	○	○	○	○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	○	○	○	○

- 또한, 각 항목의 평가는 자체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정부 또는 수협 등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은 자담분만 인정함
 - 자부담분 산정에 있어 금액은 부담률에 따라 산정하고, 물량과 횟수는 전량 인정

- 다음으로 평가항목에 있어 객관적이고 증빙자료의 확보가 용이한 평가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평가자에 따른 편향성을 개선
 - 단, 증빙자료에 의한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평가자의 종합의견을 평가문항에 반영하여 점수화하였음

나. 유형별 전자평가 항목 개선(안)

1) 평가서 개선(안)의 개요

- 평가서의 총점은 1,000점이며, 중요도를 기준으로 노력도(자원관리, 어장환경조성, 자원조성, 어장정화, 자율관리위원회, 수익확대, 공동체 구성원 교육)에 60%를,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에 각각 10%를 배점하였음.

- 이러한 평가 항목은 세부 평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세부 평가 항목 점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합계가 평가 항목의 점수가 됨.

- 5개 자율관리 유형별 세부 평가 항목에는 사업실시 여부, 사업실적, 구성원의 참여도 등에 따른 가중치가 부여된 항목들이 있도록 작성하였음

<표 5-52> 유형별 평가문항 및 배점 개선(안)

구 분		마을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	
		문항	배점	문항	배점	문항	배점	문항	배점	문항	배점
합계		27	1,000	25	1,000	22	1,000	25	1,000	30	1,000
노력도 (60%)	소계	16	600	15	600	13	600	16	600	18	600
	자원관리	4	200	4	200	5	250	5	250	6	250
	어장환경조성	3	110	2	110	1	50	2	80	3	90
	자원조성	2	70	2	70	0	-	2	30	2	70
	어장정화	2	60	2	60	2	140	2	80	2	60
	자율관리위원회	2	60	2	60	2	60	2	60	2	30
	수익확대	2	70	2	70	2	70	2	70	2	70
	공동체 구성원 교육	1	30	1	30	1	30	1	30	1	30
40%	참여도	2	100	1	100	1	100	1	100	3	100
	성과도	3	100	3	100	2	100	2	100	3	100
	지속도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파급도	2	100	2	100	2	100	2	100	2	100

2) 유형별 전자평가 항목 개선(안)

- 지방청 전자평가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수부 관계자, 지방청, 시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를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 개선안을 제시함
- 이중에서, 2006년도 전반기 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변경된 사항만 언급하면, 노력도(자원관리사업)중에서 공동판매항목을 수협의 계통출하 실시까지 포함을 시켰으며, 다음으로 노력도(어장환경조성사업)중에서 내수면어업 고려, 어소(민물고기산란장), 어도등과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의 항목을 추가로 포함시켜 내수면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음
- 다음으로 노력도(자원조성사업)에서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항목중에서 품종계량(개선)부분도 추가로 포함시켜 자원조성을 위해 공동체가 노력하는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였음
- 또한, 노력도(자율관리위원회운영)에서 공동체주관의 활동중에서 홍보 및 교육부분 실시 여부에 대해 평가하도록 추가하였으며, 노력도(수입확대사업추진)에서 수산물판매 여부에 대해 판매망 구축 및 자체상품 품질 노력에 대한 여부에 대해 평가에 반영토록 하였음
-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등의 부분은 본 연구의 추진중에 일부평가 항목을 개선하여 2007년도 전반기에 평가를 하였으므로,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그 이유는 동 연구추진 과정중에 지방청 전자평가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동 연구팀에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평가서를 만들었으며, 동 평가서를 기준으로 2007년도 전반기에 평가를 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최근에 수정된 평가서를 기초로 개선안을 마련함
-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 평가개선(안)에 대한 여러 과정을 생략하여 결과만 언급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5-53> 공동체 유형별 전자평가 항목 개선(안)

구분	평가항목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1년간 총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I. 노력도(분기 1회 평가)					
	1. 자원관리사업					
1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	×	○	○	○
2	나. 공동판매, 계통 출하 실시	○	○	○	○	○
3	다. 체포체장제한	○	○	○	○	○
4	라. 조업일수 단축	×	×	○	○	○
5	마. 어장휴식년제 실시	○	○	×	×	○
6	바. 생산량조절 실시/TAC ^{*)}	○	○	○	○	○
	2. 어장환경조성사업					
1	가. 투석, 해중립, 어소(민물고기 산란장), 어도 등 어장조성 실시	○	×	×	○	○
2	나. 바위닦기 또는 저질개선 등 실시	○	○	×	×	○
3	다.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	○	○	○	○
	3. 자원조성사업					
1	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	○	×	○	○
2	나.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	○	×	○	○
	4. 어장정화사업					
1	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	○	○	○	○
2	나.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	○	○	○	○
	5. 자율관리위원회 운영					
1	가.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실시	○	○	○	○	○
2	나. 선진지 견학 실시	○	○	○	○	○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54> 공동체 유형별 평가항목 개선(안) <계속>

구분	평가항목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6. 수익확대사업 추진					
1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	○	○	○	○	○
2	나.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	○	○	○	○
	7.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1	가.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	○	○	○	○
	II. 참여도(연 1회 평가)					
1	1.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공동체 참여인원 비율	×	×	○	○	○
2	2. 참여 공동체(마을, 양식) 소유어장 중 공동체 자립대상어장 비율	○	○	×	×	○
3	3. 참여 어촌계(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	×	×	×	○
	III. 성과도(연 1회 평가)					
1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	○	○	○	○
2	2.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	○	○	○	○
3	3.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	○	○	×	×	○
	IV. 지속도(연 1회 평가)					
1	1.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	○	○	○	○	○
2	2.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	○	○	○	○	○
3	3.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	○	○	○	○
4	4. 공동체 회원증가율	○	○	○	○	○
	V. 파급도(연 1회 평가)					
1	1.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	○	○	○	○
2	2. 조사자 의견 등	○	○	○	○	○

*)상대 점수 상향 조정

3) 유형별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안)

가) 마을어업

- 마을어업의 평가항목은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노력도 60%(600점), 기타 40%(400점)로 이루어져 있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력도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자원관리 4항목(200점), 어장환경조성 3항목(110점), 자원조성 2항목(70점), 어장정화 2항목(60점), 자율관리위원회 2항목(60점), 수입확대 2항목(70점), 공동체 구성원 교육 1항목(30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다음으로 기타의 경우는 참여도/성과도/지속도/파급도 등이며, 이들 평가항목은 11개 항목(400점)으로 각각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음
- 대분류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력도(자원관리사업)에서는 공동판매/계통출하실시, 채포채장제한, 어장휴식년제 실시, 생산량조절 실시/TAC 등으로 구성함. 다음으로 노력도중에서 어장환경조성사업의 경우는 투석/해중림/어소(민물고기 산란장), 어도 등 어장조성 실시, 바위닦기/저질개선 등 실시,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등임
- 자원조성사업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등이며, 어장정화사업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등임. 자율관리위원회 운영의 경우는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선진지 견학 실시 등이며, 수입확대사업 추진은 생산물 판매망 구축,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등,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는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가 이에 해당됨
- 참여도(연 1회 평가)는 참여공동체(마을, 양식) 소유어장 중 공동체 사업 대상어장 비율, 참여어촌계(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 성과도(연 1회 평가)는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등이며, 지속도(연 1회 평가)는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공동체 회원증가율 등임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 마지막으로 파급도는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조사자 의견 등으로 구성됨

<표 5-55> 마을어업 유형 평가 항목 배점(안)

평가항목	평가 배점	비율	비고
1년간 총점수	1,000	1,00(%)	
I. 노력도(분기 1회 평가)	600	60	
1. 자원관리사업	200	20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	-	
나. 공동판매, 계통출하 실시	30	3	
다. 채포채장제한	50	5	
라. 조업일수 단축	-	-	
마. 어장휴식년제 실시	50	5	
바. 생산량조절 실시/TAC	70	7	상대점수 상향조정
2. 어장환경조성사업	110	11	
가. 투선, 헬중립, 어손(민물고기 산란장), 어포 등 어장조성 실시	50	5	
나. 바위담기 또는 저질개선 등 실시	30	3	
다.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30	3	
3. 자원조성사업	70	7	
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40	4	
나.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30	3	
4. 어장정화사업	60	6	
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30	3	
나.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30	3	
5. 자율관리위원회 운영	60	6	
가.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30	3	
나. 선진지 견학 실시	30	3	
6. 수익확대사업 추진	70	7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	40	4	
나.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30	3	
7.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30	3	
가.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30	3	
II. 참여도(연 1회 평가)	100	10	
1.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참여인원 비율	-	-	
2. 참여공동체(마을 양식) 수산업자 중 공동체 사업 대상어장 비율	50	5	
3. 참여어촌계(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50	5	
III. 성과도(연 1회 평가)	100	10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30	3	
2.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30	3	
3.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40	4	상대점수 상향조정
IV. 지속도(연 1회 평가)	100	10	
1.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30	3	상대점수 상향조정
2.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30	3	상대점수 상향조정
3.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20	2	
4. 공동체 회원증가율	20	2	
V. 파급도 :	100	10	
1.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50	5	
2. 조사자 의견 등	50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나) 양식어업

- 양식어업의 평가항목은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노력도 60%(600점), 기타 40%(400점)로 이루어져 있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력도는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자원관리 4항목(200점), 어장환경조성 2항목(110점), 자원조성 2항목(70점), 어장정화 2항목(60점), 자율관리위원회 2항목(60점), 수입확대 2항목(70점), 공동체 구성원 교육 1항목(30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다음으로 기타의 경우는 참여도/성과도/지속도/파급도 등이며, 이들 평가항목은 10개 항목(400점)으로 각각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음
- 대분류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력도(자원관리사업)에서는 공동판매/계통출하실시, 채포채장제한, 어장휴식년제 실시, 생산량조절 실시/TAC 등으로 구성함. 다음으로 노력도중에서 어장환경조성사업의 경우는 바위닦기/저질개선 등 실시,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등임
- 자원조성사업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등이며, 어장정화사업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등임. 자율관리위원회 운영의 경우는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선진지 견학 실시 등이며, 수입확대사업 추진은 생산물 판매망 구축,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등,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는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가 이에 해당됨
- 참여도(연 1회 평가)는 참여공동체(마을, 양식) 소유어장 중 공동체 사업 대상어장 비율 등이며, 성과도(연 1회 평가)는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등이며,
- 지속도(연 1회 평가)는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공동체 회원증가율 등이며, 마지막으로 파급도는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조사자 의견 등으로 구성됨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56> 양식어업 유형 평가 항목 배점(안)

평가항목	평가 배점	비율	비고
1년간 총점수	1,000	1,00(%)	
I. 노력도(분기 1회 평가)	600	60	
1. 자원관리사업	200	20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	-	
나. 공동판매, 계통출하 실시	30	3	
다. 채포채장제한	50	5	
라. 조업일수 단축	-	-	
마. 어장휴식년제 실시	50	5	
바. 생산량조절 실시/TAC	70	7	상대점수 상향조정
2. 어장환경조성사업	110	11	
가. 투선, 해중립, 어숙(밑물고기 산란장), 어노 등 어장조성 실시	-	-	
나. 바위담기 또는 저질개선 등 실시	60	6	
다.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50	5	
3. 자원조성사업	70	7	
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40	4	
나.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30	3	
4. 어장정화사업	60	6	
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30	3	
나.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30	3	
5. 자율관리위원회 운영	60	6	
가.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30	3	
나. 선진지 견학 실시	30	3	
6. 수익확대사업 추진	70	7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	40	4	
나.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30	3	
7.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30	3	
가.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30	3	
II. 참여도(연 1회 평가)	100	10	
1.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참여인원 비율	-	-	
2. 참여공동체(마을, 양식) 소용어장 중 공동체 사업 대상어장 비율	100	10	
3. 참여어촌계(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	-	
III. 성과도(연 1회 평가)	100	10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30	3	
2.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30	3	
3.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40	4	상대점수 상향조정
IV. 지속도(연 1회 평가)	100	10	
1.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30	3	상대점수 상향조정
2.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30	3	상대점수 상향조정
3.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20	2	
4. 공동체 회원증가율	20	2	
V. 파급도 :	100	10	
1.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50	5	
2. 조사자 의견 등	50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다) 어선어업

- 어선어업의 평가항목은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노력도 60%(600점), 기타 40%(400점)로 이루어져 있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력도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자원관리 5항목(250점), 어장환경조성 1목(110점), 어장정화 2항목(60점), 자율관리위원회 2항목(60점), 수입확대 2항목(70점), 공동체 구성원 교육 1항목(30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다음으로 기타의 경우는 참여도/성과도/지속도/파급도 등이며, 이들 평가항목은 9개 항목(400점)으로 각각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음
- 대분류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력도(자원관리사업)에서는 어획능력 삭감 노력, 공동판매/계통출하 실시, 채포체장제한, 생산량조절 실시/TAC 등으로 구성함. 다음으로 노력도 중에서 어장환경조성사업의 경우는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등임
- 자원조성사업은 해당 없으며, 어장정화사업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등임. 자율관리위원회 운영의 경우는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선진지 견학 실시 등이며, 수입확대사업 추진은 생산물 판매망 구축,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등, 공동체 구성원 교육 참여는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가 이에 해당됨
- 참여도(연 1회 평가)는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참여인원 비율이 이에 해당되며, 성과도(연 1회 평가)는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등이며,
- 지속도(연 1회 평가)는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공동체 회원증가율 등임. 마지막으로 파급도는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조사자 의견 등으로 구성됨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57> 어선어업 유형 평가 항목 배점(안)

평가항목	평가 배점	비율	비고
1년간 총점수	1,000	1,00(%)	
I. 노력도(분기 1회 평가)	600	60	
1. 자원관리사업	250	25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50	5	
나. 공동판매, 계통출하 실시	30	3	
다. 채포채장제한	50	5	
라. 조업일수 단축	50	5	
마. 어장휴식년제 실시	-	-	
바. 생산량조절 실시/TAC	70	7	상대점수 상향조정
2. 어장환경조성사업	50	5	
가. 투선 해중립 어숙(밑물고기 산란장), 어노 등 어장조성 실시	-	-	
나. 바위담기 또는 저질개선 등 실시	-	-	
다.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50	5	
3. 자원조성사업	-	-	
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발(개선) 실시	-	-	
나.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	-	
4. 어장정화사업	140	14	
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70	7	
나.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70	7	
5. 자율관리위원회 운영	60	6	
가.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30	3	
나. 선진지 견학 실시	30	3	
6. 수익확대사업 추진	70	7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	40	4	
나.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30	3	
7.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30	3	
가.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30	3	
II. 참여도(연 1회 평가)	100	10	
1.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참여인원 비율	100	10	
2. 참여공동체(마을, 양식) 소유어장 중 공동체 사업 대상어장 비율	-	-	
3. 참여어촌계(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	-	
III. 성과도(연 1회 평가)	100	10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50	5	
2.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50	5	
3.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	-	
IV. 지속도(연 1회 평가)	100	10	
1.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30	3	상대점수 상향조정
2.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30	3	상대점수 상향조정
3.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20	2	
4. 공동체 회원증가율	20	2	
V. 파급도 :	100	10	
1.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50	5	
2. 조사자 의견 등	50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라) 복합어업

- 복합어업은 마을+어선어업의 형태임으로 평가항목은 마을어업과 어선어업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총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에서 노력도 60%(600점), 기타 40%(400점)로 이루어져 있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력도는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자원관리 6항목(250점), 어장환경조성 3항목(90점), 자원조성 2항목(70점), 어장정화 2항목(60점), 자율관리위원회 2항목(30점), 수입확대 2항목(70점), 공동체 구성원 교육 1항목(30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다음으로 기타의 경우는 참여도/성과도/지속도/파급도 등이며, 이들 평가항목은 11개 항목(400점)으로 각각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음
- 대분류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력도(자원관리사업)에서는 어획능력 삭감노력, 공동판매/계통출하실시, 채포채장제한, 어장휴식년제 실시, 생산량조절 실시/TAC 등으로 구성함. 다음으로 노력도중에서 어장환경조성사업의 경우는 투석/해중립/어소(민물고기 산란장), 어도 등 어장조성 실시, 바위닦기/저질개선 등 실시,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등임
- 자원조성사업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등이며, 어장정화사업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등임. 자율관리위원회 운영의 경우는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선진지 견학 실시 등이며, 수입확대사업 추진은 생산물 판매망 구축,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등,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는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가 이에 해당됨
- 참여도(연 1회 평가)는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참여인원 비율, 참여공동체(마을, 양식) 소유어장 중 공동체 사업 대상어장 비율, 참여어촌계(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 성과도(연 1회 평가)는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등이며, 지속도(연 1회 평가)는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공동체 회원증가율 등임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 마지막으로 파급도는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조사자 의견 등으로 구성됨

<표 5-58> 복합어업 유형 평가 항목 배점(안)

평가항목	평가 배점	비율	비고
1년간 총점수	1000	1,00(%)	
I. 노력도(분기 1회 평가)	600	60	
1. 자원관리사업	250	25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40	4	
나. 공동판매, 계통출하 실시	20	2	
다. 채포채장제한	40	4	
라. 조업일수 단축	40	4	
마. 어장휴식년제 실시	40	4	
바. 생산량조절 실시/TAC	70	7	상대점수 상향조정
2. 어장환경조성사업	90	9	
가. 투선, 헬중립, 어손(민물고기 산란장), 어포 등 어장조성 실시	30	3	
나. 바위담기 또는 저질개선 등 실시	30	3	
다.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30	3	
3. 자원조성사업	70	7	
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40	4	
나.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30	3	
4. 어장정화사업	60	6	
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30	3	
나.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30	3	
5. 자율관리위원회 운영	30	3	
가.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20	2	
나. 선진지 견학 실시	10	1	
6. 수익확대사업 추진	70	7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	40	4	
나.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30	3	
7.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30	3	
가.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30	3	
II. 참여도(연 1회 평가)	100	10	
1.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참여인원 비율	40	4	
2. 참여공동체(마을 양식) 수산업자 중 공동체 사업 대상어장 비율	30	3	
3. 참여어촌계(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30	3	
III. 성과도(연 1회 평가)	100	10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30	3	
2.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30	3	
3.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40	4	상대점수 상향조정
IV. 지속도(연 1회 평가)	100	10	
1.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30	3	상대점수 상향조정
2.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30	3	상대점수 상향조정
3.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20	2	
4. 공동체 회원증가율	20	2	
V. 파급도 :	100	10	
1.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50	5	
2. 조사자 의견 등	50	5	

라) 내수면어업

- 내수면어업은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에서 노력도 60%(600점), 기타 40%(400점)로 이루어져 있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력도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자원관리 5항목(250점), 어장환경조성 2항목(80점), 자원조성 2항목(30점), 어장정화 2항목(80점), 자율관리위원회 2항목(60점), 수입확대 2항목(70점), 공동체 구성원 교육 1항목(30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다음으로 기타의 경우는 참여도/성과도/지속도/파급도 등이며, 이들 평가항목은 12개 항목(400점)으로 각각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음
- 대분류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력도(자원관리사업)에서는 어획능력 삭감노력, 공동판매/계통출하실시, 채포채장제한, 생산량조절 실시/TAC 등으로 구성함. 다음으로 노력도중에서 어장환경조성사업의 경우는 투석/해중림/어소(민물고기 산란장), 어도 등 어장조성 실시,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등임
- 자원조성사업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등이며, 어장정화사업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등임. 자율관리위원회 운영의 경우는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선진지 견학 실시 등이며, 수입확대사업 추진은 생산물 판매망 구축,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등, 공동체 구성원 교육 참여는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가 이에 해당됨
- 참여도(연 1회 평가)는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참여인원 비율등이고, 성과도(연 1회 평가)는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등이며, 지속도(연 1회 평가)는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공동체 회원증가율 등임
- 마지막으로 파급도는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조사자 의견 등으로 구성됨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59> 내수면 어업 유형 평가 항목 배점(안)

평가항목	평가 배점	비율	비고
1년간 총점수	1,000	1,00(%)	
I. 노력도(분기 1회 평가)	600	60	
1. 자원관리사업	250	25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50	5	
나. 공동판매, 계통출하 실시	30	3	
다. 채포채장제한	50	5	
라. 조업일수 단축	50	5	
마. 어장휴식년제 실시	-	-	
바. 생산량조절 실시/TAC	70	7	상대점수 상향조정
2. 어장환경조성사업	80	8	
가. 투선, 핸들링, 어숙(밑물고기 산란장), 어도 등 어장조성 실시	50	5	
나. 바위담기 또는 저질개선 등 실시	-	-	
다.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30	3	
3. 자원조성사업	30	3	
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20	2	
나.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10	1	
4. 어장정화사업	80	8	
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40	4	
나.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40	4	
5. 자율관리위원회 운영	60	6	
가.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30	3	
나. 선진지 견학 실시	30	3	
6. 수익확대사업 추진	70	7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	40	4	
나.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30	3	
7.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30	3	
가.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30	3	
II. 참여도(연 1회 평가)	100	10	
1.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참여인원 비율	100	10	
2. 참여공동체(마을, 양식) 소유어장 중 공동체 사업 대상어장 비율	-	-	
3. 참여어촌계(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	-	
III. 성과도(연 1회 평가)	100	10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50	5	
2.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50	5	
3.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	-	
IV. 지속도(연 1회 평가)	100	10	
1.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30	3	상대점수 상향조정
2.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30	3	상대점수 상향조정
3.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20	2	
4. 공동체 회원증가율	20	2	
V. 파급도 :	100	10	
1.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50	5	
2. 조사자 의견 등	50	5	

다.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최종(안)

-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유형별 평가항목은 마을어업 27개 문항, 양식어업 25개 문항, 어선어업 22개 문항, 내수면 25개 문항, 복합어업 30개 문항 등으로 어선어업의 문항수가 가장 적으며, 복합어업이 가장 많음

<표 5-60>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최종(안)

평가항목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1년간 총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I. 노력도(분기 1회 평가)	600	600	600	600	600
1. 자원관리사업	200	200	250	250	250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	-	50	50	40
나. 공동판매, 계통출하 실시	30	30	30	30	20
다. 채포채장제한	50	50	50	50	40
라. 조업일수 단축	-	-	50	50	40
마. 어장휴식년제 실시	50	50	-	-	40
바. 생산량조절 실시/TAC	70	70	70	70	70
2. 어장환경조성사업	110	110	50	80	90
가. 투석, 해중림, 어소(민물고기 산란장), 어도 등 어장조성 실시	50	-	-	50	30
나. 바위닦기 또는 저질개선 등 실시	30	60	-	-	30
다.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30	50	50	30	30
3. 자원조성사업	70	70	-	30	70
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40	40	-	20	40
나.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30	30	-	10	30
4. 어장정화사업	60	60	140	80	60
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30	30	70	40	30
나.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청소 실시	30	30	70	40	30
5. 자율관리위원회 운영	60	60	60	60	30
가.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30	30	30	30	20
나. 선진지 견학 실시	30	30	30	30	10
6. 수익확대사업 추진	70	70	70	70	70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	40	40	40	40	40
나.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30	30	30	30	30
7.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30	30	30	30	30
가.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30	30	30	30	30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61> 참여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최종(안)<계속>

평가항목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II. 참여도(연 1회 평가)	100	100	100	100	100
1.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참여인원 비율	-	-	100	100	40
2. 참여공동체(마을, 양식) 소유어장 중 공동체 사업 대상어장 비율	50	100	-	-	30
3. 참여어촌계(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50	-	-	-	30
III. 성과도(연 1회 평가)	100	100	100	100	100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30	30	50	50	30
2.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30	30	50	50	30
3.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40	40	-	-	40
IV. 지속도(연 1회 평가)	100	100	100	100	100
1.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30	30	30	30	30
2.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30	30	30	30	30
3.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20	20	20	20	20
4. 공동체 회원증가율	20	20	20	20	20
V. 파급도 :	100	100	100	100	100
1.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50	50	50	50	50
2. 조사자 의견 등	50	50	50	50	50

- 모든 유형에서 기본적으로 노력도 60%(600점), 기타 40%(400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력도는 자원관리, 어장환경조성, 자원조성, 어장정화, 자율관리위원회, 수입확대, 공동체 구성원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음으로 기타의 경우는 참여도/성과도/지속도/파급도 등이며, 이들 평가항목들의 합은 400점으로 각각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음
- 노력도만 살펴보면, 유형별로 마을어업은 16개 항목, 양식어업은 15개 항목, 어선어업 13개 항목, 내수면 16개 항목, 복합 18개 항목 등으로 평가 항목수는 복합어업이 가장 많고, 어선어업이 평가항목이 가장 적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라. 지방청 전자평가시 확인 서류

- 지금까지의 전자평가의 문제점으로는 청취조사에 의한 지역별 편차 문제, 객관적인 서류 확인 없이 평가하는 문제, 평가자의 적극적인 노력 및 의지에 따른 지역간의 차이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에 문제점 야기됨

<표 5-62> 전자평가시 확인 서류

구 분	평가항목	전자평가시 확인 서류	
I. 노력도 (분기1회 평가)	1.자원관리 사업	어획능력 삭감노력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공동판매, 계통 출하 실시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채포채장제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조업일수 단축	① 규약 ② 회의록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어장휴식년제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생산량조절 실시/TAC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2.어장환경 조성사업	투석, 해중립, 어소(민물고기 산란장), 어도 등 어장조성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바위닦기 또는 저질 개선 등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해적생물구제(외래어종)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3.자원조성 사업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수산종묘방류 또는 이식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4.어장정화 사업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어장(조업지)또는 해안청소 실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5. 자율관리 위원회 운영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실시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선진지 견학 실시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6.수익확대 사업	생산물 판매망 구축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⑦ 관리카드
	7.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지방청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63> 전자평가지 확인 서류(계속)

구 분	평가항목	전자평가지 확인 서류
II. 참여도 (연 1회 평가)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공동체 참여인원 비율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참여공동체 (마을양식) 소유어장 중 공동체 사업 대상어장 비율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참여 어촌계 (단체, 협회 등)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III. 성과도 (연 1회 평가)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② 회의록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⑦ 관리카드
	공동체 회원 1인당 연 소득증가율	② 회의록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⑦ 관리카드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② 회의록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⑦ 관리카드
IV. 지속도 (연 1회 평가)	규약강화 및 준수여부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수산관계 법령 준수여부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공동체 회원 증가율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V. 파급도 (연 1회 평가)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② 회의록 ③ 사진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조사자 의견 등	-

※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 따라서, 지방청 어촌지도사들에 의한 전자평가 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을 걸쳐,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동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별 확인 서류를 제시하였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현장조사는 규약 확인은 기본으로 하고, 평가항목 중에서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등 2개 이상의 서류를 확인 한 후, 항목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규약에 없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 등을 추가 확인(규약 반영 지도 필요)

- 동 평가방법의 장점으로서는 확인서류를 확보한 이후, 평가에 임하게 함으로 인해 평가자(지방청 지도사)로 하여금 최소한의 확인 작업에 대한 경각심 및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공동체에서는 평가를 잘 받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자료비치 및 보완)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으로, 평가를 통하여 우수공동체 선발 뿐만 아니라,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이 기대됨

- 지방청 어촌지도사들의 전자평가 시, 확인서류 중에서 작업일지의 경우는 기준이되는 특별한 표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예시를 하면,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역 등으로 구성된 표(Table)를 작성하여 공동체에 비치함으로 인하여, 전자평가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5-64> 자율관리 공동체 작업일지 양식(예시)

일련 번호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1	2006.09.00	마을회관	00	채포/채장 문제논의 설정 및 결의
2	2006.10.00	공동체 사무실	00	어장청소 실시
3	2006.11.00	수협	00	자율관리 교육 실시
4	2006.12.00	마을회관	00	수익확대사업 결의
5	2007.01.00	사무실	00	종패/치어 방류사업 실시
6
7
8
9				
10				

※ 관련 증빙서류 첨부 : ① 사진, ② 영수증 등

마. 전자평가 매뉴얼

1) 사업실시 여부(공통사항 ①)

- 본 사항은 각 평가항목별 활동실적 실시여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평가항목별 활동실적은 ‘평가항목’ 란에서 사업실시항목에 한하여 를 체크(ex, 어선감척 여부 :) 함과 동시에 ‘추가입력사항’(예, 아니오)의 ‘예’ 부분에도 체크하여야 한다. (사업실시 항목이 모두 해당되면 모두 체크 바람)
- * 해당사업의 실시여부를 체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입력사항’의 ‘아니오’는 체크할 필요가 없음

평가항목	평가항목	추가입력사항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어선,내수면,복합) (어선,내수면:12.5점 복합:10점)	- 전자평가확인서류 (한가지 이상 체크해야 점수가 반영됨)	1.회의록 <input type="checkbox"/> 2.사진 <input type="checkbox"/> 3.증빙서류(장부,통장,영수증) <input type="checkbox"/> 4.행정관청확인(시,군,구) <input type="checkbox"/> 5.수협확인 <input type="checkbox"/> 6.관리카드 <input type="checkbox"/> 7.작업일지 <input type="checkbox"/>
	- 어획능력삭감노력실시 (배점: 20%)	
	▶ 어구수 축소(통,들,개,폭) : <input type="checkbox"/>	분기내 실시여부 :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input checked="" type="radio"/>
	▶ 어선감척 여부 : <input type="checkbox"/>	분기내 실시여부 :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input checked="" type="radio"/>
	▶ 망목확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분기내 실시여부 :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input checked="" type="radio"/>
	- 회원 참여율 (배점: 30%)	현원수: <input type="text"/> 참여수: <input type="text"/>
- 어획능력삭감노력 실적 (배점: 50%) * 어구수 축소 : 40% * 어선감척 : 20% * 망목확대 : 40%		

- ‘평가항목’ 란의 사업실시항목 체크와 동시에 추가입력사항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도 함께 입력하여야 배점이 부여된다.
- * ex) ‘6.수익확대사업 추진 - 가 생산물 판매시설 설치 및 판매망 구축’의 경우에는 ‘설치 및 구축여부’란 체크()와 동시에 ‘설치 및 구축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입력하여야 함
- 현재 화면에 나타난 페이지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한다.
- ※ ‘저장’ 버튼을 클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의 입

력내용은 저장되지 않음

2) 회원참여율(공통사항 ②)

- 본 사항은 각 평가항목별 회원참여율 산정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현원수'라 함은 평가대상 분기의 말일 기준 해당공동체의 회원명부에 등록된 전체 구성원수를 말한다.
 - '참여수'라 함은 평가대상 분기기간 중 해당 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수를 합산한 누적 인원수를 말한다. 단, 누적 인원수가 현원수를 초과할 경우 현원수를 참여수로 한다.
- ex) '06.3.31현재 현원수 100명(공동체 전체 구성원수), '06. 1/4분기중 바위댕기 3회 실시(매회 50명 참석)의 경우 ⇒ 참여수는 50명×3회=150명이나, 현원수가 100명이므로 100명을 기입

다. 사업실적(공통사항 ③)

- 각 항목별 대상(공동체 생산액, 대상어종수, 대상면적, 생산품종수 등 등)은 평가대상 분기의 말일 기준으로 기입한다.
 - 실적(판매액, 어종수, 면적, 횟수, 물량, 금액 등등)은 평가대상 분기동안 발생한 누계수치를 기입 또는 체크한다. 다만, 실적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항목중 자담분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담분에 대한 누계수치만을 기입 또는 체크하여야 한다.
- ※ 자담 : 평가대상 공동체가 자체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을 말함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3) 항목별 평가방법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I. 노력도		분기 1회 평가
1. 자원관리사업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어 선 내수면 복 합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능력’이란,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함에 있어 어업별 적법한 어구를 사용하거나, 특정어구의 사용을 제한하여 어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삭감노력’이란, 인위적으로 어획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어구 수(길이) 축소, 어선감척, 망목확대, 특정어법사용 제한 등으로 어획량을 줄이는 것을 말함 ※ 수산관계법령의 규정보다 강화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여부 : 해당항목(평가항목)에 √ 체크하고 추가입력사항의 ‘예’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①을 참조하되, 어구수 축소, 어선감척, 망목확대, 특정어구어법의 사용제한 중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2. 회원참여율 :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어획능력 삭감노력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실적 : 해당항목 체크사항별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실적이 자동 평가됨(배점 50%)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나. 공동판매, 계통 출하 실시	공 통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판매’란, 공동체(마을, 양식)의 어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공동판매(수협 계통출하 포함)하는 것을 말함 ※ 공동체에서 일괄적으로 공동계약 판매한 비계통판매도 포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여부 : ‘예’, ‘아니오’ 중 체크(배점 20%) 2. 회원참여율 :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공동판매 실시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실적율 :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중 평가대상 분기중 전체생산액 과 공동판매액을 각각 입력하고, 전체판매액에 대한 공동 판매액의 비율로 평가함(배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실적 입력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수협확인, 관리카드, 작업일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다. 채포채장제한	공 통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포채장’이란,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자율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대상어종에 대하여 어획(채취, 생산)시 크기를 제한하는 것을 말함 ※ 단, 대상어종의 크기제한은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채장의 제한보다 커야 함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2. 회원참여율 :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50%)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채포채장 제한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 3. 실시율 : 규약에서 채포채장을 제한하는 전체 대상어종수와 평가대상 분기중 채포채장 제한을 실시한 어종수를 각각 입력하고, 대상어종수에 대한 실시어종수의 비율로 평가함(배점 30%)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실적 입력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라. 조업일수단축	어 선 내 수 면 복 합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일수 단축’이란, 수산관계 법령에서 정한 개별어종 및 업종의 금어기보다 자율적으로 확대하거나 자체금어기간을 정하여 조업일수를 단축하는 것을 말함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2. 회원참여율: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30%)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조업일수 단축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 3. 확대일수 : 평가기간(분기)내 공동체 자율관리규약 대상어종 및 업종중 자체설정 금어일수에서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금어기간을 제외한 일수로서 평가함(배점 50%) ※ 금어대상 어종 및 업종은 자율관리규약 대상어종을 말하며 대상어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어종별 자체설정 금어기간을 합산함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확대일수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관리카드, 작업일지
마. 어장휴식년제 실시	마 을 양 식 복 합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휴식년제’란 공동체(마을,양식) 대상어장중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어장을 휴식하는 것을 말하며, 윤번제로 어장휴식하는 것을 포함함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실시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2. 회원참여율 :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30%)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어장휴식년제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면적율(배점 50%) : 평가기간(분기)중 자율관리 대상어장중 자율관리대상 전체어장면적과 어장휴식(윤번제등) 면적을 각각 입력하고, 대상면적중 실시면적의 비율로 평가함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실적 입력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바. 생산량 조절 실시/TAC	공 통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생산량 조절이란 자원보호 및 생산량 과다로 인한 어가의 하락 등의 이유로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대상품목에 대하여 공동체(마을,양식) 어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함 ○ TAC(총허용어획량)라 함은 특정어종(어류, 패류 등)에 대해 최대어획 및 포획을 할 수 있는 양을 정하여 조업하는 것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실시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2. 회원참여율 :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30%)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생산량 조절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생산량(품종) 조절율(TAC)(배점 50%) : 평가기간중 공동체(마을, 양식) 어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품종의 수와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품종의 수를 각각 입력하고, 공동체 어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품종의 수에 대한 생산량 조절을 하는 품종의 수의 비율로 평가함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실적 입력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2. 어장환경 조성 사 업		
가. 투석, 해중림, 어소(민물고기 산란장), 어도 등 어장조성 실시(자담분에 한함)	마을 내수면 복 합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석’이란, 마을어장 내 해조류 등의 자원조성을 위해 부착기질로서 바위나 돌 등을 살포하는 것 ○ ‘모패장’이란, 마을어장내 어장 일부를 구획하여 대상생물의 일부 잔여량을 놓아 두거나 모패를 살포한 장소 ○ ‘해조장’이란, 전복 양식 등에 먹이가 되는 해조류 시설 및 장소 ○ ‘채묘장’이란, 천연 종묘 생산의 한 과정으로서 부유생활기를 지나면 부착 생활기를 갖는 굴, 담치, 진주조개, 피조개, 가리비 및 멧게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부착 생활기로 들어 갈 때 부착기를 넣어 그들을 부착시키거나, 또 부착력이 없는 바지락이나 대합 등 부유생활기를 지난 다음 바닥에 침강할 때 거기에다 완류장치를 해 주어 그들의 침강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 및 장소 ○ ‘중간육성장’이란, 부화자어 또는 어린 치패로부터 양성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묘를 사육하는 시설 및 장소 ○ ‘해중림’이란, 연안해역에서 해조류가 번무하여 해조류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을 의미 ○ ‘어소’라 함은 민물고기 산란장을 의미(내수면해당) ○ ‘어도’라 함은 민물고기의 이동 통로임(내수면해당)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여부 : 해당항목(평가항목)에 √ 체크하고 추가입력사항의 ‘예’ 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①을 참조하되, 해당항목이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 2. 사업금액(배점: 80%) : 자담분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금액은 ‘1.실시여부’에서 체크한 항목별 사업금액을 모두 합한금액중 자담분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행정관청 확인(시, 군, 구), 수협확인, 관리카드, 작업일지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나. 바위닦기또는 저질개선 등 실시	마을양식복합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위닦기’란, 해조류 포자가 부착기질에 착생이 용이 하도록 부착기질인 갯바위를 닦는 것을 의미함 ○ ‘저질개선’이란, 객토, 경운, 형망 등 바닥같이로 인한 저질 개선을 의미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여부 : 해당항목(평가항목)에 √체크하고 추가입력사항의 ‘예’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①을 참조하되, 바위닦기와 저질개선을 모두 할 경우에는 모두 체크 2. 면적율(배점 80%) : 평가기간(분기)중 자율관리 대상어장중 자율관리대상 전체어장면적과 바위닦기 또는 저질개선을 실시한 면적을 각각 입력하고, 대상면적중 실시면적의 비율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실적을 입력하되, 바위닦기 또는 저질개선을 모두 하였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실적을 입력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다. 해적생물구제 (외래어종)실시	공통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적생물구제’란, 불가사리 뿐만 아니라 자율관리 품목에 해를 입히는 모든 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 (ex, 미더덕 수하연에 부착한 물우렁쟁이, 진주 담치 등) ○ ‘외래어종’이란, 외국에서 반입되어 내수면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종을 말하며, 무지개 송어, 대두어, 블루길, 찬넬동자개, 떡붕어, 이스라엘잉어, 베스, 나일틸라피아, 백련어, 초어, 은연어 등이 있다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2. 회원참여율 :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해적생물구제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구제물량(배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내 누적 구제물량의 해당항목에 체크 4. 실시횟수(배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내 누적 실시횟수의 해당항목에 체크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행정관청 확인(시, 군, 구), 관리카드, 작업일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3. 자원조성사업		
가. 종묘배양또는 시험양식, 품종 개량(개선) 실시 (자담분에 한함)	마을 식 내수면 복합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담’이란, 자율관리공동체가 자체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는 시험양식을 위해서 인건비 등 모든 제반 비용도 포함함 ※ 내수면의 경우, 인공산란장이 이에 포함됨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여부 : 해당항목(평가항목)에 √ 체크하고 추가입력사항의 ‘예’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①을 참조하되, 종묘배양과 시험양식, 품종개량 등을 모두 실시할 경우에는 모두 체크 2. 종묘배양 및 시험양식, 품종개량 실적(배점 80%) : 자담분에 한함 ※ 금액은 ‘1.실시여부’에서 체크한 항목별 사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자담분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행정관청 확인(시, 군, 구), 관리카드, 작업일지
나. 수산종묘 방류 또는 이식 실시 (자담분에 한함)	마을 식 내수면 복합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중 정부, 지자체, 수협 등의 지원사업비 중에서 자담부분만 인정 ○ ‘자담’이란,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수산종묘 방류 및 이식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여부 : 해당항목(평가항목)에 √ 체크하고 추가입력사항의 ‘예’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①을 참조하되, 수산종묘방류와 이식을 모두 실시할 경우에는 모두 체크 2. 수산종묘 방류 또는 이식 실적(배점 80%) : 자담분에 한함 ※ 금액은 ‘1.실시여부’에서 체크한 항목별 사업금액을 모두 합한금액중 자담분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행정관청 확인(시, 군, 구), 관리카드, 작업일지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4. 어장정화사업		
가.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실시	공 통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어장내(수중 및 수면)의 스티로폴 부자, 폐어구 통발, 그물 등을 구성원 혹은 고용한 스킨스쿠버를 통해 제거(육지로 인양)하는 사업임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실시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2. 회원참여율 :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30%)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폐어구 등 수거물량(배점 20%) ※ 분기내 누적 수거물량의 해당항목에 체크 4. 실시횟수(배점 30%) ※ 분기내 누적 실시횟수의 해당항목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나.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 청소 실시	공 통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어촌계 지선 혹은 면허지(주조업지, 항포구, 해안가, 선박계류장 등)에서의 청소를 의미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실시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2. 회원참여율 :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30%)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가 청소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수거물량(배점 20%) ※ 분기내 누적 수거물량의 해당항목에 체크 4. 실시횟수(배점 30%) ※ 분기내 누적 실시횟수의 해당항목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5. 자율 관리 위원회 운영		
가. 공동체 주관 홍보활동 및 교육 실시	공 통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원장 또는 구성원이 직접 교육하거나 혹은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실시하는 자율관리어업 의식교육 ○ 홍보활동이라 함은 공동체가 자율관리활동에 대하여 언론(TV, 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함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공동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체크 2. 회원참여율 :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30%)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공동체가 주관하는 어업인 의식교육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 3. 실시횟수(배점 50%)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분기내 교육 실시횟수 합계를 계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나. 선진지 견학 실시(자체자금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함)	공 통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가 성공사례, 선진기술 습득 등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 중 50% 이상 또는 10명 이상이 인근 혹은 타지역의 우수공동체를 방문, 견학하는 행사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공동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체크 2. 회원참여율 :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80%)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자체자금에 의한 선진지 견학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6. 수익확대 사업 추진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	공 통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망 구축’이란, 공동체가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직판장, 간이판매장 등)을 말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망도 포함한다.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축여부 : 구축된 경우에 √ 체크하고 구축내용을 추가입력사항에 입력하여야 배점이 부여됨(배점 20%) ※ 이전 분기에 설치한 간이판매장 및 인터넷 판매망을 해당 분기에도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2. 회원참여율 :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50%)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생산물 판매망 구축에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p>- 규약, 회의록, 사진, 수협확인, 관리카드, 작업일지</p>
나. 자체상품품질, 포장지 개발	공 통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상품 품질개선이라 함은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어획 및 채취에서 판매할 때 까지 선도유지 등을 위한 노력을 말함 ○ 공동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브랜드화 하거나 가공하여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게 하거나, 나무상자, 망, 마대 등으로 포장한 것을 규격을 변형하거나 선도유지를 위해 스티로폼 상자 등을 도입 개발하는 사업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여부 : 개발한 경우에 √ 체크하고 개발내용을 추가입력사항에 입력하여야 배점이 부여됨(배점 100%)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p>-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관리카드, 작업일지</p>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7. 공동체구성원 교육 참여		
가.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	공 통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이나 자자체, 수협 등 공동체 자체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교육참여도를 말하며, 특히 어촌지도공무원이 업무상 출장하여 행한 교육도 포함한다. ※ 여기에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물론 공동체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포함한다.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여부 : 참여한 경우에 √체크하고 교육 주관기관을 추가입력사항에 입력하여야 배점이 부여됨(배점 50%) 2. 회원참여율: 현원수와 참여수를 기입(배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②를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수는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II. 참여도		연 1회 평가
1. 단체, 협회 등 어선어업인의 공동체 참여 비율	어 선 내수면 복 합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어업인의 공동체 참여 비율’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어촌계, 단체, 협회 소속의 전체 어선어업 어업인중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어선어업 어업인수의 비율을 말함. ※ 단체, 협회라 함은 어촌계를 제외한 선주, 선장 등의 특정지역 혹은 광역단위의 자생단체(협회)를 의미함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어선어업인수 : 용어정의에 따른 어촌계, 단체, 협회 소속의 회원 중에서 어선어업을 행하는 어업인의 수를 기입 2. 참여 어선어업인수 : 1항의 전체 어선어업인 중에서 자율관리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수를 기입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2. 참여 공동체 (마을, 양식) 소유어장 중 공동체사업 대상어장 비율	마 을 양 식 복 합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어촌계 소유어장’이란, 자율관리어업 실시 어장을 포함하여 어촌계(혹은 협회,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어장(혹은 양식장)의 전체면적을 말함.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전체면적 : 어촌계(혹은 협회,단체) 소유의 전체어장(혹은 양식장) 면적(ha)을 기입 2. 사업대상면적 : 1항의 전체 어장(혹은 양식장) 중에서 자율관리어업 사업대상면적을 기입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3. 참여 어촌계(단체, 협회)의 소속 어선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비율	마을복합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참여 어촌계 소속의 어선'이란, 어촌계 소속의 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어선수를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전체 어선수 : 참여 어촌계 소속 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어선수를 기입 2. 참여 어선수 : 1항의 전체 어선수 중에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선수를 기입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Ⅲ. 성과도		연 1회 평가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자담투자액 포함)	공통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자체자금'이란, 순수 현금의 공동체 적립금을 말하되, 자부담 투자액을 포함함 ○ '자부담 투자액'이란, 공동체 자체 또는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동공동체에 실시하는 자원조성사업 등에 투입된 자담분의 금전과 무상으로 투입된 공동체 소속의 어선(통상적인 임대료로 환산하여 산정)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적립여부 : 평가 당해연도말 현재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 √체크 (배점 20%) 2. 적립액 : 해당년도말 회계장부상의 현금기준으로 1년간 자체자금 적립액을 기입하되, 순수현금과 자부담 투자액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배점 80%) * 평가 당해연도 중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경우의 전년도 적립액은 공란 처리하고, 당해연도 적립액은 참여기간중의 적립액만 입력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회의록,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관리카드
2. 공동체 회원 1인당 연소득 증가율	공통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소득'이란, 자율관리어업으로 인한 어업소득에 한하되, 자율관리어업과 연계된 체험어장 운영, 축제 개최 등에 따른 어업외 소득은 포함한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1인당 연소득'이란, 해당연도말 현재 공동체 회계장부상 연간소득액(자율관리어업 연계소득 포함)을 구성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의에 따른 전년도와 금년도 1인당 연소득액을 해당란에 각각 기입 * 평가 당해연도 중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경우의 전년도 연소득액은 공란 처리하고, 당해연도 연소득액은 참여기간중의 소득액만 입력 □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관리카드
3. 공동체 연 생산액증가율	마을 식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액'이란, 공동체가 수행한 자율관리어업 어장 내에서 생산된 금액을 말하며, 자율관리어업 이외의 어업생산액은 제외함 ○ '연생산액'이란, 해당연도말 현재 공동체 회계장부상 연간 생산액을 말함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정의에 따른 전년도와 금년도 공동체 연생산액을 해당란에 각각 기입 * 평가 당해연도 중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경우의 전년도 연생산액은 공란 처리하고, 당해연도 연생산액은 참여기간중의 생산액만 입력 □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관리카드
IV. 지속도		연 1회 평가
1. 규약 강화 및 준수 여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강화'란, 평가 당해연도 중 기존의 자율관리규약의 내용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자원조성, 어장환경개선, 생산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함. □ 평가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약완화 시 : 공란(평가하지 않음) (배점 없음) 2. 현행규약 유지 시 : 현행 규약 유지에 √ 체크(배점 40%) 3. 규약강화 시 : 현행 규약 유지에 √ 체크함과 동시에 규약강화내용을 입력(배점 60%) <p style="margin-left: 20px;">※ 규약강화시 현행 규약 유지 란에도 √ 체크해야 함</p> □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2. 수산관계법령 준수 여부	공 통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관계법령’이란,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등에서 규정한 어업별, 어구별 제한사항을 말하며 ○ ‘위반건수’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면허 처분기관으로부터 평가 당해연도중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를 말함(시군구에서 협조)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건수가 없을 경우 : 공란 처리(배점 100%) 2. 위반건수가 있을 경우 : 위반건수를 입력하고 위반 내용을 기입(예, 어기위반, 어법위반, 망목위반 등) ※ 본 문항은 위반건수가 없는 경우 배점이 100% 부여되고, 위반건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점 처리됨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행정관청 확인(시, 군, 구), 관리카드, 작업일지
3. 연도별 추진 계획에 대한 미실시사업 개수	공 통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수’란, 자율관리 규약상의 자원관리, 생산관리, 어장관리 등의 사업목록 개수를 말함 예) 제00조(사업실시) ---자원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1. 우럭의 채포체장을 00cm에서 00cm로 늘린다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 규약상의 사업개수와 평가 당해연도 실시사업 개수를 해당란에 기입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행정관청 확인(시, 군, 구), 관리카드, 작업일지
4. 공동체회원 증가율	공 통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회원’이란, 연도말 기준으로 공동체 회원명부에 등록된 구성원을 말함. ※ 자연감소 인원(사망, 이주 등)은 증가율 산정시 당해연도 말 인원에 가산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변동이 없는 경우 : 공동체 참여인원수 현행 유지에 √ 체크(배점 50%) * 회원변동 유무 판단시 평가 당해연도말 회원수는 용어정의에 따른 자연감소 인원을 포함하여 계산 2. 회원수가 증가한 경우 : 1항의 현행유지에 √ 체크함과 동시에 용어정의에 따른 전년도말과 금년도말 현재의 공동체 구성원수를 해당란에 각각 기입(배점 100%) * 자연감소 인원은 별도 기입(당해연도말에 자동 계산됨) 3. 회원수가 감소한 경우 : 용어정의에 따른 전년도말과 금년도말 현재의 공동체 구성원수를 해당란에 각각 기입, 자연감소인원은 2항과 동일하게 기입(배점 없음) 4. 평가 당해연도 중 자율관리어업 참여 : 공란(배점 없음)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평가항목	유형	평가지침
V. 파급도		연 1회 평가
1. 견학장소제공 또는 출강여부 등	공 통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학장소 제공’이란, 다른 공동체가 당해 공동체의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 중 50% 이상 또는 10명 이상이 방문하는 것을 말함. ○ ‘우수사례 발표(출강)’란, 당해공동체의 우수사례를 전국대회를 포함한 각 기관(단체,협회 포함) 주관의 집합 및 현장교육(토론회 포함)시 발표하는 것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견학장소 제공 : 평가 당해연도 중에 견학장소 제공 실적이 있는 경우 그 횟수를 해당란에 체크(배점 50%) 2. 우수사례 발표(출강) : 평가 당해연도 중에 우수사례 발표 또는 출강 실적이 있는 경우 그 횟수를 해당란에 체크(배점 50%)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2. 조사자 의견 등	공 통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자 의견’은 평가담당자가 평가 당해연도 중의 공동체 활동실적 중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종합평가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점수를 부여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어장의 빈매여부, 광역 또는 복합어업공동체 여부, 위원장의 리더쉽 준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조사내용을 입력 후 해당점수(0~50점 범위 내)를 부여 (배점 100%) ※ 단, 공동체가 전 어장을 빈매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하고, 기타 사항은 기타 사항은 본 지침서 조사자 의견 평가방법 참조

7. 중앙 자율평가위원회 확인·점검 개선(안)

- 중앙단위 자율평가위원회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평가(지도자협의회, 지역협의회, 지방청 전자평가)를 거쳐 순위가 정해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 및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등급화를 확정하는데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단위 자율평가위원회의 본 평가에 있어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기본적으로는 예비평가와 중복이 없도록 하고,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일정한 평가표를 근거로 평가하는 방안임
- 2006년 및 2007년 중앙단위 자율관리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 제한된 시간에 많은 공동체를 평가함을 고려, 예비평가와의 중복성을 최대한 배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여러 토론을 거쳐 12개 항목을 도출하였음
- 평가항목 개발기준은 타 기관 평가(지도자협의회 지역협의회, 지방청 전자평가)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일부 중복되더라도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음
- 본 평가는 중앙 자율관리 평가위원들이 예비평가를 통해 정해진 공동체 중에서 일부 선정된 우수(예비) 공동체 대상으로 확인 및 점검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판단됨
-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크게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음. 첫째, 면담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7개 문항(면담의 적극성, 규약 인식, 자율관리 인식, 서류구비, 지도자교체, 갈등 해소, 소득증대 노력)과 둘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파악해야 하는 4개 문항(어장청소, 생산물의 판매시설, 불법어업 존재, 불법 시설물), 셋째, 종합적으로 발전 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음
- 또한 각 항목별로 평가위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이를 근거로 적정여부(적정/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적정)에 대하여 의견을 기재토록 하였음

- 이러한 절차를 거쳐 4개 등급에 해당되는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 등급을 확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음
 - 풍요공동체: 명실공히 다른 공동체의 귀감이 될 만큼 구성원의 참여도, 규약준수여부, 사업성과, 노력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공동체
 - 모범공동체: 규약에 따라 자원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되는 공동체
 - 협동공동체: 공동체 구성원간 결속이 강화되어 규약의 준수 및 자원관리 사업에 착수하는 단계의 공동체
 - 참여공동체: 새로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성원간 합심하여 자율관리어업을 발전시키려는 출발단계의 공동체

제5장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안)

<표 5-65> 중앙자율관리 평가위원 현장 확인/점검포(안)

공동 체명		소재지		시작년도	
참여유형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평가자	(인)				

		확인 점검 항목	확인사항	적정여부	
1	면담 적극성 여부	위원장 및 구성원들의 다수가 현장 확인 및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	인원수 (명) 및 제출 서류	적정 / 부적정	
2	규약 인식 여부	공동체 위원장 및 구성원들이 규약의 존재 및 서류 등을 구비하고 있는가 ?	규약 서류 확인 및 내용 질의	적정 / 부적정	
3	자율관리 인식 여부	공동체 위원장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가 ?	개념 질문 및 문답	적정 / 부적정	
4	서류 구비 여부	자율관리 사업관리 관련된 서류는 잘 구비하고 있는가 ?	구비서류 확인 및 특히 사항 복사하여 첨부	적정 / 부적정	
5	지도자 교체 여부	공동체 위원장이 최근에 교체되어 자율관리어업 사업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	교체여부 및 신입자 세부적인 사항 질의	적정 / 부적정	
6	갈등 해소 여부	자율관리참여 이후 내부 및 인근 공동체와의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는가?	질의 및 응답	적정 / 부적정	
7	소득증대 노력 여부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구체적인 노력 질의 및 서류 확인	적정 / 부적정	
8	어장 청소 여부	어장 및 항포구 등의 환경이 청결하게 정비되어 있는가?	항포구 및 어장 필히 답사	적정 / 부적정	
9	생산물 판매시설	직영하고 있는가?	타인임대 등 여부 현장 확인	적정 / 부적정	
10	불법 어업 존재여부	아직도 불법어업(빈매 포함)이 존재하고 있는가 ?	질의 응답 및 관계기관 확인	적정 / 부적정	
11	불법 시설물 존재 여부	마을/양식/어선/내수면 등의 어장 및 항포구에 불법시설물 및 폐선 등이 방치되어 있는가 ?	현장확인 필	적정 / 부적정	
12	공동체 발전가능성	전반적으로 공동체가 일치단결하여 자율관리어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종합 평가	적정 / 부적정	
<p>[종합의견] : 어장이용 실태(빈매 여부 등), 공동체 발전 가능성, 공동체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등 종합적인 현지점검을 간략히 기입</p> <p>○</p> <p>○</p> <p>○</p>					
등급 추천	풍요()	모범()	협동()	신규()	

제4절 평가프로그램 구축 개선(안)

1. 평가시스템 구축 방향

가. 평가시스템 구축 방향

- 기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시스템은 해당 공동체 유형별과는 상관없이 모든 평가항목을 다 화면에 보여주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각 공동체 유형간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 또한 평가항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인해 평가항목의 추가나 기존 평가항목의 내용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공동체 유형별로 해당하는 평가항목만을 화면에 보여주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또한 공동체 유형과 평가항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 평가항목의 신규추가와 기존 평가항목의 내용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시스템 구축 내용

가. 공동체 유형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공동체 유형의 신규추가, 내용변경, 삭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체 유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

나. 평가항목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기존 고정되어 있는 공동체 평가 항목을 각 공동체 유형별로 손쉽게 추가, 수정, 삭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체 유형별 평가항목 관리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

다. 공동체 평가 프로그램 개발

- 각 공동체 유형별로 해당하는 평가항목만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평가 담당자가 쉽고 명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
 - 공동체 평가항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 평가항목을 해당 공동체 유형별로 조회해 와서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평가자가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평가의 공정성 도모
 - 또한 평가항목을 전산화해 관리함으로써 평가항목의 추가, 수정, 삭제에 대해 즉시 공동체 평가 프로그램 화면에 반영할 수 있게 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공동체관리 공동체 활동현황



I. 노력도(분기 1회 평가)

1. 자원관리사업

어선어업공동체 : 내수면어업공동체 : 마을어업공동체 : 양식어업공동체 :

2006 년도 4/4 분기 2007 년 04 월 11 일

1/10

평가항목	평가항목	추가입력사항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어선,내수면)(30점)	- 어획능력삭감노력실시 (배점: 20%)	
	▶ 어구수 축소(통,틀,개,쪽):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기내 실시여부: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input type="radio"/>
	▶ 어선감척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기내 실시여부: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input type="radio"/>
	▶ 망목확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기내 실시여부: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input type="radio"/>
	- 회원 참여율 (배점: 30%)	현원수: <input type="text" value="10"/> 참여수: <input type="text" value="10"/>
	- 어획능력삭감노력 실적 (배점: 50%) * 어구수 축소: 40% * 어선감척: 20% * 망목확대: 4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입력일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분기	평가점수
해당 분기에 등록된 평가점수가 없습니다.				

가. 화면정의

- 분기별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평가하는 화면이다.

나. 사용절차

- 평가 공동체의 공동체 유형을 선택한다.
- 공동체 평가 년도와 분기를 선택한다.
- 년월일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년월일에 입력한 평가내역을 리스트로 보여준다.
- 각 문항별로 평가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평가내역이 저장된다.
-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 공동체 평가문항 화면으로 이동한다.
- 자료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리스트를 엑셀로 저장한다.

○ 공동체평가결과조회

평가연도	2005 년도	평가분기	1분기
소속청	군산청	공동체 유형	-----전체-----
조회구분	백분율(%)	40	

순위	청별	공동체명	점수
1	군산청	개야도어촌계	64.4
2	군산청	관리도어촌계	45.7
3	군산청	연도어촌계	42
4	군산청	방축도어촌계	41
5	군산청	명도어촌계	38.35
6	군산청	운호어촌계	36.55
7	군산청	도청어촌계	35.9
8	군산청	진리어촌계	34
9	군산청	무녀도어촌계	33.8
10	군산청	장자도어촌계	33.5

2. 공동체 평가결과조회

가. 화면정의

- 공동체 평가 결과를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다.

나. 사용절차

- 조회하고자 하는 평가연도, 평가분기, 소속청, 공동체 유형을 선택한다.
- 조회구분에서 백분율(%)을 선택하고 수치를 입력시 입력한 수치의 %에 해당하는 상위 공동체 리스를 보여준다.
 조회구분에서 등수를 선택하고 수치를 입력시 입력한 수치에 해당하는 상위 등수를 보여준다.
 (예 : 백분율을 선택하고 30 입력시 1등부터 상위 30%에 해당하는 공동체 리스트를 보여준다. 등수를 선택하고 30 입력시 1등부터 30등까지의 공동체 리스트를 보여준다)
- 자료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리스트를 엑셀로 저장한다.

3. 문항별 평가결과조회

○ 문항별평가결과조회

평가연도	2005 년도	평가분기	-- 전체 --
소속청	군산청	공동체유형	어선어업공동체
평가문항구분1	노력도	평가문항구분2	자원관리사업
평가문항	가. 어획능력 삭감노력		
조회구분	백분율(%)	100	

순위	청별	공동체명	점수
1	군산청	어청도어촌계	20
2	군산청	관리도어촌계	15
2	군산청	명도어촌계	15
2	군산청	무녀도어촌계	15
2	군산청	장자도어촌계	15
2	군산청	방축도어촌계	15
7	군산청	개야도어촌계	14.25
8	군산청	말도어촌계	3.25

가. 화면정의

- 공동체 평가 결과를 평가문항별로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다.

나. 사용절차

- 조회하고자 하는 평가연도, 평가분기, 소속청, 공동체 유형을 선택한다.
- 조회하고자 하는 문항구분1을 선택한다(노력도,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
- 조회하고자 하는 문항구분2를 선택한다. 문항구분 2는 노력도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나타난다.
- 조회하고자 하는 평가문항을 선택한다.
- 조회구분에서 백분율(%)을 선택하고 수치를 입력시 입력한 수치의 %에 해당하는 상위 공동체 리스를 보여준다.
 조회구분에서 등수를 선택하고 수치를 입력시 입력한 수치에 해당하는 상위 등수를 보여준다.
 (예 : 백분율을 선택하고 30 입력시 1등부터 상위 30%에 해당하는 공동체 리스트를 보여준다. 등수를 선택하고 30 입력시 1등부터 30등까지의 공동체 리스트를 보여준다)
- 자료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리스트를 엑셀로 저장한다.

제6장 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 로드맵 제시

- 설문조사 분석에 의하면, 향후 자율관리어업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자율관리어업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자율관리공동체, 관련기관/전문가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 또한, 자율관리어업의 구성원 수는 현재 규모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소 많은 가운데, 확대하자는 의견도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반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규약에 대해서 자율관리공동체는 현 상태 유지를, 관련기관/전문가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음
- 향후 공동체 구성원 규모에 대해서 마을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에서는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어선어업, 복합어업의 경우 확대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여론조사전문기관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율관리어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확대해야 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공동체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음

제1절 현행 자율공동체 평가개선 방향

1. 현행 평가시스템 개선 방향

- 제5장 제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율관리공동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신뢰성 등으로 볼 수 있음. 본 절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기존의 기관별 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 및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관별 평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음
- 또한, 기관별 평가에서 누락된 시·도 중심의 지역협의회 및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역할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여 개선방향에 포함을 시켰음

- 다음으로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관별 평가에서 공동체 방문 및 면담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음
- 기관별 평가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음. 이를 기초로 기관별 평가 참여 내용 및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공동체 자체 평가의 경우는 대부분의 공동체가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공동체 자체 평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공동체가 자율관리 평가에 참여한다는 취지가 있으므로 이를 살려 자체평가서를 지도자 협의회에 제출케 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지도자 협의회 경우는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일부 공동체 위원장의 의견 반영과 지역간 편차 문제가 제기 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수의 공동체 위원장을 참여케 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지방청 전자평가의 경우는 2005 평가를 개선하여 2006년도에 어느 정도 유형별, 항목별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이를 활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복합어업을 추가하고 평가항목을 수정/보완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수협은 경우는 별도의 기관 평가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평가항목 중 공동체 판매 항목에서 수협의 위판 물량을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좋다고 사료됨
- 마지막으로, 지역협의회의 경우 참여를 하되, 평가 항목은 수산관련 법규 중심으로 항목을 개발하여 별도의 기관으로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지역협의회는 다수 기관(지방청, 지자체, 과학원, 지구별 수협장)이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별 불참 문

제6장 공동체평가시스템 구축 로드맵 제시

제 해소 및 수산관련 준법 유도가 기대됨

- 자율관리공동체 평가를 위하여 해당되는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어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지도자 협의회, 지방청 전자평가, 수협, 지역협의회 등의 경우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 전자평가의 경우는 자율관리 전담 지도사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면담 및 현장 확인하여 평가함

<표 6-1> 기관별 평가참여 비중 및 개선방향

평가기관	개 선(안)	평가비중	현장조사 여부	평가방향
공동체 자체	평가 배제	-	-	현행체제 유지하되, 지도자 협의회에 평가서 제출
지도자 협의회	평가항목 개선, 및 평가 절차개발을 통하여 개선함	10%	×	공동체자체평가 기초, 수정/보완함
지방청 전자	유형별(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 수정 및 보완	60%	○	수정/보완함
수협	수협의 계통출하 부분 반영	전자평가 일부 항목 평가참여	×	공동판매 평가항목 참여
지역협의회	다수 기관(지방청, 지자체, 과학원, 지구별 수협장)이 참여, 다양한 기관별 불참 문제 해소	30%	×	평가 항목 및 절차 통해 평가 참여

2. 공동체 특성 고려 중장기적 권역별 평가방안

1) 다양한 자율관리 유형 존재

-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자율관리 유형을 살펴보면, 마을어업의 경우는 도시근교형, 취락지구형, 연안촌락형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에 따라 특정한 지역 및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선어업의 경우도, 지역단위 어선공동체 및 특정한 해역(권역)을 주조업지 또는 근거지(귀항지 및 거주지)로 하는 경우는 광역단위 어선어업 공동체로 추진되어야만이 자율관리어업의 정착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내수면어업의 경우는 하천형, 호수형, 저수지형 등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는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등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복합어업의 경우는 어촌계 중심의 마을어업에서 구성원들 중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계원들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복합어업형태는 서해안(인천, 충남, 전북, 전남), 남해안(여수, 통영, 마산)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들은 대부분 도서지방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동해안(속초, 강릉, 동해, 울진, 영덕, 포항, 울산)의 경우는 도서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안선이 단조로와 마을어업과 어선어업이 엄격히 구분되어 종사하고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공동체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권역별/유형별로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6장 공동체평가시스템 구축 로드맵 제시

<표 6-2> 자율관리 유형별 세부분류

자율관리 유형	세부유형	구체적 설명	지역
마을어업	도시근교형	시·군 소재지 및 인접의 어촌계로 생활여건이 도시형인 어촌계	인천, 경기, 부산, 제주, 강원 등
	취약지구형	교통·통신이 불편한 낙도벽지 및 접적 지역내에 위치한 어촌계	전남, 경남, 경북(울릉)
	연안촌락형	도시근교 및 취약지구형이 아닌 어촌계	전남, 경남
어선어업	지역단위 어선공동체	어종/업종/어선 중심	대부분 연안지역
	광역단위 어선공동체	어종/업종/어선/수협 중심	부산, 경남
	내수면 어업	하천형	큰강이나 중소형 강을 따라 형성
	호수형	큰 호수 중심	
	저수지형	농업기반공사 임대낙시터 운영 등	
복합어업	마을+어선	어촌계중심의 마을+어선어업	충남, 전남, 경남 (경북 거의 없음)

2) 유형별 분리한 평가항목들

- 자율관리어업유형 중 마을어업의 경우는 평가항목에서 도서 및 지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분리한 평가항목들이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일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전국의 산재해 있는 자율관리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2006년 12월 현재 자율관리공동체 445개소들은 각각의 공동체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해양, 어장, 위치, 교통)로 인해 엄격한 의미에서 445개의 평가항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만이 정확한 특성들이 반영되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아무리 객관성/형평성/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개발되더라도 이러한 지역들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을 도출하는데는 근본적으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장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권역별로 유형을 고려한 평가를 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 이유는 201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년까지 자율관리공동체수를 2000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면, 마을어업의 경우 평가항목 중에서 도서지방이나 동서남해, 제주도 등에 위치하는 공동체가 분리한 경우가 야기되고 있으며 전국단위의 단일평가항목체계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표 6-3> 평가항목상 분리한 마을어업 평가 문제점 및 개선(안)

평 가 항 목		문 제 점	개선(안)
자원 관리	공동판매 실시	도서지역불리 (서해 소규모 섬 및 울릉도 등)	도서지역 별도 평가 필요
어장 환경 조성	인공어초, 투석 등 바위담기/저질개선	지원받는 공동체 유리 지역별로 필요 없는 해역 존재	지원여부 분리 동서남해, 제주구분
	해적생물구제	해적 생물이 없는 경우	해역구분
자원 조성	종묘배양/시험양식	지원받는 공동체 유리	지원여부 분리
	종묘방류/이식	지원받는 공동체 유지	지원여부 분리
위원회 운영	의식교육	도서지역불리	도서지역 별도 평가 필요
	선진지 견학	도서지역 불리	도서지역 별도 평가 필요
	공동체 행사 및 회의	도서지역 불리	도서지역 별도 평가 필요
수익 확대	생산물 판매시설	관광지역 유지	관광지역여부 고려
	자체상품 개발	개발자체가 어려워	지역여건 고려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도서지역 불리	도서지역 별도 평가 필요

- 다음으로 어선어업의 경우는 자원관리, 어장환경조성, 위원회운영, 수익확대,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등의 중분류 항목에서 도서 및 지역별/해역별 분리한 위치해 있는 어선어업 공동체들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분리할 경우가 야기됨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평가항목을 전국단위 어선어업 공동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해역별 차이를 고려한 평가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6-4> 평가항목상 불리한 어선어업 평가 문제점 및 개선(안)

평가항목		문제점	개선(안)
자 원 관 리	어획능력 삭감노력	어구어법 차이 (지역별/해역별 차이)	지역별/해역별 차이 반영 필요
	체포체장 제한	단일어종 유리	
	조업일수 단축	단일어종유리	
어장환경조성(해적생물구제)		대상어종별로 차이 (지역별/해역별 차이)	
위 원 회 운 영	의식교육	도서지역불리	
	선진지 견학	도서지역 불리	
	공동체 행사 및 회의	도서지역 불리	
수 익 확 대	생산물 판매시설	관광지역 유지	
	자체상품 개발	개발자체가 어려지역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도서지역 불리	

3) 지역별/해역별에 근거한 평가개선방안(안)

-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의 평가체제는 여러 가지문제가 있어 동연구에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평가에 있어서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유형별/항목별 평가 문제, 전국단위 획일화된 평가 문제, 지방청 중심의 평가 문제, 도서지방 특성 미반영 등이 있음
- 따라서, 이미 여러 번 반복한 바와 같이 지역별/해역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평가체계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6-5> 지역별/해역별에 기초한 평가개선(안)

현행 평가 문제점들	개선방안	비고
항목별 평가 문제	지역별/해역별 평가 필요	도서, 관광지, 도시근교 등 지역별/해역별 특수한 상황
전국단위 획일화 문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해역별 공동체 반영	반영
지방청 중심의 평가 문제	권역별 평가로 전환 필요 (4개 권역별 동해/서해/남해/제주)	권역별 평가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필요
도서지역 배려 문제	도서지역간 평가	도서지역 특수한 상황 고려

3. 평가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

- 동 연구에서는 자율관리평가 시스템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도자협의회, 지역협의회, 지방청 전자평가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동 개선방안은 여러 번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를 기초로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동 연구팀에서 기관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였음
- 그러나, 아무리 좋은 평가시스템(항목)이 있더라도 평가자들의 인식 및 노력에 따라 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무엇보다도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자들의 관점에 따라 평가결과가 지방청별로 편차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예를 들어 평가에 임하는 지도사들이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들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공동체를 직접방문하여 평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실적으로 발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공동체 위원장을 통하여 전달받는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음

<표 6-6> 전자평가에 임하는 다양한 방법들

전자평가 형태	평 가 방 법	비 고
적극적 평가	- 평가자가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찾아가 교육 및 홍보를 하거나 평가시 추가적인 실적도 발굴하여 평가	지역/해역/지방청별 편차 발생
소극적 평가	- 평가자가 공동체를 방문하여 평가하나, 타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미온적으로 평가 평가자가 평가양식을 공동체에 배포하여 - FAX/전화 등을 통보받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받아 사실 확인도 없이 평가	지방청별 전담지도사 업무 문제 일부 지방청(도서가 많은 지역이 심각함), 평가자의 잦은 교체로 평가업무 파악 미숙

제6장 공동체평가시스템 구축 로드맵 제시

- 따라서 평가개선안을 가지고 평가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 토론회, 워크샵(Workshop) 등을 통하여 개별평가 항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평가에 임하는 자세, 자료확인 방법, 개별 공동체 위원장을 대상으로 평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6-7> 객관성/공정성을 위한 평가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방안(안)

교육 및 홍보방안(안)	세 부 내 용	교육 및 홍보대상
시연회	- 평가개선안을 위주로 지방청 지도사 및 위원회(중앙단위)를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필요	지도자협의회, 지역협의회, 지방청 전자평가 담당자, 공동체 위원장
토론회	- 평가자를 대상으로 개별항목별 토론회를 통해 평가항목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인식제고	
워크샵	- 일정한 장소에 평가자를 모아 평가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방법 및 자료확보 방법 등에 대한 워크샵이 필요함	

4. 구체적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 평가 필요

- 지방청 전자평가에서 문제점에서 나타났듯이, 현 상태로는 근본적으로 지역간의 편차를 줄일 수 없음으로 평가자(지도사), 현장을 통한 청취조사는 기본으로 하되, 아래에 제시된 2개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하에 평가 필요
- 확인 서류 :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표 6-8> 지방청 전자평가 실시에 따른 확인방법(안)

기본적인 사항	확 인 서 류	관련기관 협조
현장실사 및 청취조사	① 규약 ② 회의록 ③ 사진 ④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⑤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⑥ 수협확인 ⑦ 관리카드, ⑧ 작업일지	지자체(시군구), 수협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첫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즉, 제3자가 보더라도 자율관리 활동의 내역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임. 더 나아가 우수공동체(풍요 및 모범)로 선정되어, 타 공동체에서 해당 자율관리공동체를 견학했을 경우에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방문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자율관리 운동이 파급될 수 있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자율관리공동체의 활동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참여하고 있는 자율관리공동체들 중에는 자율관리 개념 및 해당공동체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동 평가를 계기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 및 이를 근거로 “회의를 통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구성원 다수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자율관리어업이 정착 도모 가능
- 셋째, 지방청 전담 지도사들의 자율관리어업 지도업무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임. 정부(해수부)에서는 지방청 지도사들로 하여금 자율관리공동체를 개별적으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지도기능 보다도 평가항목 자체에 대부분의 사업내용 및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와 연계하여 공동체 지도를 함으로써 지도기능성 시너지효과 발휘 가능
- 이와 같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율관리공동체 평가를 통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자율관리공동체에서도 무슨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 및 숙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고, 지도자들도 별도의 지도활동 보다도 평가와 연계된 지도가 가능함. 따라서, 이러한 평가와 연계된 활동으로 인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조기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2절 자율관리 활성화 방향

- 본 절에서는 약 5년간의 자율관리어업 성과 분석(제2장)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자율관리어업 정착단계에서는 자율관리 컨설턴트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음

1. 자율관리 조기정착 방향

- 동 연구에서 제2장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자율관리어업 조기정착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자율관리어업에 대해 자율관리 공동체, 관련기관 및 전문가 집단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었고, 특히, 전체 공동체의 81%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향후 자율관리어업 사업 규모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구성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성원 수는 유지/확대하고, 현재의 규약 수준을 유지 혹은 보완해 가는 차원에서 자율관리어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자율관리공동체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특히, 공동체는 전국대회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전국대회 개최 시, 자율관리 공동체에 필요한 다양한 전국대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또한, 관련기관/전문가의 경우는 현장 방문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찾아가는 교육 강화도 필요함
- 제2장에서는 부실 공동체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이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로는 소득 증대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소득증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됨으로 지역별/해역별 및 참여 유형별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자율관리어업 신청/선정 단계 시 주관 기관이 어디인지 혼란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시 단계에서는 정부의 사업집행 지침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현실에 맞는 사업집행지침의 개선과 더불어, 일선수협들은 어업인들과 직결됨으로 수협도 지도사업과 연계하여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 자료가 복잡하고 너무 많아 번거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1년까지 2,000여개 공동체 참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증가되는 공동체 수를 고려하여 항목 및 문항수를 중장기적으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음

<표 6-9> 자율관리어업 조기정착 방향

추진내용	추진방향	비고
사업규모	다양한 사업내용으로 확대 필요	육성사업 지침 현실반영
구성원의 수	유지 및 확대	광역공동체 유도
자율관리 규약	유지 및 지속적 보완 필요	규약에 대한 지도 필요
교육	전국대회와 연계 필요, 현장방문 교육 강화	전국대회 프로그램 개발 찾아가는 교육 필요
소득증대	공동체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방안 제시
사업집행지침 관련기관	현실에 맞는 지침 개발 일선수협 참여방안 강구	지속적 지침내용 개선 수협의 자율관리 참여 필요
평가 제도	유형별 평가항목 및 문항수 단순화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중장기적 항목 단순화 필요 관련 법/제도 수정/보완
인센티브	정착시까지 지원 필요	장기적 육성사업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자율관리 정착	다양한 자율관리 수단/방법 개발제공	관련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및 보급

- 따라서, 부실 공동체 방지 및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관리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보완과 어업인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참여 인센티브를 정착시까지 지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자율관리어업 수단 및 방법을

개발하여 제공, 다양한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임.

2. 자율관리 건설턴트

- 자율관리 컨설턴트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도 63개소로 출발 2006년 12월 현재, 공동체수가 445개소로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실적부진 공동체와 신규참여 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 지역별로 어업여건을 잘 알고 있는 수산전문가로 하여금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도모 추진
 - ※ 자율관리컨설턴트 : 수산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담당 지역내 자율관리공동체의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하여 자문하여 자율관리 확산 및 정착에 기여

가. '06년도 추진결과

- 자율관리컨설턴트 운영기간은 4개월간(2006년 9월~2006년 12월)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둘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교육 및 지도, 셋째, 미참여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유도 및 성공사례 발굴, 넷째, 지역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대책 강구 등임
- '06년도 사업성과를 진단해 보면,
 - 자율관리공동체의 실태파악 및 건의·애로사항을 현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계기
 -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도·자문 실시(50개소 공동체)
 - 자율관리어업의 취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전파하여 미참여 공동체에 대한 신규참여 유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공동체 신규 소득창출을 위한 경영자문 역할 강화

<표 6-10> 자율관리컨설턴트 활동내용

구 분	활 동 내 용
○ 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지역 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 정보수집 및 개선사항 파악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교육 및 지도	- 매월 교육 후 성과와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보고
○ 미참여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유도 및 성공사례 발굴	- 정부, 사무국, 어업인간을 이어주는 가교역할 - 지역간, 업종간 정보교류의 중개자 역할
○ 지역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대책 강구	- 다양한 어촌사회 문제 접근

○ 개선할 사항으로는

- 조사위주의 활동으로 교육 활용도 미흡
- 실적부진 및 신규참여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미흡
(시범사업이므로 희망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임)
- 컨설턴트 1인당 다수의 공동체 자문보다 소수의 공동체에 대해 집중적 컨설팅추진
- 대상공동체 선정 개선 : 희망하는 공동체 → 실적부진 및 신규참여 공동체 우선 선정

<표 6-11> 자율관리컨설턴트 구성 및 담당지역

지 역	컨설턴트	담당지역	담당공동체(총50개소)
충남	A	충남	도항, 무창포, 영목통발, 몽산포, 난지도, 황도, 의항2구, 방포, 방갈, 마량, 드르니, 라향, 중왕(13개소)
전 남	B	전남동부 (여수청 관할)	사양, 오복, 덕흥, 서부, 용두, 상진, 하장, 제두, 오천, 적금, 백초, 복춘, 고흥나지통발(13개소)
경 남	C	경남동부, 경북남부	녹산, 부산다대, 이천, 주전, 망어진, 일산, 당사, 진하, 강양, 평동, 어물(11개소)
	D	경남서부 (거제,통영기점)	사천연안통발, 통영연안통발, 통영저도, 통영잠수기, 유희, 원향, 옥지연화, 통영수산업경영인, 삼천포근해연승, 삼천포죽방림, 삼천포외줄낚시, 탑포, 거제연안통발(13개소)

나. 향후 자율컨설턴트 운영방향

- 향후 자율관리컨설턴트는
 - 자율관리어업 추진실적이 부진하거나 신규참여로 경험이 적은 공동체의 사업추진 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유도
 - 수산경험이 풍부한 수산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체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소득증대 방안 자문
- 추진방향은 상대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이 미약한 공동체에 대한 현장 중심 집중 컨설팅
 - 지역에서 신망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해양수산전문가 등을 활용 자율관리어업 노하우 전수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임을 감안하여 위원별로 전담 공동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집중관리
 - 지역별/해역별, 유형별로 사업추진 사전 및 사후 집중 관리

다. 세부추진 계획

- 현재 운영 중인 자율관리 컨설턴트 에 대한 향후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언급하면 먼저 운영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대상은 담당지역내 공동체 중에서 자율관리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신규참여 공동체 및 자문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함
- 컨설턴트의 구성은 시도별 수산업의 특성과 어업전반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자율관리컨설턴트 운영규모는 해역별/지역별로 자율관리 유형을 고려하여 전문컨설턴트로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해역별 약 5명으로 하여 총 20여명 규모로 운영함
- 자율관리어업정착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 지급 및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표 6-12>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 기본계획

구 분	기 본 계 획	비 고
운영기간	4월~12월(1년 단위로 위촉기간 갱신)	-
대 상	담당 지역내 실적부진 및 신규참여 공동체 자문을 원하는 공동체 등	-
구 성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시·도별 지역특성과 수산업 전반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
규 모	- 해역별/지역별로 자율관리 유형을 고려 전문컨설턴트를 구성 - 동/서/남해/제주 해역별 5명 : 약 20여명)	-

- 이러한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담당형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즉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관리 정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맞춤형으로 접근함
- 둘째, 실적이 부진하거나 신규참여공동체에 대하여 1~2개소를 선정하고 동 공동체에 대하여 약 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소득개발, 자율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자문활동임
- 셋째, 다양한 분야(유통, 어촌관광, 자원관리, 경영)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한국수산회 자율관리 사무국의 역할을 확대하여 해당공동체가 원할 경우 컨설팅 지원업무에 대한 전문가 파견 및 행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마지막으로, 자율관리어업 미참여 공동체에 대한 참여유도뿐만 아니라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자율관리어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 역할과 분쟁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을 통한 자율관리 컨설턴트 역할강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제6장 공동체평가시스템 구축 로드맵 제시

<표 6-13>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내용
○ 지역 담당형 자율관리컨설턴트 운영	-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담당 지역에 대한 어업여건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턴트 추진
○ 실적부진 및 신규참여 공동체에 대한 집중 관리형 체제 구축	- 전담 컨설턴트의 집중 관리를 통해 자율관리어업 중심의 공동체 운영·경영합리화, 행정처리, 소득창출 등 전분야에 대하여 자문실시 - 공동체 1 내지 2개소에 대하여 1~2개월간 집중적인 관리 실시 - 집중관리 공동체는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자문체제로 전환
○ 분야별 전문 인력풀 활용	- 수산회에서 운영하는 수산경영컨설팅을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를 공동체에 파견하여 현실성 있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내실강화 (예, 유통전문가, 관광전문가, 자원관리전문가, 행정전문가 등)
○ 한국수산회 사무국 역할 확대	- 행정업무 및 컨설팅 지원업무 강화, 분야별 전문가 파견 지원 등
○ 자율관리 컨설턴트 역할 강화	- 현장 중심의 집중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및 자문역할 확대 - 실적 부진 및 참여 공동체의 모범단계 이상으로의 컨설턴트 기능 강화 - 자율관리어업 미참여 공동체에 대한 참여유도 및 성공사례 발굴 - 지역현안 문제 자문 및 분쟁사건예방 역할

라. 컨설턴트 활용방안

-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은 지방청 어촌지도사들이 중심이 되어 해당 청별로 소속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도사들이 지도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어촌지도사들은 자율관리업무뿐만 아니라 타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전 및 사후 지원에 한계가 따르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역 및 지역의 어업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를 운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컨설턴트라 함은 수산관련 공무원이나 수협 및 관련기관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하여 어촌지도사들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사랑방좌담회 및 열린토론회 개최시 참석하여 다양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해역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약 20~30명의 컨설턴트를 모집하여 활용하되 이들에 대한 대우는 활동비 보조차원의 한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관리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자율관리어업을 조기에 정착 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자율관리 컨설턴트 주요 업무로는 참여 공동체 실태조사 및 미참여공동체 발굴, 미참여공동체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제시, 미참여 공동체 참여유도 및 광역단위 어선공동체 결성 전담, 자율관리 공동체 자문 및 의견수렴 후 정부 건의, 현장중심 맞춤형 자율관리 교육 및 홍보 담당, 규약 및 합의서 이행관련 모니터링 역할 담당, 자율관리 평가 및 공동체 승급화시 참여토록 하여 의견 반영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3절 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 세부실천계획(안)

- 본 절에서는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책의 필요성 및 목표, 추진방향, 단계별 추진체계(안), 세부추진 로드맵(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

1. 정책수립 필요성 및 목표

가. 정책수립 필요성

- 정부주도의 수산정책 추진은 어업인들의 의타심만 조장하고 무주물 선점 경쟁의식을 심화 시켜 지속적인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인한 어업경영악화로 악순환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코자 20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이 추진 중에 있음
-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어촌계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동체 평가가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신뢰성 등을 확보해야 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정책목표

- 자율관리어업은 '01년 시작한 후 참여 공동체가 300개 돌파, 우수사례 출현 등 기반조성에는 성공
- 참여 공동체가 '01년 63개에서 '06년 말, 현재 445개로 약 7배 증가
- 그동안 교육, 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확산에 노력
- 워크샵·전국대회 개최, 우수 공동체 표창, 사례집 발간 등
- 이제는 기반조성단계에서 확산단계로 발전이 필요한 시기로서 공동체에 대한 객관적 평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가 및 경쟁 유도 필요

-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참여정도와 추진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등급 공동체에 대한 지원강화
- 승급(昇級)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공동체의 자긍심 고취

다. 추진 방향

- 지역별(지방청별) 평가결과의 편차 해소, 기관별 평가 시스템 보완을 통한 구축, 자율관리 참여 공동체 증가에 따른 지역별, 유형별 세부 평가 체제 구축, 민간차원 평가체제 정착,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 확대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여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가 확산 및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함

2. 단계별 추진체제(안)

가. 단계별 추진목표 및 체제

- 그 세부적인 추진 목표 및 전략을 살펴보면, 1단계('06~'07)에서는 지역편차 해소를 통한 공동체 등급화 기준확정 및 평가에 대한 기반조성 것을 목표로 함
- 다음으로, 2단계('07~'09)에서는 평가체제 전산화와 상시평가체제 구축하는 것을 목표함
- 마지막으로 3단계('10년 이후)에서는 평가를 민간체제로 전환하여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게 하는 것을 목표함

<표 6-14> 공동체평가 체제구축 목표 및 추진전략

단계별	목 표	추진 전략
1단계 (‘08~’09)	지역편차 해소를 통한 공동체 등급화 기준확정 및 기반조성	[평가기준 및 기반조성 단계] - 지역별 편차 해소방안 강구 - 등급화 기준을 통한 평가 기반조성 - 참여증가에 따른 세부유형별 평가체제 구축 - 자율관리 컨설턴트 평가 참여방안 강구
2단계 (‘10~’11)	평가체제 전산화와 상시평가체제 구축	[상시평가 구축 단계] - 모든 평가 전산화 체제 정착 - 평가자 교육 강화 - 기관별 평가체제 지속적 보완 및 정비 - 타기관 세부 평가항목 개발 지속
3단계 (‘12 이후)	민간 평가체제로의 정착	[민간차원 평가 정착단계] - 권역별 컨설턴트 사무소 운영(법인화) - 민간단체 중심 체제로 운영

나. 단계별 세부추진 내용

-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 구축 위해 제시된 목표 및 추진 전략을 고려하여 제1단계(평가기준 및 기반조성단계), 2단계(상시평가 구축단계), 제3단계(민간체제로의 정착단계) 등 단계별로 구체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1단계 : 평가기준 및 기반조성단계

가) 계획기간 : 2008년 ~ 2009년

나) 추진전략

□ 모든 평가자료 전산화 추진 (‘08~ 계속)

- 모든 평가기관은 현재 해양수산부 평가 전산 프로그램에 전산 입력
 - 이를 통해, 공동체 평가자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함으로 동 자료를 기초로 자율관리 확산 및 정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권역별 (동서남해) 평가방안 ('09~계속)

- 지역별 지방청별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 동해안 권역, 남해안 권역, 서해안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 중심 유형별 평가를 통하여 등급화를 추진하는 방안
 - 현재의 전국단위 평가 순위의 경우는 지방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권역별 평가 순위를 매겨 등급화 함
 - 특히, 편차가 나는 원인은 첫째, 지방청 지도사들이 항목별 평가에 있어서 평가 초점 및 의미 부여가 상이하고, 둘째, 해역별 각각 어업의 특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항목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으므로 권역별 평가자(전자평가,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들이 최소한의 평가를 하기 위한 모임을 가져 동일한 평가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관별 평가 시스템 구축 ('08~'11)

- 평가 참여 기관별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향후 참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청 전자평가,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 등에서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사무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역별, 유형별 세부 평가 체제 구축 ('09~ 계속)

- 지속적 자율관리 참여 공동체의 증가에 따라 세부 유형별 평가체제 구축
 - 참여 공동체의 증가에 따라 마을/ 양식/ 내수면어업, 복합어업(도시근교, 도서형), 어선어업(연안, 근해, 업종 등), 광역공동체 등으로 매우 세분화의 필요성이 예상됨으로 현재의 평가 시스템 보완 후 향후 세분화 평가 체제 구축 필요

□ 민간기관(위원회) 평가 체제 보완 ('09~'10)

- 한국수산회에서 자율관리 평가 사무국 역할 수행에 따른 보완 필요
 - 자율관리 참여 공동체 증가에 따라 평가의 대상 및 업무의 확대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가칭)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08~계속)

- 민간단체에서 정부 지원하에 자체적으로 관리 및 운영(해역별 5명 : 약 20명)

-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정부는 감독하는 방법으로 운영
-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관리 전담 컨설턴트 운영
- 공동체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 강구

2) 2단계 : 상시평가 구축 단계

가) 계획기간 : 2010년 ~ 2011년

나) 추진전략

□ 타 민간(수협) 평가 참여 방안 강구 ('10~ 계속)

- 향후 민간 중심 평가 체제 정착을 위하여 타 민간기관 평가 참여 방안 강구
 -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수협의 참여가 현재는 어려우나 향후 수협 등 민간기관의 평가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중심 평가 체제 정착 필요

□ 자율관리 컨설턴트 평가 참여 방안 ('10~'11)

- 자율관리 컨설턴트 공동체 참여 방안 강구
 - 권역별 10여명 이상 컨설턴트 확보를 전제로 평가에 참여케 함

3) 3단계 : 민간차원 평가 정착 단계

가) 계획기간 : 2012년 이후

나) 추진전략

□ (가칭) 자율관리 컨설턴트 협회 운영 ('12년이후)

- 권역별 밀착형 컨설턴트 운영을 통한 자율관리 정착 도모
 - 권역별 10 여명 이상으로 컨설턴트 활동을 전제로 컨설턴트 지역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여 자율관리 정착에 기여

□ 민간중심 평가체제 정착 ('12년 이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향후 자율관리어업의 정착을 위하여 민간차원 평가체제 구축 필요
 - 진정한 의미의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가 활동하는 것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 향후 민간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세부추진 로드맵(안)

- 지금까지 검토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리하면, 자율관리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 일정(로드맵)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첫째, 권역별 자율관리공동체 평가편차해소방안 강구를 위해서는 지속적 유형별 평가항목개선노력('08~계속), 권역별(동서남, 제주) 평가방안 강구('09~계속), 모든 평가 자료전산화('08~계속), 평가자 교육강화('08~계속)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관별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청 전자평가,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 등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야 함('08~계속)
- 셋째, 지역별/유형별 세부평가체제 구축이 필요함. 즉 마을/양식/어선/복합/내수면 등의 자율관리유형에 대하여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유형별 자율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09~계속)
- 넷째, 자율관리어업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하는 운동임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민간차원체제로의 전환 및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민간기관 평가체제 보완('09~'10), 민간중심 평가체제정착('12~계속), 타 민간(수협) 참여방안 강구('10~계속),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08~계속) 등에 대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관리평가활동이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이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율관리컨설턴트 공동체 평가 참여방안 마련('10~'11), 컨설턴트 인원수 확대('08~계속), 수산회 사

제6장 공동체평가시스템 구축 로드맵 제시

무국 역할확대('08~계속)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언급한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시스템구축을 위한 세부추진일정은 기본적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통해 참여공동체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관리어업의 조기 정착에 목적을 두고 마련하였음
- 따라서 동 세부일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이 평가→ 어가소득증대→ 조기정착→ 어촌지역사회발전으로 단계적 발전목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6-15> 공동체 평가 시스템 구축 세부추진 일정

구분		년도	'08	'09	'10	'11	'12 이후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강구	방안지속적 유형별 평가항목 개선						
	권역별(동서남해, 제주) 평가						
	모든 평가자료 전산화						
	평가자 교육 강화						
기관별 평가시스템 구축	지방청 전자평가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						
지역별 유형별 세부 평가체계 구축	마을/양식/내수면어업						
	복합어업(도시근교, 도서형)						
	어선어업(연안, 근해, 업종 등)						
	광역공동체						
민간차원 평가체계 정착	민간기관(위원회) 평가체계 보완						
	민간 중심 평가체계 정착						
	타 민간(수협)의 참여방안 강구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자율관리 컨설턴트 운영확대	자율관리 컨설턴트 평가참여 방안						
	컨설턴트 인원수 확대						
	수산회 사무국 역할 확대						

참 고 문 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수산자원의 적극적 관리·조성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정책과제발표자료집7(수산), 2002. 12.
- 이광남, EEZ체제하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수협조사통계월보 제33권 7호, 2001.7.
- 이광남, 자율관리체계의 활성화 방안, 농어업 특위 제4분과위, 2002.6.28.
- 이광남, 자율관리어업의 유형 분석과 발전 방향, 자율관리어업 점검회의, 해양수산부, 200.3.2.19.
- 이광남, 자율관리어업 발전방안, 자율관리 공동체지도자 WORKSHOP, 수협중앙회, 2003.4.26.
- 이광남, 韓·中·日 간 어업자원 관리문제와 전망, 수산경영론집 제33권 제1호, 2002.6
- 이광남, 자율관리어업의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창간호, 2003.6
- 이광남, 자율관리어업의 한국형 모델,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제4호, 2005.6
- 이광남·서병귀, 각국 제안서에 따른 WTO/DDA 수산보조금 대응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제 17호, 2005.12
- 수산발전정책기획단, 「도전받고 있는 한국 수산업과 발전전략」, 2001.6.
- 수협중앙회, 「유엔해양법협약과 어업」, 1997.9.
-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자율화시대의 신어장운동을 위한 어장관리형 어업, 1995
- 수협, 수산업관련 어업인 단체조사보고서, 2004.12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발전기획단, 「자율관리형어업 실시방안」, 2001. 2.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형 어업 시범사업 실시요령」, 2001. 5.
- 해양수산부, 「2002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추진계획」, 2002.4
-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2003.12
- 해양수산부·한국법제연구원, 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2005.5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형어업 수범사례집, 2001.5.
- 최정윤 외,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어업생산자 조직의 어업관리에 관한 연구-어촌계의 어업권관리기능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국립수산진흥원, 1997.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보고서('03, '04)
- Berkes, F., "Co-management and James Bay Agreement", in Pinkerton, F.(ed), Co-operative Management Local Fisheries: New Directions for Improved Management and Community

Development, University British Columbia Press, Vancouver, 1989, pp.189-208.

Doulman, D. J., "Community-based Fishery Management", *Marine Policy*, Vol.17, No.1, 1993, pp.108-117.

Dubbink, W. and Martijin van Vliet, "Market Regulation versus Co-management: Two Perspectives on Regulating Fisheries Compared", *Marine Policy*, Vol.20, No.6, 1996, pp.499-516.

Jentoft, S. and Tround Kristoffersen, "Fisherman's Co-management: The Case of the Lofoten Fishery", *Human Organization*, Vol.48, No.4, 1989, pp.355-365.

Jentoft, S., "Fisheries Co-management: Delegating Government Responsibility to Fishermen's Organizations", *Marine Policy*, Vol.13, No.2, 1989, pp.137-154.

Nielsen, Jesper R., Tomas Vedsmand and Petet Friis, "Danish Fisheries Co-management Decision Making and Alternative Management System", *Ocean & Coastal Management*, Vol.35, No.2-3, 1997, pp.201-216.

Pomeroy, R. S. and Melvin B Carlos, "Community-based Costal Resource Management in the Philippines: a Review and Evaluation of Programs and Projects, 1984-1994", *Marine Policy*, Vol.21, No.5, 1997, pp.445-464.

Pomeroy, R. S. and Michael D Pido, "Initiatives Towards Fisheries Co-management in the Philippines: The Case of San Miguel Bay", *Marine Policy*, Vol.19, No.3, 1995, pp.465-480.

北田修一, "資源と漁業の明日をひらく-資源計画-栽培漁業と資源管理を結ぶ新しい概念", 月刊漁協, No.86, 全漁聯, 2000. 7.

平澤豊, "日本の漁業管理-資源管理型漁業について-", 海外漁業協力財團, 「世界の漁業管理」, 1994.

平澤豊, 「資源管理型漁業への移行-理論と實際」, 北斗書房, 1986.

부록 1 : 자율관리 성과분석 설문지



208 SAJIK-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3702-2637
/ FAX(02)3702-2635/E-mail info@gallup.co.kr / Internet http://www.gallup.co.kr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200615096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인식 조사 (자율관리공동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입니다.

금번 저희 연구소에서는 한국수산업회와 공동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 분석 및 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 도출」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보다 정확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으며 본 연구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응답자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저희가 묻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의견 자체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될 뿐 그 외의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박무익

조사 지역 및 대상

(면접원 : 아래 내용은 리스트 확인 후 면접원이 직접 기입할 것)

조사지역 : _____도(광역시) _____군(구/시) _____면(읍/동)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공동체명 : _____ 5 (고유번호 : _____ 6-8) 9-11 12-1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재 운영 실태

문1) 귀 공동체는 몇 년도부터 자율관리어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면접원 : 아래 내용은 리스트 확인 후 면접원이 직접 기입할 것)

15-18

_____년도

문2) 귀하가 속한 공동체는 현재 어떤 어업 분야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특히 복합 어업인 경우는 해당되는 어업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 참여하고 계신 어업에서 주로 생산하고 계신 어종 및 품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산하고 계신 어종 및 품종이 복수일 경우에는 주력 생산 어종/품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면접원 : 아래 내용은 리스트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할 것)

- 19 1. 마을어업 (주 어획물 : _____) 24-26
- 20 2. 양식어업 (주요 양식 품종 : _____) 27-29
- 21 3. 어선어업 (어업종류 : _____) 30-32 , (어종 : _____) 33-35
- 22 4. 내수면어업 (어업종류: 주 어획물 : _____) 36-38
- 23 5. 기타 (업종 : _____) 39-41 , (품종 : _____) 42-44

문3) 귀하가 속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원수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습니까? 시작 당시의 구성원 수와 현재의 구성원 수를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당시 구성원수 : 총 _____명 45-47

현재 구성원수 : 총 _____명 48-50

문4) 귀 공동체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1-52

- 1. 수협위판
- 2. 위탁판매(중간도매인 및 객주)
- 3. 공동판매(공동직접 및 인터넷판매 등)
- 4. 개인적 판매
- 5. 기타 (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자율관리어업 효과 측정

문5) 귀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에 참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53-54

1. 정부의 지원 때문에
2. 시/도·시/군 또는 해양수산사무소가 권해서
3.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업인 간에 자발적으로 조성되어
4. 다른 어촌계도 참가하는 만큼 우리 어촌계(또는 임의단체)만 손해 볼 수 없다는 생각에
5. 공동체 대표자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6.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문6)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후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자율관리어업의 궁극적인 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5-56

1. 자체 및 인근 어업인 들과의 분쟁 조정
2. 자체 및 인근어장의 불법어업 근절
3.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 증대
4.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문7) 다음은 현재 귀 공동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과 관련한 평가입니다. 다음의 각 측면별로 귀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1점은 매우 낮음, 3점은 보통, 5점은 매우 높음 등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도	5	4	3	2	1	57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도·단결도	5	4	3	2	1	58
공동체 구성원간 갈등 정도	5	4	3	2	1	59
참가 어업인 인식의 긍정적 변화	5	4	3	2	1	60
자율관리어업 규약의 준수 정도	5	4	3	2	1	61
자율관리어업 실시 이후 자원 유지·증대 효과	5	4	3	2	1	62
자율관리어업 실시 이후 어장환경 개선 효과	5	4	3	2	1	63
자율관리어업 실시 이후 어가소득 증대 효과	5	4	3	2	1	64
자율관리어업 실시 이후 어업질서 확립(불법어업 감소) 효과	5	4	3	2	1	65

문8)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귀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6

1. 매우 어려운 상황임
2. 별로 잘 되지 않고 있음
3. 보통 수준임
4.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편임
5. 매우 잘되고 있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문9) 귀하께서 평가하시기에, 앞으로 귀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3가지 측면별로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1) 자율관리어업사업 관련(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으로 생산하고 있는 자원 수/아이템 등)

67

1.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2.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현 상태보다 축소시켜야 한다
4.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2) 자율관리어업 구성원 관련

68

1.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2.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현 상태보다 축소시켜야 한다

3) 자율관리어업 규약 관련

69

1.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2.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현 상태보다 완화시켜야 한다

문10) (면접원 : 문9)에서 각 문항별로 부정적 응답(축소/폐지/유지/완화해야 한다)을 체크한 경우만 질문할 것)
그럼,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율관리어업사업 관련(현 상태보다 축소 및 폐지시켜야 한다)

70-71

1. 더 이상 확대할 사업이 없다.
2. 확대는 필요하나 확대 추진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3. 구성원들의 비협조로 사업을 축소 및 폐지해야 한다
4.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2) 자율관리어업 구성원 관련(현재보다 더 축소 및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2-73

1. 구성원들이 너무 많다
2. 더 이상 참여할 구성원들이 없다
3.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3) 자율관리어업 규약 관련(현 상태 유지 및 완화해야 한다)

74-75

1. 현 규약대로 구성원들이 잘 지키고 있다
2. 현 규약이 너무 강해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완화해야 한다
3.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문11) 자율관리 참여 후 귀 공동체 구성원 가구(어가)의 어업소득과 어업 외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되, 자율관리 시작 당시와 현재의 소득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을/양식/내수면 어업은 가구당 소득으로, 어선어업은 척당 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업 소득	어업 외 소득
시작년도	76-77	78-79
현재	80-81	82-83

1. 년평균 500만원 미만
2. 년평균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3. 년평균 1,000만원 ~ 1,500만원 미만
4. 년평균 1,500만원 ~ 2,000만원 미만
5. 년평균 2,000만원 ~ 2,500만원 미만
6. 년평균 2,500만원 ~ 3,000만원 미만
7. 년평균 3,000만원 ~ 3,500만원 미만
8. 년평균 3,500만원 ~ 4,000만원 미만
9. 년평균 4,000만원 ~ 4,500만원 미만
10. 년평균 4,500만원 ~ 5,000만원 미만
11. 년평균 5,000만원 이상

교육 / 홍보에 대한 평가

문12) 귀하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하여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총 몇 회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65

1. 있음 (_____ 회) 6-7
2. 없음 → 문16)으로 갈 것

문13) 귀하께서 평가하시기에 자율관리어업 관련 교육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8

1. 전혀 없음
 2. 별로 없음
 3. 보통
 4. 어느 정도 큰 편임
 5. 매우 큼
- } → 문15)로 갈 것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문14) (앞의 설문에서 1, 2에 응답한 경우만)
자율관리어업 관련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10

1. 실제 자율관리어업과 관련 없는 교육을 실시
2. 내용이 너무 어렵다(현 어업인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
3. 교육 내용이 매번 동일함(비슷한 내용 교육만 실시)
4. 시간이 없어 교육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5. 1회성 교육으로 끝난다. 지속적 교육이 필요함
6. 교육이 너무 많다
7.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문15) 귀하께서 평가하시기에 자율관리어업 관련 교육 중 가장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교육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다음은요?

가장 : _____ , 그다음 : _____

- | | |
|--|--------------|
| 11-12 | 13-14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전국대회 2. 지방청 집합 교육 3. 수협 교육 4. 광역 단체 워크샵 5. 지방청 집합 교육 6. 현장 방문 교육 7.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 |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지원받은 공동체 대상)

문16) 귀 공동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총 몇 회를 지원받았으며, 누적금액 기준으로 총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으셨습니까?

지원 받은 횟수 : 총 _____ 회 **15-17**

지원 받은 금액 : 총 _____ 원 (_____)

=====

999. 지원받은 경험이 없음 **18-27**

문17) 정부의 지원에 의해 시작한 사업을 실행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여타 사업으로 변경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28-29

1. 사업집행기관의 제안·권유
 2. 자율관리사업 집행 지침 상의 제약
 3. 예산측면의 제약
 4. 관련제도와의 상충
 5.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 =====
9. 포기 경험이 없음

문18) 귀하께서 평가하시기에 어업공동체에 대해 정부의 자율관리 지원사업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0

- 1. 전혀 없음
 - 2. 별로 없음
 - 3. 보통
 - 4. 어느 정도 큰 편임
 - 5. 매우 큼
- } → 문20)으로 갈 것

문19) (앞의 설문에서 1, 2에 응답한 경우만)
지원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1-32

- 1. 세부 사업 항목을 잘못 선정하여 현 공동체 활동에는 맞지 않음
- 2. 자율관리사업 집행 지침 상의 제약
- 3.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 4. 자연재해로 인하여 (태풍 등으로 인한 폐사, 시설 파손 등)
- 5.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문20)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대부분의 자율관리공동체는 와해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34

- 1. 대부분의 공동체가 와해될 것이다
- 2.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공동체는 살아 남을 것이다
- 3. 이제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대부분의 공동체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4.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자율관리어업 관련 문제점 진단 (공통)

문21) 현재 부실한 자율관리공동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36

- 1. 부실 자율관리공동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미한 수준이다
- 2. 부실 자율관리공동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적정한 평가 등의 재검토를 통한 수정/보완 필요
- 3. 부실 자율관리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자율관리어업정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4. 늘어나고 있지 않다
- 5.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문22) (문21)에서 부실 자율관리공동체가 발생한다고 평가한 경우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7-38

- 1. 지도자 리더쉽 문제
- 2. 자체 분쟁으로 추진 실패
- 3. 구성원들의 비협조
- 4. 우수 공동체 선정탈락에 따른 육성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 5. 소득 증대가 가시화되지 않아서 참여 저조
- 6.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문23) 자율관리어업의 효율적 시행에 있어 문제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다음의 단계별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순서에 관계없이 각각 두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단계 구분	보기 항목
신청 및 선정 단계 39-40 41-42	1. 구체적 신청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다 2. 자율관리 규약 제정이 어렵다 3. 주관 기관이 어디인지 혼란스럽다 (신청/선정 주체인 지자체(시·도)와 육성 주체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 이원화) 4. 구성원의 참여 호응도가 낮다 5.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단계 구분	보기 항목
실시 단계 43-44 45-46	1. 단순한 사업내용(프로그램) 2. 정부의 사업집행 지침과 현실간의 괴리 3. 자율관리 지도기관(지방청)과 집행기관(지자체)가 다름 4. 공동체 내부의 갈등 5. 미참여자와의 분쟁 6. 관련 법·제도와 사업내용간의 상충 7. 과학적·기술적 지원 미흡 8.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사업평가 단계 47-48 49-50	1. 긴 평가기간과 잦은 평가 횟수 2. 평가 자료가 복잡하고, 너무 많아 번거로움 3. 지원·평가인력의 부족 4.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문24) 귀하께서는 자율관리어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은요?

가장 : _____, 그다음 : _____

51-52

53-54

1. 광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2. 다양한 자율관리수단 및 방법 개발
3. 수산과학원의 자문과 지원
4. 자율관리 평가방법 개선
5.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6. 참여 어업인에 인센티브 제공
7. 다양한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8.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문25) 자율관리어업을 좀 더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55-56

다음은 자료분류를 위한 기초 질문입니다.

D1) 성별 : 1. 남자 2. 여자 57

D2) 귀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58-59

만 _____ 세

D3) 귀하께서는 현 업무(어업)에 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0-61

_____ 년

D4) 직책

62-63

1. 위원장
2. 위원장 이외 임원
3. 기타(직접 기록해 주세요 : _____)

오랜 시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빠진 사항이 있어 전화를 걸어 여쭙어 볼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니 명함 1장만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접 후 기록					
응답자 성명					
응답자 주소	(리)	시(구)	구(면)	동	
전화 번호	()	- ()	- ()		
조사 일시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 부터 (분간)	
면접 장소					
면접원 성명	지역 64		면접원 ID 65-69		
Supervisor			검 증 원		
70-72			73-75		

부록 2 : 지방청 전자평가 메뉴얼